

T 0 2 2

발간등록번호

11-1520000-001037-01

(해양수산통계)
표준매뉴얼

200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목 차

❖ 내항여객선수송실적	1
❖ 등록선박통계	57
❖ 등록어선통계	103
❖ 외항여객선수송실적	199
❖ 해난사고현황	231
❖ 운항선박통계	295
❖ 화물수송실적통계	327
❖ 입항선박톤급별통계	389

내항여객선수송실적

여 백

목 차

I. 개 요	5
1. 작성 목적	5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5
3. 작성 연혁	5
4. 작성 대상 및 내역	5
5. 작성 방법 및 체계	6
6. 결과 공표	6
7. 관련 법령	6
II. 업무흐름도	7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7
2. 업무담당자별 처리사항	8
III. 통 계 표	9
1. 여객선 수송실적	9
2. 여객선 항로현황	10
IV. 업무 절차 상세 설명	11
1. 개 요	11
2.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신고	12
3. 업무 처리 절차	14
V. 관련 용어 및 법규	20
1. 관련 용어	20
2.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23
※ 한국해운조합 안내	55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내항여객선에 의한 수송추이 분석 및 내항여객선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08호

3. 작성 연혁

- 1975. 7. : 통계작성 승인
- 1981. 10. : 정기 여객선 낙도보조항로 수송실적
- 1988. 11. :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으로 명칭 변경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전국 연안여객 운송사업 면허선박 전체
- 내 용
 - 운항선박(척수, 톤수, 선명, 정원)
 - 취항계획(일수, 횟수), 결항(일수, 횟수)
 - 여객수송실적(수송능력, 수송실적, 입·출항실적, 인km)
 - 화물수송실적(톤, 톤km), 운임수입
- 작성 주기 : 매월
- 대상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전국해운조합 시스템(MIS) 활용
- 체 계 : 일선여객선터미널 → 한국해운조합 지부(13개) → 한국해운조합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7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ttp://www.haewoon.co.kr>)
- 공표 범위 : 주요 항구별, 수송인원 등

7.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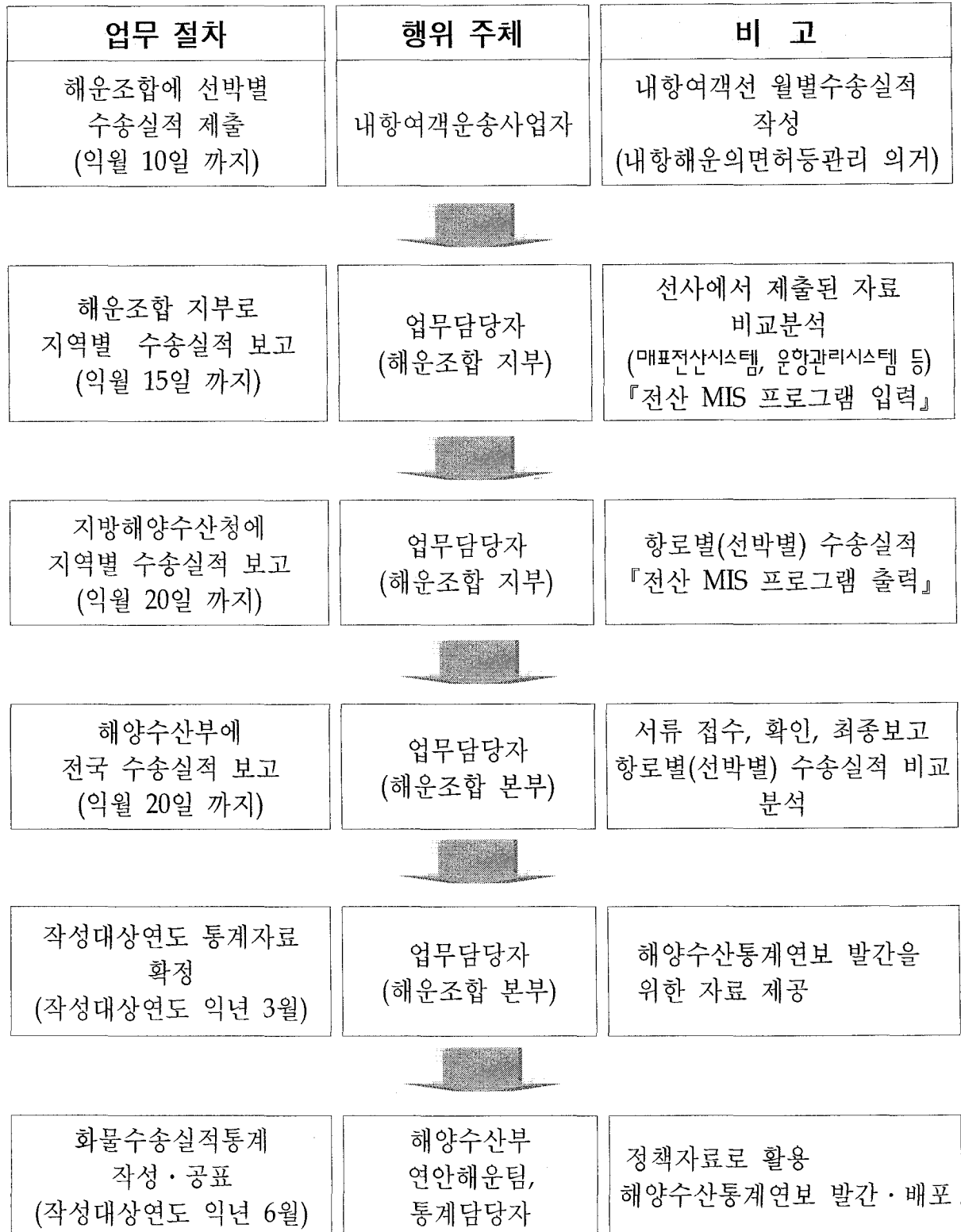
- 해운법 제2조 2항(사업의 정의)
- 해운법 제3조 1항 2항(사업의 종류)
- 해운법 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및 24조(운항관리자)
- 해운법 제56조 1항 7호(해운통계작성 근거)
- 내항해운의 면허등관리요령 제32조 1항(통계서식, 절차)

※ 이용상의 유의점 · 제약요인

- 조사결과는 주요항구의 면허선박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어서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II. 업무흐름도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 업무담당자별 처리 사항

가. 선사 매표소(도서·내륙지역매표소, 여객선터미널)

- 매표 후 전산입력(MIS프로그램)
 - 매표 담당자가 매표 후 실적을 MIS프로그램에 입력

나. 내항여객 운송사업자

- 내항여객수송실적월보(별지제3호 서식)에 일반인, 도서민 구분하여 수송실적, 화물수송실적, 여객선수입을 취합 작성
 - 영세사업자의 경우 여객수송실적을 전담하는 직원 부재 및 잦은 직원의 교체로 업무 수행능력의 저하로 수송실적 오류 발생소지 상존
- 해당실적을 익월 15일까지 해운조합 관할 지부로 보고

다. 해운조합지부 업무담당자

- 항로별, 선박별 수송실적을 취합정리
 - 각 운송사업자가 보고기일(익월 15일)을 준수하지 않아 취합 곤란
- 항로별, 선박별로 취합된 실적을 한국해운조합에 보고

라. 한국해운조합 업무담당자

- 항로별, 선박별 수송실적 비교분석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마. 해양수산부(연안해운팀, 통계)담당자

- 정책자료로 활용(연안여객, 화물 수송실적)
- 해양수산통계연보 발간

Ⅲ. 통계표

1. 여객선 수송실적

1. 여객선 수송 (여객, 화물)

Passenger Ship Transportation (Passenger, Cargo)

구분 Classification	총 계 Total		외항선 Ocean-going						연안선 Coastal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계 Sub_Total		국적선 Korean Flag		외국선 Foreign Flag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1996	9,935,978	3,834,482	622,986	1,890,480	141,849	481,293	381,338	1,209,187	9,412,993	2,144,002
1997	10,482,895	4,218,649	563,829	1,744,591	149,813	484,650	414,218	1,259,941	9,899,066	2,472,058
1998	8,814,790	3,789,180	537,738	1,739,340	175,368	389,572	362,382	1,389,768	8,277,052	2,049,820
1999	9,858,888	4,445,963	804,870	2,178,589	263,594	438,153	541,278	1,738,418	9,051,998	2,289,414
2000	10,700,874	4,909,336	999,183	2,431,845	390,562	480,654	608,861	1,971,191	9,701,511	2,477,491
2001	10,414,814	5,148,038	1,074,591	2,296,235	374,420	411,328	700,471	1,826,907	9,339,923	2,847,801
2002	10,712,711	5,943,912	1,252,687	2,715,505	538,063	674,893	718,784	2,040,812	9,459,844	3,228,407
2003	11,715,117	6,710,708	1,379,529	3,128,581	872,117	992,138	707,412	2,134,425	10,335,588	3,584,147
2004	12,470,424	7,798,692	1,522,200	4,107,768	890,179	1,587,517	1,132,021	2,540,239	10,848,224	3,890,936
2005	13,204,493	8,828,771	2,104,939	4,908,093	731,120	1,784,099	1,373,519	3,121,994	11,099,554	3,920,873
1	825,577	590,512	189,219	382,856	83,320	128,957	125,899	235,701	638,358	227,854
2	799,823	581,231	132,066	314,051	44,058	111,477	88,000	202,574	667,535	247,180
3	824,352	710,272	183,225	448,392	55,738	184,911	107,489	281,481	661,127	263,860
4	1,077,987	830,918	145,481	325,448	48,587	153,830	98,914	171,818	929,458	305,472
5	1,211,437	710,464	182,015	401,753	58,113	124,542	105,962	277,211	1,049,422	308,711
6	1,151,588	788,236	188,098	379,212	61,078	152,710	105,018	228,502	985,492	369,024
7	1,398,157	794,289	205,310	420,447	75,015	157,180	130,295	263,257	1,190,847	373,822
8	2,178,485	948,188	272,449	413,174	89,824	156,858	182,825	257,518	1,904,016	532,992
9	1,000,682	803,124	155,558	468,150	52,325	187,158	108,533	280,992	841,824	334,974
10	1,127,733	778,112	180,878	445,731	58,499	179,514	122,377	289,217	948,357	329,381
11	902,261	739,784	158,883	471,790	76,039	138,841	80,844	334,949	745,578	317,944
12	710,651	743,733	189,639	454,289	49,516	133,813	120,123	320,778	541,012	289,444

자료: 해운물류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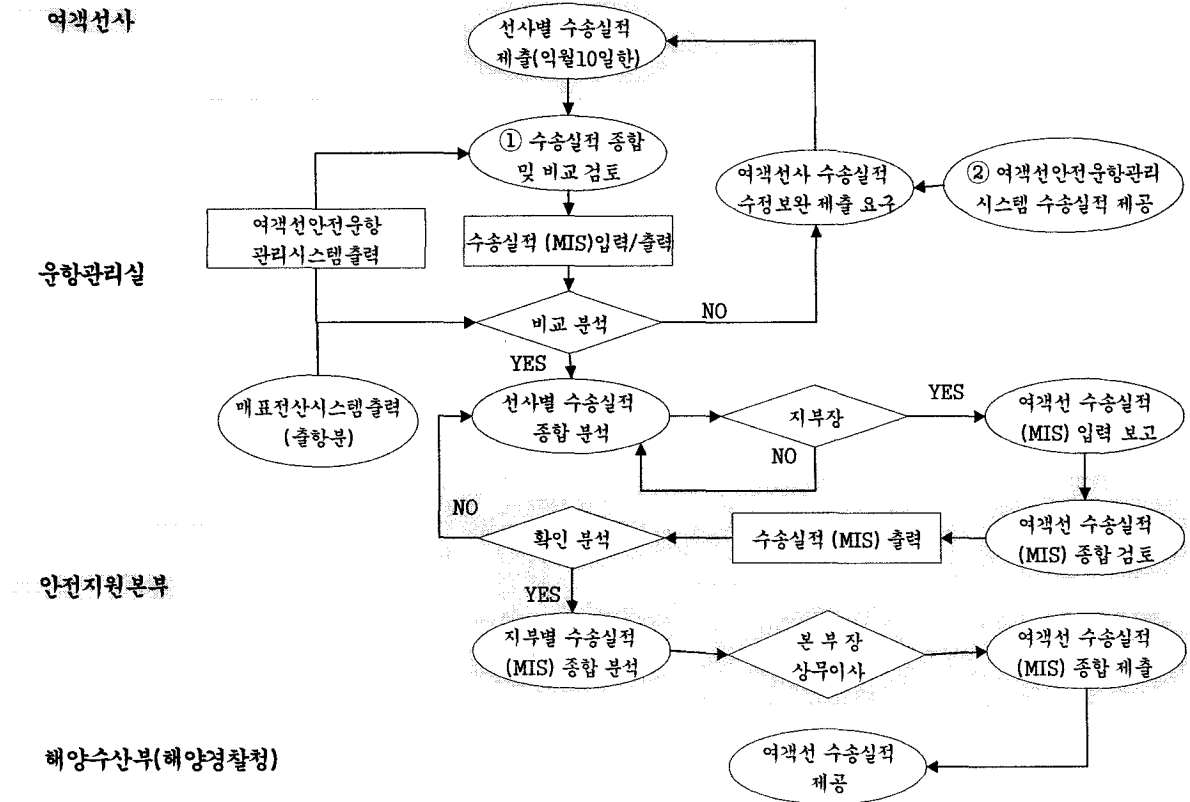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2. 여객선항로 현황

구분 항로별	취항선박		취항거리 (마일)	기항지수	승선정원 (명)	수송인원 (명)
	척수	총톤수				
전국 합계	148	71,028	3,362	299	33,084	11,099,554
부 산 계	11	10,302	285	1	3,273	1,020,490
부 산 - 제 주	2	8,554	169	0	1,142	140,709
부 산 - 고 현	2	245	36	0	283	232,973
부 산 - 옥 포	2	507	24	0	652	238,071
부 산 - 장승포	2	563	24	0	574	387,968
중앙동 - 해운대	2	170	9	0	376	9,589
중앙동 - 물운대	1	263	23	1	246	11,180
인 천 계	18	13,308	665	22	5,480	1,207,274
인 천 - 제 주	1	6,322	264	0	845	91,303
인 천 - 백 령	3	3,677	123	2	1,292	222,937
인 천 - 연 평	2	857	66	1	552	55,016
인 천 - 덕 적	1	312	31	1	426	145,613
인 천 - 이 작	2	480	29	3	620	143,538
인 천 - 무 의	0	0	13	1	0	8,986
인 천 - 작 약	1	199	3	0	300	60,300
대 부 - 덕 적	1	430	23	1	316	55,441
외 포 - 주 문	2	232	18	3	296	73,982
서 검 - 하 리	1	69	3	1	55	19,727
인 천 - 대난지	1	54	32	2	95	18,764
진 리 - 울 도	1	79	31	4	80	9,992
대 부 - 이 작	1	278	23	2	316	50,386
삼 목 - 장 봉	1	319	6	1	287	251,289
동 해 계	1	445	135	0	445	129,274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개요



- ① 여객선사 선박별 수송실적 익월 10일한 해운조합 지부 제출
 사업자 월별 여객선 수송실적(여객 및 화물(차량) 운임)
- ② 지부별 여객선사(선박별) 수송실적 종합 익월 15일한 제출
 (전산 MIS 프로그램 입력)/해운조합 본부
 - 여객선 수송실적
 - 신규항로 취항 여객선 수송실적
 - 지부별 여객선사(선박별) 수송실적 종합
- ③ 여객선 수송실적 해양수산부 익월 20일한 제출
 - 지부별(전산 MIS 프로그램 출력) → 지방청
 - 해운조합(본부) 안전지원실(전산 MIS 프로그램 출력)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은행, 통계청 등

2. 내항여객선수송실적 신고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내항여객선 수송실적(년 월분)

(일반항로, 낙도보조항로)

제출일 :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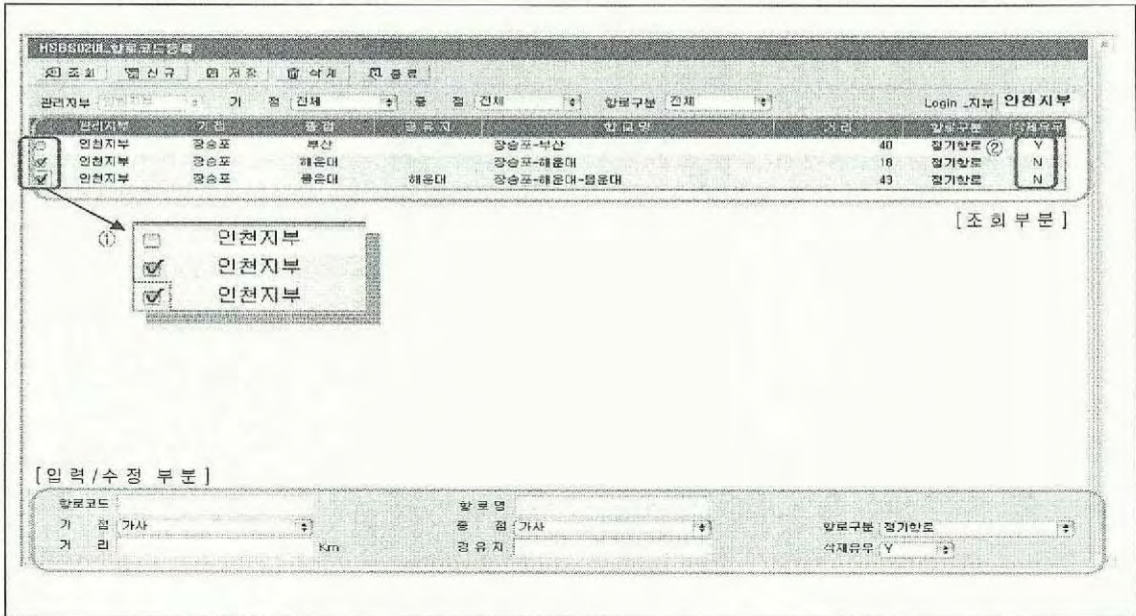
선 사 :

항 로		운항선박		구분	취항계획		결항		능력	여객선수송실적(명)						
기점 코드	종점 코드	거리 (km)	선박번호 (척수)		총톤수	회수 (편도)	일수 (일)	회수 (편도)		일수 (일)	수송계			입 항		
기점 명	종점 명		선박명		정원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소계					당월											
					누계											

3. 업무처리 절차

가. 내항여객수송실적 입력 : 해운조합 업무담당자

1) 월별 수송실적 향로코드 신규등록 (MIS입력프로그램)



- 개요 : 향로코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 정의된 코드는 운항수송실적 정보등록에서 활용 된다.
- 처리과정
 - 조회 : 관리지부 조회 처리
 - 신규 : 클릭시 입력/수정부분 활성화 됨
 - 저장 : 신규버튼 클릭 후 입력/수정부분 입력시 신규저장 처리
조회부분 해당 데이터 행 클릭후 입력수정부분 수정시 수정저장 처리
 - 삭제 : 체크박스 클릭 - 멀티삭제(①), 삭제가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지는것이 아니라 Y, N 으로 구분이 되어져 출력이 됨
 - 종료 : 초기화면으로 이동됨
- 중요입력항목설명 (살색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 기점 및 종점 : 기점과 종점을 선택하게 되면 기점코드 + 종점코드로 향로코드가 자동생성

나. 월별수송실적 등록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for recording monthly transport statistics. The interface includes a header with navigation buttons (조회, 신규, 저장, 삭제, 종료) and a search bar. Below the header are dropdown menus for '년월' (Year/Month) and '관리지부' (Management Office). The main area contains a large empty table for data entry. At the bottom, there are two summary tables: '화물수송실적' (Freight Transport Statistics) and '여객선수송실적(천원)' (Passenger Ship Transport Statistics in 10,000 Won).

- 개요 : 월별 수송실적 입력(관리)하는 프로그램
 - 정의된 정보는 여객선 수송실적에서 활용을 한다.
- 처리과정
 - 조회 : 년월, 관리지부, 항로구분을 선택하여서 조회한다.
 - 신규 : 클릭시 입력/수정부분 활성화 됨.
 - 저장 : 신규버튼 클릭 후 입력 / 수정부분 입력시 신규저장 처리
 조회부분 해당데이터 행 클릭후 입력수정부분 수정시
 수정저장 처리
 - 삭제 : 체크박스 클릭 - 멀티삭제
 - 종료 : 초기화면으로 이동 됨.
- 중요입력항목설명 (살색표시는 필수 입력항목)
 - 항로구분, 항로명, 선박번호 및 선박명 : 유일한 코드입니다.

다. 내항여객수송실적 통계조회 : 해운조합 업무담당자

1) 월별 항로별 여객선 수송실적 조회

HSBS070P - 항로별수송실적											
기간 2006년 01월 ~ 2006년 12월 관리지부 부산지부 항로구분 정기항로 집계유무 [X]											
항로	선박명	종본수	구분	회수		인승		승객	비율	비율	비율
				회수	인승	회수	인승				
합계	16	15,667	당월	1,376	352	302	58	296,422			
02000	01300	3,700	누계	16,462	4,277	3,310	774	3,273,669			
부산	장승포	294	당월	186	31	20	2	46,804			
02000	01300	294	누계	2,188	365	303	36	554,190			
부산	장승포	228	당월	62	31	3	1	18,054			
02000	01300	306	누계	722	343	89	26	193,690			
부산	장승포	273	당월	186	31	12	1	46,720			
02000	01300	280	누계	2,185	365	258	27	490,560			
부산	장승포	3	당월	434	93	35	4	115,578			
02000	81003	114	누계	5,095	1,073	660	89	1,238,448			
부산	고현	150	당월	186	31	22	2	24,600			
02000	81003	342	누계	2,190	365	165	17	303,750			
부산	고현	186	당월	186	31	186	31	0			
02000	81003	163	누계	312	52	230	39	13,366			
부산	고현	163	당월	552	92	445	74	17,276			
02000	81003	3	누계	1,410	235	534	63	129,732			
부산	고현	372	당월	62	62	208	33	24,600			
02000	81200	279	누계	4,454	744	1,375	133	464,125			
부산	죽포	316	당월	186	31	16	1	53,720			
02000	81200	316	누계	2,190	365	361	40	577,964			
부산	죽포	3	당월	2	1	0	0	588			
02000	81200	316	누계	2	1	0	0	588			

2) 월별 선박별 수송실적 조회

HSBS080P - 선박별수송실적											
기간 2006년 01월 ~ 2006년 12월 관리지부 부산지부 항로구분 정기항로											
선박명	종본수	항로			구분	회수		인승		승객	비율
		선사명	항로	거리		회수	인승	회수	인승		
16	15,667				당월	1,376	352	302	58	296,422	
합계	3,700				누계	16,462	4,277	3,310	774	3,273,669	
현대해상	9,088	02000	90000		당월	26	26	0	0	15,314	
동양고속해운(주)	589	부산	제주	313	누계	320	320	25	25	146,869	
골드코스트	114	02000	81003		당월	186	31	22	2	24,600	
(주)서경	150	부산	고현	67	누계	2,190	365	165	17	303,750	
골드코스트	02100	02100	02100		당월						
(주)서경	279	중앙동	중앙동		누계	1	1	0	0	150	
페레스트로미카	279	02000	81200		당월	186	31	16	1	53,720	
(주)상해건해운	316	부산	죽포	44	누계	2,190	365	361	40	577,964	
카멜리아2000-1	85	02100	02001		당월	82	31	16	8	12,408	
부산해상관광(주)	188	중앙동	해운대	26	누계	1,058	365	264	130	119,192	
카멜리아2000-2	85	02100	02001		당월	84	31	12	6	13,248	
부산해상관광(주)	184	중앙동	해운대	26	누계	1,043	365	268	133	112,956	
대모크라시1	294	02000	01300		당월	186	31	20	2	48,804	
(주)상해건해운	294	부산	장승포	44	누계	2,188	365	303	36	554,190	
대모크라시1	02000	81200	81200		당월						
(주)상해건해운	228	02000	01300		당월	62	31	3	1	18,054	
뉴아카디아	306	부산	장승포	44	누계	722	343	89	26	193,690	
(주)서경	228	02000	81200		당월	124	31	11	2	34,578	
뉴아카디아	306	부산	죽포	44	누계	1,474	365	191	30	329,560	
코지아얼핀드	4,388	02000	90000		당월	26	26	0	0	17,628	

3) 월별 전국지부별 수송실적 조회

HSBS330P-여객선 수송 실적

기간 2005년 01월 ~ 2005년 12월 항로구분 합계

지방청	거리	운항선박 수	신박		구분	취항계획		결항		능력	합계
			박	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정원	편도		편도	(일)	편도	(일)		
합계	10,659	150	78,599	당월	22,238	4,194	2,986	539	3,331,482	687,626	
부산지부	138,631	173	36,895	누계	287,804	50,617	31,841	4,993	44,709,988	11,573,685	
	1,075	11	15,439	당월	1,376	362	302	58	296,422	73,614	
	12,784	12	3,700	누계	16,462	4,277	3,310	774	3,273,669	906,076	
인천지부	2,689	21	11,975	당월	1,579	569	421	106	299,640	52,164	
	26,328	23	7,492	누계	20,090	6,435	2,441	777	4,933,603	1,189,025	
목포지부	2,739	36	20,629	당월	4,646	966	462	109	730,700	170,319	
	35,229	48	7,480	누계	50,537	11,873	3,947	835	10,190,433	2,944,221	
여수지부	1,910	16	6,170	당월	1,905	416	117	45	307,376	63,710	
	12,011	20	4,120	누계	19,667	4,323	1,789	477	3,387,477	925,362	
제주지부	408	4	9,797	당월	351	130	73	24	66,725	15,689	
	4,376	5	1,871	누계	4,410	1,520	698	217	755,411	285,437	
마산지부	92	5	1,854	당월	1,469	155	136	15	287,040	89,320	
	1,283	5	1,022	누계	19,101	1,825	610	78	3,921,905	1,118,061	
군산지부	320	9	1,493	당월	792	225	199	51	141,138	11,877	
	4,039	15	1,675	누계	13,549	2,971	2,280	334	2,302,750	438,806	
완도지부	974	26	4,902	당월	6,898	751	1,100	69	660,943	101,259	
	10,748	30	3,793	누계	90,253	9,555	14,965	925	8,372,009	1,597,740	
통영지부	468	14	1,694	당월	2,250	343	46	6	341,198	71,901	
	16,237	15	2,072	누계	29,405	4,150	993	132	4,525,655	1,132,606	
포항지부	434	2	3,315	당월	91	61	44	36	42,945	14,390	
	7,523	4	1,545	누계	1,343	756	380	217	702,794	357,210	

라. 내항여객수송실적보고 및 작성공표

1) 내항여객선수송실적 보고 해운조합 : 업무담당자

항로		운항선박		구분	취항계획		결항		능력	여객선수송실적(명)					
지방청	거리(km)	운항척수	총톤수 정원		회수 (편도)	일수 (일)	회수 (편도)	일수 (일)		수송계			입항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당월											
				누계											
부산지부				당월											
				누계											
인천지부				당월											
				누계											
목포지부				당월											
				누계											
여수지부				당월											
				누계											
제주지부				당월											
				누계											
마산지부				당월											
				누계											

2) 수송실적 분석표 : 해운조합 업무담당자

[월별 내항여객선 수송실적 분석]

○ 수송현황

구 분		수송실적						차량수송(대)		운임수입(천원)					
		2006 (A)	2007			대비				2005 (A)	2006			대비	
			계(B)	입항 (C)	출항 (D)	B/A	D/C	계(B)	입항 (C)		출항 (D)	B/A	C/D		
합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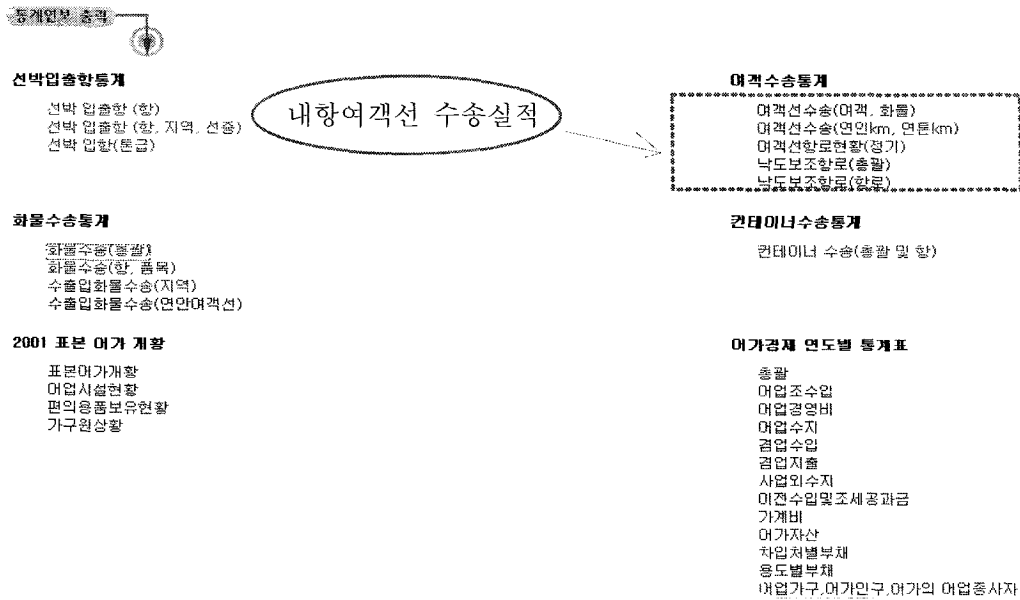
○ 실적분석

- 수송실적(운임수입)
- 실적증감 사유

3) 내항여객선수송실적 SP-IDC 에 로드 : 본부통계 담당

여객선수송(여객, 화물)											
		조회년월: 2005		조회		2005년도 12월 까지					
구분	합계		외항선						연안선		
	여객	화물(톤)	계		아국선		외국선		여객	화물(톤)	
화물처리실적	1996	3,935,979	3,834,452	522,565	1,630,460	141,643	461,293	331,336	1,269,167	9,412,993	2,144,002
컨테이너처리실적	1997	10,462,895	4,216,649	563,323	1,744,591	149,613	484,650	414,216	1,253,941	9,899,066	2,472,063
선박입출항실적	1998	3,614,790	3,769,160	537,758	1,759,340	175,355	389,572	382,362	1,369,766	8,273,052	2,649,620
항만시설정보	1999	9,856,666	4,445,988	804,870	2,175,559	263,594	439,153	541,276	1,736,416	9,351,996	2,269,414
해상안전정보	2000	10,700,674	4,909,396	999,163	2,451,845	366,562	480,654	606,601	1,971,191	9,701,511	2,477,491
세입정보	2001	10,414,914	5,146,636	1,074,891	2,293,235	374,420	411,328	700,471	1,385,907	9,339,923	2,647,301
선진통계정보	2002	10,712,711	5,943,912	1,252,967	2,715,505	536,063	674,693	716,764	2,040,612	9,455,844	3,228,407
선박통계정보	2003	11,715,117	6,710,708	1,379,529	3,126,561	572,117	952,136	707,412	2,194,425	10,305,586	3,594,147
여객선정보	2004	12,476,424	7,799,692	1,822,200	4,167,756	690,179	1,567,517	1,132,021	2,540,239	10,649,224	3,690,336
-여객선항로현황(항로)	2005	13,204,493	8,826,771	2,104,939	4,908,033	731,120	1,764,099	1,373,819	3,121,334	11,039,554	3,920,673
-여객선수송(여객, 화물)	01	825,577	590,512	189,219	362,659	63,320	126,957	125,399	235,701	636,356	227,654
-여객선수송(연안선, 선통)	02	799,623	567,231	132,086	314,051	44,086	111,477	88,600	202,574	667,535	247,130
-여객선수송(외항선, 선통)	03	824,352	710,272	163,225	446,352	55,736	164,911	107,489	281,481	661,127	263,890

4) 내항여객선수송실적 통계년보 작성 : 본부통계 담당



V. 관련 용어 및 법규

1. 관련 용어

낙도보조항로(落島補助航路)

- 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적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여객운송사업이 불가능한 낙도에 여객선의 취항을 명령하고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결손보상금을 지급하는 항로

기항지(寄港地, Port of call)

- 항해중인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및 양하·급유 등을 위해 들르는 항(港)

부선(艇船, Barge-boat)

- 기관(engin) 또는 돛 등의 장치를 갖추지 않아 자체추진력 즉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외항화물

-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

내항선(연안선)

-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

내항화물(연안화물)

- 내항선(연안화물)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

□ 선박톤수

- 총톤수(G/T) : 선박의 총 용적을 톤으로 표시
- 순톤수(N/T) :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 또는 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의 용적을 톤으로 표시
- 재화중량톤수(DWT) : 선박에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중량톤수

□ 화물톤수

- M/T(Metric Ton) :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 1M/T는 1000kg
- R/T(Revenue Ton) : 화물의 운임 등에 적용되는 톤수

□ 1해리

- 1노트 = 1시간 1,852 km

□ 톤키로(Ton - Km)

- 화물수송톤수 × 수송거리

□ 인키로(Passenger - Km)

- 여객수송인원 × 수송거리

□ 선복

-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한 개념

□ 순찰선

- 항만내 질서유지를 위한 항만순찰 및 입·출항 선박의 위반행위 등을 단속·계도하는 선박

□ 안벽

- 선박이 직접계류하여 하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물로서 수심이 약 (-) 5.0m이상이며, 1,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 연안화물의 기타항

- 입항 : 도착지는 무역항이나 최초출항지가 무역항 (28개항)아닌 경우(KRZZZ 표기)
- 출항 : 출발지는 무역항이나 최종목적지가 무역항 (28개항)아닌 경우(KRZZZ 표기)

□ 적하(積荷)

- 해상운송의 개개인 유체물(고체,액체,기체 등 형체를 가진물질)을 의미하며 운송의 객체는 도착지에 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만이며 단지 선박 안에 존재하는 물건 예를 들면 선박의 바닥, 짐, 연료, 양식, 선박서류 선원의 휴대품 등 도착지까지의 운송이 목적이 아닌 물건은 적하가 아님

□ 양하(揚荷)

- 선박에 실린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함. 엄격한 의미에서 단순히 화물을 선박에서 육상으로 내려놓는 양륙과는 다른 개념

□ 선종 구분

구 분	내 용
일 반 선	- 운항속력이 15노트 미만인 여객선
고 속 선	- 운항속력이 15노트 이상 20노트 미만인 여객선
쾌 속 선	- 운항속력이 20노트 이상 35노트 미만인 여객선
초쾌속선	- 운항속력이 35노트 이상인 여객선
차 도 선	-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차량의 적양화와 여객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램프를 거쳐 이루어지는 여객선
카 웨 리	- 차량 탑재구역이 폐위된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2.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

1994. 12. 30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4-	83호
1995. 8. 2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5-	52호
1996. 8. 7	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	35호
1997. 1. 2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	8호
1997. 9.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	84호
1997. 10. 6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7-	72호
1998. 2. 2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	13호
1998. 5. 11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	31호
1998. 8. 1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	53호
1998. 12. 3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	97호
1999. 5. 20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	39호
1999. 10. 25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	85호
1999. 12. 23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9-	103호
2000. 2. 1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	6호
2001. 2. 9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	6호
2002. 2. 2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	20호
2002. 9. 2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	69호
2004. 6. 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	33호
2006. 1. 1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	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 사업의 면허와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등록 및 선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99. 10. 25개정)

제2장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제3조(사업의 구분) ①내항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사업"이라 한다)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면허한다.

1. 정기여객사업은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운항의 정시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항로별로 면허한다.(’99. 10. 25개정)
2. 부정기여객사업은 수송수요의 성질상 도서민의 교통편의와 관련이 적고 운항의 정시성 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항로 또는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면허한다(’99. 10. 25개정)(’02. 2. 26개정)

②삭제(’99. 5. 20)

③제1항에서 "항로"라 함은 기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선박의 항행구간을 말한다.

④부정기여객사업은 수개항로를 함께 면허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또는 등록 관청) ①정기여객사업의 면허는 항로의 기점 및 종점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되 기점과 종점의 관할지방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한다.(‘99. 5. 20 개정)

②부정기여객사업의 면허는 주된 정박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행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이하 "화물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방청장이 행한다. (‘99. 5. 20 개정)(‘99. 10. 25개정)

제5조(면허 또는 등록의 심사) ①지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사업의 신청 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사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결정사유 해당여부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②지방청장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이외에 등록신청 선박이 제8조의 등록기준 대상선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선박검사증서를 다른 지방청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99. 10. 25신설)

제6조(여객사업의 수송수요판단)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사업의 수송수요가 적합한 것으로 보며 부정기 여객사업의 경우에는 수송수요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1. 면허신청항로에 기취항하고 있는 전체여객선(취항실적이 있는 예비선등도 포함한다. 이하 "기존선"이라 한다)의 면허신청 최근 1년간(면허신청일 전월부터 최근 1년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탑재수입률이 면허신청선박을 포함하고도 3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02. 2. 26개정)
2. 면허신청항로에 기취항하고 있는 선박은 없으나 사실상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있는 때에는 인근 타 경쟁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전체여객선의 평균탑재수입율이 면허신청선박을 포함하고도 35%이상을 유지하는 경우(‘02. 2. 26개정)
3. 면허신청선박에 경쟁(제2호에 의한 사실상의 경쟁을 포함한다)되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사업개시 5년이내에 면허신청선박의 규모에 적합한 수송수요의 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항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5. 면허신청선박이 기존선보다 현대화된 선박으로서 여객의 편의를 상당히 제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02. 2. 26개정)
6. 독점(사실상의 독점을 포함한다)항로에 있어서 적정운임의 유지와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면허신청선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선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이 차도선형 여객선의 면허를 신청한 경우로서 지방청장이 도서지역 물류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9. 10. 25 개정)('99. 12. 23 개정)

8. 관광항로(최근 1년간 수송인원이 10만명 이상으로 그중 도서민이 아닌 여객의 비중이 75% 이상인 항로)에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신규선박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02. 2. 26 신설)

9. 면허신청 항로에 기 취항하고 있는 선박이 휴항하고 있거나 해양사고 등으로 운항하지 못하여 도서민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02. 2. 26 신설)

②제1항에서의 평균탑재수입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99. 12. 23개정)('02. 2. 26 개정)

평균탑재수입율=

1. P : 면허신청항로의 최근 1년간 총여객수입

2. f1 : 현재 운항선박의 평균여객운임율(선박이 2척 이상인 때에는 선박별로 계산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f1= 최근 1년간 총여객수송수입(P) ÷ 최근 1년간 총여객수송실적

3. N1 : 현재 운항선박이 최근 1년간 실제 제공한 여객수송능력

* 현재 운항선박의 운항실적이 1년 미만일 때는 1년간 실적을 추정하여 산출한다.

4. f2 : 면허신청선박의 예상여객운임율(사업계획서상의 운임율을 말하며 현재 운항선박 중 유사선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선박의 최근 1년간 평균운임율을 적용한다)

5. N2 : 면허신청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수송능력(현재 운항선박 중 유사선형이 있는 경우에는 운항계획상의 수송능력과 실제제공능력간의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면허신청선박의 운항계획상 수송능력에 적용하며, 유사선형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운항선박 전체의 운항계획상의 수송능력과 실제제공 수송능력간의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면허신청 선박의 운항 계획상 수송능력에 적용한다.

* N2=

③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 운항하여야 한다.

1. 여객정원은 선박안전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및 선박검사기술협회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승인된 차량적재도상의 화물자동차 5톤기준 최대적재대수×3인과 기타의 자 2인을 합한 인원으로 하되, 설날 및 추석절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차량적재도상의 화물자동차 1톤기준 최대적재대수×3인으로 한다.('01. 2.19, '02. 9. 2 개정)

2.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여객은 운전기사과 화주에 한하며,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운전기사 1인으로 하되 특별수송기간중에는 당해 차량의 탑승여객의 정원으로 한다.

다만, 전체 탑승 여객의 수는 제1호의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01. 2. 19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이상의 사업체가 동일항로를 운항하더라도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독점항로로 본다(’02. 2. 26 신설)

1. 사업체간 지배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상호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상호출자 및 실질적 지배관계 등)
2.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최근 1년간 수송실적)이 75%이상인 경우

제7조(화물사업의 수송수요판단) (’99. 10. 25 삭제)

제8조(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상선박) ①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여객사업의 면허기준(이하 "여객면허기준"이라 한다)상의 여객선보유량 및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화물사업의 등록기준(이하 "화물등록기준"이라 한다)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선박(운항가능한 선박에 한하며,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한다.(’99. 10. 25개정)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하며, 민사소송법에 의해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입면장을 발부받은 선박에 한한다)
2.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 대여회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4. 1년이상의 기간(옵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용대선의 기간산정에 있어 같다)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여객사업중 당해항로 운항선박의 고장수리 및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수검으로 인한 운항중단시 대체투입과 특별수송기간중 폭주여객의 수송을 위한 운항시에는 당해기간으로 한다)
5. 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6.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선박(여객사업에 한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금융업의 장비로 등록된 선박으로서 선박금융을 목적으로 해상수송을 하고자 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국적선박중 용선선박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은 이를 등록기준 대상 선박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별지 1호 서식 선박운항명세서의 비고란에 동 선박이 선박금융업 장비등록 선박임을 표기 하여야 한다.(’02. 2. 26 개정)

③(’99. 10. 25삭제)

④(’99. 10. 25삭제)

제9조(등록기준의 적용) ①예부선의 화물사업 등록기준상의 선박보유량 적용은 예선과

결합되는 부선의 총톤수로 한다.

②('99. 10. 25삭제)

③('99. 10. 25삭제)

④('99. 10. 25삭제)

제10조(면허 또는 등록기준의 완화) ①규칙 제5조 별표1의 여객면허기준상의 "비고"규정에 의한 선박보유량의 완화적용은 지방청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행한다.('99. 10. 25개정)

②규칙 제19조 별표2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상의 비고1의 규정에 의한 석유화학류 운송용 선박보유량은 지방청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99. 10. 25개정)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9. 10. 25개정)

④지방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기준을 완화 적용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99. 10. 25개정)

1. 대상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범위(구간)
2. 면허 또는 등록기준 완화적용의 내용·기간·조건 등('99. 10. 25개정)

제11조(예부선의 면허제한) 삭제('98. 8. 10)

제12조(면허의 협의) ①항로의 기점, 종점 또는 기항지가 서로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여객사업의 면허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관련 지방청장과 항만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운항여건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01. 2. 19개정)

②지방청장은 해군기지법 제6조제5호(해군기지 구역안에서의 해운의 영위)및 접적해역 취항선에 대한 여객사업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해역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남북한간의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그 면허 또는 등록 신청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1. 2. 19 신설)

제12조의 2(임시운항 승인) ('99. 10. 25 삭제)

제12조의 3(임시운항 절차) ('99. 10. 25 삭제)

제13조(조건부면허) ①지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선박,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 관련 시설 등을 갖추것을 조건으로 면허(이하 "조건부 면허"라 한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10. 25개정)

1. 장차 확보할 시설내용

2. 장차 확보할 시설의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

3. 확보시설의 확인방법

②제1항제2호에 의한 선박 및 선박계류시설의 확보기한은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당해 기간내의 구체적인 추진실적(선박건조계약 또는 매매계약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최소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01. 2. 19개정)

③삭제

제14조(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지방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면허 또는 등록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99. 10. 25 개정)

제15조(면허 또는 등록의 조건) ①지방청장은 여객사업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하며,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99. 10. 25 개정)

1.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선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선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여객선 종합터미날이 건립된 항에서는 당해 터미날을 이용하여야 하며, 해운조합 또는 운영주체가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운영, 개찰 및 질서유지 업무등에 응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터미날이용료)을 부담하여야 한다.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미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여객선 승선권에 여객의 인적사항 기재여부를 승선 전에 반드시 확인한후 회수하여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99. 10. 25 신설)

②지방청장은 화물사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하며,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99. 10. 25 개정)

1. 여객(12인이내의 여객을 수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조합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화학류를 운송하지 않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과 부선은 선박 보험가입을 제외한다 (’99. 10. 25 개정)
2.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유류수송선에 대한 등록에 한한다)(’99. 10. 25 개정)
3. 예선 1척이 동시에 부선 2척이상을 예인하지 않아야 한다.(예부선에 대한 등록에 한한다)(’99. 10. 25 개정)

4. 등록선박의 수송화물 또는 수송목적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화물 또는 동 목적의 수송에 한정한다.(‘99. 10. 25 개정)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제1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지방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는 여객사업은 규칙 제4조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증을, 화물사업은 규칙 제18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99. 10. 25개정)

②여객사업의 경우 1개 항로만을 운항하는 업체로서 면허기준에 의한 총톤수가 척당 100톤 미만이나 2척이상으로 합계 총톤수가 100톤 이상일 경우에 그 중 실제 운항하지는 않으나 면허 기준에 포함된 여객선은 면허증의 "기타"란에 "예비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화물사업의 등록증 교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등록증과 함께 교부한다.(‘99. 10. 25 개정)(‘02. 2 26 개정)

④면허증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증상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전산화번호에 의하여 누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99. 10. 25 개정)

G1	G2	X	-	N1	N2	N3	N4	
----	----	---	---	----	----	----	----	--

1. G1, G2는 소속기관의 영문코드로 별표2와 같이 한다
2. "X"는 사업의 종류코드로 화물사업은 "K"로, 여객사업은 "P"로 표기한다
3. "N1~N4" 소속기관별로 0001번부터 누년 일련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 BSK - 0001, BSK - 0002 ...)

제16조의1(여객선 운항시간) 여객선의 운항시간은 일출전 30분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크기, 구조, 설비, 용도, 특별수송 또는 항로의 안전운항 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수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운항시간을 조정·시행할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사후관리

제17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지방청장은 여객사업자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제18조(면허 또는 등록기준의 보완) ①지방청장은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유와 보완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게 할수 있다. (‘99. 10. 25 개정)

②지방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면허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21조(법 제3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면허 또는 등록기준의 보완 기간을 다시 줄 수 있다.(‘99. 10. 25 개정)

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법 제12조 제1항(법 제3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규칙 제10조(규칙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선박운항 전에,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1.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용선 및 대선을 포함한다. 다만,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 10. 25 개정, 2000. 2. 19 개정)
2. 기항지 및 기점·종점의 변경 등 항로의 단축 또는 연장 (여객사업자에 한한다) (‘99. 10. 25 개정)
3. 총톤수, 여객정원, 운항횟수, 운항시간의 변경 (여객사업자에 한한다)(‘99. 10. 25 개정)
4. 선박의 일시 운항중단, 재취항 및 예비선박의 투입(여객사업자에 한한다) (‘99. 10. 25 개정)
5.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화물사업자에 한한다)(‘99. 10. 25 개정)
6. 외항선박의 일시적인 국내항간의 운항(‘99. 10. 25 개정)
7.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
8. (‘99. 10. 25. 삭제)
9. (‘99. 10. 25 삭제)

②지방청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여객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수리시에는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와 여객편의 제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며, 항로의 단축 또는 연장인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99. 10. 25 신설)

③지방청장은 선박 주요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로 인한 휴항후 재취항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임시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예비선의 임시 취항시에는 동 예비선이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비하여 조합의 공제 또는 시중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선은 면허기준 선박이므로 여객에 대한 공제(보험)는 운항시에 가입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⑤지방청장은 여객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로 인해 기존 면허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도의 면허 재교부 신청없이 면허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⑥지방청장은 화물사업자가 법 제33조 제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절차 없이 변경사실 확인후 등록증 재교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외국적 선박이나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제19조의2(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내항운항을위한 사업계획변경신고) ①규칙 제18조의2제4항의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라 함은 “대상선박이 내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에 입항한 날부터 출항한 날까지의 연간 누적일수”를 말한다.(‘99. 10. 25 개정)(2004.6.7 개정)

②규칙 제1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99.10.25.개정, 2000.2.19개정)(2004.6.7 개정)

③선박별 연간 누적 사업계획변경 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질서의 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수 있다.(2004.6.7 개정)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99. 10. 25 삭제)

제21조(조건부인가) (‘99. 10. 25 삭제)

제22조(사업구역의 변경인가) ①삭제(2000. 2. 19)

②삭제 (2000. 2. 19)

③삭제 (2000. 2. 19)

④삭제 (2000. 2. 19)

제23조(선박취항명령)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사업자에게 선박의 취항·항로의 연장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는 도서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필수품의 수송 또는 기타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기존 운항선박이 여객등의 감소로 인하여 운항을 계속할 수 없는 때
3. 특별재해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선박취항이 특별히 필요한 때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선박취항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인 여객사업자공공단체 또는 주민단체에 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선박취항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취항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항할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취항구간
3. 취항선박 및 취항회수
4. 취항기간(취항기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지방청장은 취항명령을 받은 선박이 영 제5조의2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5조의2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철회하여야 한다.(‘99.10.25 개정)

⑤지방청장이 제1항의 취항명령을 하거나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의 증액이 수반되는 취항 명령사항의 변경 명령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취항명령시 검토사항) 지방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항명령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취항명령대상 선박은 당해항로의 수송수요 및 항로특성에 따른 안전운항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선박인지 여부.
2. 선박의 취항이 도서간 또는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일 것. 다만, 수개 도서의 기항지를 경유하여 육지와 육지간을 연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선박취항명령을 받지 않은 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와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항로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의2(보조항로 예비선운항) (‘98. 10. 1 삭제)

제25조(사업의 승계) ①(2000. 2. 19 삭제)

②(2000. 2. 19 삭제)

③(‘99. 10. 25 삭제)

④(‘99. 10. 25 삭제)

⑤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항명령을 받은 항로에서의 사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인이 새로이 선박취항명령을 받아야 종전의 선박취항명령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6조(사업의 휴업) ①지방청장은 법 제20조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사업의 휴업신고가 있는 때에는 운항수지악화등 신청사유의 타당성과 해상교통수단의 유지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②지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항명령을 받은 선박의 휴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도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99. 10. 25 개정)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사업의 휴업기간은 재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99. 10. 25 개정)

④지방청장은 신고된 휴업기간이 연간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을 명하여야 한다.(‘99.10. 25 개정)

제27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등) ①지방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변경신고가 있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재교부 신청절차 없이 면허증 또는 등록증과 운항선박명세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02. 2. 26 개정)

②(‘99. 10. 25 삭제)

③(‘99. 10. 25 삭제)

④(‘99. 10. 25 삭제)

제28조(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제3장의2 화물사업의 등록

제28조의2(사업의 등록) (‘99. 10. 25 삭제)

제28조의3(준용규정) (‘99. 10. 25 삭제)

제3장의3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제28조의4(적용범위) 이장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한다.(‘99. 10. 25 개정)

제28조의5(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조조정"이란 사업자간에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이하 "등록선박"이라 한다)을 운영선사 설립운영 또는 선사의 인수·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경영개선에 참여 하는 것을 말한다.(‘99. 5. 20 개정)(‘99. 10. 25 개정)
2. 삭제(‘99. 5. 20)
3. "운영선사(Operating Company)"란 주력선사가 제휴선사의 등록선박을 용선하여 자기 소유 선박과 함께 운영하는 선사를 말한다.(‘99. 10. 25 개정)
4. "인수·합병"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내항화물 운송사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력선사"란 운영선사 설립시 선박운항의 책임을 지는 선사를 말한다.(‘99. 5. 20 개정)
6. "제휴선사"란 운영선사 설립시 주력선사에게 선박운항을 위임한 선사를 말한다(‘99. 5. 20 개정)

제28조의6(구조조정 기준) ①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사업자 이상이 등록선박 5척이상 또는 등록선박 3척, 선박의 총톤수 합계 3,000톤 이상으로 운영선사를 설립하여 운영('99. 10. 25 개정)

2. 삭제 ('99. 5. 20)

3. 업체 상호간 협의에 의한 선사의 인수·합병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선사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선박 전체를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선박 전체를 각기 다른 선사와 운영선사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99. 5. 20 개정) ('99. 10. 25 개정)

③선사의 인수·합병시에는 피인수·합병기업의 등록선박 전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구조조정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99. 10. 25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이한 선종(유조선, 일반화물선, 폐기물운반선등)을 보유한 선사는 선종별로 구분하여 일부 선종만으로도 운영선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운영선사에 참여한 선박만이 구조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99. 5. 20 개정)

제28조의7(신고) ①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주력선사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1. 삭제('99. 5. 20)

2. 운영선사 사업자

가. 용선계약서

3. 인수사업자

가. 시설, 설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인수사업자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인수후의 사업계획서

4. 합병사업자

가. 합병계약서

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다.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원 총회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서류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사업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조정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의8(신고서의 보완) ①지방청장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신고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의9(신고필증의 교부) ①지방청장은 제2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 이라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운영선사 설립시에는 주력선사에게, 인수·합병한 경우에는 인수·합병한 회사에 교부한다.(‘99. 5. 20 개정)

③지방청장은 제28조의6 제4항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참여선박에 대하여서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10(신고필증의 유효기간) ①제2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은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선사를 인수 또는 합병한 경우에는 피인수 또는 피합병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운항하는 기간동안으로 하며, 이 경우 신고필증은 1년 단위로 교부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②사업자가 계속하여 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필증 유효기간 만료 20일전에 제28조의7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의7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선사를 인수·합병한후 피인수 또는 피합병 선사의 선박이 침몰, 해외매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된 경우에는 피대체선박이 운항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28조의11(변경신고 등) ①사업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후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변경 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구조조정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선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로 갈음한다.

②지방청장은 사업자의 구조조정 참여 선박중 일부가 해난사고, 폐선, 해외매각으로 제28조의6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준확보를 위하여 해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99. 10. 25 개정)

③사업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제28조의10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제28조의6의 구조조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지방청장에게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조정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제28조의6의 구조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필증 재교부시의 유효기간은 신고필증 재교부 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8조의12(정부지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부지원을 할수 있다.

1. 구조조정 참여선박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감면
2. 외국인 선원(산업연수생) 우선지원
3. ('99. 10. 25 삭제)
4. 선박 확보자금 우선 지원
5.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필증을 첨부한 서면이나 구두로 관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13(등록의 유효) ①삭제('99. 5. 20)

②운영선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0조 및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사업계획변경 신고 접수시 주력 선사의 등록증에 제휴선사의 선박등을 등재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③선사의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인수·합병한 기업의 등록증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선박을 등재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④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시 제휴선사의 등록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휴선사가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주력선사와 제휴선사간에 설립한 운영선사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 심사없이 제휴선사에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제28조의14(사후관리 및 심사) ①지방청장은 구조조정 참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신고필증 교부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 필증 교부현황을 관계기관 (관련 지방청, 해운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해운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조정 참여 사업자가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제28조의7의 신고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사업자가 본 요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이후부터 제2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사업자가 제28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조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날 이후의 사용료 감면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조조정 신고 필증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9조(외국적선 용선제한) ①화물사업자는 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을 용선하여 국내항만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1. 원유선

2.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이 없는 케미칼선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법 제33조제1항, 규칙 제28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1.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여객의 특성상 내항 국적선(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송하는 것이 부적합한 때

2.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는 때

3. 선박의 수급불균형으로 적기수송이 곤란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의 국내운항 구간, 운항기간, 운송화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신고자와 관련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④화물사업자는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적 선박의 용선운항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고시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1. 용선계약서

2.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예상수지, 용선필요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국적증서 사본

4. 용선선박의 제3자 피해배상 보험 가입증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신고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항선박의 운송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2000. 2. 19 신설)

제30조(노후선등 대체) ('99. 10. 25 삭제)

제31조(사업의 검사등) 지방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련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02. 2. 26 개정)

1. 사업의 휴업·폐업 등 등록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화물사업에 한한다.)
2.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지방청장이 해상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사업의 보고) ① 여객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매월말 현재로 익월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전산자료화하여 익월 20일까지 지방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여객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영수지조사표를 매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부속서류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와 함께 익년도 3월말까지 지방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사본 각1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한국해운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해운조합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익년도 5월말 까지 관할 지방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하는 자료를 매년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청장의 보고사항등) 지방청장은 여객사업 및 화물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화물사업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관하여는 매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 10. 25 개정).

1.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
2.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3.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수리(여객운송 사업의 경우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제외한다)
4. 선박의 취항명령, 취항변경 명령 및 취항명령의 철회
5. 여객사업의 휴업신고
6.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제34조(해양사고시 행정제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법 제3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해난사고 발생시의 행정처분은 별표의 "해양사고선박 처분기준"에 의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운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이행한 후 자체 및 외부관계관으로 구성된 해양사고 처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01. 2. 19개정)

③제2항의 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기준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전산처리 등) ①전산으로 개발된 화물사업 및 여객사업 업무는 관련업무 처리후 즉시 관련내용을 전산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전산자료의 현행화 및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수시로 관련 입력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전산으로 출력되는 모든 자료는 전산보안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1994. 12. 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95. 1. 1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요령시행과 동시에 "내항해운사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 91-42호)" 및 "내항해운사무처리요령중 개정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91-50호, 제93-49호, 제 94-35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제2항의 폐지되는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의 기준에 미달 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요령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기준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예부선의 면허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제11조제2항의 예부선의 면허제한은 이 요령 시행일 이후의 신규면허 발급에 적용한다.

⑥(선박취항명령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이 요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명령서를 이 요령에 따라 '95. 2.28까지 해당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1995. 8. 2>

①(시행일) 이 요령은 '95. 8.10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7>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정의 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37)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 3을 삭제한다.

부 칙<1997. 9. 30>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6>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 21>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요령 시행 이전에 이미 구조조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이요령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요령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요령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1998. 12. 31>

①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20>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3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관련조문(제28조의5

내지 제28조의7, 제28조의9, 제28조의13, 별지 제6호 내지 제8호서식)은 '9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0. 25>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안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제3장의3 (제28조의4 내지 제28조의11)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99. 12. 23>

이 요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9>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9>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6>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균탑재수입율에 관한 경과규정) 이 요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사업의 수송수요 판단시 면허신청선박을 포함한 평균탑재수입율은 2003. 12 31까지 40%로 한다.

부 칙<2002. 9.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7>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제19조의2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1.13>

①(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제19조의2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내항여객

면허

운 송 사 업 대 장

내항화물

등록

1. 면허(등록)일반현황

①면허(등록) 번 호		②면허(등록) 년 월 일	
③사업의 종류		④사업범위 (구 간)	
⑤상호(명칭)		⑥설립년월일	
⑦대표자		⑧주민등록번호	
⑨자본금		⑩항 로	
⑪본사소재지	(전화)		
⑫주요영업소 및소재지	(전화)		
⑬면허(등록) 조 건			

54020-25112(일)
'94. 12. 2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2. 운항선박명세

□ 여객선

① 선 명	② 선 종	③ G/T	④ 선 질	⑤적재능력		⑥속력(노트)		⑦기관		⑧ 선 장 (m)	⑨ 진 수 일	⑩ 취 항 년 월 일	⑪ 선 박 확 보 방 법	⑫ 취 항 도 서	⑬ 일 반 조 항 로 구 분
				여객 (명)	화물 (톤)	최대	항해	종류	마력						

□ 화물선

① 선명	② 선종 (용도)	③ G/T	④ DWT (TEU)	⑤ 기관 마력	⑥ 진수일	⑦ 운항 구역	⑧ 국적	⑨ 선주	⑩ 확보 방법	⑪ 취항일자 (등록일자)	⑫ 비고

3. 변동사항

①변동년월일	②변동사항	③변경전	④변경후	⑤참고사항 (변경사유등)	⑥기록자(인)

※선박감선 및 자본금·주소·대표자·상호·본사소재지·면허(등록)조건등 면허(등록)일
반현황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기재

4. 특기사항

①년월일	②특기사항	③비고

※ 권리관계 변동(상속, 합병, 양수도등), 과징금등 행정제재사항등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내항여객선 수송실적(년 월분)

(일반항로, 낙도보조항로)

제출일 : 년 월 일

선 사 :

항 로		운항선박		구 분	취항계획		결항		능 력	여객선수송실적(명)						
기점 코드	종점 코드	거리 (km)	선박번호 (척수)		총톤수	회수 (편도)	일수 (일)	회수 (편도)		일수 (일)	수송계			입 항		
기점명	종점명		선박명		정원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일반	도서민
합계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소계					당 월											
					누 계											

(별지 제4호 서식)

경 영 수 지 조 사 표

가. 선사개요

①선사명		②종사자	육상 : 명, 해상 : 명
------	--	------	----------------------------

나. 요약대차대조표

①계정과목	②당기	③전기	④전년대비(%)
I. 자산총계			
1. 유동자산			
2. 투자·기타자산			
3. 고정자산			
4. 이연자산			
II. 부채총계			
1. 유동부채			
2. 고정부채			
3. 이연부채			
III. 자본총계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54020-25313(일)
'94. 12. 2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다. 요약손익계산서

①계정과목	②당 기	③전 기	④전년대비(%)
I. 매출액 1. 여객운송수입 2. 화물운송수입 3. 선내영업수입 4. 기타수입 II. 매출원가 1. 선비 2. 선원비 3. 항비 4. 화물비 5. 선내영업비 6. 기타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일반관리비 1. 급여·상여금 2. 복리후생비 3. 제세공과금 4. 기타 V.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1. 수입이자 2. 기타 VII. 영업외비용 1. 지급이자 2. 기타 VIII. 경상이익 IX. 특별이익 1. 재해보상금 2. 고정자산처분이익 X. 특별손실 1. 재해손실 2. 고정자산처분손실 X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II 법인세등 XIII 당기순이익			

라. 선박별 운항수지

①과 목	②합계/척, G/T		③선명 : (G/T)		④선명 : (G/T)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I. 여객수입 -수송인원(명) -수입액						
II. 화물수입 -수송량(톤) -수입액						
III. 선내수입·기타						
A. 수입총계						
I. 선비합계						
1. 감각상각비						
2. 선용품비						
3. 선박수리비						
4. 선박보험료						
5. 선박재산세						
6. 기타						
II. 선원비합계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선박보험료						
III. 운항비합계						
1. 유류비						
2. 여객보험료						
3. 운항관리비						
4. 부두사용료						
5. 급수비						
6. 기타						
IV. 화물비						
V. 선내영업비·기타						
VI. 일반관리비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일반경비						
B. 비용총계						
C. 운항수지						

주) 1.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 특별손실등은 제외
2. 일반관리비는 수입금 기준으로 배분

[별지 제5호서식]

임 시 운 항 신 고 서

선 명	총 톤 수	최대탑재인원	선박내 통신기	사업소 비상연락망
		여객 : 명 선원 : 명 기타 : 명 계 : 명		전화 : 휴대전화 : 호출기 : FAX :
임시운항일		임시운항 항로		수송예상인원
19 ~				명
19 ~				
출항지 및 출항시간			도착지 및 도착 예정시간	
장 소	시 간		장 소	시 간
임시운항계획승인일자		임시운항계획 승인번호		기타 특이사항
19 ~				
19 ~				

신고일 : 19

신고자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 하

33915-02011보
(’97. 1. 9. 승인)

197mm×297mm
(일반용지 70g/㎡, 재용품)

별지 제6호 서식(제28조의7제1항 관련)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small>(<input type="checkbox"/> 운영선사, <input type="checkbox"/>인수·합병)</small>		처리기간
		15일
주력선사	①상호(명 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구 조 조 정 대상선박명	총 톤 수
제휴선사 또는 피인수·합병 기업(1)	⑥상호(명 칭)	
	⑦성명(대표자)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구 조 조 정 대상선박명	총 톤 수
제휴선사 또는 피인수·합병 기업(2)	⑪상호(명 칭)	
	⑫성명(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⑮구 조 조 정 대상선박명	총 톤 수
⑯용 선 기 간		
⑰신 고 내 용		
⑱변 경 내 용		
위와 같이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구조조정(운영선사 또는 인수·합병) 증빙서류	없음	

※보유선박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

33915-11911민
'98. 5. 8.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표)

해 양 사 고 선 박 처 분 기 준

사고유형	사 고 결 과	처 분 범 위			비 고
		연간1회	연간2회	연간3회	
1. 충돌사고	1)인명사고(사망)	정지2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1. 사고발생선박에 대하여 처분한다. 2. 사고유형이 중복되는 때에는 상위처분을 적용한다. 3. 기타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본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다.
	2)인명사고(중경상)	정지15일이내	정지3개월이내	"	
	3)선체전손	면허 또는 등록취소	-	-	
	4)선체반손이상	정지1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5)선체일부손	정지10일	정지3개월	"	
2. 화재사고	1)인명사고(사망)	정지2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	4. 종선사고처분의 경우에는 주선박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5. 연간횟수는 사고일전 1년의 기간을 적용한다.
	2)인명사고(중경상)	정지15일이내	정지3개월이내	"	
	3)선체전손	면허 또는 등록취소	-	-	
	4)선체반손이내	정지1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5)선체일부손	정지10일이내	정지3개월이내	"	
3. 승양 또는 좌초	1)인명사고(사망)	정지2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	6. 항로의 두절등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으로 본기준을 적용키 어려울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처분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인명사고(중경상)	정지15일이내	정지3개월이내	"	
	3)선체전손	면허 또는 등록취소	-	-	
	4)선체반손이내	정지1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5)선체일부손	정지10일이내	정지3개월이내	"	

사고유형	사 고 결 과	처 분 범 위			비 고
		연간1회	연간2회	연간3회	
4. 침몰사고	1)인명사고(사망)	정지2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2)인명사고(중경상)	정지15일이내	정지1개월이내	"	
	3)선체전손	면허 또는 등록취소	-	-	
	4)선체반손이상	정지15일이내	정지2개월이내	면허 또는 등록취소	
	5)선체일부손	경고	정지1개월이내	"	
5. 종선침몰 사고 또는 인명사고	1)인명사고(사망)	정지2개월이내	정지6개월이내	"	
	2)인명사고(중경상)	정지2개월이내	정지3개월이내	"	
	3)선체전손	정지2개월이내	정지3개월이내	"	
	4)선체반손이내	정지15일이내	정지2개월이내	"	
	5)선체일부손	경고	정지1개월이내	"	

※ 한국해운조합 안내

본 부

157-033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660-10 (대표전화 : 6096 - 2000, 2114)

* 경영지원본부 : 6096-2020~5, 2031~5 (FAX : 6096-2029, 2049)

* 관 리 본 부 : 6096-2050~1, 2052~8 (FAX : 6096-2059, 2079)

* 사 업 본 부 : 6096-2090~7, 2101~3 (FAX : 6096-2059, 2079)

* 안전지원본부 : 6096-2140~5, 2152~4 (FAX : 6096-2149)

* 비상계획담당 : 6996-2081~2 (FAX : 6096-2059)

※ 연안여객선 운항 정보(ARS) : 1544-1114

지부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부
600-01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16
TEL : (051)660-0200 / FAX : 660-0229,0239 | ○ 완도지부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향동리 1255
TEL : (061)554-4207 / FAX : 552-4207 |
| ○ 인천지부
400-037 인천시 중구 향동7가 88
TEL : (032)880-7510 / FAX : 880-7519 | ○ 통영지부
650-060 경남 통영시 서호동 316번지
TEL : (055)645-2457 / FAX : 644-5057 |
| ○ 목포지부
530-140 전남 목포시 향동2가 4
TEL : (061)240-6011~3 / FAX : 240-6041 | ○ 울산지부
680-060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174번지
TEL : (055)261-8516 / FAX : 261-8292 |
| ○ 여수지부
550-110 전남 여수시 교동 682
TEL : (061)666-0010 / FAX : 663-1151 | ○ 포항지부
791-180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58-54
TEL : (054)245-1813 / FAX : 245-1888 |
| ○ 제주지부
690-050 제주시 건입동 918-30
TEL : (064)720-8500 / FAX : 720-8510 | ○ 거제출장소
657-040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687
TEL : (055)681-7334 / FAX : 681-4743 |
| ○ 마산지부
630-41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포동2가 6
TEL : (055)244-5276~7 / FAX : 245-6542 | ○ 동해출장소
240-01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54
TEL : (033)533-2904 / FAX : 533-2903 |
| ○ 군산지부
573-882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68
TEL : (063)472-2700 / FAX : 472-2710 | ○ 보령출장소
355-150 충남 보령시 신희동 2241
TEL : (041)930-5000 / FAX : 930-5005 |

여 백

등록선박통계

여 백

목 차

I. 개 요	61
1. 작성 목적	61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61
3. 작성 연혁	61
4. 작성 대상 및 내역	61
5. 작성 방법 및 체계	62
6. 결과 공표	62
7. 관련 법령	62
II. 업무흐름도	63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63
2. 업무담당자별 처리사항	64
III. 통 계 표	66
1. 선박종류별 통계표	66
2. 선박톤급별 통계표	68
3. 선박선령별 통계표	70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71
1. 개요	71
2. 선박 등록·변경·말소 신청	72
3. 업무 처리 절차	75
V. 관련 용어 및 법규	82
1. 관련 용어	82
2. 선박법시행규칙	85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등록된 선박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선박수급계획과 해운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11호

3. 작성 연혁

- 1975. 7.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모든 선박
- 내 용
 - 지방청별 :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등 선박종류별 선질별 현황
 - 톤 급 별 : 선박종류별, 톤급별, 선질별 등 현황
 - 선 령 별 : 톤급별, 선령별 선박현황
- 작성 주기 : 매월
- 작성 기간 : 작성대상월 익월 15일까지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박원부(선적증서원부)상의
기재사항을 집계
- 체 계
민원인 → 지방청(선원선박과, 선원해사과)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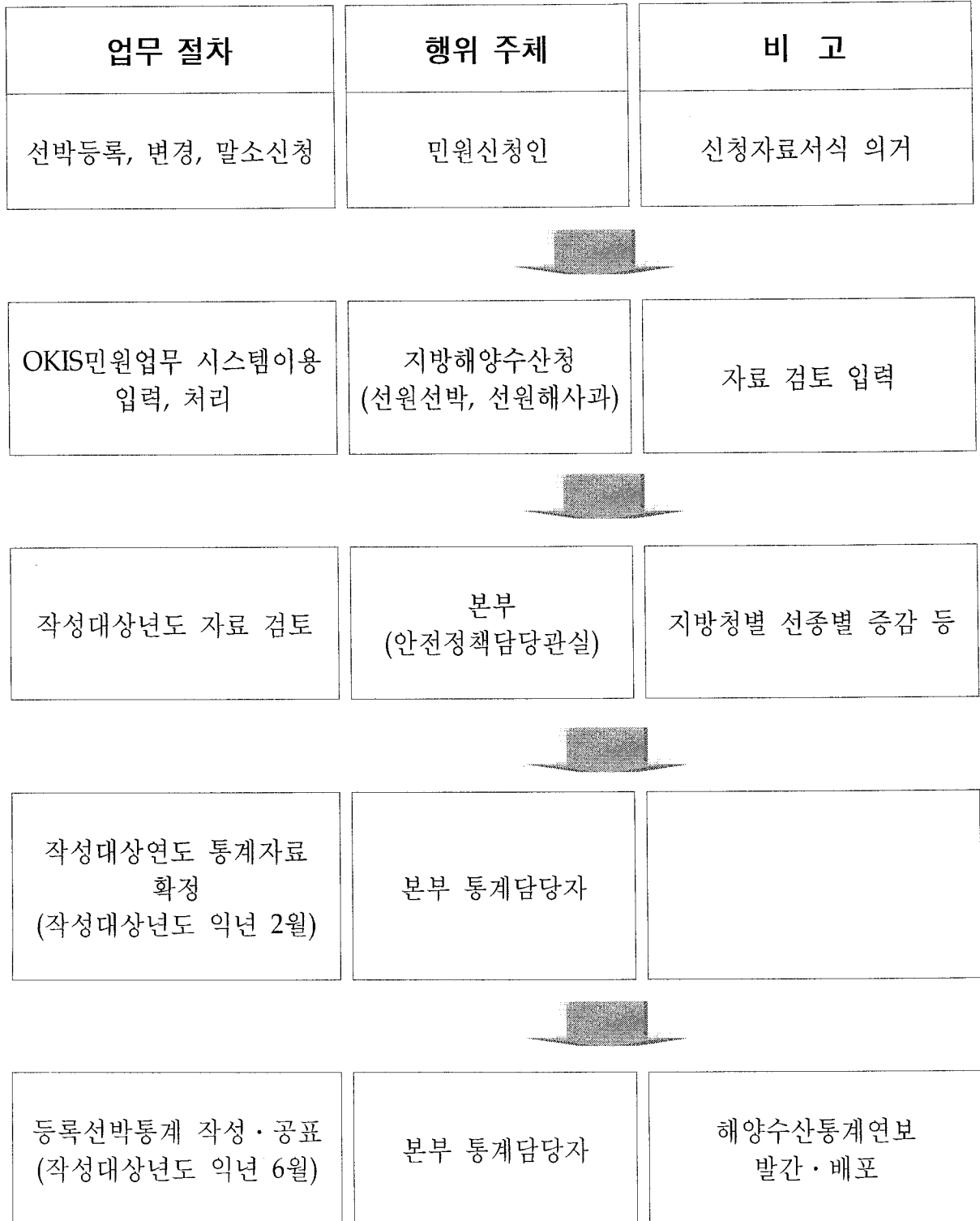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6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7. 관련 법령

- 선박등록 (선박법8조, 시행규칙10조)
- 선박등록사항변경 (선박법18조, 시행규칙21조)
- 선박말소등록 (선박법22조, 시행규칙23조)

II. 업무흐름도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 업무담당자별 처리사항

가. 선박등록 신청서

- 민원인 구비서류
 -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검사협회 또는 선급협회)
 - 선박등기부등본
- 지방청 담당자 등록사항
 - 선박번호
 -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 호출부호
 -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선적항 및 선질
 - 범선의 범장
 - 선박의 길이 및 너비
 - 선박의 깊이 및 총톤수
 -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기관의 종류와 수
 - 추진기의 종류와 수
 - 조선키 및 조선키자
 - 진수일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률

나. 등록사항 변경시

○ 민원인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Ⅲ. 통계표

1. 선박종류별 통계표

4. 등록선박(4-1)

Ship Registered

구분 Classification	총합 Grand Total													
	합계 Total		여객선 Passenger Ship		화물선 Cargo Ship		유조선 Tankers		예초선 Tug Boat		부선 Barge		기타선 Other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1996	5,110	6,992,248	184	80,494	783	6,050,594	826	608,428	1,067	73,022	0	0	2,451	160,110
1997	5,134	6,766,082	187	78,696	786	5,630,843	837	614,601	1,092	78,452	0	0	2,452	163,510
1998	4,908	6,242,968	175	85,230	792	4,418,927	828	545,431	1,073	78,979	0	0	2,328	188,401
1999	6,455	6,076,059	171	86,365	696	4,240,100	847	824,603	1,071	79,788	1,600	707,305	2,270	187,906
2000	6,494	6,182,793	168	88,327	711	4,277,901	874	839,951	1,091	88,733	1,589	728,653	2,261	142,228
2001	6,586	6,582,758	175	95,379	706	4,324,080	897	1,097,918	1,111	84,631	1,638	781,383	2,264	143,477
2002	6,792	7,637,549	190	124,513	725	5,214,636	729	1,137,804	1,148	86,382	1,731	903,648	2,271	168,786
2003	6,881	7,447,887	188	128,283	724	4,936,480	711	1,068,919	1,178	96,909	1,824	1,020,904	2,256	177,392
2004	6,995	8,612,691	200	132,648	758	6,120,798	820	363,336	1,211	102,612	1,887	1,328,785	2,282	189,501
2005	7,119	10,068,379	205	144,202	797	7,296,212	876	967,245	1,214	104,652	1,917	1,362,977	2,308	201,065
부산	2,488	1,065,687	15	8,115	132	554,904	377	168,187	808	36,387	908	645,717	633	78,577
인천	1,353	559,910	25	10,187	29	86,363	41	35,212	297	26,506	558	368,598	405	52,814
평택	74	17,498	2	8,135	0	0	3	109	16	2,221	7	6,008	48	1,021
동해	107	4,897	1	85	2	135	1	197	10	821	11	1,686	82	1,773
대산	208	17,548	11	1,284	9	349	0	0	28	2,749	29	5,487	141	4,899
공산	214	43,647	30	1,547	9	11,112	9	1,348	43	3,482	54	23,929	90	2,349
목포	494	115,906	53	33,655	112	27,204	18	614	60	3,787	83	36,781	140	14,325
여수	571	141,075	18	2,807	52	15,340	104	74,678	53	8,687	75	30,598	239	8,665
포항	192	102,855	8	12,974	20	23,561	7	1,386	41	5,902	40	67,669	76	1,783
마산	601	173,916	20	3,268	47	12,818	20	727	68	6,386	86	136,162	371	12,577
울산	273	188,525	0	0	9	6,539	29	28,846	64	8,013	43	109,432	129	17,638
제주	544	7,637,785	12	82,207	376	8,979,953	71	659,891	12	1,081	17	26,682	56	7,844

주: ① 관광선용 기함선에 포함.
 ② 99년도부터 부선이 포함되어 선년도 수치와 차이가 남
 자료: 안전관리국

Note: ① Official vessels is included in other vessels
 ② Due to the inclusion of barges, there is a change in the total figure compared with that of 1999.
 Source: Maritime Safety Management Office

4. 등 특 선 박 (4-2)

Ship Registered

구분 Classification	강 선 Steel Ship													
	합 계 Total		여객선 Passenger Ship		화물선 Cargo Ship		유조선 Tankers		메선 Tug Boat		부선 Barge		기타선 Other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1996	3,555	6,937,958	150	70,598	625	6,021,945	625	625,425	1,015	72,223	0	0	1,140	144,998
1997	3,661	6,724,522	150	67,755	631	5,828,128	637	614,601	1,072	78,024	0	0	1,171	138,296
1998	3,568	6,214,469	137	54,661	584	4,414,392	628	545,431	1,061	78,801	0	0	1,158	121,184
1999	5,183	6,047,674	136	76,123	584	4,237,727	647	624,603	1,059	79,810	1,597	706,733	1,160	122,875
2000	5,264	6,125,235	135	73,396	604	4,275,529	674	639,351	1,079	82,554	1,536	728,281	1,166	123,854
2001	5,373	6,564,205	140	85,516	610	4,382,013	697	1,097,915	1,100	64,368	1,630	780,821	1,196	134,263
2002	5,555	7,379,565	147	103,594	631	5,127,613	729	1,137,604	1,135	58,208	1,725	923,078	1,215	153,172
2003	5,710	7,392,192	146	114,728	638	4,923,561	711	1,088,919	1,187	95,760	1,921	1,020,332	1,227	161,592
2004	5,837	5,454,504	158	117,379	681	6,074,066	680	583,336	1,200	102,461	1,884	1,123,223	1,236	174,239
2005	5,919	10,008,686	159	127,875	722	7,071,524	678	967,246	1,205	104,543	1,915	1,352,530	1,240	184,508
부산	2,200	1,081,739	7	8,226	126	254,793	377	168,157	501	35,352	927	545,501	352	73,760
인천	1,200	558,612	20	9,135	27	86,252	41	35,212	293	28,760	556	388,598	268	52,827
영광	43	15,877	2	2,135	0	0	3	109	15	2,229	7	6,008	16	418
동해	87	4,415	1	65	2	135	1	197	10	821	11	1,888	62	1,494
대전	120	15,318	10	1,144	4	252	0	0	28	2,749	19	8,487	59	3,308
광산	171	42,533	9	1,474	5	11,069	9	1,348	42	3,462	53	23,653	53	1,529
무안	359	109,546	69	32,221	72	26,222	16	614	82	3,727	83	35,751	59	12,975
여수	435	132,325	14	1,782	47	15,248	104	74,675	23	8,637	75	32,293	112	7,033
포항	146	24,591	1	5,412	20	23,561	7	1,366	42	5,296	42	57,863	38	1,267
마산	334	169,376	16	2,982	35	12,492	23	727	59	6,386	35	133,162	122	7,839
해산	222	167,618	0	0	9	6,533	22	28,846	84	3,013	42	129,492	76	16,325
제주	514	7,611,591	10	61,291	375	6,554,931	71	659,291	11	1,279	17	26,882	32	7,817

2. 선박톤급별 통계표

5. 등록선박(톤급4-1)

Ship Registered(Tonnage 4-1)

구분 Classification	총합 Grand Total													
	합계 Total		여객선 Passenger Vessels		화물선 Cargo Vessels		유조선 Tankers		예선 Tug Boat		부선 Barge		기타선 Other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합계 Total	7,119	0,088,382	208	144,328	797	7,298,219	679	997,244	1,214	104,880	1,917	1,382,973	2,308	221,068
5톤 미만 Less than 5 tons	363	1,194	0	0	6	21	3	12	2	7	0	0	353	1,184
5~20톤 미만	1,197	14,701	1	9	34	659	77	1,004	110	1,882	0	0	973	11,367
20~30톤 미만	782	19,911	1	21	61	1,646	89	1,487	206	8,085	36	874	421	10,635
30~50톤 미만	897	25,798	9	370	44	1,676	88	2,261	289	9,885	45	1,784	124	8,880
50~100톤 미만	772	88,767	50	3,835	68	8,035	100	8,924	254	15,481	123	9,110	121	13,129
100~200톤 미만	902	131,274	61	6,840	128	2,619	119	16,780	278	40,985	324	48,384	122	13,712
200~500톤 미만	828	131,183	33	8,638	9	1,682	16	3,887	63	19,883	385	98,023	22	8,445
300~500톤 미만	895	924,027	24	8,892	39	16,039	51	23,748	15	6,803	437	188,188	28	10,609
500~1,000톤 미만	612	397,037	9	6,036	80	55,086	83	49,705	4	3,123	354	241,604	16	15,503
1,000~2,000톤 미만	291	427,389	0	0	28	144,645	80	94,397	0	0	126	175,427	7	9,897
2,000~5,000톤 미만	321	1,089,977	3	27,874	162	871,875	56	191,163	0	0	79	541,053	14	49,214
5,000~10,000톤 미만	79	658,042	7	68,120	49	352,720	0	80,108	0	0	19	88,414	5	33,820
10,000~20,000톤 미만	77	1,125,405	2	27,890	61	922,727	1	18,212	0	0	11	155,429	2	22,572
20,000~50,000톤 미만	63	1,841,394	0	0	49	1,410,898	2	70,038	0	0	6	82,462	0	0
50,000~100,000톤 미만	38	2,782,819	0	0	35	2,889,923	2	123,272	0	0	1	89,324	0	0
100,000톤 이상 More than 100,000 tons	13	1,613,798	0	0	11	1,210,927	2	303,669	0	0	0	0	0	0

주: 99년부터 부선이 포함되어 전년과 수치와 차이가 남

Note: Due to the inclusion of barges, there is a change in the total figure compared with that of 1999.

자료: 안전관리국

Source: Maritime Safety Management Office

5. 등 록 선 박(톤급4-2)

Ship Registered(Tonnage 4-2)

구분 Classification	강철선박 Steel Ship													
	합계 Total		여객선 Passenger Vessels		화물선 Cargo Vessels		유조선 Tankers		예선 Tug Boat		부선 Barge		기타선박 Other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합계 Total	8,919	8,028,688	189	127,378	723	7,271,824	878	987,844	1,206	104,541	1,918	1,352,591	1,340	184,513
5톤 미만 Less than 5 tons	88	233	0	0	0	0	3	32	0	0	0	0	65	201
5~20톤 미만	876	5,758	0	0	11	189	77	1,024	106	1,634	0	0	451	6,591
20~30톤 미만	533	13,349	0	0	28	898	69	1,467	204	5,044	38	974	208	5,286
30~50톤 미만	532	20,414	7	284	34	1,320	88	2,281	259	9,855	45	1,754	131	4,910
50~100톤 미만	781	65,378	45	3,540	84	4,982	100	8,994	254	18,451	122	9,110	188	12,288
100~200톤 미만	884	129,027	89	7,579	18	2,819	119	18,750	276	40,929	223	45,183	99	12,595
200~300톤 미만	618	127,953	22	5,822	8	1,582	18	3,237	53	19,823	367	91,204	22	5,445
300~500톤 미만	582	229,890	11	3,925	36	18,039	81	23,748	19	8,503	437	188,138	25	10,829
500~1,000톤 미만	609	386,113	7	4,817	68	65,088	63	49,705	4	2,123	364	241,804	15	11,995
1,000~2,000톤 미만	291	427,389	0	0	92	144,845	80	94,367	0	0	128	175,427	7	9,597
2,000~5,000톤 미만	319	1,076,601	6	22,298	182	571,573	65	191,163	0	0	79	241,563	14	49,214
5,000~10,000톤 미만	79	658,042	7	22,120	42	323,780	9	62,102	0	0	12	26,414	5	33,820
10,000~20,000톤 미만	77	1,156,426	2	27,590	61	962,727	1	16,513	0	0	11	156,453	2	22,672
20,000~50,000톤 미만	52	1,616,382	0	0	45	2,366,273	2	70,039	0	0	0	62,463	0	0
50,000~100,000톤 미만	35	2,722,619	0	0	35	2,589,923	2	123,272	0	0	1	69,324	0	0
100,000톤 이상 More than 100,000 tons	13	1,613,795	0	0	11	1,210,227	2	303,869	0	0	0	0	0	0

3. 선박선령별 통계표

6. 등록선박 (선령) Ship Registered(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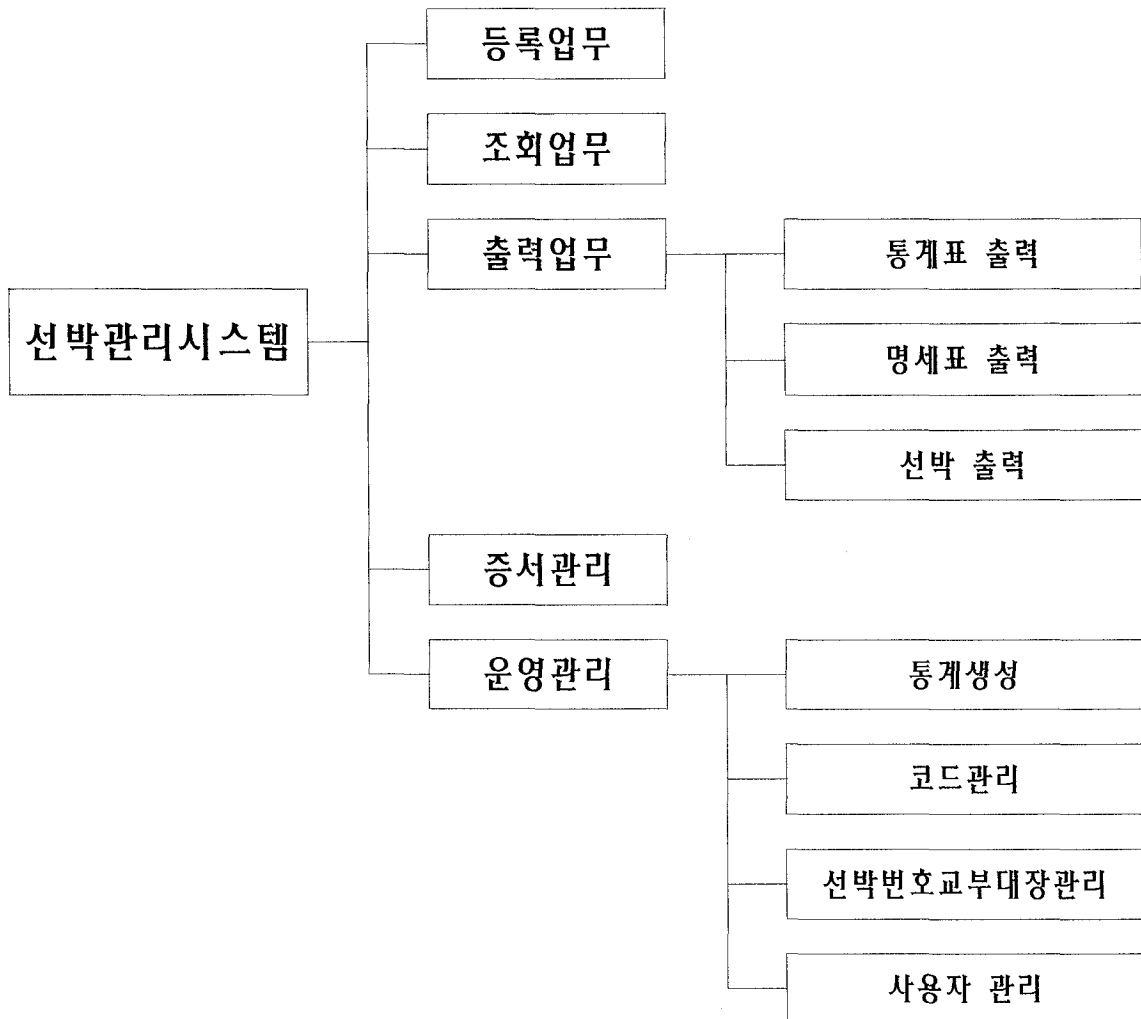
구분 종류 Tonnage	구분 Classification	합계 Total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30년	30-35년	35년 이상
			Less than 5 Years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More than 35 Years
합계	Total	7,119	492	902	1,482	1,241	898	910	515	624
		10,045,334	488,829	1,558,818	2,397,072	2,988,033	1,893,515	858,948	116,531	132,542
5톤 미만	Less than 5 tons	383	61	68	85	70	30	25	0	14
		1,104	200	238	285	237	95	80	36	40
5-20톤 미만	5-20 tons	1,197	62	107	264	257	145	187	92	52
		14,701	653	1,248	3,033	2,807	1,894	2,890	1,285	1,180
20-30톤 미만	20-30 tons	783	59	121	133	101	74	131	65	108
		19,913	1,619	3,184	3,420	2,537	1,814	3,340	1,440	2,550
30-50톤 미만	30-50 tons	507	32	60	54	67	69	103	65	124
		22,798	1,263	2,307	3,313	2,634	2,219	3,989	2,653	4,508
50-100톤 미만	50-100 tons	772	44	114	132	102	77	101	74	128
		58,758	3,837	8,119	9,642	7,788	6,804	7,103	5,059	9,403
100-200톤 미만	100-200 tons	900	66	143	154	150	78	121	104	78
		181,274	9,466	20,408	23,743	22,324	11,613	17,824	15,335	10,759
200-300톤 미만	200-300 tons	628	25	88	172	104	41	62	27	18
		131,153	6,559	22,422	43,648	34,600	10,525	12,921	6,826	3,579
300-500톤 미만	300-500 tons	595	44	101	130	105	95	64	25	31
		234,027	16,991	37,933	49,348	42,924	35,611	36,915	10,136	12,171
500-1,000톤 미만	500-1,000 tons	512	35	65	101	99	105	45	40	36
		387,037	23,506	38,011	70,817	75,288	77,280	34,193	30,041	19,921
1,000-2,000톤 미만	1,000-2,000 tons	291	13	21	64	78	44	23	6	9
		427,369	22,317	31,307	137,125	109,267	84,335	40,719	9,851	12,605
2,000-5,000톤 미만	2,000-5,000 tons	331	25	40	74	68	85	24	7	6
		1,030,978	73,475	144,338	242,998	209,044	257,390	72,898	22,233	28,008
5,000-10,000톤 미만	5,000-10,000 tons	79	11	14	10	14	17	7	2	4
		555,042	82,311	100,912	72,738	92,224	118,975	50,853	11,995	27,529
10,000-20,000톤 미만	10,000-20,000 tons	77	5	15	11	6	27	12	0	0
		1,155,425	81,520	248,098	187,893	93,177	397,914	198,625	0	0
20,000-50,000톤 미만	20,000-50,000 tons	53	3	7	9	11	15	5	0	0
		1,541,354	100,935	220,555	281,418	280,554	509,082	143,559	0	0
50,000-100,000톤 미만	50,000-100,000 tons	32	1	9	13	12	2	1	0	0
		2,782,519	61,653	557,787	914,563	1,013,215	195,997	89,324	0	0
100,000톤 이상	More than 100,000 tons	12	0	1	3	9	0	0	0	0
		1,513,798	0	151,977	372,812	959,007	0	0	0	0

주: 상단은 횡, 하단은 톤
자료: 안전관리국

Note: The upper column is the number of vessel and the lower column is gross ton
Source: Maritime Safety Management Office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개 요



【 메뉴설명】

- ① 등록업무 : 선박/부선관리 및 말소, 부활, 영역서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조회업무 : 선박/부선내역을 조회한다(공유자별, 말소선박조회)
- ③ 출력업무 : 생성통계출력, 청별등록선박내역출력, 조건별선박등록사항 등을 출력한다
- ④ 증서관리 : 선박원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선박원부교부대장, 선박증서교부대장 등을 발행한다
- ⑤ 운영관리 : 관리자만이 사용 가능한 메뉴로서 통계생성 및 확정, 코드관리, 선박번호관리, 사용자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선박등록·변경·말소 신청

가. 선박등록신청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6.6.26>

(앞 쪽)

201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 기재)신청서		처리기간 2일(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④상호		(전화 :)
⑤선박의명칭		⑥진수일	□□□□년□□월□□일
⑦조선지		⑧조선자	
⑨선박의종류□	[1]기선 [2]범선 [3]부선		
⑩선질□	[1]강 [2]목 [3]목강 [4]알루미늄합금 [5]FRP [6]시멘트[7]기타		
⑪범선의범장□	[1]3장파그 [2]2장톱슬스크나 [3]2장스크나 [4]장스톱 [5]기타		
⑫선박의용도□□			(* 선박용도코드 참고)
⑬선적항	()시 ()면·동 군 읍(면)	⑭총톤수	톤
⑮기관의종류□	[1]증기왕복동 [2]증기 터빈 [3]디젤엔진 [4]가솔린엔진 [5] 소구발동기 [6]가스터빈 [7] <16>기관의수 전기모터 [8] 기타		
<17>기관출력(kW)	<18>매분회전수(RPM)	<19>최대속력	
<20>추진기의종류□	[1] 나선 [2] 분사(Jet) [3] 슈나이더 [4] 기타	21추진기의수	
<22>길이	m	<23>너비	m
<24>깊이			m
<25>공유자유무□	[1]유 [2]무	<26>계획만재흡수선	
<27>무선설비명		<28>호출부호	
<29>신청의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30>톤수측정장소		<31>기일	□□□□년 □□월 □□일
선박법 제8조제1항·제26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선적증서원부의 기재)을 신청합니다.		<32>선박번호	□□□-□□□□□□□□
신청일 : □□□□년 □□월 □□일		IMO번호	IMO□□□□□□□□□□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33>처리일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담당자 :	인
		확인관 :	인
		기사 :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나.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203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 유 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시 ()구 ()동 ()읍(면) 도 시(군)	
	④상호	(전화 :)	
⑤선박의 명칭	⑥선박번호	□□□-□□□□□□	
	IMO번호	IMO □□□□□□□□	
⑦선박의 용도	□□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시 ()면·동 군 읍(면)	⑩총톤수	톤
⑪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선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⑫처리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확인관 : 인 기사 : 인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1,000원 2. 선적증서원부 변경기재 신청 : 300원 선적항변경의 경우 : 600원 3. 증서교부수수료 : 500원 계 : 원
변경내용코드			
코드	변경내용	코드	변경내용
01 ☆	선박의 명칭변경	09	추진기의 종류변경
02 ☆	성명(대표자명)변경	10	추진기의 수 변경
03 ☆	주소변경	11 ☆	길이변경
04 ☆	선박의 종류변경	12 ☆	너비변경
05	범선의 범장변경	13 ☆	깊이변경
06 ☆	선적항의 변경	14 ☆	총톤수변경
07	기관의 종류	15 ☆	기타변경
08	기관의 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 선박말소등록신청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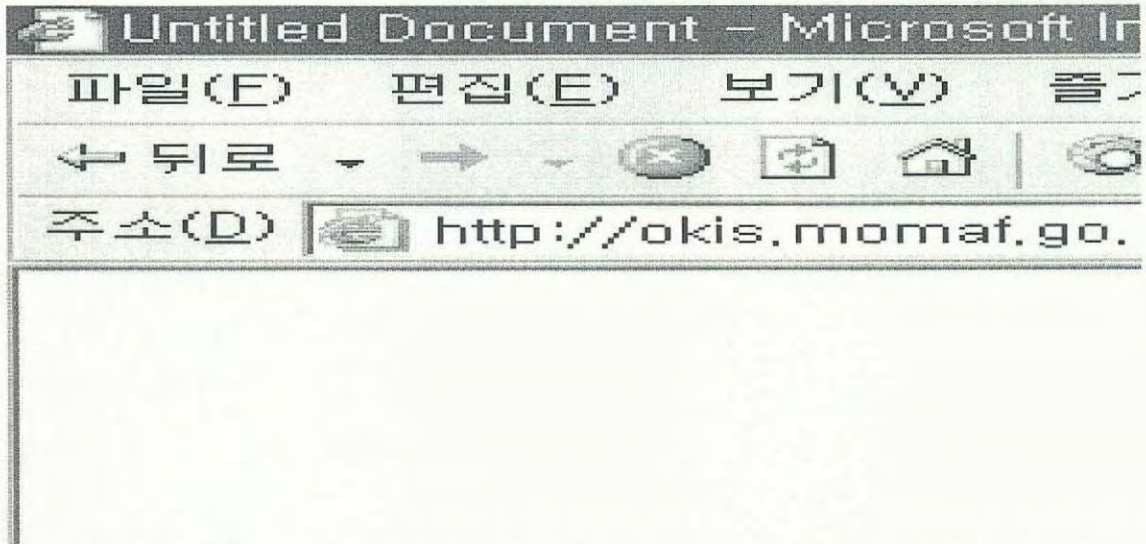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①성명 소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유 자	③주소 ()특별(광역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⑥선박번호 □□□-□□□□□□□□		IMO번호 IMO □□□□□□□□		
⑦선박의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시 ()면·동 군 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사유□□	[1]침몰	[2]해체	[3]수출	[4]기타	
⑫말소의구분□□	[1]선주말소	[2]직권말소			
⑬비고	선박법 제2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의 말소)을 신청합니다.				처리일 : □□□□년 □□월 □□일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인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확인관 :	인
구비서류					기사 :
※ 구비서류 : 없음(비고란에 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수수료 2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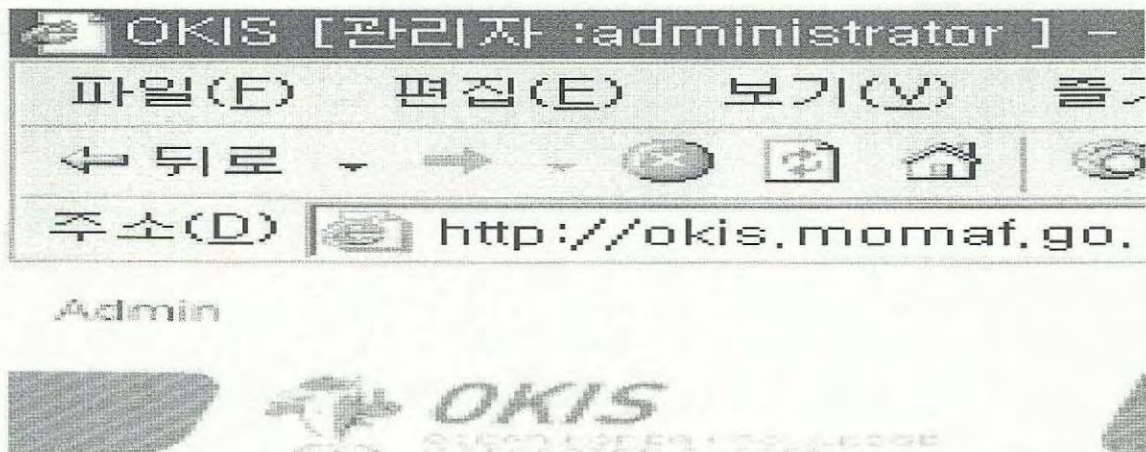
가. 선박등록·변경·말소 신청처리 : 지방청업무담당자

1) <http://okis.momaf.go.kr> 주소창에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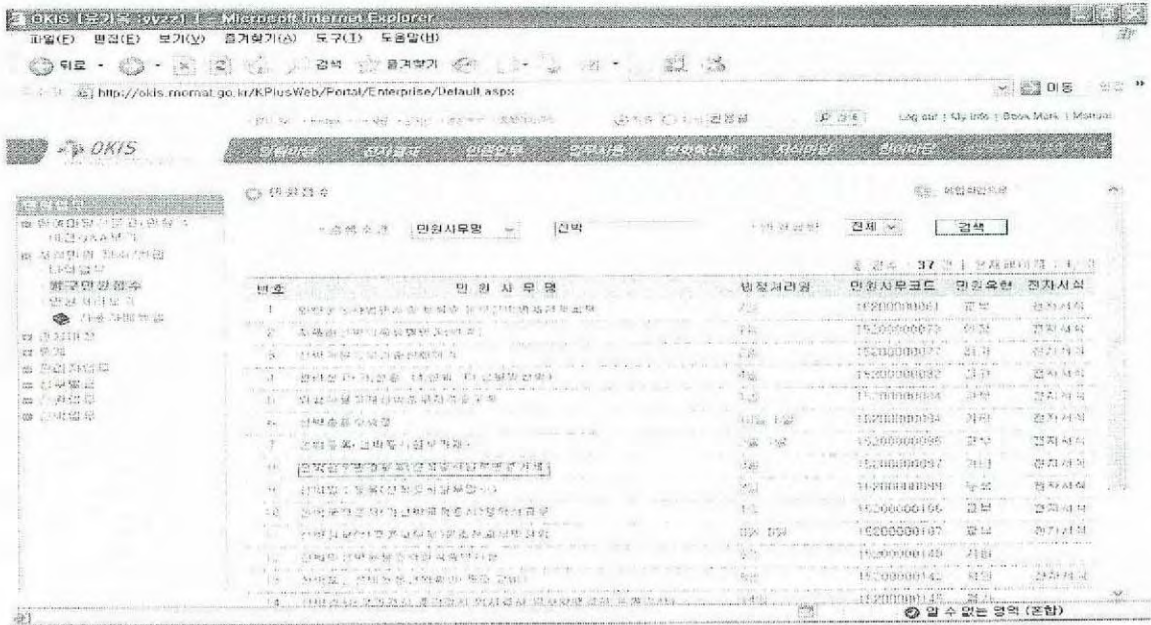
○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을 이용하거나 ID/Password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2) OKIS시스템내 민원업무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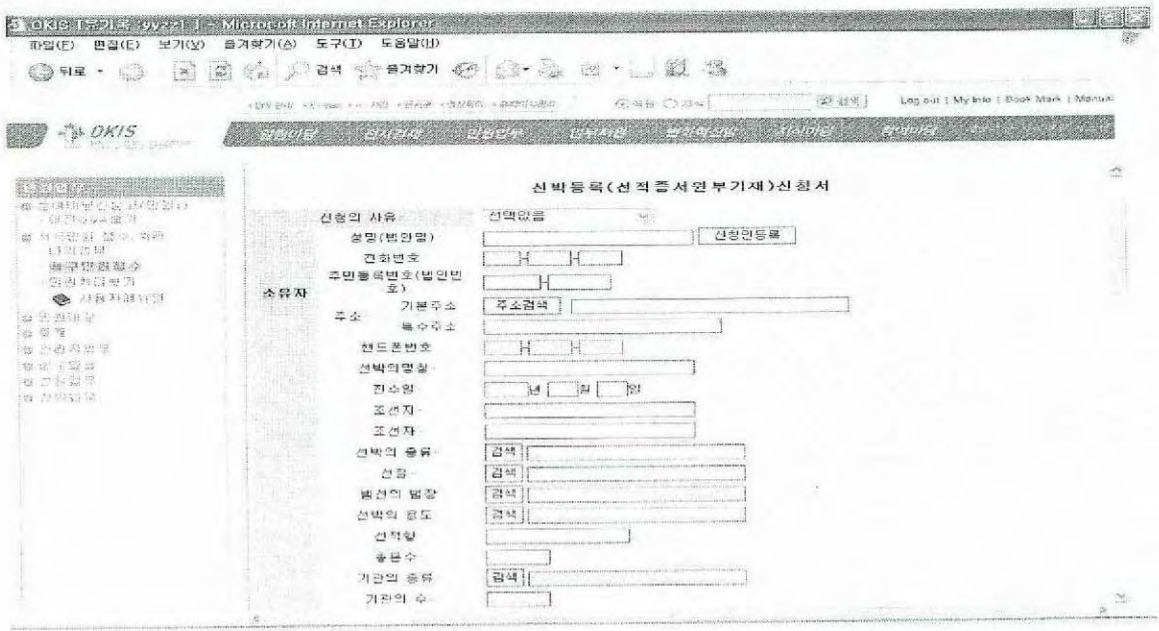
○ 로그인에 성공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면 상단 메뉴의 “민원업무”를 선택하여 민원업무를 시작한다.

3) 선박등록 · 변경 · 말소 전자민원사무명 화면



- 검색조건 민원사무명 우측란에 “선박”입력후 클릭
- 민원접수를 위해 창구민원접수의 선박등록 · 변경 · 말소 전자서식을 선택

4) 선박등록 화면 (선적증서원부기재)



- 선박등록을 하는 경우 : 신조, 수입, 부활, 기타
 - 1. 등록인 경우
 - :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이상의 부선 ⇒ 선박원부
 - 2. 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과 범선, 100톤 미만 의 범선 ⇒ 선박증서원부

- 선적증서(船籍證書)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발행 되는 것이 특징이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 하기 위한 선박국적증서와는 구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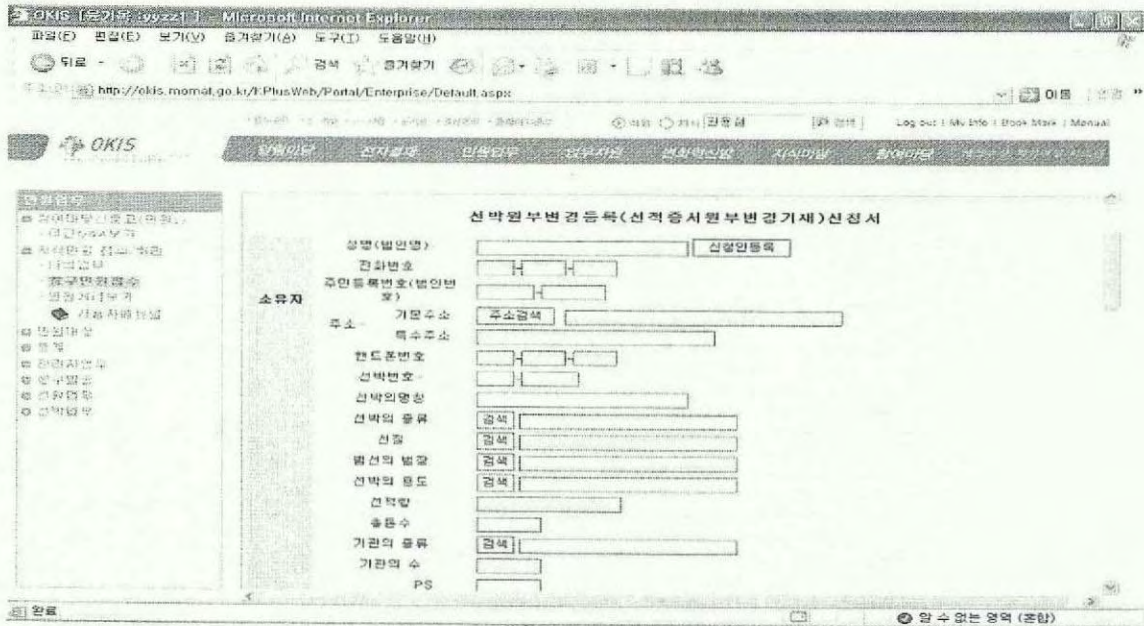
- 선 질 : 강, 목, FRP, 알루미늄합금, 시멘트, 목강, 기타

- 추진기의 종류 : 나선, 분사(JET), 슈나이다, 기타

- 국제톤수
 -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1969선박의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 Dead weight tonnage : DWT)
 - 선박의 크기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나타내는 톤수. 선박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화물 등의 최대 적재량을 표시하는 지표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임

5) 선박원부변경등록 화면 (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



○ 선박원부변경(선적증서원부) 경우 : 오류수정, 민원신청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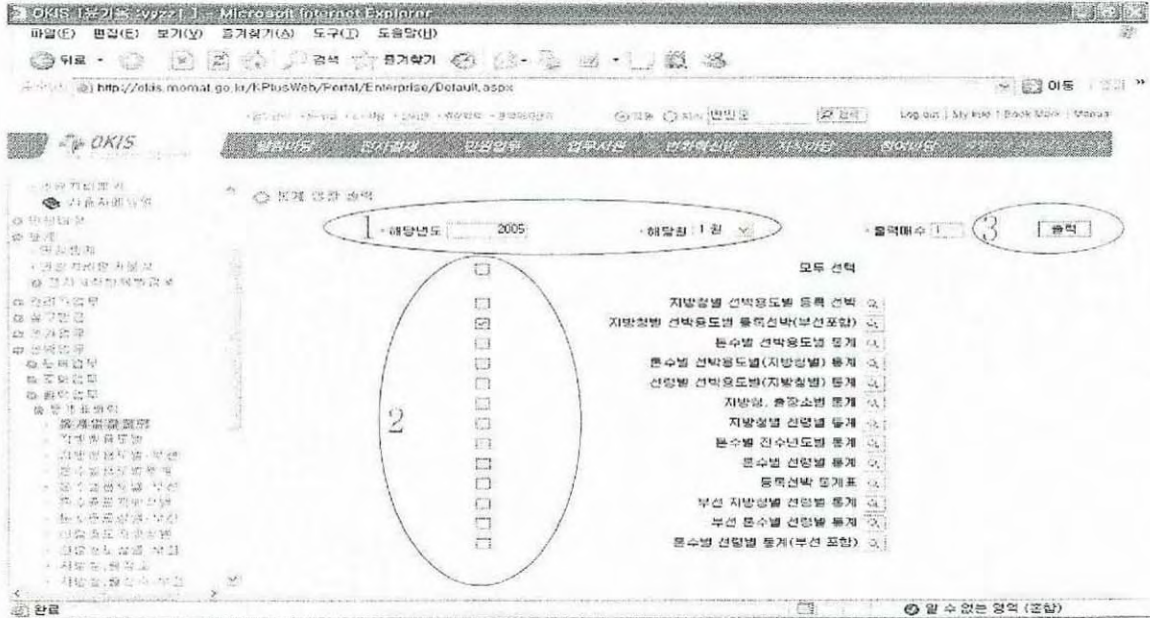
6) 선박말소등록 화면 (선적증서원부말소)

○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 경우

-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 선박의 존재유무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선박이 제26조의 2에 규정된 선박으로 한 때
 -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및 범선
 -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

나. 등록선박 통계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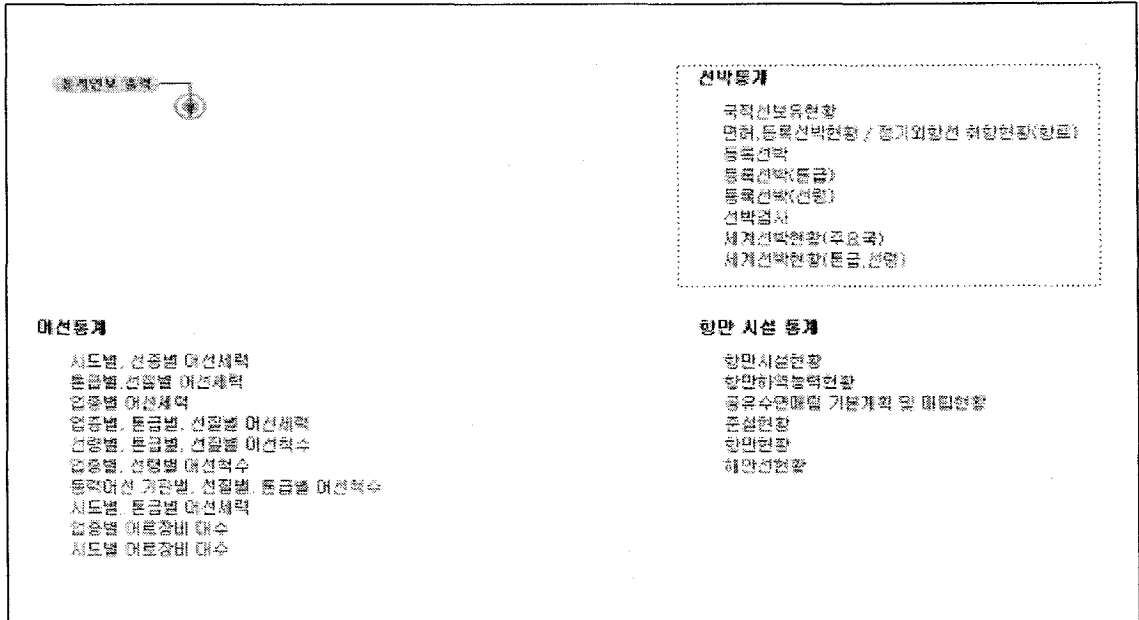
1) 선박업무/통계표출력/통계출력 옵션별 선택



1. 해당년월 : 통계생성년도, 생성월을 입력한다.
2. 선택 check box : 일괄출력하고자하는 통계선택.
3. 출력 : 선택된 통계의 일괄출력 화면이 나타난다.

다. 등록선박통계연보 작성·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1) 등록선박 통계연보 작성



2) 등록선박 통계 SP-IDC 게재

등록선박

출발: 2000

조회

2000년 1월~12월 까지 (누계)

항종/항명	구분	계		배조선		차출선		입조선		배선		무선		기타선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척	톤
		Num	G/T	Num	G/T	Num	G/T	Num	G/T	Num	G/T	Num	G/T	Num	G/T
항면시설정보	1997	5,434	6,756,082	103	10,000	764	6,025,943	637	614,619	1,000	78,428	0	0	2,462	103,516
해양안전정보	1998	4,004	5,242,060	175	65,298	702	4,418,907	828	545,431	1,073	78,071	0	0	2,325	198,481
새입항선	1999	6,418	8,678,188	121	66,285	636	4,295,193	647	324,683	1,071	78,699	1,699	702,925	2,275	137,985
항면등록정보	2000	6,494	8,152,193	168	63,327	711	4,277,001	674	308,651	1,091	62,721	1,589	706,653	2,255	149,225
선박등록정보	2001	6,586	8,932,753	172	92,379	736	4,284,062	697	1,011,919	1,111	84,531	1,582	781,995	2,264	148,477
-등록선박	2002	6,792	7,977,549	190	124,533	725	6,294,626	711	1,137,616	1,146	88,282	1,791	693,648	2,271	188,189
-등록선박(선형)	2003	6,581	7,447,867	192	108,283	734	4,335,465	711	1,038,914	1,109	89,869	1,824	1,020,804	2,296	171,292
-등록선박(선종)	2004	6,788	8,871,591	210	132,243	758	5,102,758	690	868,936	1,211	102,612	1,267	1,123,716	2,262	188,581
-항면등록정보(선종별)	2005	3,119	10,083,579	265	144,722	797	1,038,578	678	381,246	1,074	104,882	1,071	1,362,877	2,308	331,063
-항면등록정보(항종별)	2006	2,032	11,108,158	203	143,476	906	1,928,718	708	1,260,751	1,246	110,184	1,093	1,511,231	2,345	167,261
-항면등록정보(선형종별)															

V. 관련 용어 및 법규

1. 관련 용어

□ 여객선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의 하나로서, 여객수송을 주 용도로 하는 선박. 부수적으로 소량의 특수화물과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임.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여객선은 그 구조에 따라 카페리선 및 차도선으로 구분되며, 속력을 기준으로 구분

□ 예선(曳船, Tug-boat)

-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예인선(曳引船)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크기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선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부선(艇船, Barge-boat)

- 기관(engin) 또는 돛 등의 장치를 갖추지 않아 자체추진력 즉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 기선(機船)

- 선박의 추진동력을 기관(engine) 등으로부터 얻는 선박. 선박법은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선(機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범선(帆船)

- 선박의 추진동력을 돛을 추진하는 선박.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선령(船齡)

- 선박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 선령이 증가할수록 속력의 감퇴, 연료소비, 수선비 증가, 구조의 노화로 인한 하역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함

□ 선적항(船籍港)

-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는 항만 선박에 대한 감독이나 민사소송의 관할기준 및 세율의 기준이 되며, 선박 기준으로 활용함

□ 흘수선(吃水線)

- 선체가 얼마나 물 속에 잠겨있는 가를 외부에서 인식하기 위하여 흘수를 나타내는 선

□ 선적증서(船籍證書)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국적증서와는 구별됨

□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해운관청이 법원에 등기된 선박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원부에 등록한 후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며, 선장은 선박국적증서를 선박서류의 하나로 선내에 비치할 의무를 짐.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 및 등록을 마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가 아닌 선적증서가 발행됨

□ 선적증서(船籍證書)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국적증서와는 구별됨

2.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1.2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개항장에 기항(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서를 당해 불개항장 또는 여객의 승선지나 화물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3조(총톤수의 측정신청) ①법 제7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에 한하여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06.11.2>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인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선박의 총톤수 측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당해 선박의 조선지(조선지)·조선자(조선자)·진수일(진수일) 및 선박원명(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 등) ①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부분측정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총톤수의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1.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 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당해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2.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6조(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①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목적으로 건조중에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건조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부분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부분측정"으로 본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기타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3항(동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톤수"는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는 "재화중량톤수증서"로 본다.

제8조(선박톤수 등의 측정장소) ①제3조 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은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또는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 또는 항로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구역외의 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건조장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외국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영사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제9조(톤수측정 관련서류의 송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선박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총톤수계산서 등 톤수측정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등록

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 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선박등기부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6]

제11조(등록사항) 지방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선박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선질)

8. 범선(범선)의 범장(범장)

9. 선박의 길이[최소형(최소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흘수선) 전장(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선수재)전면으로부터 타두재(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외판(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외면(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외면(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용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외판외의 기타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기타 장소의 용적
14. 제외장소(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 나. 선교루의 용적
 - 다. 선미루의 용적
 - 라. 갑판실의 용적
 -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키
18. 조선키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①누구든지 지방청장에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거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선박원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가선박국적증서교부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가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교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영역서교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첨부하여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게양과 선박의 표시

제16조(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뒷부분에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3. 해군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방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7조(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의 명칭 : 선수양현(선수양현)의 외부 및 선미외부(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선적항 :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홀수의 치수 :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선저(선저)로부터 최대홀수선(최대홀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홀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③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명칭 등을 표시할 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표시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④선박에의 표시는 잘 보이고 오래가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표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표시를 고쳐야 한다.

제5장 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국제톤수증서 등의 교부)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이하 "국제톤수"라 한다)의 계산과 관련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측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를 측정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측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본다.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교부) ①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제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변경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톤수를 개측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④제8조·제9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의 개측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톤수"는 "국제톤수"로,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제20조(선박멸실 등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멸실등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 선박멸실등신고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박등록사항의 변경과 말소

제21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선박의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변경등록의 신청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 중 선적항을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시·읍·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서류 및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선박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제22조(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①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지방청장의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 관할구역 변경전의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관한 선박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구역 변경후의 지방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 등을 송부받은 지방청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청장의 변경사실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박의 말소등록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박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등록 말소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장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 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6.11.2>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배치도·선체선도 및 중앙횡단면도(선박의 총톤수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조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서 등 당해 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미리 당해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제25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지방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선적증서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번호
2. 선박의 종류
3. 선박의 명칭
4. 선적항
5. 선질
6. 선박의 길이·너비 및 깊이
7. 총톤수
8. 추진기관을 가진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추진기관의 종류
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10. 진수일

제26조(선적증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의한 선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적증서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제13조의 규정은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8조(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①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지방청장에게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적증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적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은 "변경기재"로,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9조(선적증서원부의 말소 등) ① 「선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제2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선적증서원부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선박등록말소확인서"는 "선적증서원부말소확인서"로 본다.

제30조(소형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일자 및 사유

②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제25조·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 또는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행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생략:별표1> 및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부칙 <제156호,200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건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건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 및 제53조중 "해운관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0호,2006.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20호 및 제25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원부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또는 변경기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		처리기간 2일(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④상호 (전화 :)	
⑤선박의명칭	⑥진수일 □□□□년□□월□□일	
⑦조선지	⑧조선자	
⑨선박의종류□	[1]기선 [2]범선 [3]부선	
⑩선질□	[1]강 [2]목 [3]목강 [4]알루미늄합금 [5]FRP [6]시멘트 [7]기타	
⑪범선의범장□	[1]3장파그 [2]2장톱슬스크나 [3]2장스크나 [4]장스톱 [5]기타	
⑫선박의용도□□	(* 선박용도코드 참고)	
⑬선적항	()시 ()면·동 읍(면) ⑭총톤수 톤	
⑮기관의종류□	[1]증기왕복동 [2]증기 터빈 [3]디젤엔진 [4] 가솔린엔진 [5] 소구발동기 [6]가스 <16>기관의수 터빈 [7] 전기모터 [8] 기타	
<17>기관출력(kW)	<18>매분회전수(RPM)	<19>최대속력
<20>추진기의종류□	[1] 나선 [2] 분사(Jet) [3] 슈나يدر [4] 기타	21추진기의수
<22>길이 m	<23>너비 m	<24>깊이 m
<25>공유자유무□	[1]유 [2]무	<26>계획만재흘수선
<27>무선설비명	<28>호출부호	
<29>신청의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30>톤수측정장소	<31>기일 □□□□년 □□월 □□일	
선박법 제8조제1항·제26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선적증서원부의 기재)을 신청합니다.	<32>선박번호 □□□-□□□□□□□□ IMO번호 IMO□□□□□□□□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33>처리일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담당자 : 인 확인관 : 인 기사 :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3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①성명(대표자명) _____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시 ()구 ()동 ()읍(면)도 시(군) ④상호 _____ (전화 : _____)	
⑤선박의명칭	⑥선박번호 □□□-□□□□□□□□ IMO번호 IMO □□□□□□□□	
⑦선박의용도□□	⑧호출부호 _____	
⑨선적항 ()시 ()면·동 군 읍(면)	⑩총톤수 _____	톤
변경사항		
⑪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선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을 신청합니다.		⑫처리일 : □□□□년 □□월 □□일 담당자 : _____ 인 확인관 : _____ 인 기사 : _____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교부받은 경우에만함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1,000원 2. 선적증서원부 변경기재 신청 : 300원 선적항변경의 경우 : 600원 3. 증서교부수수료 : 500원	원
변경내용코드		
코드	변경내용	코드
01 ☆	선박의 명칭변경	09
02 ☆	성명(대표자명)변경	10
03 ☆	주소변경	11 ☆
04 ☆	선박의 종류변경	12 ☆
05	범선의 범장변경	13 ☆
06 ☆	선적항의 변경	14 ☆
07	기관의 종류	15 ☆
08	기관의 수	
		추진기의 종류변경
		추진기의 수 변경
		길이변경
		너비변경
		깊이변경
		총톤수변경
		기타변경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 일
①성 명 소 (대표자명) 유 자 ③주 소 ④상 호	②주민등록번호 □□□□□□-□□□□□□□□ ()특별(광역시) ()구 ()동 () 도 시(군) 읍(면)	
⑤선박의명칭	선박번호 □□□-□□□□□□□□ ⑥ IMO번호 IMO □□□□□□□□	
⑦선박의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시 ()면·동 군 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사유□□ [1]침몰 [2]해체 [3]수출 [4]기타		
⑫말소의구분□□ [1]선주말소 [2]직권말소		
⑬비 고 선박법 제2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의 말소)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처리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확인관 : 인 기사 :	
구 비 서 류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비고란에 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00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여 백

등록어선통계

여 백

목 차

I. 개 요	107
1. 작성 목적	107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107
3. 작성 연혁	107
4. 작성 대상 및 내역	107
5. 작성 방법 및 체계	108
6. 결과 공표	108
7. 관련 법령	108
II. 업무흐름도	109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109
2. 단계별 주의사항	110
III. 통계 표	111
1. 시·도별 선종별	111
2. 톤급별 선질별	112
3. 업종별	113
4. 시·도별 어로장비 대수	114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15
1. 개 요	115
2. 어선 등록·변경·정정·말소 신청	116
3. 업무처리절차	120
V. 관련 용어 및 법규	170
1. 관련 용어	170
2. 어선법시행규칙	172
별첨 : 주요어법해설	195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어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어선의 등록사항을 파악하여 수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13호

3. 작성 연혁

- 1978. 8. : 통계작성 승인
- 2002. 1. : 통계명칭변경 (어선세력조사 → 등록어선통계)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연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된 어선
- 내 용
 - 톤급별 선질별 어선세력
 - 업종별 어선세력
 - 업종별·톤급별 선질별 어선척수
 - 선령별·톤급별 선질별 어선척수
 - 업종별·선령별 어선척수
 - 동력어선 기관별·선질별·톤급별 어선척수
 - 시도별·톤급별 어선세력
- 작성 주기 : 매년
- 대상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시·군·구에 등록된 어선원부상의 기재내용을 집계
- 체 계
 - 신고자(어선등록·변경·말소) → 시·군·구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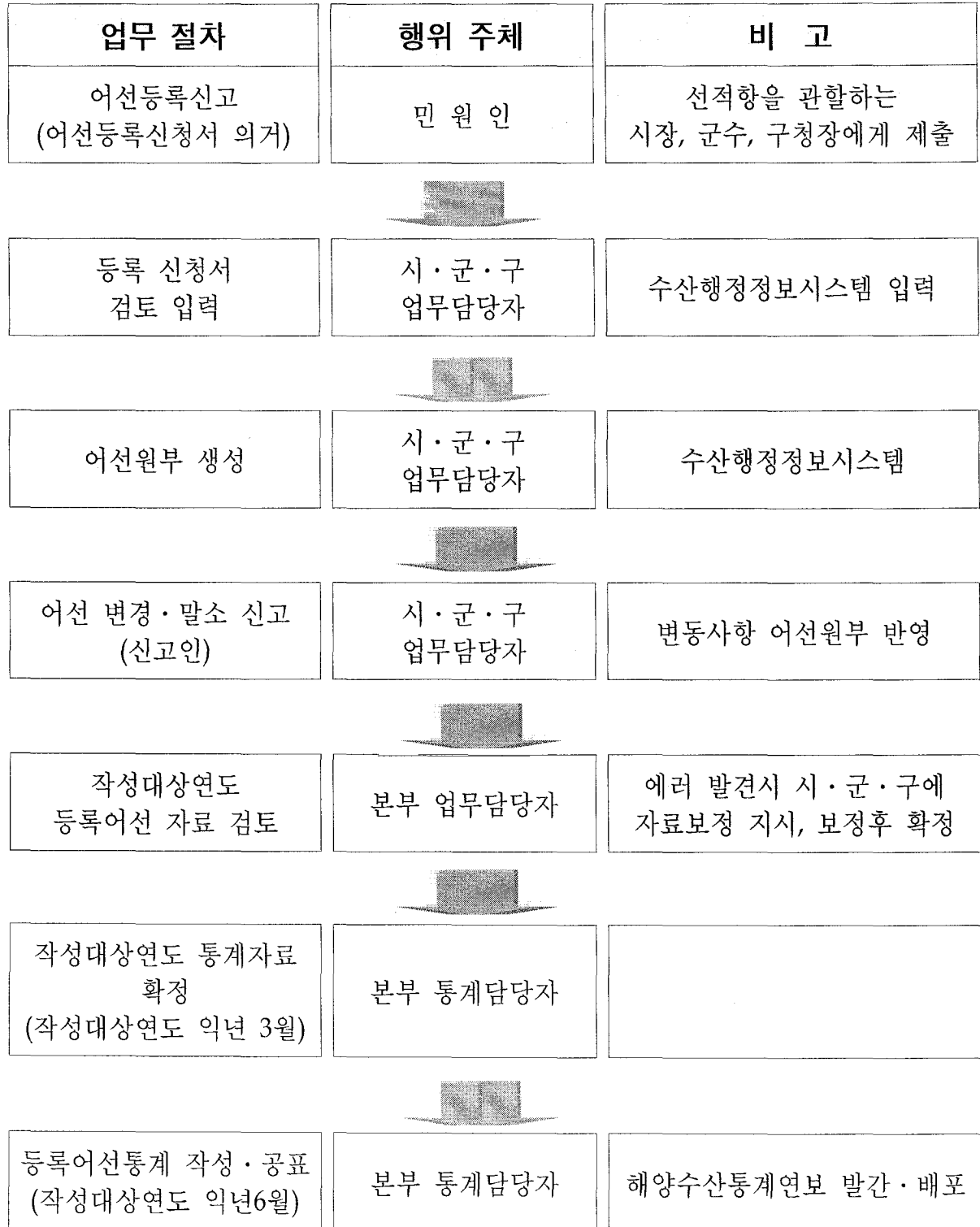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6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시·도

7. 관련 법령

- 등 록 : 어선법 제13조 제1항
- 등록사항 변경 : 어선법 제17조
- 말 소 : 어선법 제19조 제1항
- 등록업무 실적보고 : 어선법 시행규칙 제72조

II. 업무흐름도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 단계별 주의 사항

가. 어업허가 폐지방법

- 어업허가폐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민원신청으로 들어온 어업허가폐지가 있고, 행정처분으로 들어온 직권취소는 인허가번호 한건씩 폐지시키시는 것이다.
- 그 이외 기간만료로 폐지되는 건일 경우 건건이 입력해도 되지만 어업허가변경 => 어업허가폐지화면의 기간만료일괄폐지 버튼으로 열린 화면에서 폐지하면 한꺼번에 여러 건을 폐지할 수 있다.
- 어업허가 신규접수시 어선소유주 변경 등으로 허가번호가 새로 부여될 때 일일이 이전 허가번호를 대장정정으로 폐지하지 않도록 허가증 출력화면의 어선별 허가내역 조회에서 같은 어선을 가진 이전허가번호를 조회하여 한 건씩 폐지할 수 있다.
- 이렇게 폐지된 건에 대해서는 증에는 출력되지 않고, 대장조회나 대장정정에서는 조회, 수정 가능하다. 허가내역조회의 작은 팝업 화면에서 폐지된 건은 회색으로 표시된다.

나. 어선 전입, 전출

- 전출처리 시점 : 어선변경등록민원 결과처리후 민원 해결처리후 변경사유의 내용이 '23-전출' 이면 자동으로 해당 전출등록 관련 화면이 생성된다.
- 전입 및 전출 처리 흐름
 - 전입 전출은 시군구간에 자료를 송수신하는 작업이므로, 수산행정 이외에 TMON Server라고 하는 서버가 기동 되어 있어야 한다.
 - 전출 등록화면의 송신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처리가 되면 화면 하단에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며,
 - 이 경우 정상적으로 전출송신처리가 완료된 것이며, 전출미결 탭의 자료가 전출완료 탭으로 자동 이동되어 조회된다.

Ⅲ. 통계 표

1. 시도별 선종별

1. 시 도 별 · 선 종 별
Fishing Fleet by Province,

	계 Total				척 수 NO.
	척 수 NO.	톤 수 G.T	마 력 수 HP	척당평균톤수 Average Tonnage Per Boat	
1999	94,852	991,955.80	11,798,089	10.46	87,502
2000	95,890	923,095.97	13,597,179	9.63	89,294
2001	94,935	524,853.11	14,785,745	9.32	89,347
2002	94,355	518,583.44	17,273,940	8.65	89,327
2003	93,257	754,439.88	17,094,036	8.09	85,521
2004	91,608	724,979.55	16,743,102	7.91	87,203
2005	90,735	700,810.03	12,949,457	7.72	87,554
부 산	5,187	354,877.10	1,533,811	68.38	5,110
대 구	11	3.99	515	0.36	11
인 천	2,341	37,081.25	534,295	15.84	2,288
울 산	1,327	4,680.46	121,708	3.53	919
경 기	2,370	4,703.49	215,514	1.98	1,959
강 원	3,916	23,283.12	875,031	8.95	3,793
충 북	487	198.93	18,716	0.41	393
충 남	6,615	22,891.15	1,059,905	3.48	6,544
전 북	4,656	17,364.27	503,305	3.71	4,583
전 남	35,990	99,938.70	3,945,138	2.78	35,389
경 북	4,602	35,090.12	742,581	7.62	4,303
경 남	19,914	79,070.55	2,819,386	3.97	19,020
제 추	3,259	21,908.85	680,958	6.66	3,284

자료: 안전관리관실

2. 톤급별 선질별

2. 톤 급 별 · 선 질 별
Fishing Fleet by Tonnage Groups and

		계	1톤 미만	1 ~ 5	5 ~ 10	10 ~ 20	
		Total	Under 1 Ton				
1999		94,852	38,087	42,884	7,018	1,579	
2000		95,890	37,542	44,794	7,332	1,534	
2001		94,935	35,013	48,424	7,682	1,418	
2002		94,388	33,987	47,158	7,983	1,320	
2003		93,257	33,091	47,087	8,098	1,262	
2004		91,608	31,974	48,920	8,057	1,160	
2005		90,735	30,982	47,253	8,048	1,095	
선 질 별	소계	척 수	37,554	28,987	48,098	8,019	1,095
		톤 수	697,956.28	19,314.58	109,442.49	62,184.40	15,905.98
		마포 수	12,949,457	1,262,913	8,652,597	2,353,233	370,945
	강선	척 수	2,381	86	25	107	134
		톤 수	444,878.54	20.09	55.28	825.28	2,161.67
		마포 수	1,720,708	2,797	2,128	20,608	42,878
	복선	척 수	20,080	9,900	8,183	1,421	338
		톤 수	47,831.14	6,283.48	17,149.30	10,842.09	4,826.90
		마포 수	1,189,111	145,917	558,397	290,318	87,344
	FRP	척 수	85,016	18,986	37,867	6,480	823
		톤 수	205,060.94	13,014.53	92,151.39	50,815.54	5,871.39
		마포 수	10,043,830	1,112,841	6,058,853	2,039,283	239,913
기타	척 수	97	35	41	11	3	
	톤 수	587.68	16.18	86.52	81.21	46.00	
	마포 수	15,808	1,358	5,219	3,044	1,010	
선 질 별	소계	척 수	3,131	1,995	1,157	29	0
		톤 수	2,853.75	754.08	1,901.10	195.59	0.00
		마포 수					
	강선	척 수	38	35	1	0	0
		톤 수	10.30	5.57	4.73	0.00	0.00
		마포 수					
	복선	척 수	2,221	1,222	989	10	0
		톤 수	2,068.04	485.58	1,505.29	64.89	0.00
		마포 수					
	FRP	척 수	815	658	144	15	0
		톤 수	893.43	244.54	342.50	108.39	0.00
		마포 수					
기타	척 수	109	82	23	4	0	
	톤 수	83.98	8.09	45.53	27.31	0.00	
	마포 수						

자료: 안전관리관실

3. 업종별

3. 2005년 업종별 Fishing Fleet by Type

	계 Total			동력선 Power Vessels			무동력선 Non-Power Vessels	
	척 수 NO.	톤 수 G.T	마력수 H.p	척 수 NO.	톤 수 G.T	마력수 H.p	척 수 NO.	톤 수 G.T
총 계 Total	90,736	700,810.03	12,949,457	87,554	897,958.28	12,949,457	3,181	2,853.75
원양어업 Distant Waters Fisheries	493	257,813.95	825,533	493	257,813.95	825,533	0	0.00
원양연승 Long Line	212	85,591.28	170,428	212	85,591.28	170,428	0	0.00
원양트롤 Otter Trawl	178	118,088.22	308,619	178	118,088.22	308,619	0	0.00
원양선망 Distant Waters Purse Seine	21	21,219.98	59,200	21	21,219.98	59,200	0	0.00
원양유자망 Distant Waters Floating Gill Net	2	320.98	920	2	320.98	920	0	0.00
원양봉수망 Distant Waters Stick-held Dip Net	4	1,867.08	5,100	4	1,867.08	5,100	0	0.00
원양채낚기 Distant Waters Angling	81	28,893.28	71,781	81	28,893.28	71,781	0	0.00
원양통발 Distant Waters Trap	8	1,681.34	5,320	8	1,681.34	5,320	0	0.00
기타 Others	9	1,971.81	6,185	9	1,971.81	6,185	0	0.00
근해어업 Off-Shore Fisheries	3,887	184,038.87	1,763,298	3,887	184,038.87	1,763,298	0	0.00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Trawl Large(One Boat)	48	3,559.88	23,105	48	3,559.88	23,105	0	0.00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Trawl Large(Two Boat)	93	11,808.42	81,055	93	11,808.42	81,055	0	0.00
동해구기선저인망 Eastern Sea Danish Sein	42	2,519.20	17,142	42	2,519.20	17,142	0	0.00
중형기선저인망 (외끌이) Trawl Medium(One Boat)	43	2,315.21	20,689	43	2,315.21	20,689	0	0.00
중형기선저인망 (쌍끌이) Trawl Medium(Two Boat)	22	1,015.64	11,549	22	1,015.64	11,549	0	0.00
대형 트롤 Large Otter Trawl	58	7,905.00	71,018	58	7,905.00	71,018	0	0.00
동해구 트롤 Eastern Sea Trawl	40	2,032.65	27,252	40	2,032.65	27,252	0	0.00
대형선망 Large Powered Purse Seines	188	25,863.61	178,851	188	25,863.61	178,851	0	0.00
소형선망 Small Powered Purse Seines	84	972.42	22,198	84	972.42	22,198	0	0.00
근해채낚기 Off-Shore Angling	807	22,879.03	291,244	807	22,879.03	291,244	0	0.00
기선권형망 Anchovy Drag Net	503	17,575.58	154,388	503	17,575.58	154,388	0	0.00
근해유자망 Off-Shore Gill Net	534	15,917.88	225,513	534	15,917.88	225,513	0	0.00
근해안강망 Large Stow Net	285	17,715.82	134,847	285	17,715.82	134,847	0	0.00
근해봉수망 Off-Shore Stick-held Dip Net	9	198.74	3,771	9	198.74	3,771	0	0.00
잠수기 Diving	188	819.18	58,020	188	819.18	58,020	0	0.00
근해통발 Off-Shore Trap	297	18,313.35	154,081	297	18,313.35	154,081	0	0.00

자료: 안전관리과실

4. 시도별 어로장비 대수

10. 시도별 어로장비 대수
Number of Fishing Equipment by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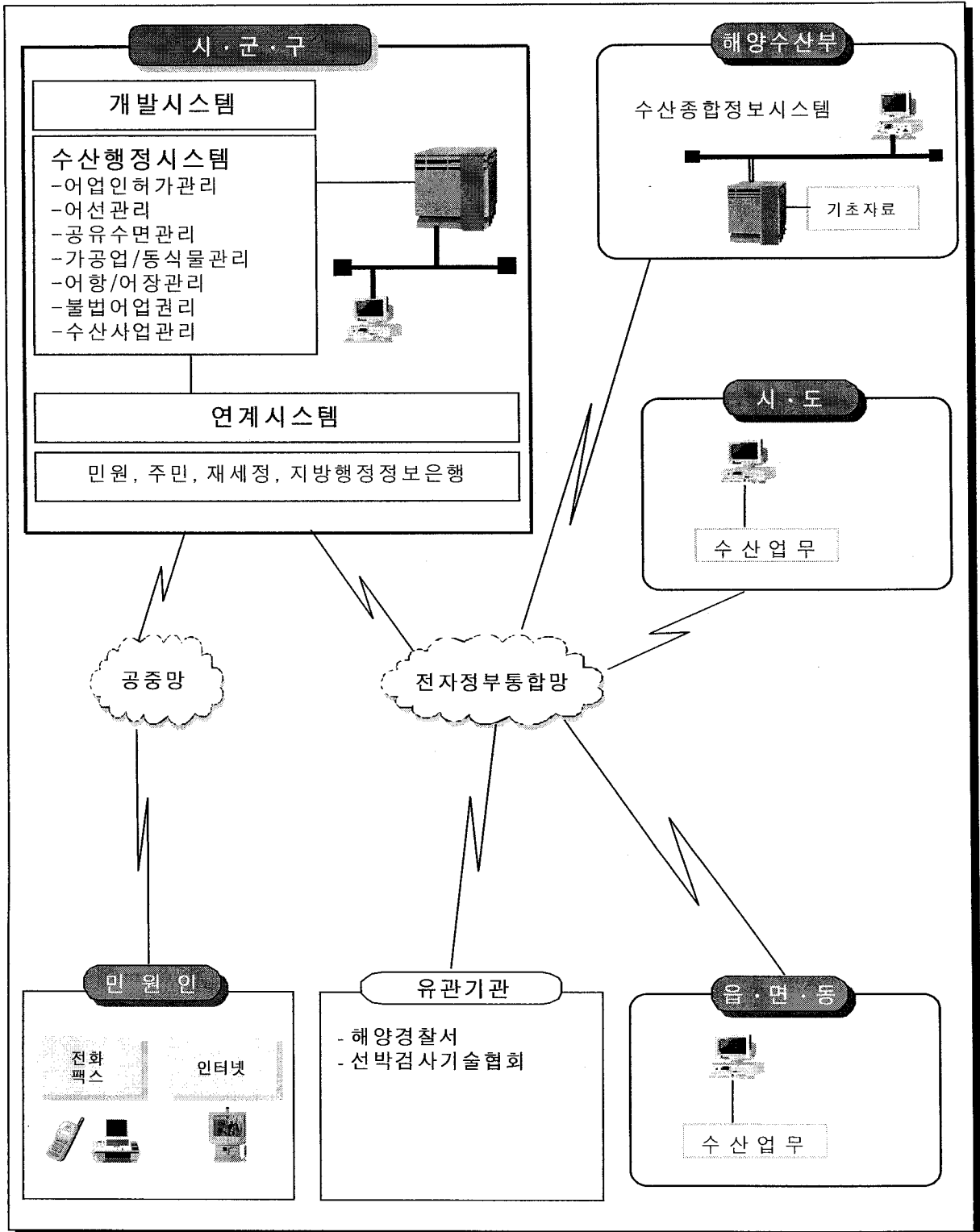
		무 전 기 (SSB보이스 포함) Wireless	자이로컴파스 Gyro Compass	어군탐지기 Fish Finder	방향탐지기 Direction Finder	로 란 Rolan	레 이 다 Radar
1999		18,708	3,523	7,953	3,910	3,921	5170
2000		18,375	1,595	7,421	3,551	3,335	4632
2001		17,760	3,183	7,000	3,270	3,083	4404
2002		17,061	2,997	6,494	2,882	2,659	4030
2003		18,239	2,864	6,140	2,670	2,488	3759
2004		18,232	2,892	5,735	2,451	2,242	3431
2005		14,303	2,551	5,405	2,274	2,073	3199
부 산	Busan	1,428	589	768	715	598	758
대 구	Daegu	0	0	0	0	0	0
인 천	Incheon	874	88	216	150	78	174
울 산	Ulsan	93	21	48	21	28	35
경 기	Gyeonggi	128	289	47	17	9	37
강 원	Gangwon	1,679	154	1,388	222	153	203
충 북	Chungbuk	0	0	0	0	0	0
충 남	Chungnam	1,018	475	233	57	182	235
전 북	Jeonbuk	802	114	37	24	53	38
전 남	Jeonnam	2,432	250	452	188	178	484
경 북	Gyeongbuk	1,871	141	745	310	371	413
경 남	Gyeongnam	2,225	222	954	338	330	858
제 주	Jeju	1,755	230	520	254	119	183
		조 망 기 Net Zonde	넛트홀라 Net Hauler	해수제빙기 Sea Water Ice-Making Machine	자 동 기상표사기 Facsimile Recorder	구명뗏목 Life-raft	오 정 어 자동조상기 Squid Angle Reeding Machine
1999		1,125	941	115	485	4,082	5,115
2000		1,001	854	99	473	3,373	4,282
2001		902	780	55	448	3,079	4,129
2002		769	754	138	411	2,822	4,101
2003		719	706	132	392	2,408	3,585
2004		683	682	125	365	2,199	3,751
2005		623	621	108	351	2,031	3,561
부 산	Busan	316	247	39	283	1,054	184
대 구	Daegu	0	0	0	0	0	0
인 천	Incheon	21	11	4	6	128	7
울 산	Ulsan	5	16	1	0	33	78
경 기	Gyeonggi	5	1	1	2	3	0
강 원	Gangwon	24	145	2	34	187	1,355
충 북	Chungbuk	0	0	0	0	0	0
충 남	Chungnam	89	3	1	0	18	18
전 북	Jeonbuk	43	21	0	1	18	1
전 남	Jeonnam	28	70	38	10	100	18
경 북	Gyeongbuk	48	30	3	19	205	1,875
경 남	Gyeongnam	28	72	11	5	238	14
제 주	Jeju	18	5	8	8	47	32

자료: 안전관리관실

Source: Director General for Maritime Safety Management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개요



2. 선박등록·변경·정정·말소 신청

가. 어선등록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2.7.15>

(앞면)

어선등록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V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주 소	(전화)	
인	④상 호		
⑤어선명칭(원명)		(전화)	
⑥선 적 항		⑦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⑧총 톤 수		톤	⑨주요치수(m) 길이 : 너비 : 깊이 :
⑩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공부확인 또는 전산망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또는 당해 선박이 수산업(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을 포함합니다)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합니다) 4. <삭제> 5.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합니다) 6.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의 말소 또는 상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합니다)		

48279-02711민
94.5.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나.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1999.5.17>

(앞면)

변경등록신청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주소	(전화)	
인	④상 호		
⑤어선번호		⑥어선명칭	
⑦어선종류		□동력 □무동력	⑧추진기관
⑨총 톤 수		톤	⑩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⑪선 적향			
⑫변경사항		당 초	변 경
⑬변경사유			
어선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8279-031111민

94.5.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라. 어선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1999.5.17>

(앞면)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V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상 호		
⑤어선번호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⑥어선명칭	
⑦어선종류	톤	⑧선적항	
⑨총 톤 수		⑩어업의 종류	어업
⑪등록말소사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48279-03411민

94.5.2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3. 업무처리절차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가.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접수 내역 등록

1) 업무설명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접수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detailed registration form for fishing boat construction permits. It includes sections for '민원신청인정보' (Applicant Information), '어선내역' (Permit Details), and '민원결과' (Administrative Results). Fields include applicant type (individual/business), license numbers, addresses, permit numbers, dimensions, power, and processing status.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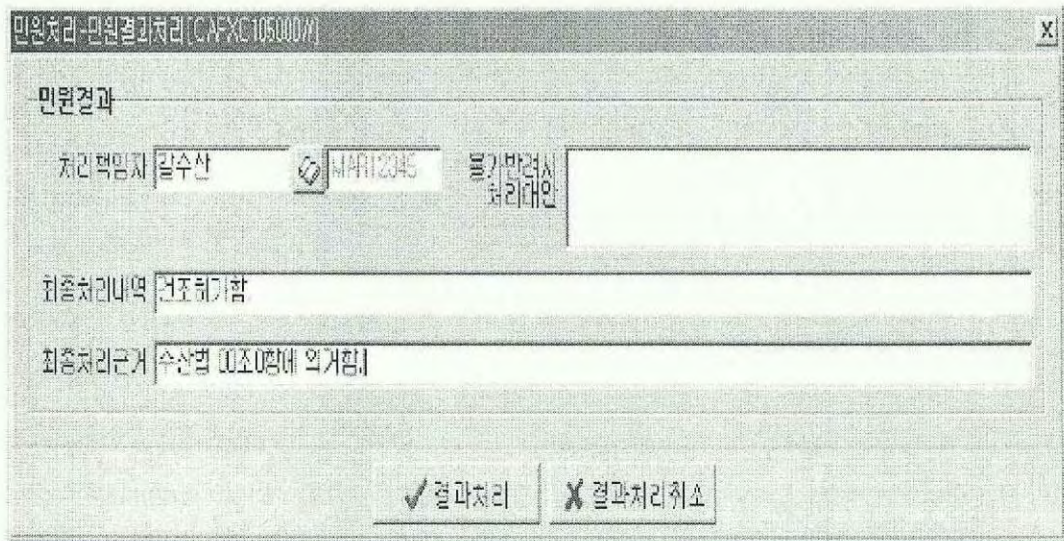
- 민원접수번호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한다.

The screenshot displays a search interface for case information. It features a search bar, filters for application period and status, and a table of results. The table has columns for '접수번호' (Case No.), '민원명' (Case Name), '유형' (Type), '처리내역' (Processing Record), '접수일자' (App. Date), '처리일자' (Proc. Date), and '민원명' (Case Name).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 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 후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 결과처리 및 저장

- 소유자, 어선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 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참고사항

- 대체어선번호는 필수입력사항 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한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대체 어선이 없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사항만 입력 후 바로 결과처리를 하면 된다.
- 화면 하단의 [등록내역수정]버튼을 누르면 대장정정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은 초기자료를 입력하거나 이미 결과 처리된 대장을 정정하는 역할을 한다.

나.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접수 내역 등록

1) 업무설명

-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접수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registering fishing vessel modification/creation permit application records. The form is titled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접수내역등록' and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민원접수번호**: 2004, 5020000, 0001187
- 민원신청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주소: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11번지
 - 주민등록일자: 2004-05-18
- 소유자**:
 - 소유주구분: 개인
 - 사업자구분:
 - 주민등록번호: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동길동]
 - 주소: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11번지
 - 대표자번호:
 - 대표자:
 - 주소:
- 개조어선내역**:
 - 어선번호: 0001001-6267102
 - 길이: 2.00 m 너비 2.00 m 길이 3.00 m 총톤수 111.11톤
 - 어선기간: A07-육상차탈출디젤 55 PS 233 kW T 대
 - 선적항: 교육도 대한시 민국구 한라면 내리리 주소입력
 - 선적항: 교육항
 - 개조장소: 주소입력
 - 주소입력: 주소입력
 - 개조사유: 미-주요치수변경
 - 확용예정일:
 - 준공예정일:
 - 공서번호:
- 민원결과**: 처리구분 [처리중]
- 개조내역등록**: 등록내역수정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한다.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 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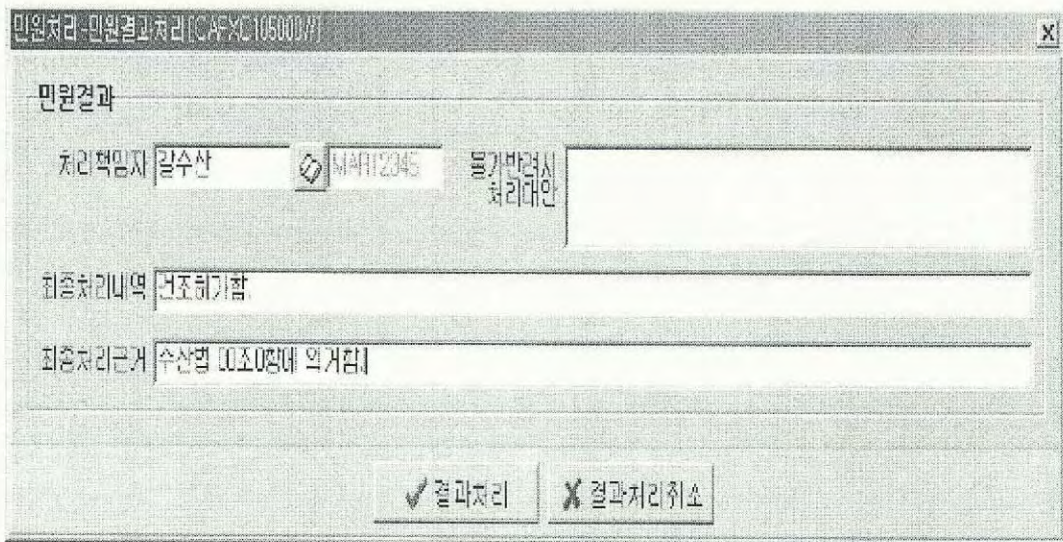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처리-민원접수조회관리' (Permit Processing - Permit Application Inquiry Management) screen. The interface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 처리부서**: 유산과
- 접수기간**: 2002-06-02 ~ 2002-05-02
- 민원상태선택**: 신규 접수 처리 실무종결심의회
- Table Columns**: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간	민원인
- Buttons**: [확인] (checked), [취소]

○ 결과처리 및 저장

- 소유자, 어선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대체어선번호는 필수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한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대체어선이 없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고 나머지 사항만 입력 후 바로 결과처리를 하면 된다.
- 화면 하단의 [등록내역수정]버튼을 누르면 대장정정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은 초기자료를 입력하거나 이미 결과처리된 대장을 정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내역등록

1) 업무설명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2) 업무절차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버튼을 눌러 처리완료된 민원을 조회한다.
- 건조허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허가조건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본 화면은 접수 처리한 내용을 조회한 것이고, [저장]버튼을 누름으로써 건개조 허가테이블에 최종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저장]버튼을 누른 이후 다시 조회하면 허가조건이 출력되지 않는다. [저장]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건조대장 정정화면에서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허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저장한다.
- 최종 처리를 끝낸 후 [출력]버튼을 눌러 건조허가증을 출력한다.

라.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내역등록

1) 업무설명

-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사업자] 민원인등록번호 [700119-2632019] 민원인명 [전영국] [1111111111]

주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연수일자 [2002-06-19]

건조어선내역

개조허가번호 [2002-022] 처리구분 [개조] 허가일자 [2002-03-28]

소유구분 [02-사업자] 사업자구분 [1-개인]

주미등록번호 [123456-7890] [정명(상호)] [(주)정동산업개발] [02-751-1615]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가안리 15번지1동1번지1호] C.P [011-751-1615]

대표자번호 [251515-151515] 대표자 [임완식] [031-558-5544]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구룡포읍 동태리 10번지10호5층5관] C.P

허가조건

전수상세내역

어선번호	선박명	권리주체등록번호	권리주체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123456-7890	(주)정?..	02-751-1615	011-751-1615

개조대상결정

2) 업무절차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버튼을 눌러 처리완료된 민원을 조회한다.
- 개조허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허가조건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본 화면은 접수처리 한 내용을 조회한 것이고, [저장]버튼을 누름으로써 개조허가 테이블에 최종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저장]버튼을 누른 이후 다시 조회하면 허가조건이 출력되지 않는다. [저장]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건조대장정정화면에서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허가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저장한다.
- 최종 처리를 끝낸 후 [출력]버튼을 눌러 건조허가증을 출력한다.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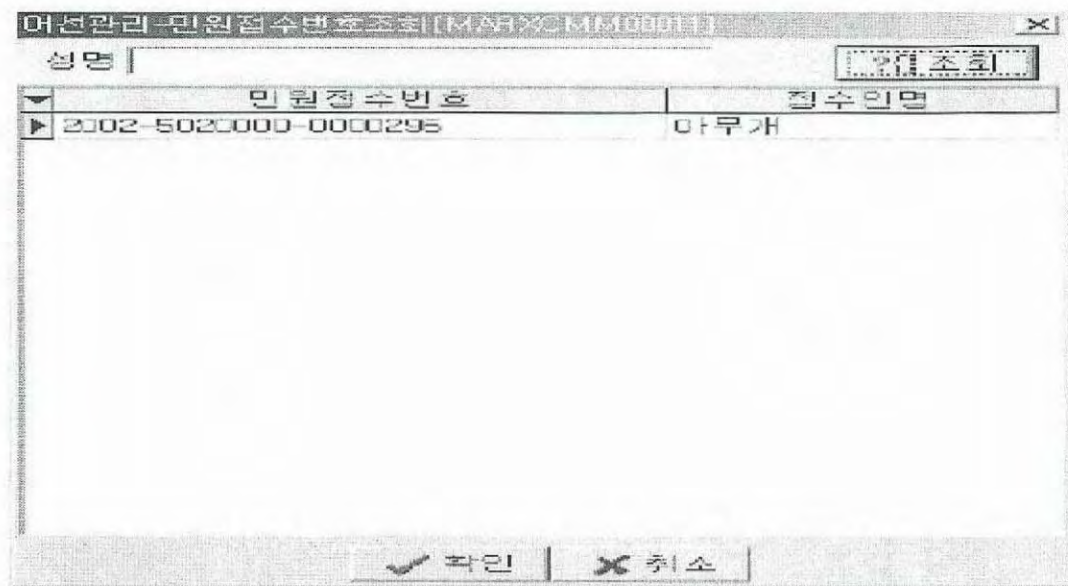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한다.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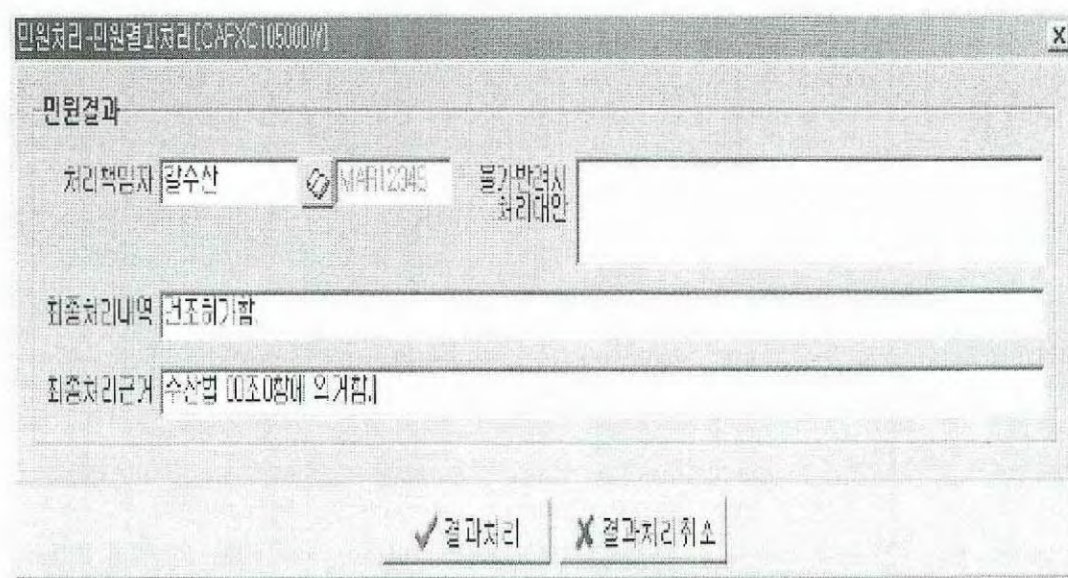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 결과처리 및 저장

- 변경구분을 선택한 후 건개조허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다.
번호를 모를때 책갈피 버튼을 눌러 건개조조회화면을 호출한다.
- 소유자 및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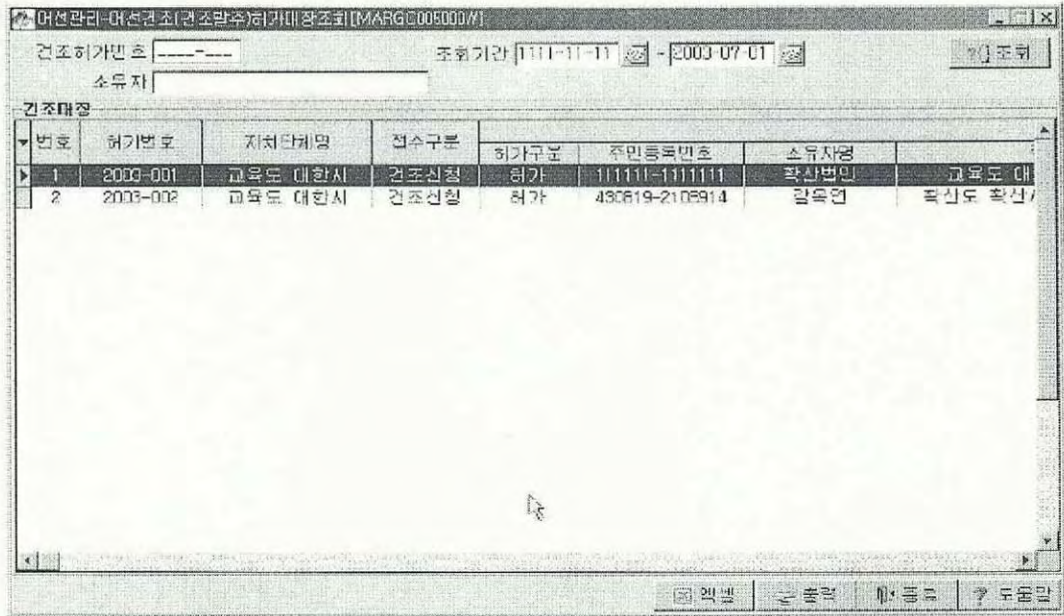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해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바.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조회

1) 업무설명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 업무절차

○ 조회 조건

- 건조허가번호, 조회기간, 소유자 조건 항목에 입력 또는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건에 따라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이 검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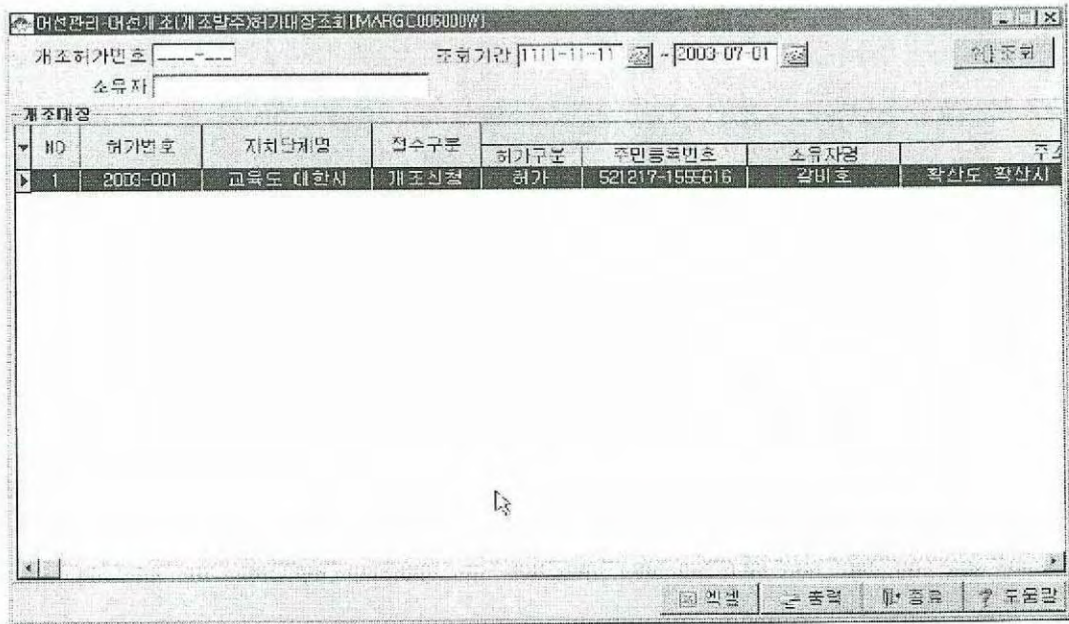
○ 출력

- [출력]버튼을 누르면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을 출력할 수 있는 미리보기 화면이 호출된다.

사.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 조회

1) 업무설명

-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 업무절차

- 조회 조건
 - 조회기간 조건 항목에 입력 또는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건에 따라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이 검색된다.
- 출력
 - [출력]버튼을 누르면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을 출력할 수 있는 미리보기 화면이 호출된다. [엑셀]버튼을 누르면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이 엑셀파일로 출력이 된다.

아.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대장 정정

1) 업무설명

- 어선건조(건조발주)대장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어선관리-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대장정정(M496)0000000000'. The main content area i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values:

- 건조허가번호: 2000-003
- 등록시군구코드: 6020000
- 접수구분: 어선조선행
- 건조허가제부내역:
 - 소유주구분: 어선가업
 - 사업자구분: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
 - 성명(상호): 마두재
 - 전화번호: 02-5412-8745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가음면 가음리 12번지
 - U.P: 33333
 - 대표자번호:
 - 대표자:
 - 주소:
 - U.P:
 - 대위어선번호:
 - 어선번호: 2223000-건만자말어선
 - 길이: 1.00 m, 너비: 2.00 m, 깊이: 3.00 m, 총톤수: 4.00 톤
 - 어선기관종류: 601-전력발전기
 - HP: 335 kW
 - 대어선제식: 3-441
 - 준공일자: 2000-12-30
 - 착공일자: 2000-11-03
 - 기타설비: 장구
 - 건조사유: 2-대체
 - 자기부담: 99,999 원
 - 정부보조: 5,000 원
 - 신청장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 주소입력: 신청항|부산항
 - 건조장소: 전라남도 여주시 돌진동
 - 우우리: 487번
 - 주소입력: 조선소|신진FRP조선소
 - 허가조건: 1. 30일내 건조발주 할것, 2. 건조발주표기시 연락요망(02-777-7777)
 - 허가구분: 정정(직공)
 - 허가일자: 2000-11-05
 - 변경사유: 폐기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are buttons for '어선건조전수', '건조대장조회', '추가', '저장', '삭제', '승인', '등록', and '도움말'.

2) 업무절차

○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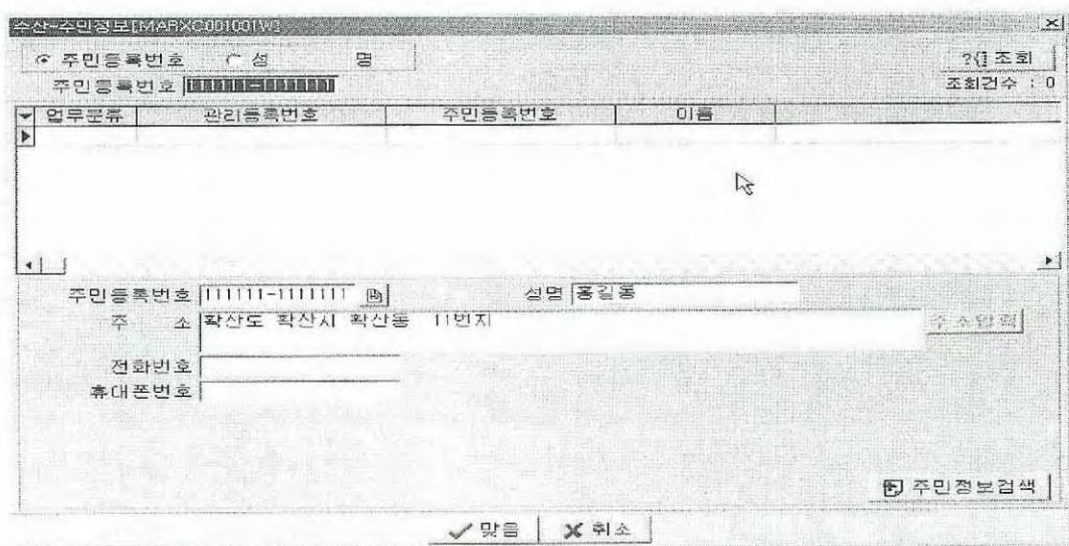
- 추가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건조허가번호가 생성된다.(수정불가)
- 자료를 입력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 필수 입력항목 : 건개조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 정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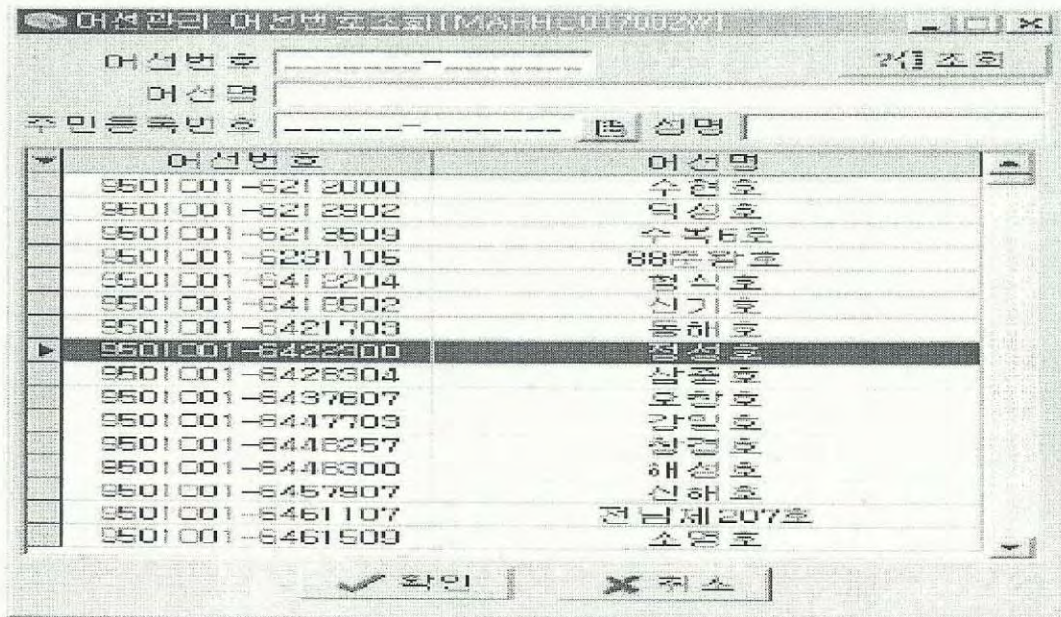
- 건조허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는 상단의 건조허가번호를 입력 [조회]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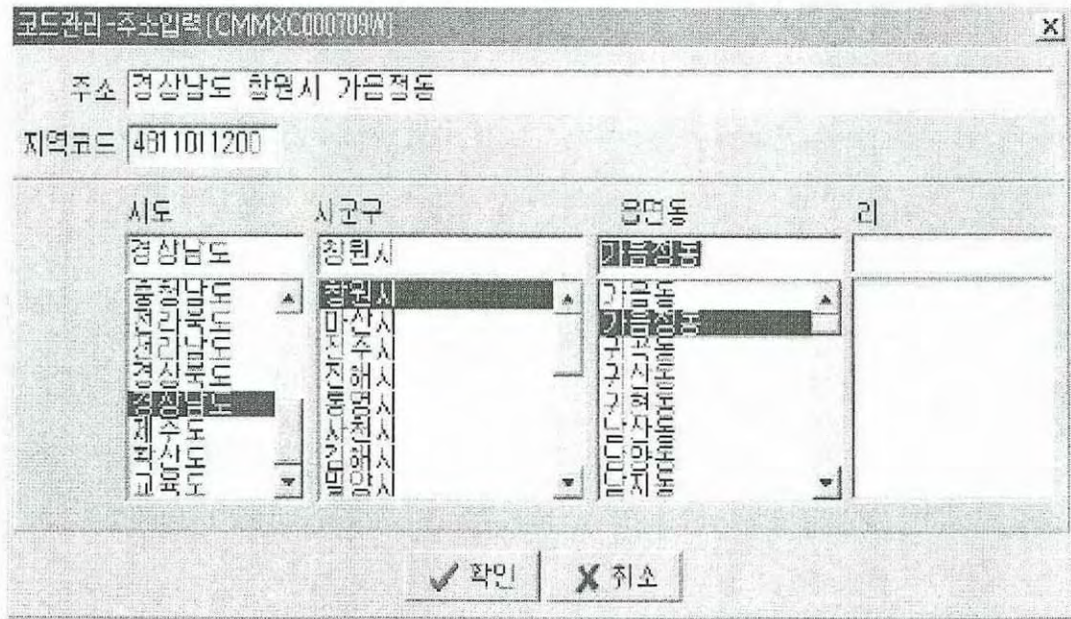
- 정정 및 변경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단의 소유주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우측의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하단의 화면은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화면이 상이하다.



- 조회옵션을 선택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주민정보확인 화면이 나타난다.
- 확인후 [맞음]버튼을 눌러서 빠져 나온다.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후 [맞음]버튼을 눌러 주민자료를 가져 온다.
- 조회결과가 없을 경우 [추가]버튼을 눌러 사용자를 입력한 후 [맞음]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내용이 출력된다.
- 법인/사업자등도 위 방법처럼 직접 입력해야 한다.
- 피대체어선번호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피대체어선번호 입력창의 오른쪽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 원하는 어선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선적항 주소 입력시 우측의 주소입력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화면이 호출된다.



- 주소를 입력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삭제

-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된 자료를 삭제 하고자 할 때 [삭제]버튼을 누른다.

자.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대장 정정

1) 업무설명

- 어선개조(개조발주)대장을 관리하는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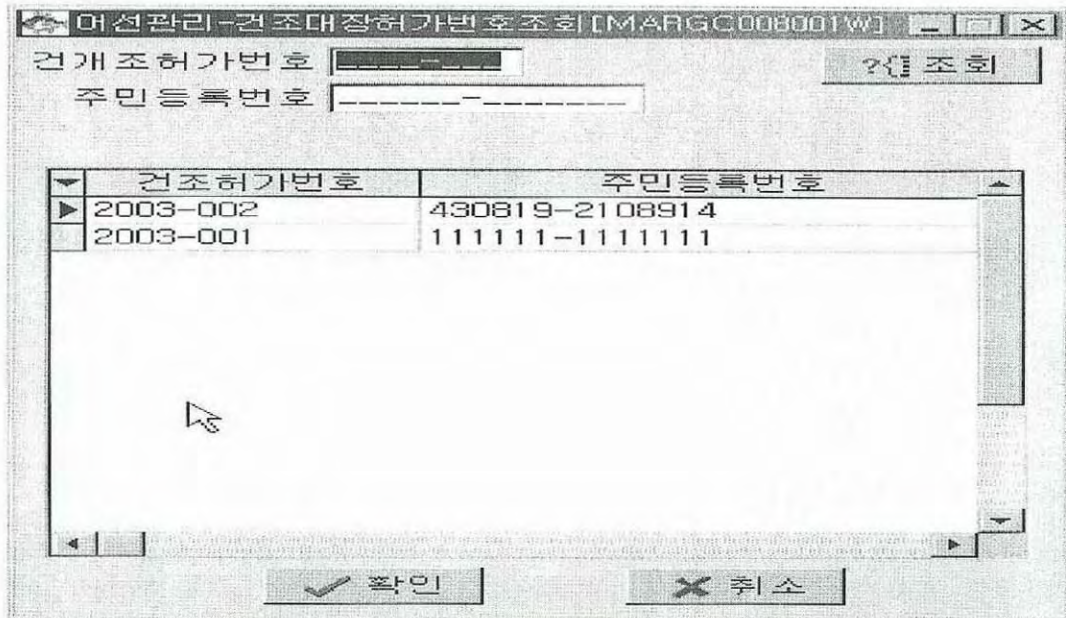
2) 업무절차

○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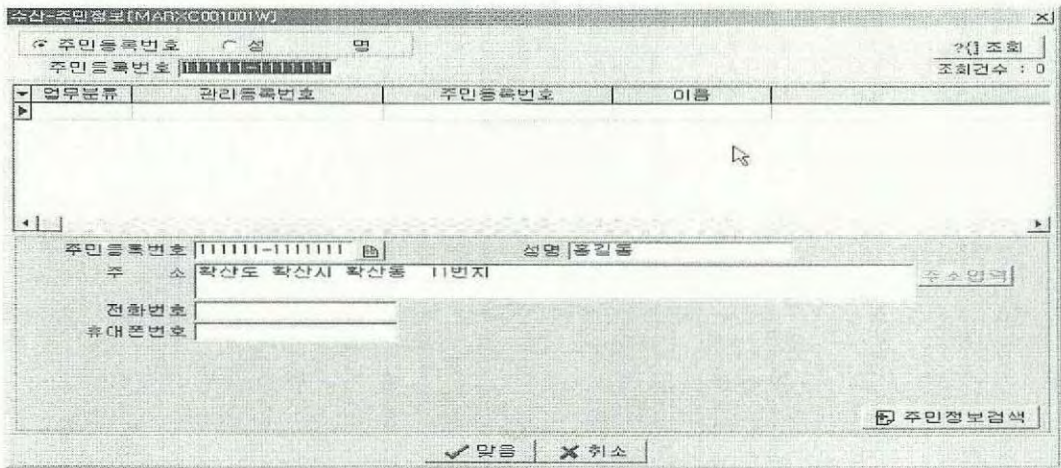
- 추가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개조허가번호가 생성된다.(수정불가)
- 어선번호 옆 책갈피 버튼을 눌러서 어선을 조회하면 나머지 내용을 호출한다.
- 자료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 필수 입력항목 : 개조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 정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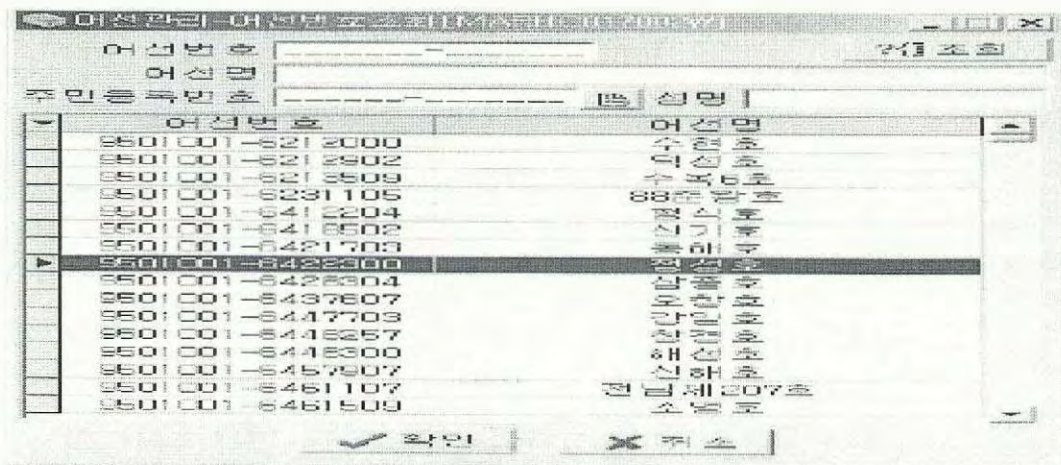
- 개조허가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는 상단의 개조허가번호를 입력 [조회]버튼을 누른다.
- 개조허가번호를 모를 경우 상단의 개조허가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 버튼을 누른다.
- 원하는 개조허가 번호를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른다.
- 화면에 해당 개조허가내역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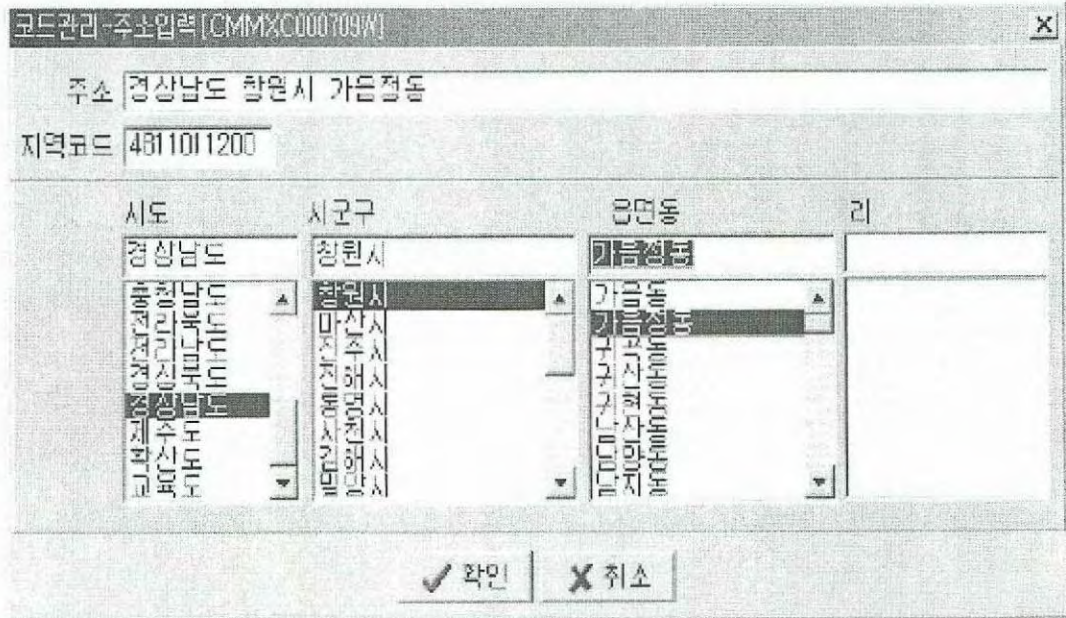
- 정정 및 변경 후 [저장]버튼을 누른다.
- 소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단의 소유주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하단의 화면은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화면이 상이하다. (법인과 개인을 제외한 각 단체를 신규 추가 시 단체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번호가 없는 어촌계는 소유자구분을 단체로 입력하면 된다.)



- 조회옵션을 선택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버튼을 누르면 주민정보확인 화면이 나타난다. 확인후 [맞음]버튼을 눌러서 빠져 나온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후 [맞음]버튼을 눌러서 주민자료를 가져 온다.
- 조회결과가 없을 경우 [추가]버튼을 눌러 사용자를 입력한 후 [맞음]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내용이 출력된다. 법인/사업자등도 위 방법처럼 직접 입력해야 한다. 피대체어선번호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피대체어선번호 입력창의 오른쪽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 원하는 어선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 선적항 주소 입력시 우측의 주소입력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화면이 호출된다.



- 주소를 입력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른다.
- 개조장소 입력시 주소버튼을 눌러서 상기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버튼 왼쪽에 상세한 장소를 입력한다.

○ 삭제

-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를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한 후 [삭제] 버튼을 누른다.
- 삭제여부 메시지에서 예를 선택하면 완전삭제 되므로 조심하면서 삭제한다.

어선등록접수

가. 어선등록 접수내역 등록

1) 업무설명

- 어선등록을 접수등록하는 화면이다.

어선관리-어선등록접수 [MARHC001000W]

민원접수번호 [2004 5020000 0001188] ?[?]조회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111111-111111] 민원인명 [홍길동] ☎

주 소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11번지] 접수일자 [2004-05-18]

소유자및공유자 [어선내역] 기타내역조회

소유자

소유자구분 [미-개인] 사업자구분 []

주인등록번호 [111111-111111] 개인명 [홍길동] ☎

주 소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11번지] C.P []

대표자번호 [] 대표자 [] ☎

주 소 [] C.P []

공유자

주인등록번호	성명	문자	문모	주소

민원결과

처리구분 [00-처리중] 처리일자 []

어선내역등록 [] 결재기안 [] 결과처리 [] 등록저장 [] 종료 [] ? 도움말

어선관리-어선등록접수 [MARHC001000W]

민원접수번호 [2004 5020000 0001188] ?[?]조회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111111-111111] 민원인명 [홍길동] ☎

주 소 [확산도 확산시 확산동 11번지] 접수일자 [2004-05-18]

소유자및공유자 [어선내역] 기타내역조회

[주요치수및기관]

길이 [3.90 m] 너비 [1.60 m] 깊이 [0.70 m] 총윤수 [1.50 m] 범창 [0 m]

[비용]

어선위장소용적합계 [0.000] 갑판이하용적 [0.000]

[갑판위용적]

합계	0.000	갑판	0.000	기타	0.000
선수루	0.000	선교루	0.000	선미루	0.000

[제외용적]

합계	0.000	갑판	0.000	기타	0.000
선수루	0.000	선미루	0.000	선교루	0.000

[피대채어선번호 및 내역]

피대채어선번호 [0001001-6267102] ?[?]조회 [] 어업허가조회 []

건개조구분 [건조허가번호] [2004-004] ?[?]조회

등록번호 [2003-005] 등록사유 [11-건조] ?[?]조회

어선내역등록 [] 결재기안 [] 결과처리 [] 등록저장 [] 종료 [] ? 도움말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한다. 우측상단의 접수기간,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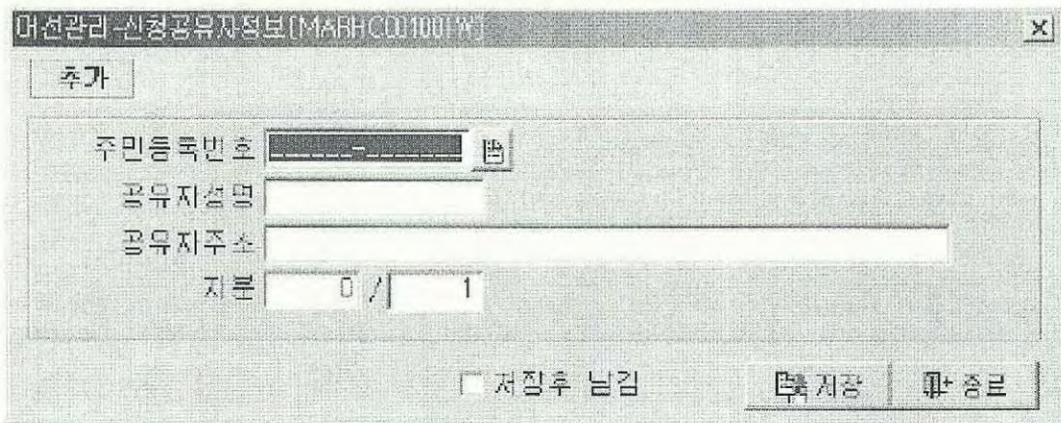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	-----	----	------	------	------	-----

○ 결과처리 및 저장

- 소유주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우측의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하단의 화면은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화면이 상이하다.

업무분류	관리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	--------	--------	----

- 상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아래 [주민정보검색] 버튼을 눌러 내용을 입력해서 주민정보를 조회한 후 [맞음], [맞음]버튼을 눌러 해당 자료를 메인 화면에 불러온다. 관리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어촌계의 경우 소유주 구분을 일반단체로 하여 개인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 공유자는 신규 입력시 [주민정보검색]버튼을 눌러 아래화면을 호출하여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책갈피]버튼을 눌러 상단의 화면과 동일한 조회화면을 통해 입력한다.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조회된 공유자를 선택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수정 후 저장한다. 계속 수정시 우측 하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앞뒤의 공유자가 호출된다.



머선관리-신경공유자정보 [MARB001001.W]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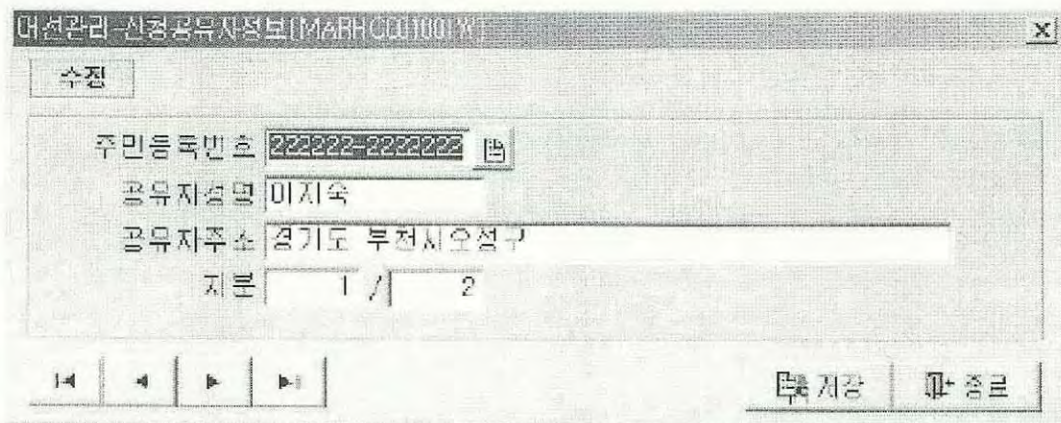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공유지성명

공유지주소

지분 /

저장후 남김



머선관리-신경공유자정보 [MARB001001.W]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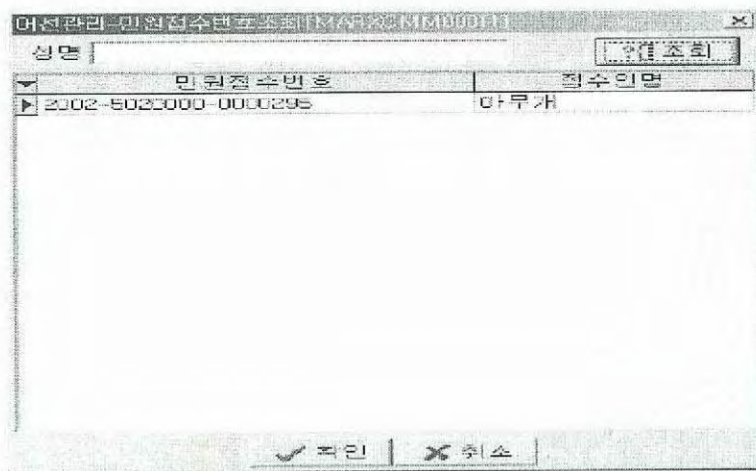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공유지성명

공유지주소

지분 /

- 기타 어선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 또는 [접수인검색]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해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민원처리 - 민원결과처리 [CAFXC1060001]

민원결과

처리 책임자 갈수산

처리내역

불가반려사 처리대안

최종처리내역 건조허가함

최종처리근거 수산물 00조0량에 의거함

결과처리 결과처리취소

-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접수내역등록 화면을 호출하여 제한조건 등 최종 내역을 입력하여 업무를 종결한다.

○ 주요항목설명

- 주민등록번호 :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고, 오른쪽 책갈피 버튼에서 호출되는 화면도 바뀐다.
- 어선등록사유 : 사유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단일화 시켜 추가 요청 하셔야 한다.
- 피대체어선번호 : 피대체어선번호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어선번호조회 화면이 호출된다. 직접입력하여 [조회]버튼을 누르면 어선내역과 어업허가내역이 조회된다.
- 어업허가내역 : 어업허가업무에서 관련된 어업허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다.
- 건개조허가번호 : 건개조구분을 선택하고, 직접입력 또는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할 수 있다. 건개조번호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건개조업무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용이 호출되지 않는다.

○ 참고사항

- 어업업무와 건개조 업무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각 조회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 총톤수 측정기관 조회 >

1. 해양수산부에 해당 PC의 IP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 해양수산부어선시스템이 설치되었던 PC는 등록되어 있으나 도중에 PC를 변경하였을 경우는 해당 IP를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2. oracle client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C:\orawin95 또는 C:\oracle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C:\orawin95\network\tnsname.ora 또는

C:\oracle\admin\network\tnsname.ora 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체크 하여 없을 경우 복사하여 넣어준다.

```
MOMAF =  
(DESCRIPTION =  
(ADDRESS_LIST =  
(ADDRESS = (PROTOCOL = TCP)(HOST = 10.27.6.10)(PORT = 1521))  
)  
(CONNECT_DATA =  
(SID = ORA8)  
)  
)
```

나. 어선 등록내역 등록

1) 업무설명

- 어선내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민원접수번호 [2002-5020000-0000638] [인] 조회

민원인원척지판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등록번호 [870201-1158318] 민원인명 [박재형]
 민원인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접수일자 []

소유자
 어선번호 [0208004-5020000] 등록시군구 [] 어업 []
 선박명 [1111] 어선표지판 []
 소유주구분 [개인] 사업자구분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 성명 [홍상범] 생년월일 [999-9999]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리 2222222] C.P []
 대표자번호 [] 대표자 [] C.P []
 주소 [] C.P []

공유자	관리주체등록번호	성명	문자	본보	주소
▶	11111-111111	전종숙	1	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기계면 남계리
	222222-2222222	이지숙	1	2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내동 941번지5...

변경결과
 처리구분 [개인] 처리일자 [2002-08-30]
 [인] 저장 | [인] 등록 | [인] 등록 | [인] 등록

2) 업무절차

- 접수내용조회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한다.

어선관리-민원접수번호조회 [MARHC00200W]

성명 [] [인] 조회

민원접수번호	접수인명
▶ 2002-5020000-0000295	마무개

[인] 확인 | [X] 취소

-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내용을 호출한다.
- 상기화면의 내용은 민원에서 접수된 내용만 조회가 된다.
- 상기 화면은 어선등록접수화면에서 결과처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야 해야 한다.
- 조회와 동시에 어선번호가 생성된다.

○ 저 장

-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저장을 하면 어선원부에 저장됨으로써 어선등록업무가 끝난다.

○ 출 력

- [출력]버튼을 누르면, 톤수와 기관을 비교하여 등록증,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출력된다.

3) 주요항목설명

- 어선번호 : 어선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있.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어선대장정정화면에서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 해당 업무화면에서는 어떤 내용도 수정할 수 없다. 단지 어선번호가 생성되고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 할 수 있을 뿐이다. 수정은 접수한 이후 결과처리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해당 화면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저장처리를 한 후 어선대장정정화면에서 수정가능하다.

다. 어선등록내역 조회

1) 업무설명

- 어선등록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 업무절차

○조회 조건

- 어선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는 상단의 어선번호를 입력후 [조회] 버튼을 누른다. 어선번호를 모를 경우 상단의 어선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 버튼을 누른다. 원하는 어선번호번호를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른다. 화면에 해당 어선번호의 어선등록내역이 보여진다.

어선번호	어선명
0001001-8277102	신선호
0001001-8262009	경선호
0001001-8263204	새부선호
0001001-8263508	은진호
0001001-8263802	제2양양호
0001001-8264409	해선호
0001001-8265006	수양호
0001001-8265300	기동호
0001001-8267102	돌판호
0001001-8287108	제2삼남호
0001001-8287206	제3유선호
0001001-8311705	경선호
0001001-8317101	일진
0001001-8412703	만선호
0001001-8413908	베드로호
0001001-8415700	전현1호

라. 어선등록사항 정정 등록

1) 업무설명

- 등록한 사항의 착오가 있는 신청자는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33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처리순서
 - 민원접수번호와 신청내역을 어선원부정정신청정보에 등록한다.
 - 기안결재후 대장 및 어선원부정보, 어선원부공유자정보, 어선원부대장정보, 어선원부대장공유자정보에 어선의 신청사항을 등록한다.
 - 민원인에게 선박국적증서(35호서식), 선적증서(36호서식), 등록필증(37호서식)을 발급하고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어선등록사항을 보고한다.
 - 어선등록사항 정정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어선관리-어선등록사항정정등록 [MARHC0030000]'. The interface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민원접수번호**: 2003 0070000 300122 (with a search icon and '접수인 검색' button)
- 민원신청인정보**:
 - 민원인구분: 개인
 - 민원인등록번호: 660425-2691311
 - 민원인명: 김영근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18번지 45동 2반 유원해나미파트 3층
 - 접수일자: 2006-03-13
- 소유자및공유자 | 이선내역 | 기타내역조회 |**
- 소유자** section:
 - 어선번호: 0301002-6687706
 - 소유자구분: 01-개인
 - 사업자구분: (dropdown)
 - 주민등록번호: 660425-2691311
 - 성명: 김영근
 - 주소: 경상도 함산시 함산동 418번지 803호 45동 2반 유원해나미파트 3층 80
 - 대표자번호: (input field)
 - 대표자: (input field)
 - 주소: (input field)
- 공유자** table:

주민등록번호	성명	분자	분모	주소
▶				
- 민원결과** section:
 - 처리구분: 00(신청대기)
 - 처리일자: (input field)
- Bottom navigation:
 - 버튼: 뒤로가기, 새로고침, 종료, 도움말

마선관리-마선등록사항신청등록 [MARHC003000W]

신청번호 2002 5020000 0009647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111111-111111 민원인명 이선정정등록 111111111111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소유지및공유자 이선내역 |기타내역조회|

[출원수속절기권]

속절기관 년도 2002 번호 001

[선박명 및 내역]

선박명 호출번호

진수일자 2002-01-01

[조선소 및 선적항]

선적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기계면 가안리 주소입력 포함항 포함항

조선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기계면 가안리 주소입력 조선소 포함조선소

[기관 및 추진기]

기관 ADI-선박공디젤 55 KW 77 PS 8 대

추진기 2-13선조련식 5 대

마선관리-마선등록사항신청등록 [MARHC003000W]

신청번호 2003 0070000 3000122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660425-2631311 민원인명 김영은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18번지 45동 2인 유원하나아파트 3동 진수일자 2003-03-13

소유지및공유자 이선내역 기타내역조회|

[주요치수및기권]

길이 899.99 m 너비 1.00 m 길이 400.00 m 승중수 10.00 ton 범장 0 m

[용적]

이선위장소용적합계 0.000 갑판이하용적 0.000

[갑판위용적]

합계 0.000 갑판 100.000 기타 0.000

선수루 0.000 선교루 0.000 선미루 0.000

[제외용적]

합계 0.000 갑판 0.000 기타 0.000

선수루 0.000 선미루 0.000 선교루 0.000

[피대제이선번호 및 내역]

발소/연결사유 피대제이선번호

발소/연결사유 및 담보상황 입력하는 부분

건제조구분

증서번호

등록사유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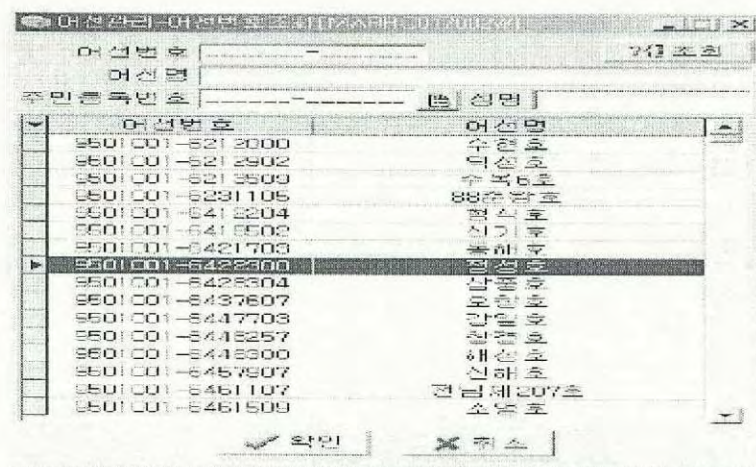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한다.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3) 결과처리 및 저장

- 어선번호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어선번호 입력창의 오른쪽 **책갈피**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 원하는 어선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어선원부의 내역이 화면에 호출된다.
- 소유주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우측의 [책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하단의 화면은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화면이 상이하다.

-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화면 중간의 주민등록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은 주민정보를 가져오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어촌계의 경우 소유주구분을 일반단체로 하여 개인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된다.

- 공유자는 신규 입력시 [추가]버튼을 눌러 아래화면을 호출하여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채갈피]버튼을 눌러 상단의 화면과 동일한 조회화면을 통해 입력한다.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조회된 공유자를 선택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수정 후 저장한다. 계속 수정시 우측하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앞뒤의 공유자가 호출된다.

머선관리-신청공유지정보(MARHCD01001.W)

추가

주민등록번호 [채갈피]

공유지성명

공유지주소

지분 0 / 1

저장후 넘김

머선관리-신청공유지정보(MARHCD01001.W)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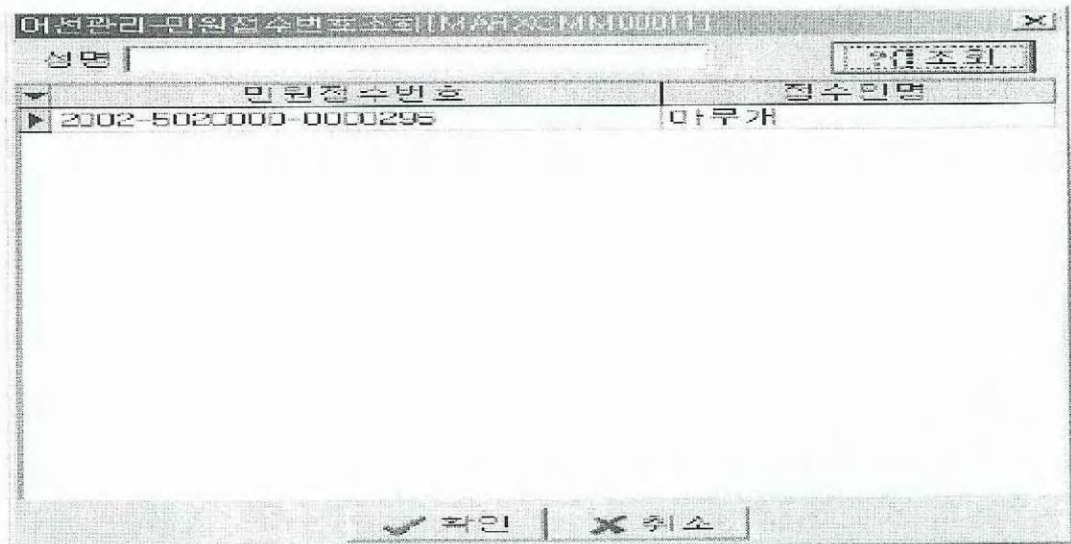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채갈피]

공유지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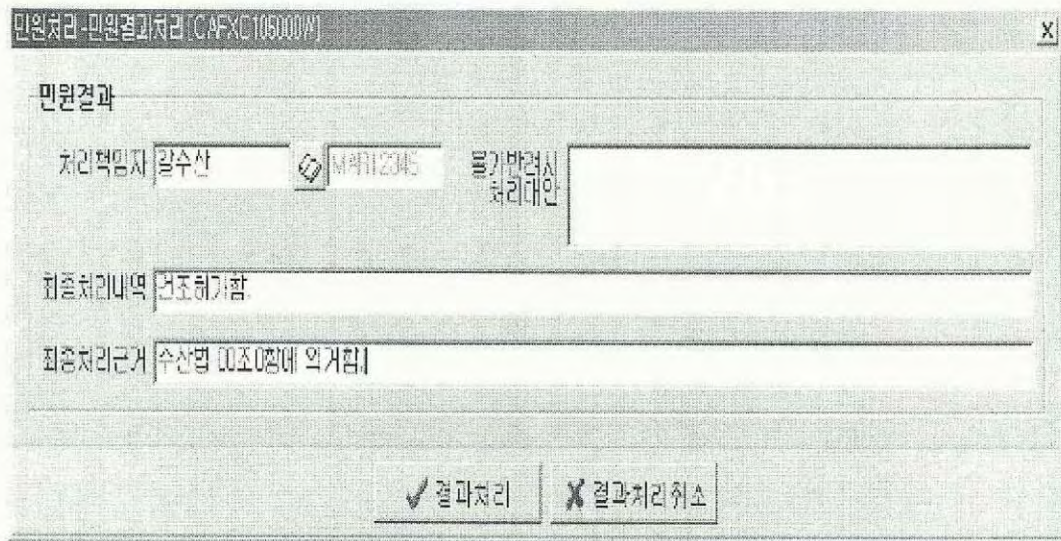
공유지주소

지분 1 / 2

- 기타 어선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 또는 [접수인검색]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하여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4) 주요항목 설명

- 주민등록번호 :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고, 오른쪽 책갈피 버튼에서 호출되는 화면도 바뀐다.
- 어선등록사유 : 사유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단일화 시켜 추가 요청 하여야 한다.
- 어선번호 : 어선번호 우측의 [책갈피]버튼을 이용하여 어선을 조회하여야 화면의 각 항목의 내용이 조회된다.
- 어업허가내역 : 어업허가업무에서 관련된 어업허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다.
- 건개조허가번호 : 건개조구분을 선택하고, 직접입력 또는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할 수 있다. 건개조번호란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조회]버튼을 누르면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건개조업무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용이 호출되지 않는다.

마. 어선등록 말소등록

1) 업무설명

○ 어선을 말소시킨 신청자는 어선등록말소신청서(별지34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처리순서

- 민원접수번호와신청내역을 어선원부말소신청정보에 등록한다.
- 기안결재 후 대장 및 어선원부정보, 어선원부공유자정보, 어선원부대장정보, 어선원부대장공유자정보에 어선의 신청사항을 등록한다.
- 민원인에게 어선 말소사항을 통보하고, 시도및해양수산부에 어선등록사항을 보고한다.
- 어선등록말소를 접수처리하는 화면이다.

어선관리-어선말소등록 [MARH00040000]

민원접수번호 [2008-0070000] [20080628] [접수인검색] [입조호]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621217-1555516] 민원인명 [김비호] [02-449-4390]
 주 소 [경북도 대구시 북구 천치동 산정리 1번지] 접수일자 [2008-06-04]

말소어선내역
 어선번호 [0301005-5557703] 선박명 [서동]
 소유주구분 [미개원] 사업지구분 []
 주민등록번호 [430023-1400111] 개인명 [이영근] []
 주소 [학산로 학산시 학산동 595번지 22동 2번 맨주주공5단지아파트 503동 5] C.P.
 대표번호 [] 대표자 [] []
 주소 [] C.P.
 말소사유 []

어선내역

어선번호	지치단체명	선박명	소유주
0301005-5557703	경북도 대구시	서동	이영근

민원결과
 처리구분 [00-정리중] 처리일자 []

[이전화면] [뒤로가기] [종료] [도움말]

2)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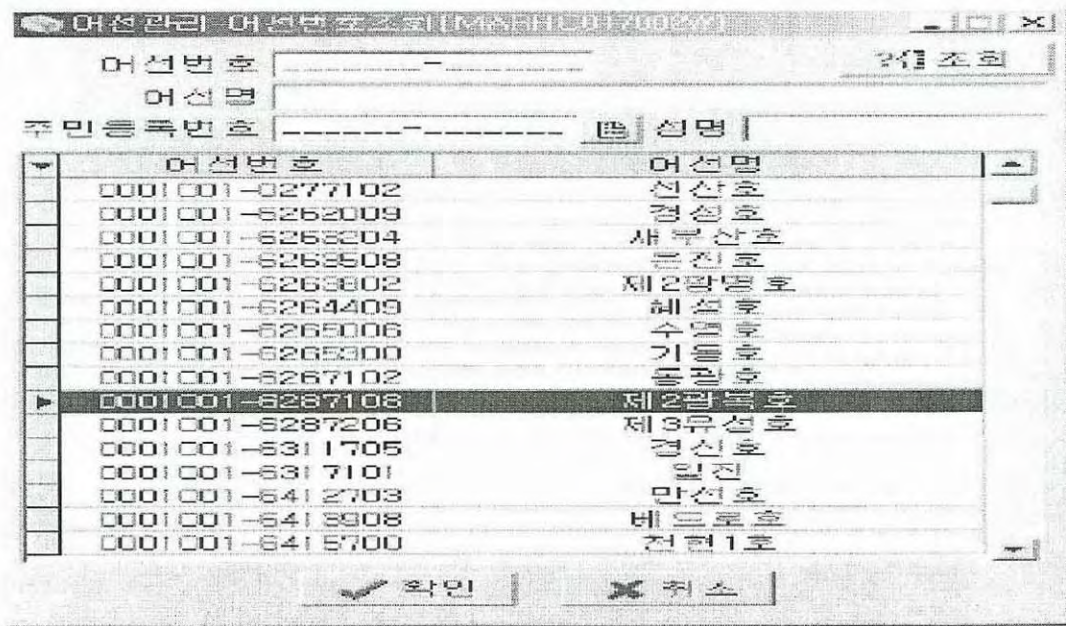
○ 민원접수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한다.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 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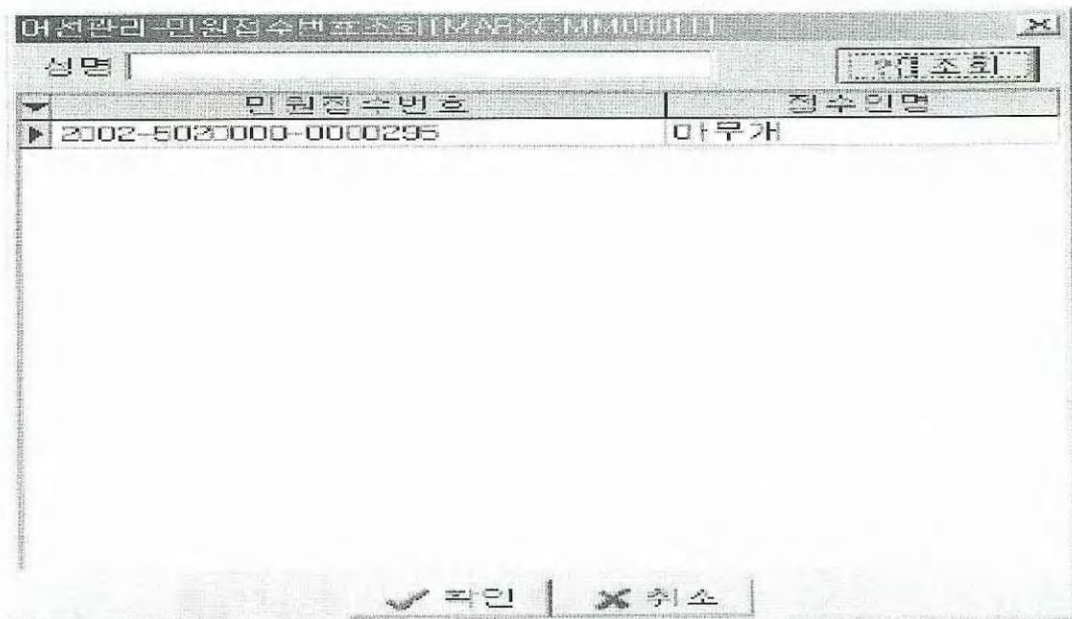
○ 결과처리 및 저장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간	민원인
------	-----	----	------	------	------	-----

- 어선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서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 버튼을 누른다. 원하는 어선번호번호를 선택한 후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른다. 화면에 해당 어선번호의 내역이 보여진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 또는 [접수인검색]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해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접수내역등록 화면을 호출하여 제한조건 등 최종 내역을 입력하여 업무를 종결한다.

3) 주요항목 설명

- 어선번호 : 어선번호의 우측 [책갈피]버튼을 이용하여 조회하여야 내역이 호출되어 화면의 각 항목에 보여진다.

4) 참고사항

- 어선원부에 내역이 없으면 각항목의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소 업무자체가 완결되지 않는다.

바. 증서재교부등록

1) 업무설명

○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또는 증서를 재발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19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처리순서

- 민원접수번호와신청내역을 증서재교부신청정보에 등록한다.
- 재발급증서에 해당되는 허가 및 등록사항 자료를 조회한다.
- 기안결재 후 어선증서교부정보,건개조허가증재교부정보에 증서재교부 신청사항을 조회한다.
- 민원인에게 재교부신청한 증서를 발급한다.

○ 증서재교부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민원접수번호	2002	5020000	0006907	조회			
민원신청인정보							
민원인구분	개인	민원인등록번호	111111-111111	민원인명	증서재교부민원인	전화번호	1111-1111-1111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제면 가안리			접수일자	2002-09-05		
접수내역							
접수구분	40-건조제교부						
접수번호	2002-001					조회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		성명	이부재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기곡면 기곡리 12번지						
등록시 군구	5020000		전화번호	02-5412-8744		팩시밀리번호	33333000
증서번호			등록일자	2002-08-28			
민원결과							
처리구분	미-해결					처리일자	
이전가리리 목록 등록 종료 도움말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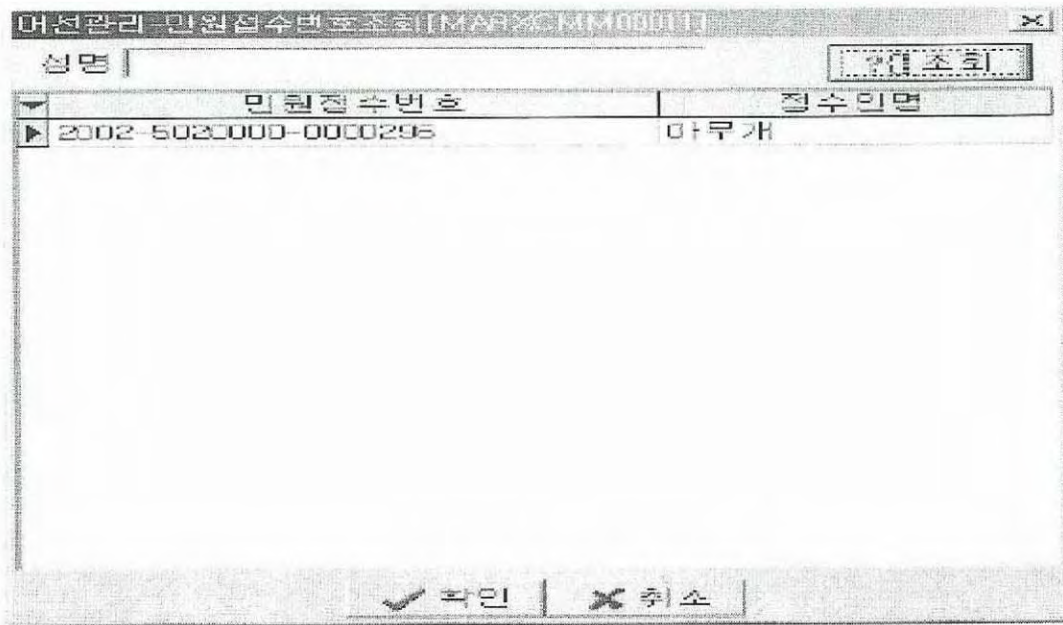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한다.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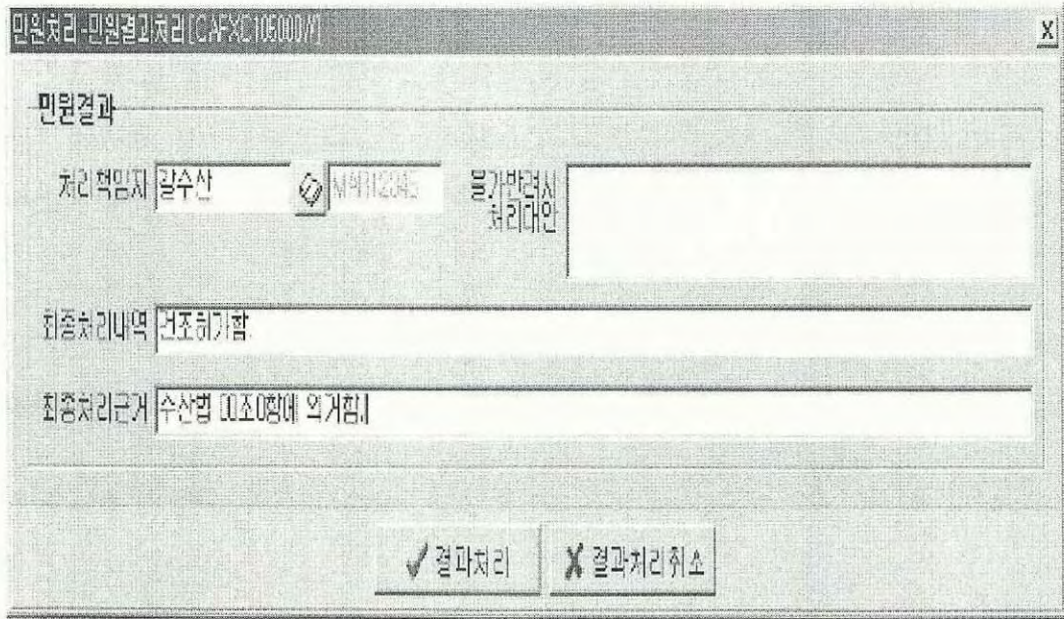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 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 결과처리 및 저장

- 접수구분을 선택하면 아래에 칸에 어선번호 또는 건개조허가 번호를 입력한 후 우측의 [조회]버튼을 누른다. 관련된 내용이 호출되면 선택구분에서 선택한 출력화면이 출력됩니다. 어선의 경우 등록필증,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를 선택하였더라도, 어선원부의 톤수와 어선기관을 비교하여 자동선택되어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 출력후 또는 출력전에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하여 결과 처리를 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 또는 [접수인검색]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하여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 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3) 주요항목 설명

- 어선번호 : 어선번호 또는 건개조허가번호란의 우측[조회]버튼을 누르면 선택구분에 따라 조회되어 소유자를 호출한다. 어선자료 및 건개조자료에 소유자가 없을 경우 자료는 호출되지 않는다.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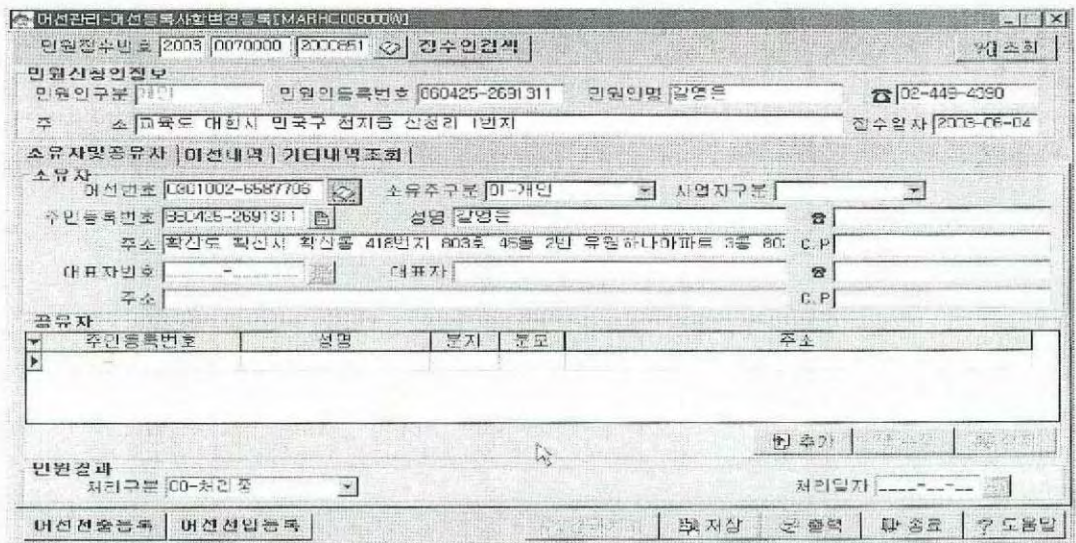
- 어선업무와 건개조업무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각 조회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 선박국적증서영역서제증명의 경우 선박국적증서출력 민원처리가 한 번이상 생겼던 어선번호에 한해 출력이 가능하다.

어 선 변 경

가. 어선변경 등록

1) 업무설명

- 소유한 어선의 변경이 있는 신청자는 변경등록신청서(별지31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처리순서
 - 민원접수번호와 신청내역을 어선원부변경신청정보, 어선원부변경공유자신청 정보에 등록한다.
 - 기안결재 후 대장 및 어선원부정보, 어선원부공유자정보, 어선원부대장정보, 어선원부대장공유자정보에 어선의 신청사항을 등록한다.
 - 민원인에게 선박국적증서(35호서식), 선적증서(36호서식), 등록필증(37호서식)을 발급하고,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어선등록사항을 보고한다.
 - 어선변경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민원접수번호 [2003-0070000] [2003-06-04] [정수인력] [조회]

민원신청일련번호
 민원인구분 [기타] 민원등록번호 [060426-269131] 민원인명 [김영준] [02-449-4390]
 주 소 [교육부 대청사 민국구 청지중 신청리 1번지] 접수일자 [2003-06-04]

소유자및공유자 [이선내역 기타내역조회]

[주요치수및기관]
 길이 [399.35] 너비 [1.00] 깊이 [400.00] 층층수 [10.00] 원 번호 [0]

[용적]
 이선위장소용적합계 [0.000] 감면이하용적 [0.000]

[감면위용적] [제외용적]
 합계 [0.000] 입관 [100.000] 기타 [0.000] 합계 [0.000] 입관 [0.000] 기타 [0.000]
 선우류 [0.000] 선교류 [0.000] 선미류 [0.000] 선우류 [0.000] 선미류 [0.000] 선교류 [0.000]

[피대제이선번호 및 내역]
 압수/년경사유 [압수/년경사유, 압도불충당함을 입회하는 부류입니다.] 피대제이선번호 [-----] [조회]
 견제소구분 [-----] [조회]
 승계번호 [-----] [대입외가조회]
 등록사유 [-----]

민원접수번호 | 민원접입번호 | [확인] | [취소]

2) 업무절차

○ 민원접수

- 민원접수번호의 우측 책갈피 버튼을 눌러 아래의 민원접수 조회화면을 호출한다.

민원처리-민원접수정보조회 [CAFXC0101010] [X]

처리부서 [수집과] 접수기간 [2002-06-02] ~ [2002-06-02] [조회]

민원상태선택: 신규 접수 처리 실무중합심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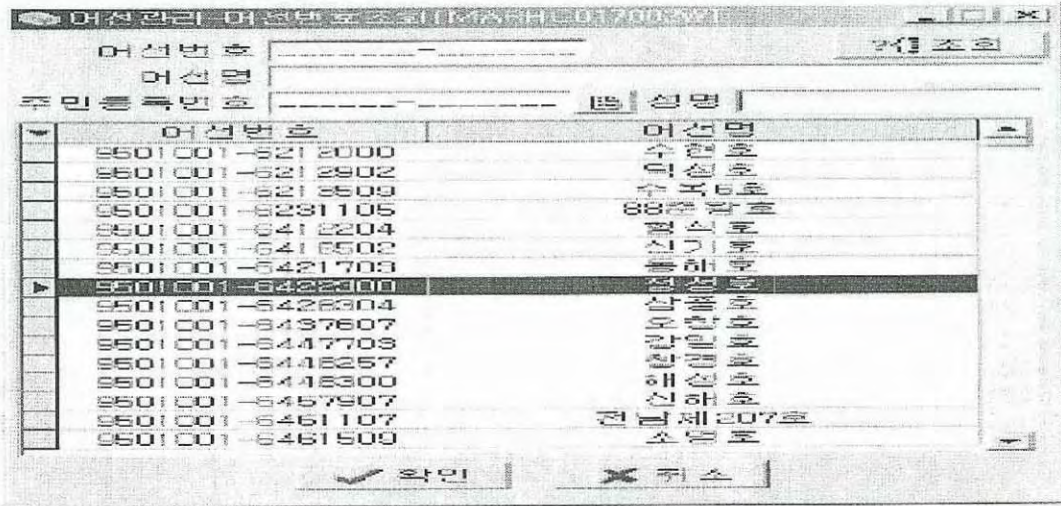
접수번호	민원명	유형	처리내역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Label5 [확인] [X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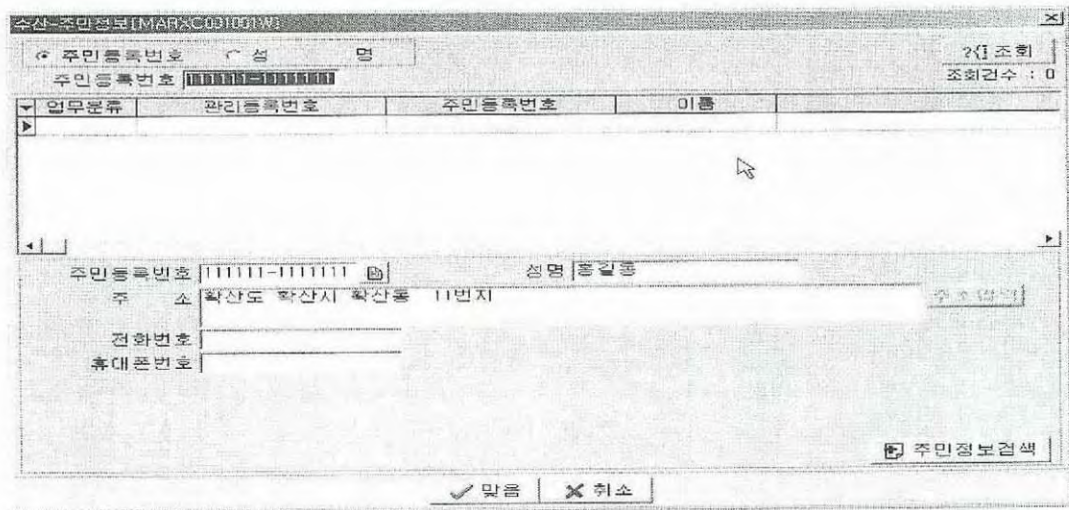
- 우측상단의 접수기간,민원상태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 접수된 민원을 조회한다.
- 조회된 민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누른다.

○ 결과처리 및 저장

- 어선번호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어선번호 입력창의 오른쪽 [채갈피]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 원하는 어선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어선원부의 내역이 화면에 호출된다.
- 소유주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우측의 [채갈피]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조회화면이 호출된다. 하단의 화면은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화면이 상이하다.



- 상단에 번호를 입력한다. [주민정보검색]버튼을 눌러 내용을 입력하고 [맞음]버튼을 눌러 주민자를 불러온다.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화면 중간의 주민등록번호의 우측 [채갈피] 버튼은 주민정보를 가져오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번호가 없는 어촌계의 경우 소유주구분을 일반 단체로 하여 개인을 입력하듯이 입력한다.
- 공유자는 신규 입력시 [추가]버튼을 눌러 아래화면을 호출하여 주민등록번호 우측의 [채갈피]버튼을 눌러 상단의 화면과 동일한 조회화면을 통해 입력한다.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는 조회된 공유자를 선택한 후 하단의 [수정]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수정 후 저장한다. 계속 수정시 우측하단의 화살표를 누르면 앞뒤의 공유자가 호출된다.

대전관리-신청공유자정보 [MARHCU1001*] X

추가

주민등록번호 [] 채갈피

공유자성명 []

공유자주소 []

지분 [0 / 1]

저장후 남김 [저장] [종료]

대전관리-신청공유자정보 [MARHCU1001*] X

수정

주민등록번호 [222222-222222] 채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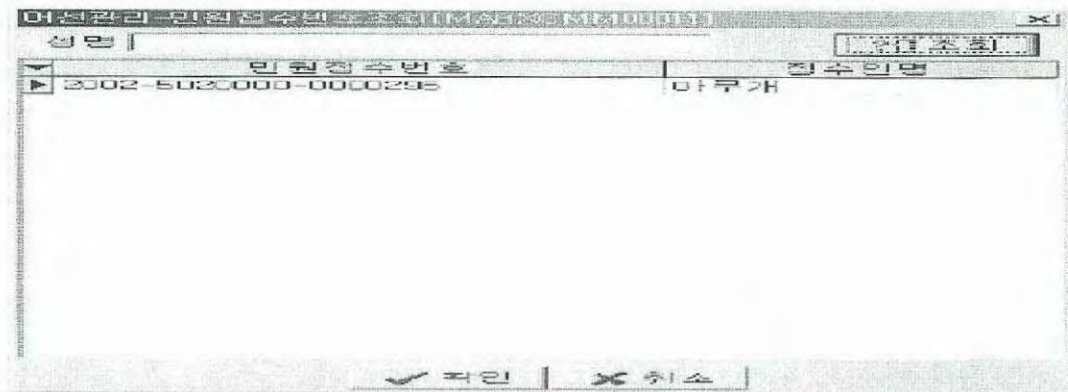
공유자성명 [이지숙]

공유자주소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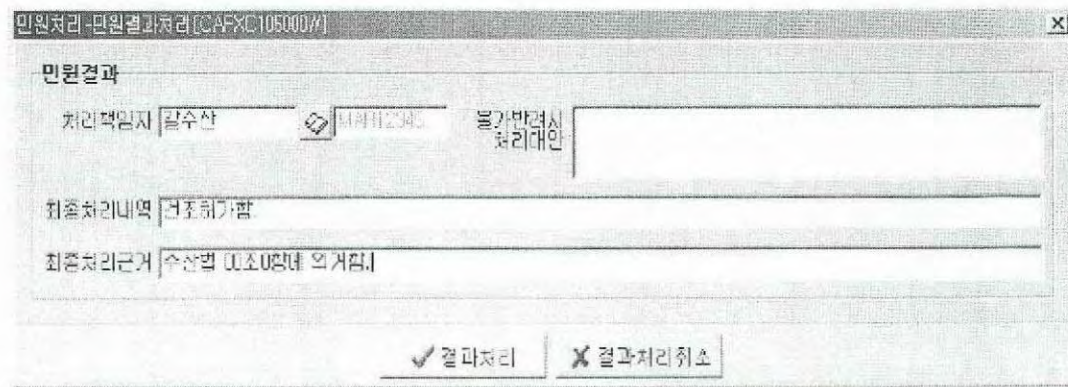
지분 [1 / 2]

[<] [<<] [>>] [>] [저장] [종료]

- 기타 어선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처리결과를 선택한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일 때는 언제든지 조회, 수정, 저장이 가능하다.
- 민원처리구분이 처리중을 제외한 처리구분은 한번 처리되면 수정 불가능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일을 처리한다.
- 저장된 민원을 다시 조회할 때는 상단의 민원접수화면 또는 [접수인검색]버튼을 눌러 아래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 [접수인검색]버튼을 통한 민원조회(상단화면)는 업무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저장] 또는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저장된 민원에 한하여 조회되며, 신규민원은 민원접수번호 옆 [책갈피]버튼을 눌러 민원접수 조회 화면을 호출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으면, 민원처리구분을 처리중을 제외한 구분을 선택하고 [결과처리]버튼을 눌러 하단의 화면을 호출하여 처리자 및 기타 내역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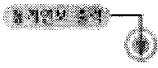


3) 주요항목 설명

- 주민등록번호 : 소유주구분에 따라서 제목이 바뀌고, 오른쪽 책갈피 버튼에서 호출되는 화면도 바뀐다.
- 어선번호 : 어선번호 우측의 [책갈피]버튼을 이용하여 어선을 조회하여야 화면의 각 항목의 내용이 조회된다.
- 어업허가내역 : 어업허가업무에서 관련된 어업허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다.

등록어선통계 작성 · 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 해양수산통계연보에 통계자료 수록하여 발간(매년 6월경)



선박통계

- 국적선보유현황
- 면허(등록선박현황 / 정기외항선 취항현황(항로))
- 불로선박
- 등록선박(등급)
- 등록선박(선종)
- 선박업자
- 세계선박현황(주요국)
- 세계선박현황(등급, 선종)

어선통계

- 시도별, 선종별 어선세력
- 면허별, 선종별 어선세력
- 업종별 어선세력
- 업종별, 등급별, 선종별 어선세력
- 어종별, 면허별, 선종별 어선최수
- 업종별, 선종별 어선최수
- 동력어선, 기관별, 선종별, 등급별 어선최수
- 시도별, 등급별 어선세력
- 업종별 어류장비 대수
- 시도별 어류장비 대수

항만 시설 통계

- 항만시설현황
- 항만하역능력현황
- 공유수면매립, 기동계역 및 폐항현황
- 문설현황
- 항만면적
- 항만선현황

V. 관련 용어 설명

1. 관련 용어

□ 선적항(船籍港)

- 선박의 등기·등록을 하는 항만·선박에 대한 감독이나 민사소송의 관할 기준 및 세율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표시됨. 다만 해상기업의 근거지가 되는 항만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며 이 때는 상인의 영업소와 같이 해상기업경영의 중심지로서의 의미가 있음

□ 선박국적증서(船舶國籍證書, Certificate of Registry)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해운관청이 법원에 등기된 선박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원부에 등록한 후 선박국적증서를 선박서류의 하나로 선내에 비치할 의무를 짐.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 등기 및 등록을 마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임.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가 아닌 선적증서가 발행됨

□ 선적증서(船籍證書)

- 총톤수 20톤 미만인 선박의 선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선박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아닌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국적증서와 구별됨

□ 선박톤수구분

- 용 적 톤 수 : 선박의 용적을 표시
- 중 량 톤 수 : 선박의 중량을 표시
- 재화용적톤수 : 선박이 적재하는 화물의 용적을 표시
- 재화중량톤수 : 선박이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을 표시

2.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홀수선에 평행한 홀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홀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1998.9.5>
5. "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라 함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8. 삭제<1998.9.5>
9. "국제항해"라 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5>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호 각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5.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기타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5.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17>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2.7.15>

1.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1999.5.17>
3.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삭제 <1998.1.24>

제9조 삭제 <1999.5.17>

제10조 삭제 <1999.5.17>

제11조(허가서등의 재교부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1. 변경허가사항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3. 삭제 <2002.7.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2.7.15>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8.9.5>

1. 삭제 <2002.7.15>
2. 설계도(측정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 ①총톤수의 측정등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수 없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8.9.5>

②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8.1.24>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 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③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신청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제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③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측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 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 26>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측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제톤수증서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 어선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적항 및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번호
3.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교부등) ①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증명서등
2. 헐어 못쓰게된 경우 : 해당증명서등
3. 삭제 <2002.7.15>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19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선박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소형선박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5.17>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1999.5.17>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③삭제 <1999.5.17>
 -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삭제 <1999.5.17>
 - ⑥삭제 <1999.5.17>
 - ⑦삭제 <1999.5.17>

제23조(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기타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 나. 선교루의 용적
 - 다. 선미루의 용적
 - 라. 갑판실의 용적
 -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2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

숫자로서 홀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홀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8.1.24>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개정 1999.5.17>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9.5.17>

③삭제 <19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생략:서식31>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제27조 삭제 <19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한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

3. 당해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전문개정 2001.12.31]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생략:서식36>,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생략:서식37> 의하여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1999.5.17]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교부신청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35조 삭제 <1999.5.17>

제36조 삭제 <1999.5.17>

제37조 삭제 <1999.5.17>

제38조 삭제 <19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 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1999.5.17>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등) ①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생략:서식19>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증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증서
3. 삭제 <2002.7.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4장 삭제 <1998.9.5>

제1절 삭제 <1998.9.5>

제41조 삭제 <1998.9.5>

제42조 삭제 <1998.9.5>

제43조 삭제 <1998.9.5>

제44조 삭제 <1998.9.5>

제45조 삭제 <1998.9.5>

제2절 삭제 <1998.9.5>

제46조 삭제 <1998.9.5>

제47조 삭제 <1998.9.5>

제48조 삭제 <1998.9.5>

제49조 삭제 <1998.9.5>

제50조 삭제 <1998.9.5>

제51조 삭제 <1998.9.5>

제52조 삭제 <1998.9.5>

제53조 삭제 <1998.9.5>

제54조 삭제 <1998.9.5>

제55조 삭제 <1998.9.5>

제56조 삭제 <1998.9.5>

제57조 삭제 <1998.9.5>

제58조 삭제 <1998.9.5>

제59조 삭제 <1998.9.5>

제60조 삭제 <1998.9.5>

제3절 삭제 <1998.9.5>

제61조 삭제 <1998.9.5>

제62조 삭제 <1998.9.5>

제63조 삭제 <1998.9.5>

제64조 삭제 <1998.9.5>

제65조 삭제 <1998.9.5>

제5장 삭제 <1999.5.17>

제66조 삭제 <1998.9.5>

제67조 삭제 <1998.9.5>

제68조 삭제 <1998.9.5>

제69조 삭제 <1999.5.17>

제70조 삭제 <1998.9.5>

제71조 삭제 <1998.9.5>

제5장 보칙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1999.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8.1.24>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9.5, 2001.12.31>

④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①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②삭제<1999.5.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는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3호,1994.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칙 <제48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0호,199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임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해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게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 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40조제1항 또는 제 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 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 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 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 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 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면제 대상 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1999.5.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기계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계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선박법시행규칙) <제156호,2000.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212호,2001.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1호,2002.7.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77호,200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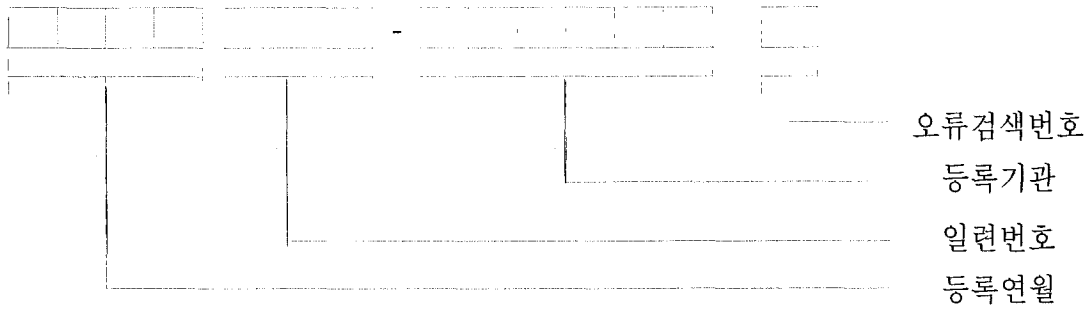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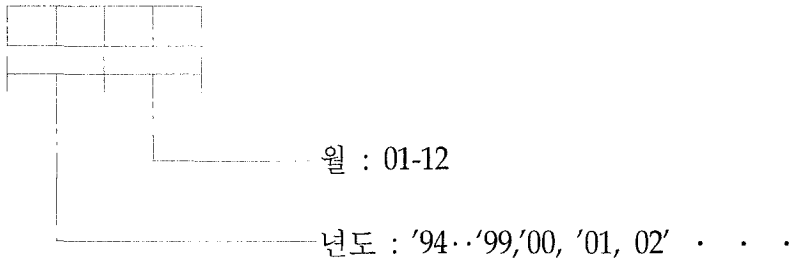
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관련)

-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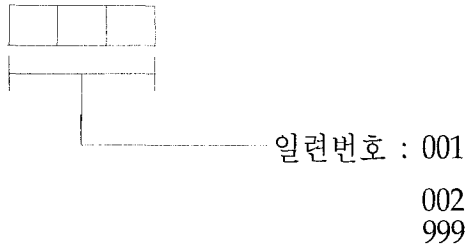
어선번호의 구성체계(14자리)



- 등록연월은 연도 끝 2자리수와 월 2자리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일련번호는 어선원부에 기재하는 매월별 순서번호에 의하여 매월마다 새로운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번호가 3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3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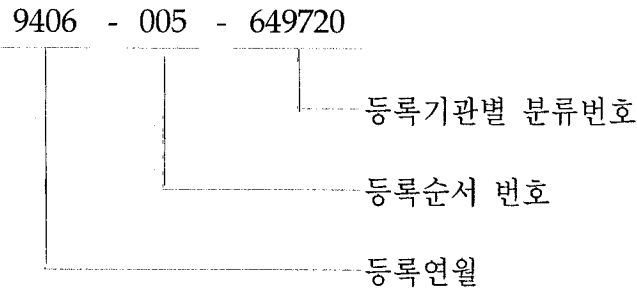
-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는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행정 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등록연월, 등록순서 번호,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3자리의 숫자로 만든다.

[예시]



나.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곱한 값이 10을 넘을 경우 그 곱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의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begin{array}{r} 9406005649720 \\ \times) 12121212121 \\ \hline 9802005248740 \\ 9+8+0+2+0+0+5+2+4+8+7+4+0=49 \end{array}$$

다.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49 \div 10 = 4$ 나머지 9

라.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 - 9 = 1$ 오류검색번호

【 주요어법 해설 】

1. 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의 및 어업종류

□ “어업” 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함

□ 어업의 구분

- 면허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이며, 행정법학상의 특허에 해당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면허)
 - 면허어업 종류(7개)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 허가어업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자연의 어업행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행정행위
 - **원양어업허가** : 해외수역(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이북, 동경 140도선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 연승·기선저인망·선망·트롤·자망·봉수망·채낚기어업 등 10개어업 12종

 - **근해어업허가** :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 대형기선저인망·중형기선저인망·트롤·선망·채낚기 등 13개어업 21종

- 연안어업허가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외의 어업
 - 자망·안강망·통발·들망·조망·선인망·복합어업 등 8개 어업 8종
- 구획어업허가 : 일정한 수면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 정치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지인망, 선인망어업 등 13개어업)
 - 이동성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형망, 새우조망어업 등 4개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
- 신고어업 : 신고어업은 면허어업·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어업 종류 : 맨손·나잠·투망 등 3개어업

2. 어법의 명칭 및 입력코드 부호

구 분	어업의종류	어법의 명칭	입력코드 부호
근해어업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111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112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	121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122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123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131
		동해구트롤어업	132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141
		소형선망어업	142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151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161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171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181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191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201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	211
		기타통발(문어단지포함)	213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221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231

구 분	어업의종류	어법의 명칭	입력코드 부호
연안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172
	연안안강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82
	연안선망어업	연안양조망어업	143
	연안통발어업	연안통발어업	212
	연안들망어업	연안들망어업	241
	연안조망어업	연안새우방어업	251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253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늪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 패류미끼망어업, 손꽂치어업)	266
구획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주목망어업	291
		각망어업	292
		낭장망어업	293
		※ 기타정치성구획어업 지인,선인,호망,건망,승망 부망,장망,해선망,안강망 건간망	299
	이동성구획어업	형망어업	294
		새우조망, 문어단지어업 실뱅장어어업	295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	271
	마을어업	마을어업	281
기타어업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고데구리), 나잠어업 포함	301
천해양식	천해양식어업		311

- 연안채낚기, 연안연승, 손꽂치어업, 패류미끼망어, 패류껍질어업은 연안복합어업(266)에 포함됨
-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새우망어업→연안새우방어업
연안쌍끌이선인망어업→연안선인망어업으로 명칭변경('02. 9. 2)

외항여객선수송실적

여 백

목 차

I. 개 요	203
1. 작성 목적	203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203
3. 작성 연혁	203
4. 작성 대상 및 내역	203
5. 작성 방법 및 체계	204
6. 결과 공표	204
7. 관련 법령	204
II. 업무흐름도	205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05
2. 업무담당자별 처리사항	206
III. 통 계 표	207
1. 여객선수송실적(여객, 화물)	207
2. 여객선수송(연인km, 연톤km)	208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209
1. 개 요	209
2. 국제여객신고	210
3. 업무처리절차	212
V. 관련 용어 설명	217
1. 관련 용어	217
2.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223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국제여객 수송실적을 파악하여 각종 해운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15호

3. 작성 연혁

- 1976. 11.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외항여객운송사업체
- 내 용
 - 입·출항별 여객(한국인, 외국인), 차량, 화물(일반화물, 컨테이너) 수송실적
 - 연인キロ(Passenger - Km), 연톤キロ(Ton - km)
- 작성주기 : 매월
- 대상기간 : 작성대상월 1일 ~ 말일
- 작성기간 : 작성대상월 익월 20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사업체의 보고자료를 집계
- 체 계
 - 사업체 → 지방해양수산청(선원선박과, 선원해사과)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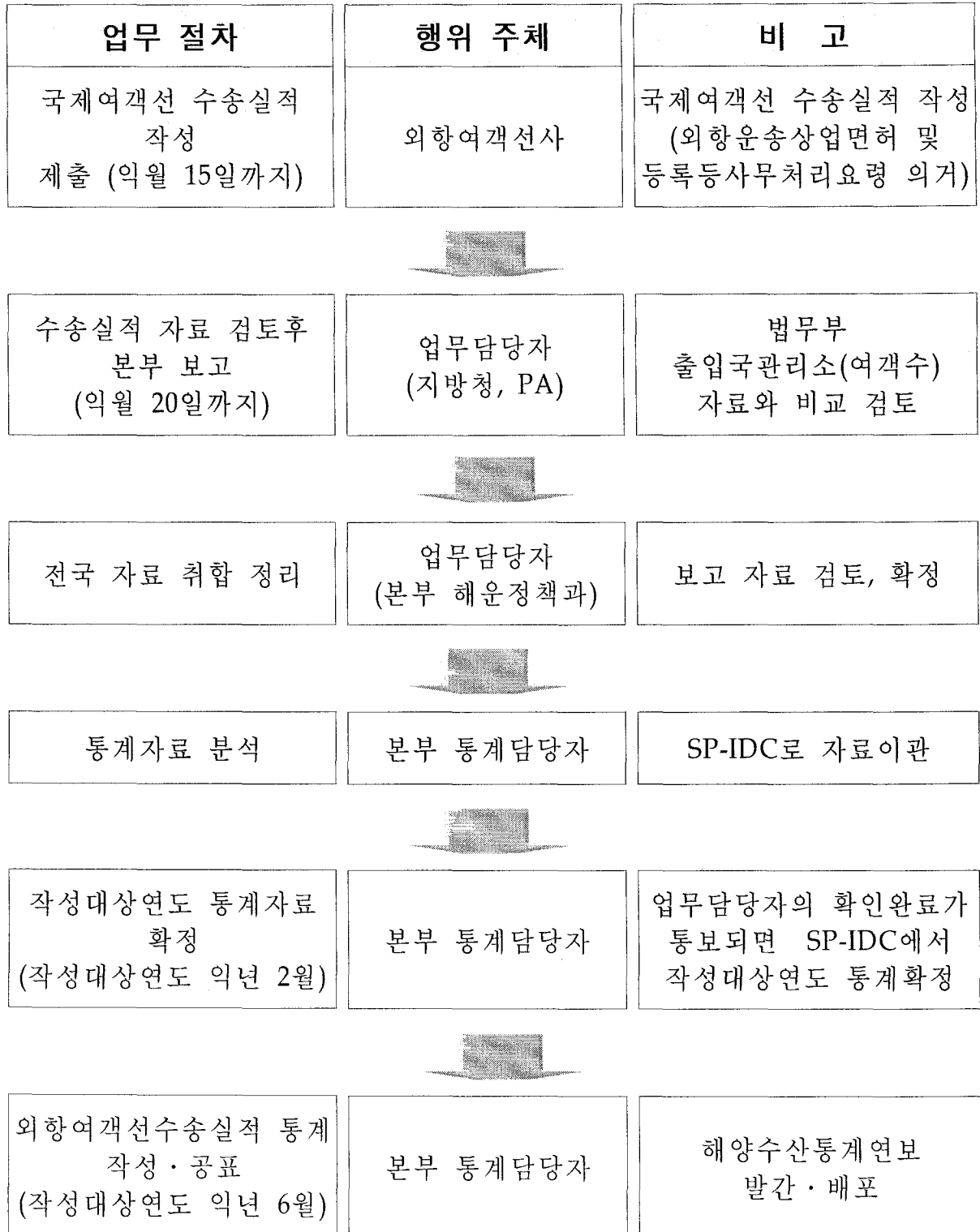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6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7. 관련 법령

- 해운법 제2조 2항(사업의 정의)
- 해운법 제3조 3항 4항(사업의 종류)
- 해운법 제56조 1항 7호(해운통계작성 근거)
-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10조 2항(통계서식, 절차)

II. 업무흐름도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 업무 담당자별 처리사항

가. 외항여객선사

- 해운법,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사무처리요령에 의하여 국제 여객수송실적을 매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에 서면 보고

나.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

-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담당자는 외항여객선사의 보고실적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의 실적과 비교 검증
- 검증완료한 여객수송실적을 해양수산부(해운정책팀)에 서면보고
 - ※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외항선사의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 검증

다. 해양수산부(해운정책팀)

-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취합
- 동향분석 및 정책자료로 가공
- 취합한 자료를 통계담당자에게 이관

라. 해양수산부(통계담당자)

- 해운정책팀에서 이관받은 자료를 SP-IDC에 입력 조치
- 입·출항별 여객(내국인, 외국인), 차량, 화물 수송실적 등 공표

Ⅲ. 통계표

1. 여객선 수송실적(여객, 화물)

1. 여객선 수송 (여객, 화물)

Passenger Ship Transportation (Passenger, Cargo)

구분 Classification	총계 Total		외항선 Ocean-going						연안선 Coastal	
			계 Sub_Total		국적선 Korean Flag		외국선 Foreign Flag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여객 Passenger	화물(톤) Cargo(R/T)
1996	9,935,978	3,834,462	522,986	1,890,480	141,849	451,293	381,338	1,209,167	9,412,993	2,144,002
1997	10,482,895	4,218,049	583,829	1,744,591	149,813	454,850	414,218	1,289,941	9,899,066	2,472,058
1998	8,814,790	3,789,180	537,735	1,739,340	178,358	389,872	362,382	1,389,768	8,277,052	2,049,820
1999	9,858,868	4,445,983	604,870	2,178,569	263,594	438,153	541,278	1,738,418	9,051,998	2,269,414
2000	10,700,874	4,909,338	999,183	2,431,845	390,562	460,654	608,801	1,971,191	9,701,511	2,477,491
2001	10,414,814	5,148,038	1,074,591	2,298,235	374,420	411,328	700,471	1,886,907	9,339,923	2,847,601
2002	10,712,711	5,943,912	1,252,887	2,715,505	538,088	674,893	718,784	2,040,812	9,459,844	3,226,407
2003	11,715,117	6,710,708	1,379,529	3,126,581	672,117	992,136	707,412	2,184,426	10,335,588	3,584,147
2004	12,470,424	7,798,692	1,822,200	4,107,756	690,179	1,667,517	1,132,021	2,840,239	10,648,224	3,690,938
2005	13,204,493	8,828,771	2,104,939	4,908,093	731,120	1,784,099	1,373,819	3,121,994	11,099,554	3,920,678
1	825,577	590,512	189,219	362,658	63,320	128,957	125,599	235,701	636,358	227,654
2	799,823	561,231	132,085	314,051	44,058	111,477	58,000	202,674	697,535	247,180
3	824,352	710,272	183,225	448,392	55,736	164,911	107,489	281,481	661,127	283,860
4	1,077,987	830,918	148,481	325,448	49,587	153,630	98,914	171,818	929,486	305,472
5	1,211,437	710,484	182,015	401,753	56,113	124,543	105,902	277,211	1,049,422	308,711
6	1,151,588	768,238	188,098	379,212	61,078	152,710	105,018	228,602	985,492	389,024
7	1,396,157	794,289	206,310	420,447	75,015	157,190	130,295	283,257	1,190,847	373,322
8	2,178,486	948,186	272,449	413,174	59,824	155,658	182,825	257,518	1,904,018	532,992
9	1,000,882	803,124	158,658	468,150	52,325	187,158	106,533	280,992	841,824	334,974
10	1,127,733	778,112	180,878	445,731	58,499	179,514	122,377	289,217	948,857	329,381
11	902,261	789,734	158,883	471,790	78,039	138,841	80,844	334,949	746,678	317,944
12	710,651	743,733	189,839	454,289	49,518	133,513	120,123	320,778	541,012	289,444

자료: 해운물류국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2. 여객선 수송(연 인km, 연 톤km)

2. 여객선 수송 (연 인 Km, 연 톤 Km)

Passenger Ship Transportation (Passenger-Km, Ton-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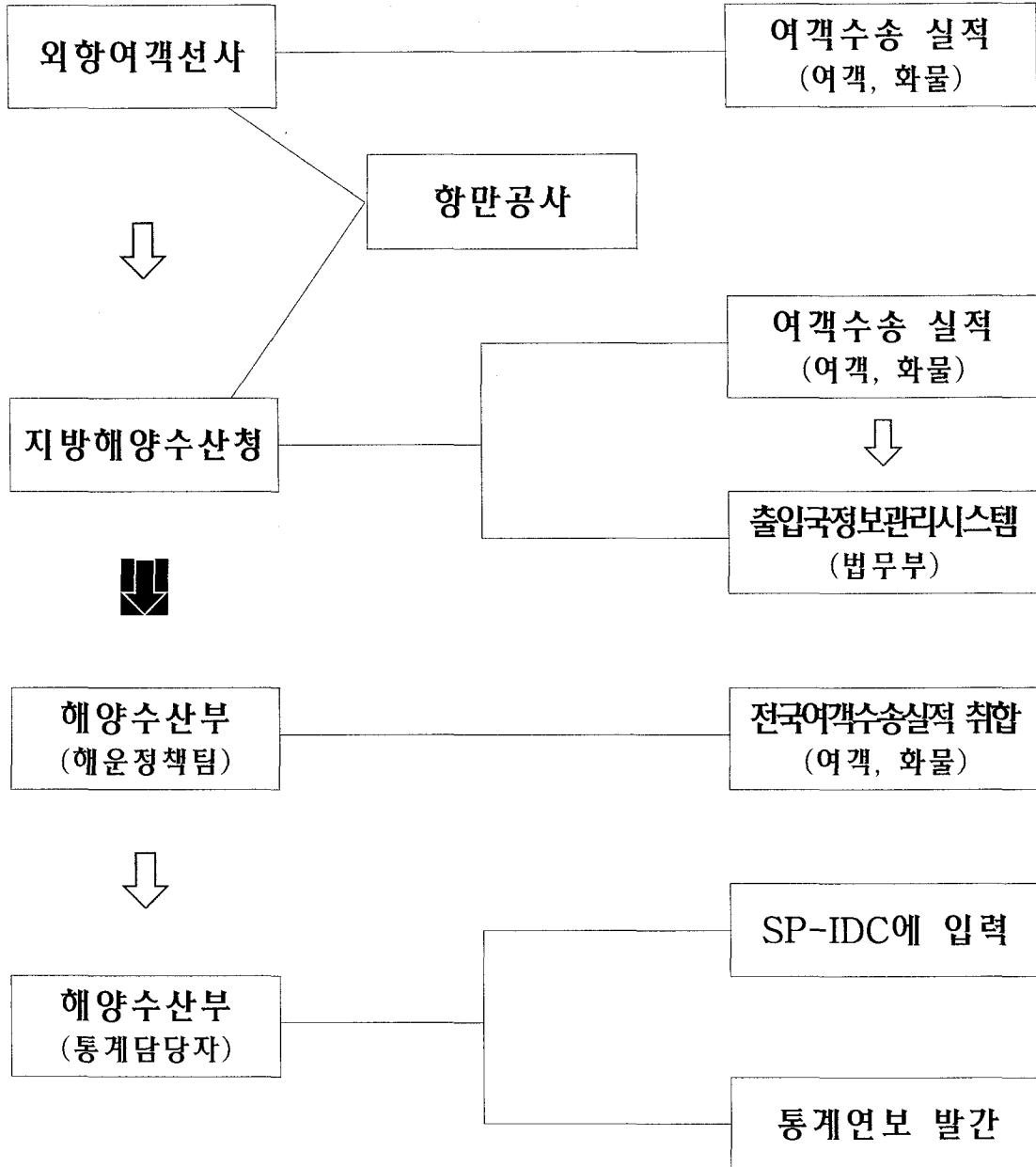
구분 Classification	총계 Total		외항선 Ocean-going						연안선 Coastal	
			계 Sub_Total		국적선 Korean Flag		외국선 Foreign Flag			
	연인거리 Passenger-Km	연톤거리 Ton-Km	연인거리 Passenger-Km	연톤거리 Ton-Km	연인거리 Passenger-Km	연톤거리 Ton-Km	연인거리 Passenger-Km	연톤거리 Ton-Km	연인거리 Passenger-Km	연톤거리 Ton-Km
1996	745,090,387	935,537,043	195,173,637	621,667,355	75,257,660	211,157,514	122,915,977	410,509,841	548,895,730	313,969,855
1997	784,253,245	1,027,372,787	213,521,543	648,573,447	75,972,734	210,621,551	137,618,809	435,951,598	570,861,702	330,799,320
1998	633,730,370	989,595,848	199,642,853	689,456,183	70,080,788	187,758,719	129,582,097	521,889,464	434,087,507	280,139,463
1999	842,507,113	1,189,761,525	299,355,958	855,724,589	108,698,799	211,444,940	193,689,189	644,279,949	543,121,125	334,036,638
2000	1,089,740,889	1,451,579,817	397,887,354	1,088,510,884	142,324,934	283,057,708	255,542,420	803,753,156	671,873,315	384,768,753
2001	956,416,239	1,521,217,481	400,964,917	1,095,989,735	141,742,638	269,625,889	259,242,351	819,444,048	655,431,322	435,247,728
2002	1,024,259,718	1,675,665,213	459,170,128	1,177,338,368	202,522,869	341,825,507	256,647,259	835,780,351	655,089,530	498,278,845
2003	1,155,824,225	1,908,521,927	535,357,393	1,387,231,568	288,959,471	577,834,003	288,497,922	909,397,583	620,488,832	519,290,361
2004	1,370,788,389	2,411,904,117	713,680,427	1,580,697,680	330,092,559	958,090,374	353,558,558	924,607,508	667,105,982	531,206,237
2005	1,524,641,235	2,615,178,878	858,503,501	2,187,263,879	380,181,891	990,992,245	496,321,510	1,206,271,434	688,137,734	447,914,909
1	114,693,388	175,552,082	77,377,909	165,613,400	26,746,382	87,955,754	45,632,647	87,627,818	37,315,457	19,935,882
2	84,033,729	145,959,577	48,938,897	130,457,007	20,155,632	65,574,411	28,451,255	64,552,596	35,398,632	17,502,870
3	95,255,792	212,533,437	60,909,452	192,887,641	24,052,381	91,897,453	36,854,121	100,970,183	37,349,310	19,865,798
4	116,744,082	177,001,301	53,901,415	133,453,583	21,059,552	74,489,768	32,541,563	58,984,125	63,142,687	43,547,418
5	131,577,519	214,827,335	59,487,825	173,255,677	23,016,554	68,254,755	35,451,241	107,000,692	72,109,694	41,571,858
6	123,394,502	203,734,480	59,939,058	162,314,431	23,957,554	75,632,541	35,981,234	89,651,590	63,325,414	41,420,029
7	154,864,832	219,686,354	83,817,399	177,014,324	34,452,155	77,955,845	49,385,211	99,028,479	71,087,238	42,672,060
8	216,013,982	229,993,732	101,268,038	178,409,733	35,982,557	78,601,210	62,325,451	102,408,523	114,725,942	51,583,999
9	120,410,771	250,404,248	72,992,731	209,734,745	26,759,554	65,574,955	46,202,577	113,859,783	47,415,040	40,869,500
10	128,846,894	247,928,148	71,527,839	208,082,589	23,045,124	93,458,789	48,782,512	112,823,500	57,019,258	41,545,557
11	143,504,788	272,821,507	101,842,898	228,122,895	75,261,045	89,857,741	28,551,653	135,265,124	41,682,038	44,898,842
12	92,411,182	282,438,389	84,805,358	219,937,351	20,553,251	85,675,958	44,152,135	134,258,423	27,605,798	42,498,989

자료: 해운물류국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개요



2. 국제여객신고

가. 국제여객수송실적

국 제 여 객 수 송 실 적(년 월분)

분류기호 :

수 신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 출 일 : 년 월 일

참 조 : 선원선박과장

발 신 :

구 분		입·출항	합 계	입 항	출 항	비 고
여 객 (인)	인(명)	계				○여객승선율 : (수송능력/수송인원) ○컨테이너화물 소석율 : (수송능력/수송량)
		한국인				
		외국인				
	인·km	계				
		한국인				
		외국인				
차 량 (대수)	계					
	승용차					
	기타차량					
화물(톤)합계(A + B)						
일 반 화 물(A)						
콘 테 이 너	화 물(B)					
	계	계				
		공				
	10'	계				
		공				
	20'	계				
		공				
	35' 이상	계				
		공				

210mm × 297mm

'04. 03. 26승인

(인쇄용지 (2급)60g/m²)

- 입출항별 외국적선과 국적선의 수송실적을 파악한다.
- 화물통계단위
 - 운임톤 (R/T : Revenue tons, F/T : Freight tons)
 -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톤수를 말한다. 보통 중량이나 용적중 높은 운임의 산출이 가능한 쪽의 톤수를 말한다.
 - ※ 메트릭톤 (Metric tons : MT)
 - 무역거래 및 해상운송에서 거래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 통상 1,000kg을 1톤으로 산정
 - 대부분의 중량화물에 적용, 주요 항만의 하역실적을 발표할 때 사용
 - ※ 용적톤 (Measurement tons : M , CBM)
 - 부피로 화물을 측정하는 단위로, 통상 1m³(입방미터)를 1용적톤으로 산정
 - 하역방법이 송유관하역일 경우 반드시 용적단위는 "B(바렐)" 로 입력
- 운임톤 계산 방법 (소수점 이하 절상)
 - 중량톤만 있는 경우 : 중량톤이 운임톤
 - 용적톤만 있는 경우
 - 용적단위가 "B(바렐)"인 경우 : 용적(B)×0.140324 = 운임톤
 - 용적단위가 "M" 인 경우 : 용적(M)× 0.883 = 운임톤
 - 중량, 용적 모두 있는 경우(둘 중 운임톤이 더 큰 값으로 부과)
 - 용적단위가 "B(바렐)"인 경우 : 용적(B)×0.140324 = 운임톤
 - 용적단위가 "M" 인 경우 : 용적(M)× 0.883 = 운임톤

예시)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농구공을 수입하여 화물반출입 신고서에 중량5톤, 용적50MT을 기재하였을 경우 운임톤 과 화물입항요금은?
 화물처리방법은 기계하역으로 처리

 - ※ 용적톤 50톤 => 50× 0.883 =44.15 RT 로 중량톤 5톤 보다 크므로 45 RT 적용
 -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105호』인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에 關한規程』에 근거하여 화물입출항료를 계산 : 192월/RT × 45RT = 8,640월
 - ※ 컨테이너 단위 : TEU(twenty footer equivalent unit) = 20FT
 10FT = 0.5TEU, 20FT = 1.0TEU, 40FT = 2.0TEU

3. 업무처리 절차

가. 국제여객신고서 접수 및 정리 : 업무담당자 (지방청)

1) 국제여객신고서 내용 확인

- 지방해양수산청(선원선박과, 선원해사과) 업무담당자는 국제여객 수송실적을 접수한후 여객 현황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여객 심사과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참고하고 화물자료는 해당선박의 화물수송 최대적재량과 비교 검토한다.
- 작성 대상월 익월 20일까지 본부 해운정책과 업무담당에게 통보 한다.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자료 조회

구분	합계	국민	외국인	소계	승객
계	174,134	116,598	57,536	126,879	103,457
입국	84,343	56,539	27,804	60,807	50,144
출국	89,791	60,059	29,732	66,072	53,313

3)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출·입국자 조회결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 [출입국자 현황] AY11100W

업무관리(전) | 출입국심사 | 출국사무 | 입국사무 | 업무보고 | 기록관리 | 규제지관리 | 통계 | APIS/GD | 할(화) | 도움말(지)

사무소 | 부산 | 출입국일자 | 2007.01 ~ 2007.01 | 1993년 1월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승무원은 1994년부터 포함)

구분	출국			입국			승무원		
	총계	국민	외국인	총계	국민	외국인	총계	국민	외국인
계	174,134	116,596	57,536	126,879	103,457	23,422	47,255	13,141	34,114
입국	84,343	56,539	27,804	60,807	50,144	10,663	23,536	6,395	17,141
출국	89,791	60,059	29,732	66,072	53,313	12,759	23,719	6,746	16,973

조기 | 출력 | 닫기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02.16 부산 [suimm] 김상건

시작 | 내이름 :: 제삼의 모든 ... | 가림막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 Sample Playlists | 오후 4:30

나. 지방청별 신고서 자료 취합 정리 : 본부 해운정책과 담당

1) 지방청별 자료취합 검토, 분석 자료 작성

- 본부 업무담당자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취합 검토 후 통계담당에게 통보
- 작성 대상월 익월 30일까지 본부 통계담당에게 통보

다. 국제여객수송실적 월별자료 게재 : 본부 통계담당자

1) SP-IDC 통계시스템에 월별자료 게재

- 본부통계담당자는 해운정책과로부터 정리된 자료를 이첩 받아 SP-IDC 통계시스템에 게재
- 작성 대상월 익익월 5일까지 게재한다.

2) SP-IDC에서 국제여객수송실적 월별자료 조회 화면

- 여객수 및 화물톤 수송실적 조회

구분	합계		미연선						연인선	
			계		미국선		외국선			
	여객	화물(톤)	여객	화물(톤)	여객	화물(톤)	여객	화물(톤)	여객	화물(톤)
1996	9,935,978	9,094,462	922,985	1,890,460	141,649	461,298	391,386	1,208,167	9,412,993	2,144,002
1997	545,470	349,492	38,024	141,175	6,598	42,256	26,628	36,920	510,446	208,318
1998	601,513	533,526	54,162	171,859	15,834	29,394	39,528	151,495	547,181	161,367
1999	613,006	417,464	67,944	227,035	26,607	33,944	45,337	193,691	545,662	190,429
2000	604,977	422,636	63,287	230,379	32,401	45,692	35,685	162,681	536,630	194,019
2001	610,713	341,774	34,396	105,591	29,057	22,411	58,299	63,280	578,557	236,063
2002	639,436	514,770	34,126	264,091	39,917	63,072	45,169	201,019	595,372	250,679
2003	649,321	554,076	117,395	279,326	61,248	56,361	59,507	192,585	581,566	274,250
2004	781,585	697,044	152,489	536,350	53,289	152,026	99,212	244,624	629,070	300,194
2005	710,551	743,739	169,629	454,099	49,516	129,513	120,129	320,775	541,012	299,444
12	719,651	743,739	169,630	454,269	49,516	133,513	120,129	320,775	541,012	299,444

○ 연인km 및 연톤km 수송실적 조회

SP-IDC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http://www.spidc.go.kr/jsp/stat/ll.st110050_list.jsp?currMenu=menu11

연계정보 > 여객선정보 > 여객선구분 <연인km,연톤km>

여객선수송(연인Km,연톤Km)

조회년월: 2005년 12월 (달별)

구분	합계		외항선						연안선	
	연인키로	연톤키로	연인키로	연톤키로	연인키로	연톤키로	연인키로	연톤키로	연인키로	연톤키로
1996	745,068,397	935,527,643	193,173,937	621,657,365	75,257,658	211,157,814	122,915,677	410,534,841	646,945,730	31,569,686
1997	39,668,597	86,321,120	13,183,368	49,805,779	4,242,920	12,674,547	8,938,368	32,731,258	25,685,709	94,915,402
1998	48,355,360	97,915,000	21,247,467	71,076,309	8,228,755	14,263,767	15,817,992	56,810,561	27,108,945	58,038,772
1999	58,989,827	128,121,093	26,652,747	89,991,609	7,814,504	18,845,065	18,839,143	75,046,759	31,738,669	34,228,299
2000	70,523,404	142,578,280	33,049,406	103,853,409	9,846,401	22,043,726	23,203,095	87,304,683	37,478,958	30,724,871
2001	62,414,169	155,463,791	35,776,482	112,270,183	10,069,021	22,833,797	23,719,471	80,736,386	28,657,677	45,190,626
2002	58,831,053	155,960,482	31,726,630	113,858,957	15,019,731	31,527,282	16,107,969	60,192,675	28,704,423	41,929,525
2003	75,075,943	174,078,922	47,713,789	125,921,671	24,649,727	51,504,030	23,064,941	66,417,635	27,962,176	46,787,531
2004	93,751,755	225,630,597	60,079,075	160,827,945	26,538,730	56,991,125	39,534,945	84,985,826	39,472,880	44,702,542
2005	92,411,182	262,456,359	64,305,386	218,897,391	29,629,151	66,876,956	44,162,135	134,559,429	27,865,756	42,489,639
12	92,411,182	262,456,359	64,305,386	218,897,391	29,629,151	66,876,956	44,162,135	134,559,429	27,865,756	42,489,639

○ 컨테이너 개수 및 화물톤 수송실적 조회

SP-IDC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http://www.spidc.go.kr/jsp/stat/ll.st10100_list.jsp?currMenu=menu2

연계정보 > 컨테이너 처리량 > 컨테이너 수송(규격별)

컨테이너수송(규격별)

조회년월: 2005년 12월 (달지(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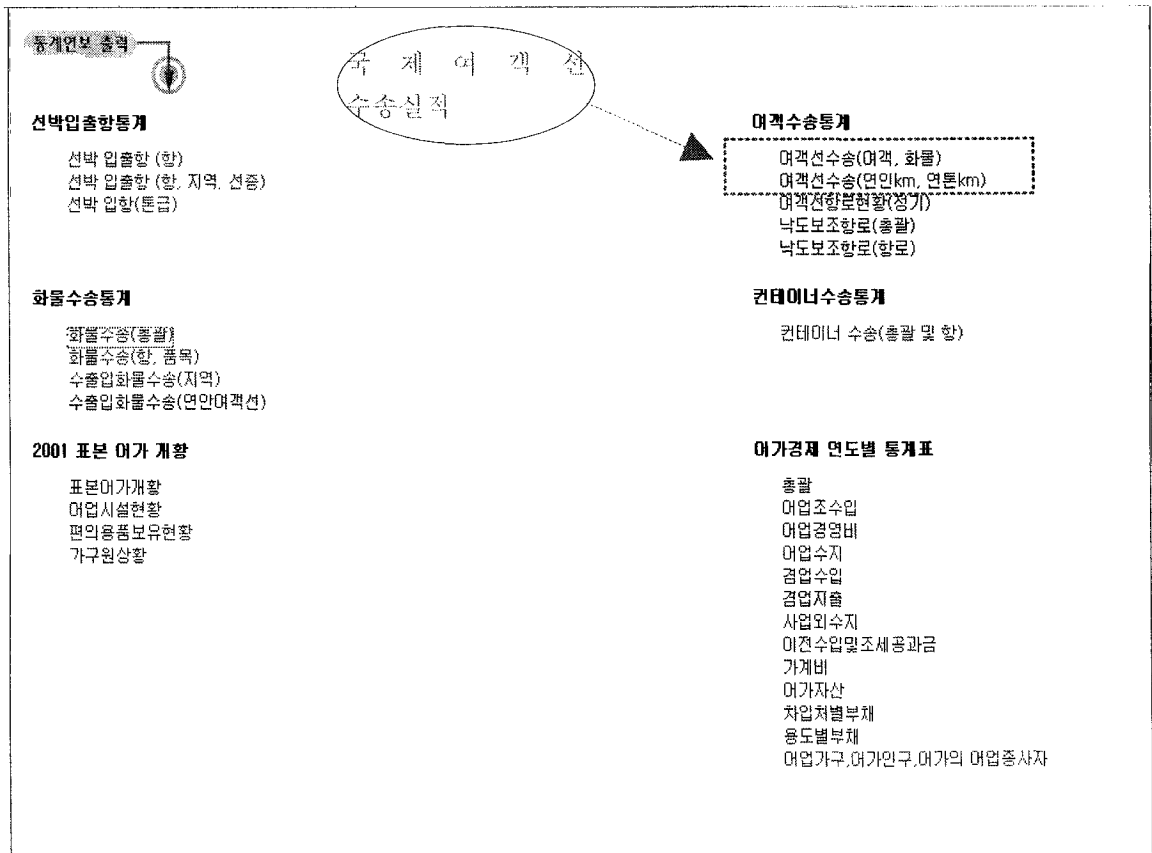
구분 Classification Month/Year & Month	10'			20'			40'			기타(Others)			소계(Sub-Total)			TEU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화물 (톤) Cargo (ton)	적 Full	공 Empty	
1996	계	13,298	5,551	12,044	1,825,611	363,690	1,899,601	1,232,815	252,914	1,485,729	3,919	7,369	15,267	2,779,633	450,624	5,410,559	72,542,573	4,612,465	685,83
	국적선	8,541	3,428	9,569	443,866	89,780	533,646	372,501	76,970	449,471	814	3,154	1,769	383,442	171,362	994,704	20,205,703	1,188,379	246,50
	외국선	4,757	2,123	4,475	1,681,745	273,910	1,955,655	860,314	175,944	1,035,258	2,305	4,215	13,500	1,396,191	279,262	2,415,855	52,337,470	2,424,086	439,33
1997	계	11,216	6,554	20,570	1,768,950	420,070	2,189,020	1,344,127	306,610	1,650,737	7,832	7,911	15,743	3,071,394	783,081	3,626,218	31,687,272	4,315,929	1,058,1
	국적선	6,961	3,704	10,665	5,35,828	111,173	5,469,001	3,92,698	23,746	4,161,444	1,405	1,609	3,014	1,689,549	391,111	1,198,660	39,184,110	1,316,964	282,58
	외국선	4,255	2,850	8,905	1,177,328	308,897	1,486,225	951,429	282,864	1,234,291	3,427	1,802	5,229	1,381,845	391,970	2,627,558	52,503,162	3,000,465	775,52
1998	계	12,026	5,951	19,477	1,738,791	378,324	2,417,115	1,322,389	302,245	1,624,634	12,449	5,452	17,901	3,092,710	1,208,673	4,291,383	47,454,738	4,307,401	1,004,9
	국적선	5,705	2,921	6,130	675,823	215,152	890,975	465,286	133,872	600,158	5,100	3,290	8,390	1,694,864	375,166	2,070,030	26,799,040	1,560,632	531,63
	외국선	6,321	3,030	13,347	1,062,968	163,172	1,226,140	857,103	168,373	1,024,476	7,349	2,162	5,511	1,397,846	833,507	2,220,353	20,655,698	2,746,769	473,27

라. 국제여객수송실적 년도 자료·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1) 작성대상연도 국제여객수송실적 통계 작성

- SP-IDC 통계시스템에서 통계 출력양식에 맞도록 PDF 파일 형태로 자료 편집
- 작성 대상 년도 익년 5월까지

2) 해양수산통계연보에 통계자료 수록하여 발간



V. 관련 용어 및 법규

1. 관련 용어

□ 해상운송사업자

- 해상운송업 : 연근해 및 원양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내항여객운송업 : 국내 항만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내항여객선의 임대업(승무원 포함)을 포함
- 내항화물운송업 : 국내 항만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내항화물선박의 임대업(승무원)을 포함
- 외항여객운송업 : 외국항로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외항여객선박의 임대업(승무원 포함)을 포함
- 외항화물운송업 : 외국항로에서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외항화물선박의 임대업(승무원 포함)을 포함
- 기타 해상운송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 해상유람선 임대,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

□ 여객선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의 하나로서, 여객수송을 주용도로 하는 선박. 부수적으로 소량의 특수화물과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임.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여객선은 그 구조에 따라 카페리선 및 차도선으로 구분되며, 속력을 기준으로 초쾌속선, 쾌속선, 고속선, 일반선으로 구분

□ 예선(曳船, Tug-boat)

-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예인선(曳引船)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크기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보호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선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부선(解船, Barge-boat)

- 기관(engin) 또는 돛 등의 장치를 갖추지 않아 자체추진력 즉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

□ 외항화물

-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

□ 선박순톤수

- 선박의 화물적재 장소의 용적 또는 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의 용적을 톤으로 표시한 것

□ 재화중량톤수(DWT)

- 선박에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중량톤수

□ 선박번호

- 모든 선박은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의거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선박의 등록 신청시 선박 고유의 선박번호를 부여받음. 선박번호는 자동차 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선박관련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해상에 근거가 되며, 해상교통조사에 있어서는 개별선박의 식별 및 이동을 추적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
- 선박번호는 우리나라 기준의 선박번호와 국제기준인 IMO 기준의 선박번호 등 통상 2종류가 부여됨

□ 선박국적

-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국제관습법상 선박은 반드시 어느 주권국가에 등록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적증서를 교부받아 그것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선미에 그 국적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내항선(연안선)

-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

□ 내항화물(연안화물)

- 내항선(연안화물)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

□ 화물톤

- 화물 반입반출입 신고서식의 B/L(선하증권) 건별로 적용하는 운임톤(R/T)

□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선하증권은 그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권적(物權的 證券)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임. 필수 기재 사항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적항명(積港名) 및 양항명(揚港名) 등임

□ 적하목록(積荷目錄 Cargo Manifest M/F)

- 화물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적재 화물 명세서. 송하인(送荷人) 및 수하인(受荷人) · 선하증권번호 · 컨테이너번호 등이 기재되며, 본선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항비(港費) 산출근거 및 입 · 출항시 통관자료로 사용됨

□ 화물운송주선업(forwarder)

- 하주(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주는 업자를 가르킨다. 이들은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 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 화물수송통계 단위는 운임톤 R/T(Revenue ton)으로 환산함

□ 환적(換積, Transhipment)

-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일정한 선박에 실려진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는 것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환적은 부두 배후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당국의 입장에서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세계 항만들 간 환적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함

□ TEU (Twenty footer equivalent unit) = 20FT

10FT = 0.5TEU, 20FT = 1TEU, 40FT = 2.0TEU

□ 여객승선율 (수송능력/수송인원)

□ 컨테이너화물 소석율 (수송능력/수송량)

□ 운임톤(R/T : Revenue tons)

-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톤수를 말한다. 보통 중량톤이나 용적중 높은 운임의 산출이 가능한 쪽의 톤수를 말한다

□ 적하(積荷)

- 해상운송의 개개인 유체물(고체,액체,기체 등 형체를 가진물질)을 의미하며 운송의 객체는 도착지에 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만이며 단지 선박 안에 존재하는 물건 예를들면 선박의 바닥 짐, 연료, 양식, 선박서류 선원의 휴대품 등 도착지까지의 운송이 목적이 아닌 물건은 적하가 아님

□ 양하(揚荷)

- 선박에 실린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함. 엄격한 의미에서 단순히 화물을 선박에서 육상으로 내려놓는 양륙과는 다른 개념임.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면서 선가가 포함된 용선료를 용선기간동안 지급하고 선가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용선을 말한다.

2. 외항운송사업면허 및 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정 1996. 8. 7 해운항만청고시 제1996-33호
개정 1998. 6. 13 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7호
개정 1999. 3. 8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18호
개정 1999. 10. 12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82호
개정 2000. 11. 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73호
개정 2004. 3. 2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0.12>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04. 3. 26>
2. "3국간화물"이라 함은 외국항간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국내항에서 환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라 함은 외국의 선주로부터 선원없이 선박만을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면서 선가가 포함된 용선료를 용선기간동안 지급하고 선가지급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계약된 용선을 말한다.
4. "외국인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이외의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운항"이라 함은 2사이상의 해운회사가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 스케줄에 따라 운항하면서 타사선박에 대해서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제 2 장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제3조(면허심사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의한 외항여객 및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여객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시 심사할 사항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확인케 할 수 있다.

<개정 '04. 3. 26>

1.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적합여부

2.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여부

②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에는 당해 여객선이 기항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개설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4. 3. 26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기타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경우에는 수송수요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04. 3. 26>

1.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여객운송 사업계획서상 수송능력의 3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2.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여객운송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여객은 수송능력의 30% 이상, 화물은 수송능력의 10% 이상의 수송수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4조(면허기준 대상선박) 규칙 제5조의 별표1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여객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0.12>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 한다)

2. 사업자명의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시설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개정 '04. 3. 26>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선박

5.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

제5조(선령의 적용기간 연장)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령 제한 만료 1개월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령 적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1년 단위로 연장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04. 3. 26>

②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검사대행기관(한국선급 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이 발행한 감항성 등 안전 항행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3. 26>

③ 제2항의 안전항행검사는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에 준한 수준으로 실시되 당해 선박의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2>

제7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휴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운항수지 악화 등 신청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연간 휴업기간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04. 3. 26]

제8조 삭제 <'99.10.12>

제9조(외국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 ① 외국인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여객운송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권한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식적인 협의창구를 통하여 항로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04. 3.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사업자와의 협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 기항예정지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확인케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선석, 터미널 등)확보 상태
2. 항만의 출입국 관련기관의 여객 및 화물통관 수용태세
3. 여객, 화물, 선박안전 및 사고발생대비 피해보상대책
4. 기타 항만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

제9조의2(외항여객항로개설관련 업무협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항과 외국항간에 외항 여객항로 개설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건 복지부, 농림부, 관세청 등 출입국 관련기관(이하 “출입국 관련 기관”이라 한다)과 여객 및 화물의 통관 등의 수용여부에 대해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04. 3.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개설과 관련하여 접안시설과 여객터미널 확보 및 여객과 화물 통관 수용태세 등 항만운영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선박 기항예정지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항만의 출입국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할 수 있다. <개정 '04. 3. 26>

[본조 신설 '00.11.15]

제10조(검사·보고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영 제13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4. 3. 26 >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월별 국제여객수송실적(익월 15일까지) <개정 '04. 3. 26>
2. 연간 국제여객수송실적 총괄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연간 결산 확정 일로부터 20일 이내) <개정 '04. 3. 26>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04. 3. 26 >

제 3 장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11조(등록의 구분)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중 수산물외의 화물운송 사업 등록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04. 3. 26>

② 삭제 <'04. 3. 26>

제12조(등록의 심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기준 대상선박) ① 규칙 제19조의 별표2 비고2의 규정에 의한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상의 선박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12>

1. 사업자 소유의 선박(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을 포함한다)
2.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을 한 자로부터 선박대여를 받거나 연불조건부로 구매한 선박
4.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
5. 공동운항에 편입된 선박(한국선주협회에서 인정한 공동운항에 투입된 타 사업자의 선박척수 및 선복량을 포함한다.)
6. 삭제 <'99.10.12>

② 삭제 <'99.10.12>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당해 사업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다. <'99.10.12>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9.10.12>

제16조(조건부등록) 법 제4조제5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의한 등록기준 대상선박의 확보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출 것 <개정 '99.10.12>

2. 사업개시 시기가 특정되어 있을 것
3.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을 것

제17조(조건부등록사업자가 확보한 선박의 운항) ①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선박확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등록된 사업자로 본다.

②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확보한 선박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운항케 할 수 있다.

제18조(폐업신고) ① 사업자가 등록기준 미 충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서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4. 3. 26]

제19조 삭제 <'99.10.12>

제20조(운항선박명세서의 교부)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시 그 등록증에 기재할 선박이 한 척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운항선박명세서를 등록증과 함께 교부한다. <개정 '99.10.12>

제20조의2(보고·검사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 단체를 경유하거나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간 수송실적 및 운임수입 현황 총괄표(익년 1월 30일까지)
2. 사업경영 연간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연간 결산 확정일로 부터 20일 이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4. 3. 26]

제 4 장 면허·등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사업자가 규칙 제10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99.10.12]

1. 선박의 증선·감선·대체(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을 포함한다)
2. 항로의 개설·변경, 운항횟수·운항시간의 변경 및 투입선박의 변경(외항부정기 여객·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외항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4. 사업자의 상호·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5. 해외지사(합작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6. 선박휴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신설 '04. 3. 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이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04. 3. 26>

제22조(용선선박의 관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 신고한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용선한 선박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10.12> <개정 '04. 3. >

제23조 삭제 <'99. 3. 8>

제24조(면허증·등록증의 재교부등) ① 사업자는 규칙 제4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 받은 면허증·등록증 또는 운항선박명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면허증·등록증 또는 운항선박명세서를 갱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2]

제25조(면허·등록대장의 비치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면허·등록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 규칙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한 기간의 산정은 대상선박이 외항화물 운송을 위하여 국내항을 출항한 날부터 입항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04. 3. 26>

② 규칙 제1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이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를 말한다. <개정 '04. 3. 26>

③ 규칙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별로 일시적 운송기간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4. 3. 26>

1. 당해 사업자의 외항운송사업계획서 사본

2. 과거 2년간 당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 목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선박별 연간 누적 운송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항로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외항운송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04. 3. 26>

제 5 장 보 칙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 3. 8>

제29조 삭제 <'04. 3. 26>

제30조(특례) 사업자의 사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재정적 기초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불공정행위 조사절차등) ① 외항해운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선주협회장은 외항운송사업자(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신고를 한 내항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선주협회장은 자율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10.12> <개정 '04. 3. 26 >

③ 한국선주협회장은 외국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업계의 질서유지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에 관한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5일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및 부과할 행정처분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해운업자가 제1항의 공표예정 일주일전까지 정당성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해운전문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요령에서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기타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0.12]

부 칙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화물중 대형구조물, 시멘트는 2005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 제 여 객 수 송 실 적(년 월분)

분류기호 :

수 신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 출 일 : 년 월 일

참 조 : 선원선박과장

발 신 :

구분		입·출항		합 계	입 항	출 항	비 고
		계	인(명)				
여 객 (인)	인(명)	계					○여객승선율 : (수송능력/수송인원) ○컨테이너화물 소석율 : (수송능력/수송량)
		한국인					
		외국인					
	인·km	계					
		한국인					
		외국인					
차 량 (대수)	계						
	승 용 차						
	기타차량						
화물(톤)합계(A + B)							
일 반 화 물(A)							
화 물(B)							
콘 테 이 너	계	계					
		적					
		공					
	10'	계					
		적					
		공					
	20'	계					
		적					
		공					
	35' 이상	계					
		적					
		공					

'04. 03. 26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60 g / m²)

해난사고현황

여 백

목 차

I. 개 요	235
1. 작성 목적	235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235
3. 작성 연혁	235
4. 작성 대상 및 내역	235
5. 작성 방법 및 체계	235
6. 결과 공표	236
7. 관련 법령	236
II. 업무흐름도	237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237
2. 업무담당자별 처리사항	238
III. 통 계 표	239
1. 해양안전심판 현황	239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총괄)	240
IV. 업무 절차 상세 설명	241
1. 개 요	241
2. 해양사고 심판대상 및 심급제	242
3. 업무 처리 절차	243
V. 관련 용어 및 법규	246
1. 관련 용어	246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사무처리요령	251

여 백

I. 개 요

1. 작성목적

-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20호

3. 작성연혁

- 1976. 8.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4. 작성대상 및 내역

- 대상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 심판하는 해양사고
- 내용
 - 한국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 영해에서 발생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 작성주기 : 매월
- 대상기간 : 1. 1 ~ 12. 31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법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전산자료 입력을 집계
- 체계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수산부

6. 결과공표

- 주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에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6월경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표(<http://www.kmst.go.kr>)
 - 해양안전심판사례집에 수록, 작성대상연도 익년 9월경
- 공표 범위 : 전국의 사고유형별, 선박용도별, 톤수별 해양사고

7. 관련법령

- 해양사고 조사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등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 조사 관련 및 심판에 관한 법률사무요령

II. 업무흐름도

1. 행위주체별 업무절차

업무 절차	행위 주체	비 고
사고 접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경, 지자체의 사고통보 언론기관을 통해 사고인지
	↓	
조사 착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담당조사관	면담조사결과 원인간명하면 심판불요처분 또는 심판청구를 결정
	↓	
심판 청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담당조사관)	심판부 구성 소환장 발부, 심판기일지정
	↓	
심판 개정 (제1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조사관 의견진술, 최후변론 해양사고관련자 최후변론 재결고지
	↓	
2심 청구 (제2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합의제 5명)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이 1심판결 불복시 (재결서 수령후 7일내)
	↓	
대법원 소 제기 (제3심)	대법원	해양사고관련자, 자사관이 2심판결 불복시 (재결서 수령후 30일내)

2. 업무담당자별 처리 사항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 해양사고가 접수하면 즉시 “해양안전심판업무 System”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사관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불요처분된 사건에 대해서는 “해양안전 심판업무 System”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건을 심판에 붙여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해양사고 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주관부서장은 “해양안전심판업무 System”에 입력된 해양사고의 심판결과를 분석하여 해양사고의 원인 및 유형을 분류하고, “월 해양안전예보” 및 “월 해양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장은 관련부서가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기별/연간 해양사고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한 통계 자료는 “해양수산 통계연보” 등 통계관련 책자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통계관리 분석 업무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II. 통계표

1. 해양안전심판 현황

1. 해양안전심판 현황

Marine Accidents Inquiry

단위:건수		Unit: Number					
연도별 Year	구분 Classification	전년이월	심판청구	심판대상	거각, 각하	심판계류	재결
		Transfer of Last Period	Offered for Inquiry	Object of Inquiry	Refused	Provision	Judgment
2002		12	36	47	11	9	27
2003		9	32	31	4	11	18
2004		11	10	31	3	9	13
2005		8	33	33	0	9	11
2006		9	30	29	8	10	13

(지방해양안전심판소)

단위:건수		Unit: Number						
영도별 Year	구분 Classification	사고발생수	조사종료	불요처분	심판청구	재결	심판계류	관할이전
		Recognition of Marine Accidents	Under Investigation	Remission	Offered for Inquiry	Judgment	Provision	Change of Jurisdiction
합계 Total	2002	(134) 741	177	281	303	225	65	+ 49 , - 43
	2003	(177) 706	203	332	233	244	44	+ 35 , - 35
	2004	(204) 608	232	348	179	151	62	+ 26 , - 38
	2005	(223) 623	244	300	194	124	72	+ 43 , - 43
	2006	(244) 657	222	471	179	122	69	+ 32 , - 32
부산 Busan	2002	(21) 131	39	27	75	113	19	+ 33 , - 4
	2003	(29) 154	35	39	39	35	15	+ 28 , - 1
	2004	(37) 197	34	128	37	39	14	+ 21 , - 0
	2005	(35) 122	34	97	34	35	13	+ 41 , - 3
	2006	(34) 153	45	99	40	38	25	+ 32 , - 0
인천 Incheon	2002	(42) 153	41	64	75	24	29	+ 2 , - 15
	2003	(41) 121	40	60	61	33	3	+ 2 , - 12
	2004	(40) 228	24	131	41	32	16	+ 4 , - 5
	2005	(34) 153	23	123	40	39	13	+ 2 , - 2
	2006	(32) 141	45	108	43	39	12	+ 0 , - 6
목포 Mokpo	2002	(39) 279	73	98	120	25	23	+ 6 , - 23
	2003	(73) 220	65	38	66	38	14	+ 7 , - 15
	2004	(85) 204	145	186	73	45	25	+ 1 , - 12
	2005	(145) 201	35	174	32	44	32	+ 1 , - 22
	2006	(38) 223	62	153	32	43	22	+ 0 , - 19
동해 Donghae	2002	(32) 148	34	74	40	33	5	+ 2 , - 6
	2003	(34) 173	39	77	37	35	7	+ 0 , - 3
	2004	(39) 201	42	123	32	25	7	+ 0 , - 3
	2005	(49) 122	22	108	39	33	9	+ 4 , - 4
	2006	(49) 122	75	113	35	29	20	+ 0 , - 5

수) ()전년이월 견수임.
자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Note: () Numbers brought forward from the previous year.
Sourc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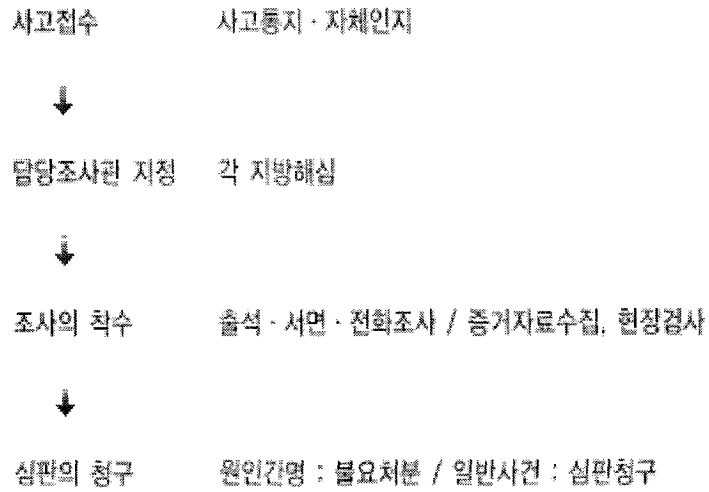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총괄)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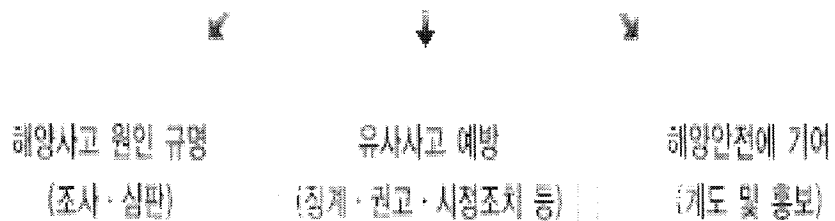
구분 Classification		단위:건수 Unit: Number							
연월 Year & Month	계 Total	충돌 Collision	접촉 Contact	좌초 Grounding	전복 Capsizing	화재,폭발 Fire/Explosion	침몰 Sinking	행방불명 Missing Ships	기관손상 Engine & Aux. Machinery damage
1997	540	181	9	35	18	83	99	1	238
1998	772	147	5	77	14	90	54	4	243
1999	549	173	0	68	27	87	90	4	289
2000	834	130	11	55	19	45	83	2	198
2001	810	141	15	80	21	82	72	1	138
2002	557	154	13	55	29	43	55	0	110
2003	531	152	9	85	22	53	90	2	87
2004	504	210	15	75	35	57	69	1	147
2005	555	172	10	45	22	71	48	4	183
2006	557	187	17	65	15	41	35	0	195
1	48	11	3	4	1	4	3	0	13
2	32	9	0	3	1	5	3	0	10
3	54	15	0	4	4	2	0	0	19
4	49	10	3	3	2	8	1	0	14
5	42	7	0	5	0	5	3	0	14
6	83	20	4	7	1	8	1	0	15
7	31	15	0	3	0	0	1	0	5
8	87	18	0	9	2	2	4	0	20
9	75	19	2	9	2	0	4	0	24
10	83	27	0	11	2	4	1	0	19
11	73	14	1	4	2	5	2	0	22
12	52	14	0	4	1	3	3	0	12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개 요



행정심판 (준사법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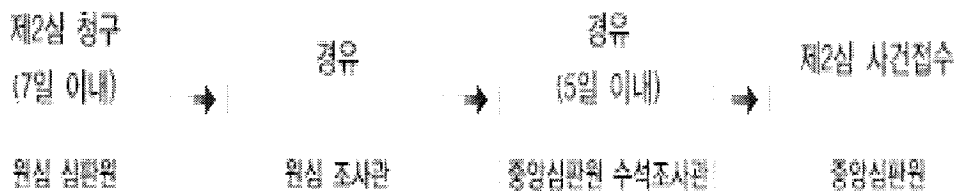
2. 해양사고 심판 대상 및 심급제

가. 심판 대상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고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나. 심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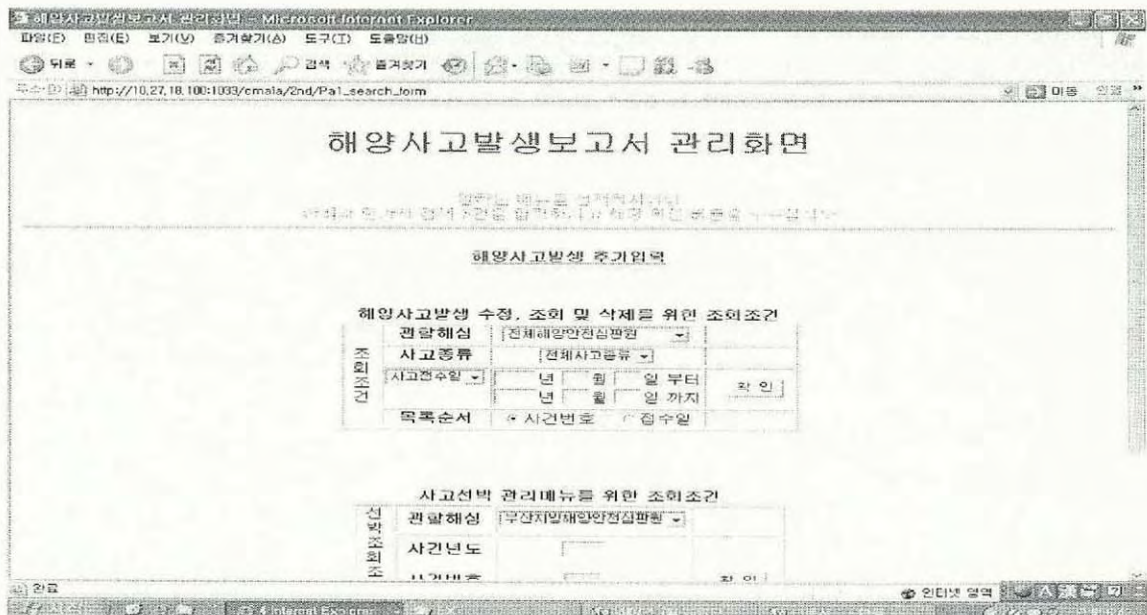
- 해양안전심판제도는 준사법적 절차를 따르는 3심제를 채택
 - 제1심은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
 - 제2심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5명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
 - 제3심은 제2심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



3.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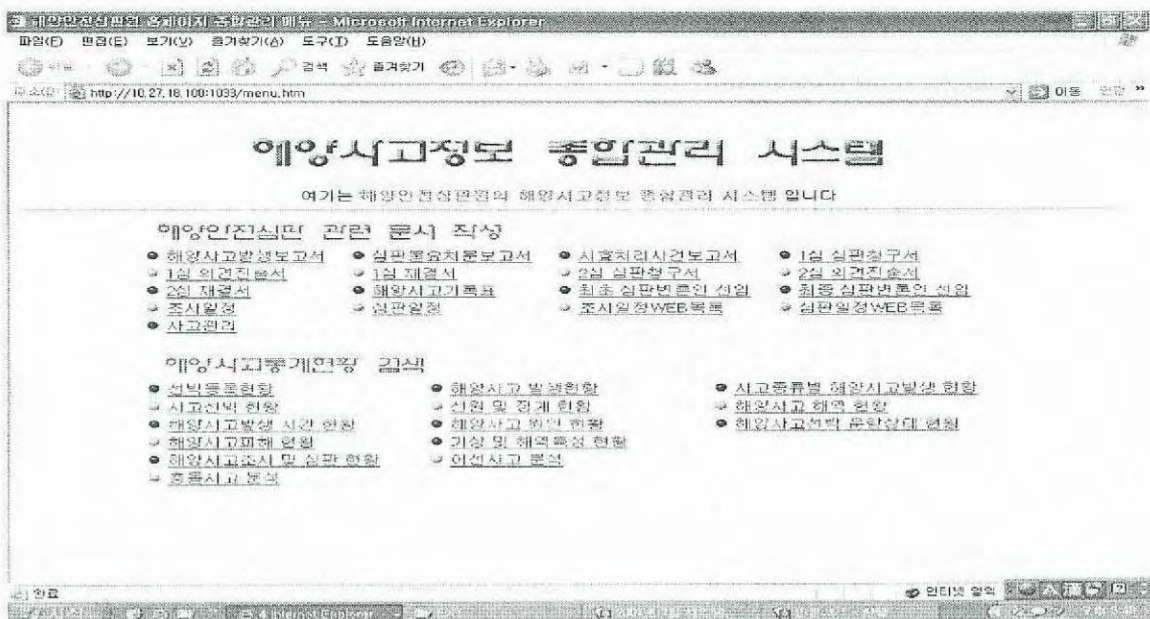
가. 조사 절차

-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관은 해양수산관서,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거나,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사고를 자체 인지하는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
- 담당 조사관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요처분을, 심판불요처분 이외의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



나. 심판 절차

-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심판장이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하고 제1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소환장을 발송
- 제1회 심판은 심판장의 개정선언 후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조사관의 모두진술에 이어 사실심리로 이어지며 심판관 조사관,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 관련자 등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절차를 갖고, 조사관의 의견진술과 심판변론인의 최후 변론 및 해양사고 관련자의 최후 진술을 청취하고 최종 심판 기일에는 심판장의 재결고지와 함께 심판이 종료
- 통계자료의 생성
 - 해양사고 발생시부터 『해양사고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다. 재결의 확정 및 집행

○ 재결의 확정

- 지방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2심 청구기간(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중앙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고지한 날에 확정

○ 재결의 집행

- 재결이 확정되면 수석조사관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재결을 집행하고, 해기사 이외의 일반 해양 사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청하며, 관련내용을 관보에 게재



○ 통계자료의 생성

- 재결의 확정, 집행상황을 해양안정심판원 홈페이지에 등록

번호	제목	공지일자	게시자
27	2001년 1월 및 2월 해양사고 통계 게재	2001.03.12 12:08	관리자
26	"장제보통" 및 "어린이 해양교실" 운영안내	2001.02.27 07:54	관리자
25	2000년(1월~12월) 해양사고통계 게재 알림	2001.01.26 15:05	관리자
24	소식지 『해양안정』 2000년 겨울호 발간	2001.01.04 23:42	관리자
23	2000년 11월 해양사고통계 게재 알림	2000.12.07 13:39	관리자
22	2000년 10월 해양사고통계 게재 알림	2000.11.11 13:23	관리자
21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 개설 알림	2000.10.14 14:55	관리자
20	2000년 9월 해양사고 통계 게재 알림	2000.10.14 00:53	관리자
19	소식지 『해양안정』 2000년 가을호 발간	2000.10.11 17:58	관리자
18	2000년 해양안전점검사례집 게재 알림	2000.10.02 17:57	관리자
17	최근 단건(95~96) 해양사고 통계통역 제공	2000.08.19 15:45	관리자
16	2000년 8월 해양사고 통계 게재 알림	2000.08.03 20:32	관리자
15	2000년 7월 해양사고 통계 게재 알림	2000.08.25 10:32	관리자
14	해양안전점검 기사란 "해양안전점검실" 마련	2000.08.22 08:28	관리자
	제10차 국제해양사고조사기술포럼 회의 국내유치	2000.08.14 09:09	관리자

V. 관련 용어 및 법규

1. 관련 용어

□ 해양사고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해양사고의 종류

- 선박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충돌 :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
 -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 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 좌초 :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얽히거나 부딪친 것
 - 전복 : 선박이 뒤집혀진 것(충돌, 접촉, 좌초, 화재 및 폭발의 결과 발생한 것은 제외)
 - 화재 : 맨 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 접촉, 좌초 및 전복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폭발 : 맨 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 접촉, 좌초 및 전복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침몰 : 충돌, 접촉, 좌초 및 전복 이외의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는 것
- 행방불명 :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불분명하거나 기타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 기관손상 : 주기관(축계를 포함),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
- 추진기 손상 : 추진기가 손상된 것
- 키 손상 : 키가 손상된 것

심판청구

- 조사관이 당해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심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심판불요처분

- 사고원인이 간명(簡明)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조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

관할이전

- 해양사고발생지 기준의 해양안전심판관할원칙의 예외로서 심판상 편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제도

□ 안전저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절박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 타선에 접근하여 항행중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 야간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정박함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 규정된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조선탐으로 인하여 충돌 또는 좌초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 항로내에 정박함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 화물의 적재불량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되거나 침몰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 운항저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절박한 위험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이 부족하여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사주(砂洲)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연료나 청수를 부족하게 적재하여 운항불능에 빠진 때
 - 정비나 수리를 게을리 하여 기관의 작동상태가 나빠 운전에서장이 온 때

□ 해양오염

-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 다만, 전술한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심판청구

- 조사관이 당해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심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 심판불요처분

- 사고원인이 간명하거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조사관이 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처분

□ 관할이전

- 해양사고발생지 기준의 해양안전심판관할원칙의 예외로서 심판상 편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제도

□ 재 결

- 해양사고의 원인, 징계, 권고·명령 및 시정·개선조치의 요청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심판행위(법원의 판결과 유사)

기각·각하

- 심판권이 없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 경우의 재결

징계

-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 재결로써 이를 징계하는 행정처분

면허취소

- 해기사 면허 또는 도선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업무정지

- 해기사 면허 또는 도선사 면허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1월~12월)

견책

-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

2.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사무처리요령

제정	1988.10.18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20호
개정	1989. 6.26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21호
	1994. 6.10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26호
	1995. 5. 2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27호
	1996.10. 1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28호
	1998. 7.31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38호
	1999. 5.21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43호
전문개정	1999. 9.30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44호
개정	2000. 6. 1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45호
	2003. 3. 8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48호
	2003. 8. 20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49호
	2006. 9. 29	중앙해양심판원훈령 제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바다를 말하며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
2.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 댐, 호, 소,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의 수면을 말하며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
3. “수역”이라 함은 해양과 내수면을 말한다.

제3조(심판정의 용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관용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심판관의 사무분담) 각 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심판관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담을 변경하거나 또는 어느 심판관으로 하여금 다른 심판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석조사관의 직무지휘) 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조사관 또는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하 “조사관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조사관의 직무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조사관(이하 “지방조사관”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지방심판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그의 직무를 행한다.

제7조(서기의 직무집행) 심판원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에 따른다.

제8조(서류의 작성변경에 관한 서기의 의견) 서기는 조서 기타의 서류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작성 또는 변경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제9조(해양안전심판대상 선박) 사고선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대상 선박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선박의 구조 및 당해사실의 경과를 상세히 기술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선박의 종류)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기한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동력어선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무동력어선을 포함한다)
4. 수상항공기 :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

제11조(선질) 선질은 “강”, “경합금”, “목”, “목강”, “강화플라스틱” 또는 “시멘트” 등으로 한다.

제12조(선박의 용도) ①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상의 용도로 하며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여객선”, “도선”, “유선”, “통선”, “일반화물선”, “원목선”, “컨테이너선”, “모래채취선”, “차량운반선”, “냉동운반선”,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탱커”, “예인선”, “압향선”, “부선”, “어선”, “어획물운반선”, “채취선”, “관용선”, “군함” 및 “해경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제기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 대하여는 통상 사용하고 있는 호칭에 따른다.

제13조(사고의 종류) ①법 제2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목중 1로 할 것
 - 가.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
 - 나.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 다. 좌초 :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얽히거나 부딪친 것
 - 라. 전복 : 선박이 뒤집혀진 것(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결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 마. 화재 :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가목 내지 라목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 바. 폭발 :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가목 내지 마목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 사. 침몰 : 가목 내지 바목 이외에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아. 행방불명 :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불분명하거나 기타 보험관계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 자. 기관손상 : 주기관(축계를 포함한다), 보조기관, 보일러 또는 보기 등이 손상된 것
 - 차. 추진기손상 : 추진기가 손상된 것
 - 카. 키손상 : 키가 손상된 것
 - 타. 속구손상 :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파. 조난 : 가목 내지 타목 이외의 것
2. 선박에는 거의 손상이 없이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00손상”으로 할 것. 이때 “00”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②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는 “00사망”, “00실종”, “00사상” 또는 “00부상”으로 한다. 이때 “00”에는 “여객”, “작업원”, “선원” 등이라 기재하되 이들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순위에 따라 그 명칭중 하나를 취하여 “00등”이라 기재한다.
- ③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의한다. 다만, 손상은 경미하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양사고의 실태를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의할 수 있다.
- ④법 제2조제1호라목중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절박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저해”로 할 것
- 가. 타선에 접근하여 항행중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 나. 야간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항행하거나 정박함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킨 때
 - 다. 규정된 승무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조선헬으로 인하여 충돌 또는 좌초 등의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 라. 항로내에 정박함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 마. 화물의 적재불량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되거나 침몰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한 때
 - 바. 항해중 추진기에 페로프, 페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절박한 위협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협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운항저해”로 할 것

가. 운항에 필요한 승무원이 부족하여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나. 사주(砂洲)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다. 연료나 청수를 부족하게 적재하여 운항불능에 빠진 때

라. 정비나 수리를 게을리하여 기관의 작동상태가 나빠 운전이 지장이 온 때

⑤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을 말하며 “해양오염”으로 할 것.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⑥제5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1차 사고에 의한 오염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양사고의 종류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할 것

제14조(사건명) ①사건명은 “(용도) (선명) (사고의 종류) 사건”이라 기재한다.

②제17조제3항의 경우 관련하는 2이상의 해양사고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의 사건명은 해양사고의 실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하여야 할 해양사고원인 또는 조사관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요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써도 된다.

③충돌사건 등에 있어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건명을 붙인다.

1. 한국선박

2. 기선, 범선, 부선 및 수상항공기의 순

3. 총톤수가 큰 선박

4. 3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충돌한 시기가 빠른 선박

5. 끌리어 가거나 밀리어 가는 부선이 충돌한 때에는 당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가 큰 것

④선박이 시설 등에 접촉하여 선박에는 손상이 없이 그 시설만 손상이 된 때에는 선명 다음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명칭을 붙여 사건명으로 한다.

⑤압항 또는 예인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의 사건명은 “일체형압항선00호·압항부선00호00사건”, “일체형압항선00호의압항부선00호00사건”, “예인선00호·피예인부선00호00사건” 또는 “예인선00호의피예인부선00호00사건”이라 한다.

⑥외국선박의 선명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국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시한다.

제15조(발생일시) 사고의 발생일시는 그 발생장소의 지방시간에 의한 연, 월, 일, 시, 분으로 하되, 그 지방시간이 한국표준시간과 다른 때에는 ()를 하고 국제표준시(UTC)에 의한 일시를 병기한다.

제16조(발생장소) ①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병기한다.

예1 :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

예2 :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

예3 :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

②발생장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2장 심판청구전의 사무

제1절 해양사고의 접수·보고 및 사건성립

제17조(해양사고의 접수) ①지방조사관이 선원법 제21조, 도선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수난구조법 제12조제1항,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9조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신고된 해양사고에 관한 보고를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를 받았을 때,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았을 때, 기타 해양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관보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전화 등에 의하여 통보를 받았거나 신문·방송 기타에 의하여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해양사고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해양사고속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사고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2이상의 해양사고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해양사고로 취급하여 이를 1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해양사고사건의 취급) ①조사관보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사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라고 판단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사고사건으로 성립시켜 당해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수석조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의 자격, 경력 및 현재의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해양사고발생의 보고) ①지방수석조사관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로 성립시킨 때에는 해양사고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있는 해양사고발생보고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이를 “중대해양사고사건”으로 지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20조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앞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사고속보를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0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다만, 원인이 간명한 것을 제외한다.
2.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인 이상이 중상(제51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을 입은 경우. 다만, 원인이 간명한 것을 제외한다.
3.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이 전손된 경우. 다만, 원인이 간명한 것을 제외한다.
4. 위험물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로 선박의 손상이 중대한 것
5.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경우
6. 원인이 복잡하여 그 해명에 감정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방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으로 심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이 예견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는 그 조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자(이하 “해양사고관계인”이라 한다)의 직책과 성명, 앞으로의 조사계획의 개요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보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①제18조제1항의 경우 그 접수된 것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나 그것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그 관할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으로,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으로 본다.

제21조(2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①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사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건서류 및 증거물 등을 당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비해당사건의 처리)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중인 선박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선박의 단독 사고
3.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등의 단독 또는 그 상호간에 일으킨 해양사고.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해당사건은 그 서류의 상단 우측에 “비해당”이라 기재한 다음 그 매년분을 일괄 편철하여 그 접수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중 후일에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한다.

④제1항의 접수건수는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사건접수의 취소) ①조사관은 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건접수를 취소하고 사건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②조사관은 이미 접수한 사건이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이송한 때에는 사건접수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③시행령제3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하가 결정되었거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이송하고자 하는 수석조사관은 사건의 접수를 취소하고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여 접수가 취소된 사건의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의 처리구분은 “접수취소”로 기재하고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 제2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사건은 해양사고접수및처리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해양사고사실의 조사와 증거의 수집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사건기록표지의 작성) 해양사고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은 매 사건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사건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이고 그 소요사항과 처리결과를 기재한 다음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중대사건의 우선처리) ①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초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담당조사관 이외의 조사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초기에 선박의 승무원, 소유자, 운항자 기타 목격자 등 해양사고관계인의 사정청취를 조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는 등 초동조사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의 원장은 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사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 주어야 한다.

제27조(특별조사부의 활동) ①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사부의 구성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사부 구성(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활동을 마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10일 이내에 특별조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집한 증거자료, 질문조서, 검사조서 기타 관계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특별조사부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사보고서 제출과 인계를 완료한 경우 특별조사부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⑤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부장으로부터 특별조사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인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조사관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⑥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각급 심판원의 소속직원을 지원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근무자는 특별조사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28조(조사 등의 의뢰) ①조사관은 그의 관할구역 외에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질문, 증거의 수집 또는 선박 등의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조사의뢰하고자 하는 조사내용을 명시하여 조사를 행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를 받은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3-1호서식의 해양사고조사 의뢰접수및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협조) ①조사관이 해양사고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해양 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때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당해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당해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착수 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사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증거의 보존과 보전) ①조사관은 해양사고현장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증거인멸 내지 변형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진촬영 기타의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①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토 또는 외국의 영해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당해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때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기타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제32조(외국선박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 외국선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미리 그 외국선박의 대리점을 통하여 그 승무원에 대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선박의 검사를 하고자 한다는 뜻을 당해 선장에게 연락할 것
2. 될 수 있는대로 출항할 때까지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것
3. 승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지 아니할 때에는 입회인과 통역인을 데리고 직접 당해 선박에 가서 선내에서 사정청취를 할 것
4. 당해 선박에 임검할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승선할 것
5. 사정청취 내용은 녹음하여 질문조서의 작성 및 향후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
6. 사정청취에 있어서 변호사의 입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시키지 말 것
7. 당해 선박의 항해형편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요할 때에는 그 기항지에 가까운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조사의뢰를 할 것
8. 당해 선박의 출항시까지 조사 및 증거수집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선박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항할 기미가 없을 때에는 당해 선박측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선장 또는 당직항해사 등의 진술서(또는 스테이트먼트 : Statement, 이하 같다) 기타 시운전성적서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리인 또는 대리점이 없을 때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영사관에 증거수집을 의뢰할 것

제33조(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통지) ①조사관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수배를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의뢰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발송을 생략하고 전화나 전보 등을 사용하여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을 통지하거나 그의 출석을 선박소유자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일시, 장소 및 가지고 나올 서류 등을 명확히 전하고 그 전화나 전보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④출석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재차 독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선사, 소속어업조합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해양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사관련 중대해양사고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 등의 귀국 또는 귀항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 귀국 또는 귀항 즉시 출석케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출장하여 신속히 질문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선박검사의 제한) 선박검사를 행하는 경우 선박의 수면 이하에 손상개소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도 관계자의 동의없이선박을 상가 또는 입거시키지 못한다.

제37조(선등의 검사) 등화가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등화에 관한 검사는 조속히 이를 행하고 문제가 된 등화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삭제)

제39조(증거서류의 수집) ①조사관이 증거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원본을 영치하도록 하고 부득히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원본과 대조한 다음 당해 사본이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하 “원본대조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관서 등에서 담당직원이 이미 원본대조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원본대조필을 생략한다.

②해양사고관계인 등이 사본만을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이 제출자에게 원본의 소재 및 원본과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제출자에게 사본이라는 뜻의 기재와 서명 날인을 시켜서 영치하여야 한다.

③증거서류는 한글(국·한문 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널리 통용되는 해상관용어로 작성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증거물 등의 영치) ①조사관은 사건을 조사할 때 선장, 기관장, 선박소유자, 조선소 직원 기타 해양사고관계인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증거물 및 증거서류를 영치한 때에는 그 품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치품목을 작성하고 제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본대조필을 할 것
2. 영치품은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제출자에게 반환할 것
3. 제출자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영치품목록의 비고란에 제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놓을 것

제41조(하선조치요구)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서에 해양사고관계인의 하선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선조치요구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42조(형사관련사건의 취급) ①해양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검찰청에 송치되었거나 검찰관의 지휘하에 사법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중인 사건(이하 “형사관련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법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사상을 수반한 중대해양사고사건에 대하여는 특히 집중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형사관련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조사관이 조사를 할 때에는 당해 해양사고관계인이 사법수사기관으로부터 취조를 받았는지를 질문조서에 명기할 것
2.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하여는 그 해양사고사건에 관하여 기소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주의를 촉구할 것
3. 해양사고관계인이 사법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조가 끝나는 즉시 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당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것
4. 증거물 등이 이미 사법수사기관에 영치된 때에는 차용 또는 필요부분을 복사할 수 있도록 당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

5. 사실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수사기관에 조회하여 그 회신을 얻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검찰관에게 협조요청하여 수사서류를 복사할 것

③지방수석조사관은 형사관련 중대해양사고사건에 대하여는 그 조사진행상황, 심판청구 및 심판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의견진술내용에 관하여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사실조사의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하고 심판청구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요구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심판불요처분을 한 때 :

- 가. 처분의 구분
- 나. 사실의 개요
- 다. 심판불요처분을 한 이유
- 라. 불요처분일자
- 마. 담당조사관의 성명

2. 심판청구를 한 때 :

- 가. 처분의 구분
- 나. 사건명
-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명 및 면허의 종류
- 라. 사건의 개요
- 마.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 바. 심판청구일자

②조사관이 15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미리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요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다.

제44조(서류 등의 보관) 조사서류 및 보고서는 대여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조사관의 증표)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제3절 심판불요처분 및 시효처리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심판불요처분사건의 재조사) ①조사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불요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심판불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불요처분사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을 받은 조사관은 지체 없이 그 심판불요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미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2. 사건기록표지의 해당처리란에 사선을 긋고 그 비고란에 그 처분을 취소한 이유 등을 기재한다.
3. 담당조사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 담당조사관란에 사선을 긋고 새로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의 성명을 기재한다.
4. 해양사고조사처리부의 처리란의 기재사항을 정정한다.

④제5항의 경우 그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지체없이 심판불요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그 취소일자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시효사건의 처리) ①접수한 해양사고사실에 대하여 조사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와 증거수집노력을 하였어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조사결과 또는 해양사고접수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시효처리사건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기록표지의 처리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시효처리사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심판불요처분사건 등 일건서류의 보관) 심판불요처분 및 시효처리를 한 사건의 일건서류는 각각 매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처분한 연도의 말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판의 진행

제1절 심판청구절차

제51조(심판청구의 기준) 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이를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선박이외의 시설에 생긴 손상이 다음 각목의 1에서 예시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것
 - 가. 충돌의 경우 적어도 어느 한척의 외판에 파공 또는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한 침수로 항행이 위협하게 된 것
 - 나. 좌초의 경우 선저 또는 외판에 파공 또는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한 침수로 항행이 위협하게 된 것
 - 다. 화재·폭발 등의 경우 외판·갑판 및 내부의 여러 시설 등에 손상 또는 소손이 생겨 예정의 항해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것
 - 라. 제46조제1항제2호 이외의 기관, 추진기 또는 키에 손상이 생겼거나 조난을 당하여 자력으로 행할 수 없어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귀항 또는 수리지로 항행하게 될 필요가 생긴 것
 - 마. 기타 손상의 정도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2. 인명이 상실되거나 부상의 정도가 커서 1월이상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하 “중상”이라 한다). 다만, 본인의 잘못으로 물속에 빠져 사망하였음이 명백한 것 또는 실종이 된 때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어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손상 또는 사상의 정도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해양사고의 성질로 미루어 중대한 해양사고로 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해양사고관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
5. 안전저해 또는 운항저해사건중 사태가 중대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특정한 구역에서 번번히 또는 집중하여 발생한 것, 전례가 없는 특이한 것, 기타 해양사고의 방지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52조(단독심판의 청구범위) 해양사고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단독심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를 다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이상의 징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

3. 공법인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

4. 기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

제53조(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①해기사 또는 도선사(당해 면허로서 당해 직무를 수행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한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이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라 한다)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승무하여 또는 그 도선사(도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탑승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였거나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기사에 있어서는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직원 고유의 직무에 한하지 아니하고 해기사 각인에게 주어진 임무도 포함된다.
2. 도선사에 있어서는 도선사가 도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구(그 도선구밖이라도 사회통념상 당해 도선구에서 도선을 하기 위하여 통상 승·하선하는 범위의 수역을 포함한다. 제4항제1호 및 제54조제3항제2호에서 같다)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③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지고 있는 면허가 사고당시 종사한 직무내용(갑판, 기관 및 통신관계를 말한다)과 동일 종류의 것일 것. 이 때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는 갑판 및 기관관계 양방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선원법상 공인 또는 고용계약 등에 의거 유효한 면허관련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3. 신조선의 경우 인도전에 행하는 시운전 중에 승무한 자가 시운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와 직무내용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4.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자는 일반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할 것
5. 군 또는 경찰용의 함정이나 선박에 승무하는 해군장병 또는 경찰대원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도선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였을 것

2. 사건발생후 도선사에 폐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가. 사건당시 도선사였던 자가 심판청구전에 폐업한 때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없다.

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심판청구한 도선사가 그 뒤에 폐업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한다.

제54조(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이외의 자로서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요구할 정도는 아니나 스스로 심판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자연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기사라도 국취부 나용선 이외의 외국선박 및 군함, 경찰용 선박에 승무하는 자와 기타 가지고 있는 면허가 유효하게 행사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2. 도선사라도 도선구 이외의 수역에서 사설도선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3.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인 자로서 선원으로 승무한 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16세 미만인 자라도 선원법 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외국선박의 승무원인 외국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측의 대리점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약속서를 제출하게 할 것

가. 국내에 연락장소를 정하여 조사관 또는 심판원의 통지나 연락 등에 지장이 없게 한다.

나. 심판기일에 꼭 출석하여 심판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한다.

다. 일반 해양사고관련자가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툴러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5. 외국선박이 영해밖에서 한국선박과 충돌한 경우에 그 외국선박의 승무원이 일반 해양 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제4호의 예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6.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④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지정할 것. 다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함에 있어서 지사를 지정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사가 종된 영업소로서 법인등기 되고 또한 그 지사의 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사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도 된다.

2. 조사관이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여러 관계자로부터 사정청취를 하고 발생원인의 책임이 법인에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 또는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질문조서를 작성할 것. 이 때 그 위임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3. 사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법인등기부초본(또는 종된 영업소의 등기부초본 및 지배인등기부)외에 필요에 따라 정관, 회사경력서, 사내조직체제 등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것

4. 심판청구서의 “해양사고관련자(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란에는 당해 법인의 본사(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와 아울러 대표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할 것

5.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심판청구 후에 이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심판원에 통지할 것

⑤공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관청과의 상호 협력체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협의하여 지정취지를 이해시킬 것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원인에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배제 및 개선조치가 가능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의 장이 대표하는 것으로 할 것

3. 공사 등 특별법인을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할 것

4. 관계자에 대한 사정청취 및 관계자료의 수집은 사법인에 준하여 할 것

5. 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심판청구의 절차) ①조사관은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서로서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조사관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사건에

대하여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부의 활동을 한 때, 기타 특기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건기록표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삭제)

제57조(이해관계인) 법 제27조제1항 및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은 당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책무가 있거나 당해 해양사고의 심판 및 재결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물질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57조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심판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94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이해관계인이 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당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여를 허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관련 조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송부서의 첨부) 일건서류 및 영치품 등 증거물을 송부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23호서식의 일건서류및영치품등증거물송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심판청구의 통지) ①조사관이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한 뜻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사고심판청구 및 통지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심판청구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②단독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심판청구 당일 심판을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준하여 통지하되 통지서의 끝에 “단독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합의체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첨가하도록 한다.

제60조(심판청구의 보고) 조사관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청구서의 수리

제61조(심판청구서의 접수) ①심판청구서, 신청서, 제2심청구서, 제2심청구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사건진행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접수부에 기재하고 그 표지 좌측상단 여백에 별표 2의 사건진행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진행번호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원의 약칭과 서기년수의 숫자로써 연도별로 결정한다.

예 : 부해심 1986-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사건으로서 지방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제1심심판기록에, 중앙심판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제2심심판기록에 의하여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건진행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로써 부여한다.

⑤중앙심판원이 수개의 지방심판원으로부터 동시에 제2심청구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2항 별표 1 “지방심판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의 심판원 순서에 의하고, 동일 지방심판원으로부터 2건 이상의 기록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원심의 사건진행번호순서에 의한다.

제62조(심판사건의 배정) 각 심판원의 심판사건의 배정은 당해 원장이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행한다.

제63조(단독심판청구사건의 합의체심판 결정) ①영 제36조의 경우 이외에 당해 심판사건을 배정받은 심판관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사고관련자가 합의체심판을 원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업무정지이상의 징계제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합의체심판으로 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결정사실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제36조 및 제1항의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4조(비상임심판관의 지명협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비상임심판관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부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기재하여 이를 행한다.

제65조(형사관련사건의 처리) 형사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사법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심판준비

제66조(증거조사의 신청) 조사관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조사관 신청증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심판기일의 지정)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일을 정하는 때에는, 제1회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기타의 심판기일은 전회 심판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기일의 지정은 심판장이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심판기일지정서에 기재하여 지정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 단서를 근거로 제1회심판기일을 정함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심판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일은 지방심판원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중앙심판원의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으로부터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 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심판기일의 변경)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일 변경신청의 서류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심 판기일변경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38조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판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기재하여 변경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사건이송) ①지방심판원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그 사건의 관할지방심판원 수 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조사 관보로 하여금 탈락 또는 분실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 담당조사관을 지명하여 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 서류의 수집 등 보완조사를 하여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지방심판원에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보완조사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 송부후에도 보 완조사를 할 수 있다.

④당해 사건을 심판청구한 원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관할이전의 결정이전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과 조사관신청증거목록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 고기록표를 작성한 때에는 이들 서류를 새로이 그 사건을 관할하게 된 지방심판원의 수 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할이전신청) ①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 가까이 에 편재되어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주거 형편상 관할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관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인 성명란에 조사관의 성명을 주소란에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③해양사고관련자가 서신 등 기타 입증할만한 방법으로 관할이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서기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관할이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그 신청서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고 대리작성하였다는 뜻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담당조사관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관할이전신청에 대한 의견) ①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 또는 제출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이외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보하고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이 경과하여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담당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이전의 가·부에 대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신청인 이외의 자로부터 제출받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붙여 관할이전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조사관은 심판청구시 관할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조사관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견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관할이전신청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관할이전신청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7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전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의 결정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영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제6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수석조사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원 관할지방심판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결정기록부) 심판원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결정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심판변론인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심판변론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특별심판변론인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특별심판변론인의 선임 허가여부 결정) 심판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심판변론인의 선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별로 결정하되 허가결정 대상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야(예 : 조선, 해운 및 기상 등)의 전문가에 한하여야 한다.

제4절 심리절차

제78조(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사실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은 “정정”으로 본다.

③관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6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①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 후에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3항 또는 영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변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새로이 지정하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명 및 면허

3. 새로이 지정하는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주민등록번호(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4.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심판청구후에 해양사고관련자의 사망·해산 또는 흡수·합병 등으로 당해 해양사고관련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심판청구서변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징계사유 및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철회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의견진술을 할 때에 그 뜻을 진술하여도 된다.

③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적격성의 상실 기타 새로운 사실의 판명 등으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를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하거나 일반 해양사고관련자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변경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지정절차를 취한다

④관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⑤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의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내용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⑥관할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작성하여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심판청구보고서에 심판청구서변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통보) ①관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변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추가로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사고관련자지정통지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심판청구를 한 지방심판원의 명칭

다. 심판청구년월일

라. 추가로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명 및 면허

마. 추가로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주민등록번호(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바. 이미 지정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명 및 면허
사. 이미 지정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주민등록번호(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아. 사실의 개요(새로이 지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2. 이미 지정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할 것.

가. 사건명

나. 새로이 지정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명 및 면허

다. 새로이 지정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대표자·주민등록번호(자연인인 경우에 한한다)·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소재지) 및 직명

라. 변경후의 심판청구서의 사실의 개요

②관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제79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심판청구서변경통지서에 의하여 관련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증거물의 추가송부)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질문조서 기타 새로이 수집한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증거물추가송부서에 관련 사건명·증거물의 종류 또는 제목 및 수량 등을 표시하여 관할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판원이 행하는 검사 및 증인신문에의 입회) 심판원으로부터 영 제40조 또는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83조(심판진행순서) 심판정에서의 심판진행순서는 별표 3와 같다.

제84조 (증거조사의 방식) ①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심판관 등 기피신청)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의 서면은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심판관·비상임심판관기피신청서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 ①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정을 한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 결정

2.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다음 이유

가. 원 결정을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변경할 것을 구하는가

나. 원 결정은 심판절차를 정한 법령의 어느 조항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가

②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소속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소환) ①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소환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서기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소환(통지)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7조의2(계획심리)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별지 50-1호 서식에 의거 미리 신문할 사항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88조(소환유예) 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소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89조(소환의 면제) 심판장은 신문을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심판기일의 통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심판(변론)기일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재결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재결심판 기일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면제를 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소환면제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심판정에 출석한 자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일통지서 발부는 심판장이 심판정에서 다음심판기일을 고지함으로써 발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91조(증인신청) ①해양사고관련자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증인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증인의 채택에 관하여는 심판장이 이를 정한다.

제92조(시정·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심판원은 심판 과정에서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3조(증인선서)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서는 별지 제56호서식을 사용한다.

제94조(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판변론인을 출정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회 이상 심판에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심판장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심판원의 심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지방심판원의 심판에 출석한 자가 선임한 심판변론인의 단독출석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5조(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 심판변론인에 대하여는 신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설명이나 기타 심판에 관한 구두변론, 변론서의 제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심판절차의 갱신절차) ①심판절차의 갱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판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문을 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심판장은 조사관으로 하여금 심판청구의 요지 또는 심판청구서의 변경이 있었던 때에는 심판청구서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4. 심판장은 갱신전의 심판기일에서의 심판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나 해양사고관련자 아닌 자의 진술 또는 심판원의 증거조사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심판장은 갱신전의 심판기일에서 증거조사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직권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류 또는 물건과 증거로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판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84조에 규정한 방법에 같음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제97조(심판조서) ①심판에 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 심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심판정에서 행한 일체의 심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심판관계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3. 심판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
4. 영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원이외의 장소에서 심판을 개정할 때에는 그 장소
5.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 및 성명
6. 조사관의 직명 및 성명
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및 그 진술
8. 해양사고관련자가 결석한 대로 심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출석한 조사관의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한 의견
9. 심판조서에 속기록을 인용할 것, 고지한 것과 그 속기의 내용
10. 조사관이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를 한 이유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심판관계인의 의견
11. 증거조사, 기타의 신청
12. 조사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1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14. 증인 등에 대한 신문과 그 진술 및 증인의 선서를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한 때에는 그 사유
15. 심판정에서 검사한 내용
16.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진술한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의견
17.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 대하여 최후로 진술할 기회를 준 것과 그 진술
18. 재결 또는 결정을 고지한 내용
19. 심리를 병합 또는 분리한 일
20. 심판절차를 경신한 것과 그 내용
21. 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기타 심리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제1항의 심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심판조서는 그 심판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심판조서에는 심판장 또는 단독심판관과 서기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8조(심판기일외에 있어서의 신문조서) ①심판기일외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하여, 증인 등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문을 받은 자의 성명
2. 사건명
3. 신문을 한 해양안전심판원 및 연월일
4. 신문을 한 장소
5. 심판관·비상임심판관 및 서기의 직명·성명
6. 신문에 입회한 자의 성명
7. 증인을 선서시키지 아니하고 신문을 하였을 때는 그 이유
8. 신문 및 진술

②신문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열람시키고 진술자가 틀림이 없다고 말할 때에는 그 뜻을 신문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문을 받은 자와 신문에 입회한 조사관·심판관계인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검사조서) ①심판기일외에 검사를 한 때에는 입회서기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날짜와 장소의 기재)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신문 또는 검사한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 ①심판관 또는 서기가 작성한 서류에는 날짜를 기재하고 그 소속의 관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류로서 심판관이 작성한 서류의 원본에 대하여는 주심 심판관이, 기타의 서류에 대하여는 서기가 매장마다 각각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서류의 정정) 심판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그 자구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글자를 첨삭하거나 정정한 때에는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난외에 첨삭하거나 정정한 글자수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3조(증거목록의 구분과 편철) 증거목록은 이를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또는 심판변론인) 및 직권분으로 구분하여 각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고 심판기록중 심판청구서 다음에 조사관·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직권분의 순서로 편철한다. 해양사고관련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증거목록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제출 해양사고관련자를 기재한다.

제104조(증거목록의 작성방법) 증거서류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일 및 장소”란중 “회”표시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을 신청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심판정외에서의 증거신청은 “심판정외”라 각각 기재하고, “장”표시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이 편철되어 있는 기록 첫장의 수를 기재한다.
2. “증거방법”란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방법(서증, 증인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을 신청 또는 직권채택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3. “입증취지”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한 사실을 기재한다.
4. “증거결정”란중 “기일”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채부”란에는 당해 증거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채”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로 표시하며, “인”란에는 조서작성자의 사인을 날인한다. “의견·증거조사”란중 “인”란도 같다. 서증에 대한 증거신청의 경우에 당해 서증의 증거능력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동 서증의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장차 증거능력을 구비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증거결정을 일시 보류하였다가 증거능력의 구비여부가 확인된 기일에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5. “의견(지정기일)”란에는 서증의 경우 증인·검증·감정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과 같이 따로 증거조사기일에 필요한 경우 및 사실조회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서증의 경우

“기일”란에는 당해 서증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표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내용”란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을 기재하되, 조사관이 작성한 해양사고관련자(의견을 진술하는 당해 해양사고관련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신문조서와 해양사고관련자가 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에 관하여는 진정 성립·임의성 여부를 각각 기재한다. 서증중 일부에 관하여만 임의성 또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 포함에 부동의를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항목 또는 기록장수 등에 의하여 특정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전체에 관하여 임의성 또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를 것으로 기재한다. 해양사고관련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의견을 진술한 해양사고관련자가의 이름을 부기한다.

나. 증인 등의 경우

“기일”란에는 증거조사(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인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기로 지정된 심판기일의 횟수(심판정외의 기일인 때에는 “심판정외”라고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내용”란에는 위 지정기일의 월·일·시를 각각 기재한다.

다. 사실조회의 경우

사실조회의 결과 송부되어 온 회신서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가”목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6. “증거조사(조사기일)”란중 “기일”란에는 당해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심판기일의 횟수를 기재하고, “내용”란에는 당해증거가 증거서류(오로지 서류의 의미·내용만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신문조서·진술조서·검증조서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시 및 내용고지”로, 증거물인 경우에는 “제시”로 각각 기재하며, 증인 등의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한 월·일·시로 표시한다. 채택된 증거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내용란에 표시하되 철회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철회취소”, 직권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취소”로 각각 기재한다.
7.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되 심판정외에서 해양사고관련자·증인 또는 감정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0회 기일조서 현출내용고지”라고 기재한다.

제105조(단독심판절차의 증거목록) 단독심판의 경우 증거목록의 작성방법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되 “입증취지”, “의견”란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6조(서류 및 증거물의 복사) ①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자기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 하여금 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심의 증거목록 등) ①제2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라고 주서하고 그 오른편 제2심사건진행번호를 기재한다.

②이송사건, 환송사건 및 재심사건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편철된 증거목록용지가 부족하여 제2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목록용지의 표시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제108조(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 기본심판조서중 제104조, 제105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증거목록에 분리기재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조사관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속에 부기한다.

제109조(서류 등의 사본) 심판기일외에 있어서의 장부 또는 서류의 원본을 대신하여 그 사본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서기는 이를 원본과 대조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절 조사관의 의견진술

제110조(의견진술의 내용)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1. 사실의 제시

단순한 해양사고발생까지의 경과가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권고·명령 및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의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이유가 되는 해양사고원인사실 및 징계등의 원인사실을 제시한다.

2.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의 행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해양사고방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 문제점이 있었는가, 무엇을 제거하여야 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원인을 취하고 이를 결론으로서 지적하여 나타낸다.

3.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이들 행위가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이 과실로서 인정되는 사실을 나타낸다.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과실의 정도, 인적·물적 손상의 대소 및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한다.

4.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원인판단에 근거하여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등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할 사항(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권고”만 해당)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다. 다만, 심판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재결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효과 거양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굳이 권고 또는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로 진술한다.

5. 시정·개선의 요청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요청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견진술의 구성) ①의견진술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하여야 하고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 시정·개선의 권고·명령 및 시정·개선의 요청 이유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사항을 빠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주요사실의 인정

원인해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아니될 기본적 사실 및 심판에서 쟁점이 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한다.

2. 사실의 경과

인정한 주요사실을 근간으로 하여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을 증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령있게 엮는다. 원인에 관계가 적은 사실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

3.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

가. 항법의 적용

적용하여야 할 항법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어떠한 항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원의 상무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한다.

나.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원인을 구성하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결론짓기 위한 사고과정을 기술하여 원인을 해명한다. 아울러 원인에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관계된 때에는 그 행위가 원인이 되었는가의 여부를 명확히 기술한다.

다. 징계 등의 검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된 때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등 비난할만한 행위가 있는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검토한다.

라. 결론

해양사고원인, 징계원인 및 징계 등의 양정과 제110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②조사관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으로 소속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원인판단과 징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④제6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제 결

제112조(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없는 면허의 처리) 2종류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양사고에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해기사면허는 이를 징계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113조(상급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재결고지할 때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면허보다 상급의 면허를 받았을 때에는 상급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14조(합의비밀)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합의회는 심판장이 이를 개최하고 이를 정리하며 합의과정,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에 대하여는 비밀로 한다.

③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은 합의시에 심판장이 의견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5조(합의) 심판의 합의를 하는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 또는 징계양정에 있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 유리한 의견의 수에 가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의한다.

제116조(과실정도에 대한 재결) 심판원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사고중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때
2. 심판부에서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7조(재결서의 작성) ①재결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요령은 별표 4에 의한다

②재결서중 권고의 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요령은 별표 5에 의한다.

③재결서중 명령의 서식은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요령은 별표 6에 의한다.

④재결서중 시정·개선조치요청의 서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요령은 별표 7에 의한다.

제118조(재결서의 용어) ①재결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하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쓴다.

②문장으로 표현하기 곤란한 것은 도면 또는 약도·도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9조(재결서의 원본) 재결서의 원본은 재결고지 이전에 작성하여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0조(비상임심판관의 서명날인)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의 서명 날인은 심판관 다음에 연령순위로 한다.

제121조(재결번호) ①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②재결고지후 그 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별표 8의 재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2조(재결서 등의 용지) 재결서 및 결정서의 용지는 중앙심판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3조(재결서검토협의회 운영) ①재결서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심판원에 재결서검토협의회를 둔다.

- ②재결서검토협의회는 중앙심판원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심판관중 선임자로 한다.
- ③재결서검토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여 월1회 개최하며, 지방심판원의 재결서를 검토하여 재결서의 발전방안을 연구한다.
- ④재결서검토협의회 회의록은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 ⑤중앙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 심판관으로 하여금 지방심판원에 출장을 명하여 지방심판원 심판관 등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를 교육·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징계기준

- 제124조(삭제)
- 제125조(삭제)
- 제126조(삭제)
- 제127조(삭제)
- 제127조의2(삭제)
- 제128조(삭제)
- 제129조(삭제)
- 제130조(삭제)

제8절 특별심판

- 제131조(특별심판의 대상) 법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그 원인 규명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심판을 할 수 있다.
- 제132조(특별심판부의 구성) ①중앙심판원장은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한다.
- ②지방심판원장은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판을 위한 특별심판부의 구성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중앙심판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심판관 2인을 지명하고 이를 해당 지방심판원에 통보하여 특별심판을 하게 한다.

제133조(특별심판에 관한 유의사항) ①특별심판부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비상임심판관 및 해사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특별심판의 취지에 부합하는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장은 특별심판사건에 관하여는 다른 심판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4조(특별심판의 심판절차 등) ①특별심판부의 심판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를 적용한다.

②특별심판에의 입회, 기록서류의 작성 및 보관과 증거물의 영치 및 재결서등본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당해 지방심판원의 직원이 담당 처리한다.

제135조(재결서의 작성) 특별심판부에서 재결한 특별심판의 재결서, 권고서, 명령서 및 시정·개선조치 요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재결서는 별표 4의 재결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 재결서의 첫째면의 첫째줄 중앙부에 기재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 바로 밑에 “(특별심판부)”라고 자구를 추가 기재하고 동 재결서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한다.
2. 권고서는 별표 5의 권고서 작성요령과 같다. 다만,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권고서의 첫째면 둘째줄 왼편에 기재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3. 명령서는 별표 6의 명령서 작성요령과 같다. 다만,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명령서의 첫째면 둘째줄 왼편에 기재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4. 시정·개선요청서는 별표 7의 시정·개선요청서 작성요령과 같다. 다만,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시정·개선요청서의 첫째면 둘째줄 왼편에 기재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약호와 재결번호 사이에 “특”이라는 자구를 삽입하고 끝줄 오른편에 기재하는 “심판장”을 “특별심판부 심판장”으로 바꾸어 기재한다.

제4장 재결고지후의 사무

제1절 제2심청구등

제136조(재결서정본의 접수) ①조사관보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지재할 것.

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청구여부를 검토하게 할 것.

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

② 재결서의 정본은 공람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7조(제2심의 청구)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제2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삭제)

제139조(제2심청구에 따른 지방원의 조치) ①지방심판원이 제2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일건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제2심청구서의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제2심청구서 및 증거물송부서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이 영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제2심청구통지로 한다.

제140조(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①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이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청구에 관련된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해양사고조사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지체없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이들을 그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제2심청구의 취하) ①영 제6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제2심청구취하서는 조사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기타의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관이 제2심청구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심청구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제2심청구취하보고서로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제2심청구의 각하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원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재결의 집행

제142조(재결의 집행) 영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판원의 재결의 경우 당해 사건

관련 담당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 전원이 제2심청구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2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재결집행의 신속) 조사관보는 재결확정 즉시 수석조사관에게 재결집행을 품신하여야 한다.

제144조(면허취소의 재결집행) ①수석조사관이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제출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별지 제76호서식,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제출통지서로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 면허취소재결 확정통지를 면허관청(해양수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여야 한다.

②면허취소의 재결을 받은 자가 그 면허증을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다음 당해 면허증을 별지 제80호서식의 면허취소자의 면허증송부에 의하여 그 면허관청에 송부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무효선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5조(업무정지의 재결집행) ①수석조사관이 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면허증제출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증제출통지서로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서 또는 승선중인 선박의 소유자에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②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제출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기일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별지 제81호서식, 지방수석조사관은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제출독촉을 할 수 있고, 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일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무효선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해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등으로부터 지정된 기일까지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다고 신고가 있을 때 그 이유가 참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기간동안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④조사관보가 면허증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재결집행부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수석조사관의 결재를 받아 그 면허증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83호서식, 면허관청,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에게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업무정지재결의 집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수석조사관이 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반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자로 하여금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결재를 하여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 직접반환 할 때에는 재결집행부의 비고란에 "본인수령"이라 기재하고 도장 또는 무인을 찍게 하여야 한다.

제146조(해기사면허증 등이 상위한 경우 등의 집행) 재결집행에 있어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이 재결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및 멸실 기타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집행한다.

1.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집행시 가지고 있던 면허증보다 동종의 상급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상급면허증에 대하여 집행한다.
2. 2종류이상의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양사고에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면허증은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3.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면허증을 멸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중일 때에는 재교부하는 면허증에 대하여 집행한다.
4.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3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부신청을 아니할 때에는 즉시 재교부신청을 하게 하고 재교부하는 면허증에 대하여 집행한다.
5. 제4호의 경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무효선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호(해기사면허증 등의 무효선언) ①지방수석조사관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무효선언을 상신하여야 한다.

1.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면허증의 종류·번호·면허증 교부관청 및 면허년월일
- ②제1항의 사유에는 재결번호·사건명·재결 및 그 확정년월일·면허증제출통지 및 독촉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제출한 이유서등 무효선언에 이르게 된 때까지의 경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제출이 있는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면허증의 무효를 관보에 고시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당해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 및 면허관청에게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면허증무효선언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지방수석조사관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결집행부에 소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8조(견책재결확정의 통보) ①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에의 통보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로 한다.

- ②면허관청에 견책재결의 확정통보를 할 때에는 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함께하여야 한다.

- 제149조(시정재결등의 집행)** ①심판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개선조치의 요청재결(이하 “시정재결등”이라 한다)을 고지한 때에는 권고서, 명령서 또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지방수석조사관은 시정재결등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재결번호·재결일자·사건명 및 사건개요를 갖추어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상신하여야 한다.
-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항의 상신이 있을 때 또는 중앙심판원의 시정재결등이 고지된 때에는 공고조치를 취하고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수석조사관은 시정재결등의 내용이 대상자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일 때에는 대상자에게 그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수석조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 그 조치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50조(시정등의 대상)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대상은 해양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거나 해양사고발생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청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절 징계의 실효

제151조(무사고운항의 판단)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자가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계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실제 승선기간에 관계없이 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152조(징계기록부 등의 작성) ①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조사관보로 하여금 제145조 제4항 및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통보에 근거하여 규칙 제7호서식의 징계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②징계기록부에의 기재는 재결집행종료일순으로 한다.
- ③징계기록부는 연도마다 연초에 작성을 시작하여 연말에 마감한다.
- ④(삭제)
- ⑤(삭제)

제153조(징계기록의 말소요청) 조사관보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기록부를 마감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해의 2월1일에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기록의 말소요청을 품신하여야 한다.

제154조(삭제)

제5장 보칙

제155조(위법사실의 통보) 담당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해양사고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개항질서법 또는 어선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령의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제156조(재결서등본의 교부) ①재결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재결서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기는 재결서의 등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 재결서등본교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7조(정본 및 등본의 작성) 재결서 및 결정서의 정본 및 등본은 서기가 원본에 의거 작성하여 정본 및 등본임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158조(천공기 등을 이용한 서류작성 방법) ①해양안전심판 사건철, 재결서 및 결정서 등의 정본, 등본의 발급과 기타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천공기”라 한다)에 의한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동천공압날방식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적용한다. 다만, 재결서와 결정서의 원본은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천공기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를 천공압날한다.

④천공기를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할 때는 서류의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유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여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지 않는다.

⑤고유부호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중 앞의 두 글자의 자모(字母)를 옆으로 나열하여 사용한다.

제159조(해양사고기록표등) ①지방수석조사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불요의 처분을 한 때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기록을 유지·관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해양사고기록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조사관은 특히 질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현장검사를 행할 때 기타 조사업무수행중에는 해양사고기록표의 기재사항에 유념하여 가능한 한 모든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앙조사관은 제2심청구 이후의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④제1항의 경우 지방수석조사관은 당해 사건이 적대행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의 전손(추정전손을 포함한다) 또는 인명손실이 발생한 사건 및 심각한 해양오염을 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식(MSC-MEPC.3/Circ.1)에 의거 작성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중앙수석조사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수정하여 가능한 조속히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국제해사기구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0조(해양사고조사사무실적보고) 지방수석조사관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의 조사사무실적을 별지 제92호서식의 해양사고조사사무실적보고에 의하여 매월의 것은 그 다음 달 5일까지, 매년의 것은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재결서사본의 송부) ①지방심판원은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중앙심판원에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에도 송부할 수 있다.

③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2의 서식에 의한 재결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요약서의 하단에 재결요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62조(사건기록의 대여)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결이 확정되거나 소제기의 기간이 만료된 사건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제163조(재결서의 보관) ①심판원은 관할사건의 재결서 원본 1부를 재결서원본철에 별도로 편철을 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각 심판원에서 13년간 보존한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판원은 관할사건의 재결서 정본1부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심판원은 사건기록 일건서류철에 당해 재결서 정본1부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164조(해양사고현황보고) 중앙심판원은 매월분의 해양사고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5조(비용지급) ①서기는 증인 등에 대한 소환장의 발부와 동시에 별지 제93호서식의 비용지급청구서 용지에 금액, 증인 등의 주소·성명 기타 미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가 심판정에 지참한다.

②서기는 증인 등의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비용지급청구서에 심판장 및 서기의 기명날 이후 이를 증인 등에게 교부하여 조사관실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6조(해양사고통보전담자 지정) 지방심판원 수석조사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이하 “해양사고통보의무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양사고통보전담자를 지정하여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양사고통보전담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7조(해양사고통보전담자의 업무지도)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해양사고통보전담자가 효율적으로 해양사고통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통보전담자에게 통보요령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68조(해양사고통보)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사고통보전담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9조(삭제)

제170조(삭제)

제171조(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 ①중앙심판원장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원조회기관(본적지 시·구·읍·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심판정 좌석배치) ①심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 정면단상으로 하며 심판장의 위치는 심판관의 중앙으로 한다.

②심판관의 좌석은 선임자가 심판장의 우측에 후임자를 좌측으로 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위 순서의 다음 선임순에 따라 우좌순으로 한다.

③비상임심판관을 배석시킬 때는 연장자가 심판관석의 우측에 위치한다.

④입회서기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아래 중앙으로 한다.

⑤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 아래에 심판장을 향하여 조사관은 좌측, 심판변론인은 우측으로 하며 서로 3미터 내지 4미터의 간격을 두고 대좌한다.

⑥해양사고관련자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과 4미터 내지 5미터의 간격을 두고 중앙에 위치 하며 해양사고관련자가 동석할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해양사고관련자중 해기사 또는 도 선사가 좌측, 해양사고관련자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이외의 자는 우측에 위치한다.

⑦증언대는 조사관 좌석과 해양사고관련자 좌석 사이에 두되 심판장을 향하게 한다.

제173조(심판정 좌석의 구조) ①중앙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9와 같이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이 하며, 심판정의 심판대 및 단상의 높이는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 모두 별표 11과 같이 한다.

②심판장의 의자는 별표 12와 같이, 심판관의 의자는 별표 13과 같이, 입회서기 의자는 별표 14와 같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5와 같이, 탁자는 별표 16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7과 같이, 탁자는 별표 18과 같이, 심판정 증언대 는 별표 19와 같이 한다.

③국기는 가로60cm×세로40cm의 크기로 심판정 정면벽 왼쪽이나 정면단상 왼쪽에 게양한 다.

제174조(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심판절차 등 안내)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조사 또는 심판을 받기 위해 최초로 심판원에 출석한 때에는 반드시 조사 및 심판절차, 이의제기방법 등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6년 10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서식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훈령의 폐지) 해난심판사무처리요령, 해난방지를 위한 시정등의 통보요령, 특별심판부의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해난조사사무처리요령, 해난심판사무처리요령, 해난방지를 위한 시정등의 통보요령, 특별심판부의 운영요령에 의하여 행한 조사·심판·시정·개선·특별 심판부의 운영은 이 훈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6.26>

이 훈령은 198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 10>

이 훈령은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5. 2>

이 훈령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31>

이 훈령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5. 21>

이 훈령은 199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훈령의 폐지) 해난심판징계기준, 해난통보에관한요령, 천공기사용에관한사무처리요령, 해난심판제도개선협의회운영에관한규정 및 심판정좌석배치등에관한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4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의 제23조,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9조, 제138조의 규정은 중앙수석조사관이 따로 정하는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운항선박통계

여 백

목 차

I . 개 요	299
1. 작성 목적	299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299
3. 작성 연혁	299
4. 작성 대상 및 내역	299
5. 작성 방법 및 체계	300
6. 결과 공표	300
7. 관련 법령	300
II . 업무흐름도	301
III . 통계표	302
IV . 업무절차 상세 설명	303
1. 해상운송사업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303
2. 운항선박 통계자료 입력	305
3. 운항선박 통계자료 생성	310
4. 운항선박 통계 작성·공표	311
V . 관련 용어 설명	313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내·외항 운항선박 현황을 파악하여 수송능력 판단 및 각종 해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18호

3. 작성 연혁

- 1981. 10.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해운법 제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업체의 운항선박 명세서에 기재된 선박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4조(사업의 면허)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해운법 제25조(사업의 종류), 26조(사업의 등록)
- 내 역
 - 면허구분(연안, 외항, 정기, 부정기선) 선종별 면허등록선박 현황
 - 국가별, 선종별 정기외항선취항현황(항로)

- 작성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작성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 해상운송면허업체에서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내용을 업무담당자가 전산시스템(통합사업자DB)에 입력
- 체 계 :
 - 연안선
 - 면허,등록업체 → 지방청(선원선박,선원해사과) → 본부(연안해운과)
 - 본부(통계담당)
 - 외항선
 - 면허,등록업체 → 본부(해운정책과) → 본부(통계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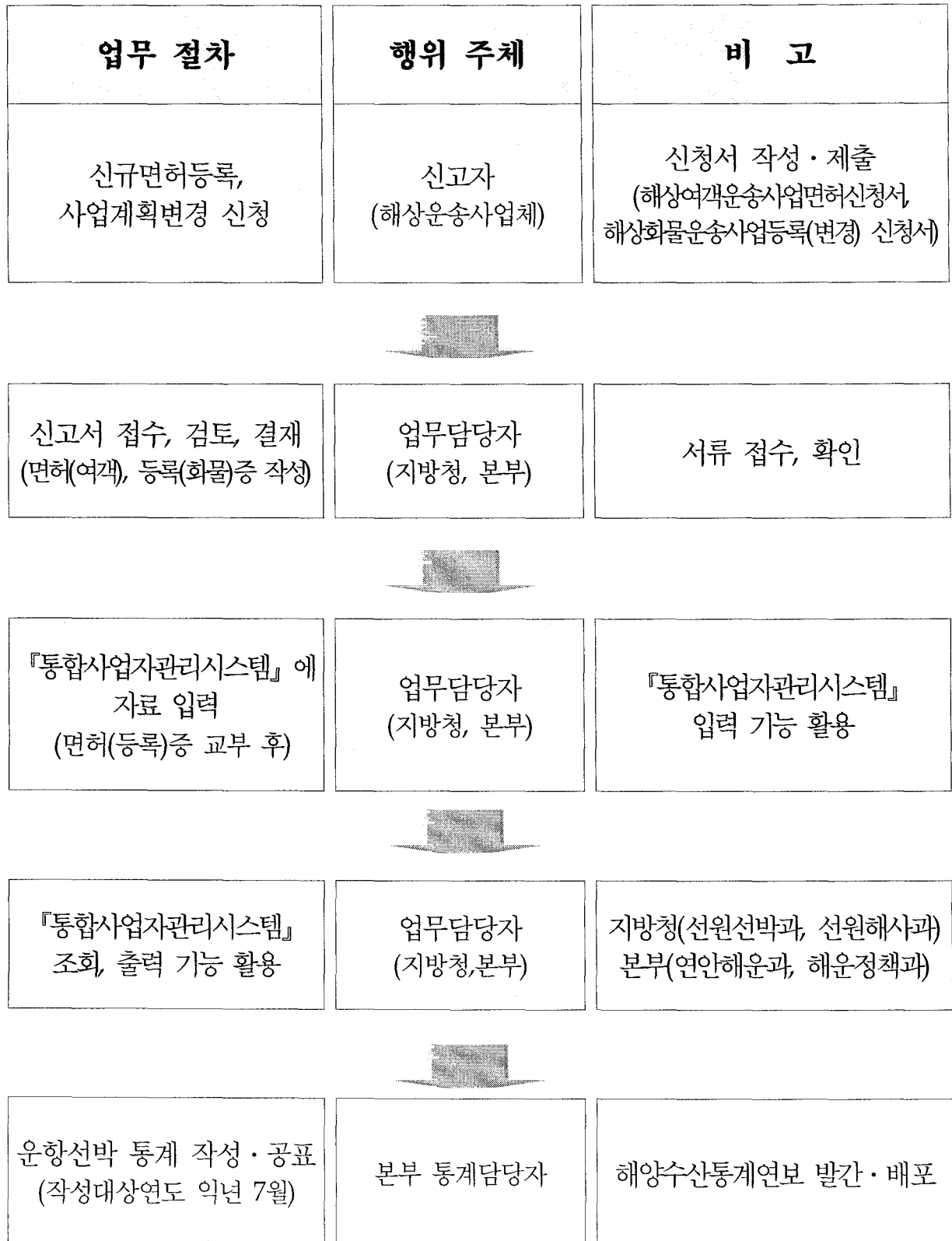
6. 결과 공표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7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7. 관련 법령

- 해운법 제4조(사업의 면허), 제26조(사업의 등록)

II. 업무흐름도



III 통계표

면허(여객선) + 등록(화물선) ※ 해운법 기준

2. 면허등록선박현황 Status of Ships Licensed, Registered

선종 Kind of Ships	합계 Total		여객선 Passenger Vessels		화물선 Conventional Cargo Vessels		컨테이너선 Container Vessels		유조선 Tankers		기타선 Other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합계 Total	2,798	14,268,809	171	171,138	729	9,015,666	112	2,039,890	434	2,373,797	1,352	668,118
면안선 Coastal	2,297	1,566,734	161	80,197	426	308,970	9	22,767	353	500,816	1,348	653,984
의항선계 Ocean-going Total	501	12,701,875	10	90,941	303	8,706,696	103	2,017,123	81	1,872,981	4	14,134
정기선 Liner	113	2,108,064	10	90,941	0	0	103	2,017,123	0	0	0	0
부정기선 Tramper	388	10,593,811	0	0	303	8,706,696	0	0	81	1,872,981	4	14,134

주: ① 면허, 등록기준으로 작성
 ② 여객선은 낙도보조항로 예비선 포함, 기타선은 부선포함
 ③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박을 포함
 ④ 1999년 10월 면안화물선 면허제가 등록자료 전환됨에 따라 등록선박 증가
 자료: 해운물류국

Note: ① Based on licensed, registered
 ② Passenger ships include reserve ships on subsidized remote island route and others include barges
 ③ Includes EBC/HP ships
 ④ Introducing filing system in coastal shipping business in 1999, the number of registered ship was increased a lot.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3. 정기외항선취항현황(항로) Status of Ocean-going Liner Ships(Route)

선종 Kind of Ships	합계 Total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s		세미컨테이너선 Semi-Container Ships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척 Number	톤 Gross Ton
합계 Total	103	2,017,123	98	2,006,997	5	10,126
일본 Japan	31	137,668	27	129,538	4	8,130
중국 China	31	264,758	31	264,758	0	0
러시아 Russia	0	0	0	0	0	0
동남아 South-east Asia	14	218,567	13	216,571	1	1,996
중동 Middle-east Asia	5	108,055	5	108,055	0	0
미주 America	17	967,014	17	967,014	0	0
구주 Europe	5	321,061	5	321,061	0	0
기타 Others	0	0	0	0	0	0

자료: 해운물류국

Source: Marine Policy Bureau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해상운송사업면허(등록) 신청서 작성 : 신고자(선사)

(1)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4.8>

(앞쪽)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3 일
신청인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본 적(대표자)	
⑥사 업 의 종 류		⑦운항개시예정일
⑧항 로 구 간		⑨운 항 횟 수
⑩사 업 개 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p>해운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서명 또는 인)</p> <p>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 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내항 : 1만원 외항 : 2만원
2. 사업계획서 1부		
3. <삭제>		
4.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53337-40611민

210mm×297mm

94.9.12 승인

(신문용지 54g/m²)

2. 운항선박 통계자료 입력 : 업무담당자(본부, 지방청)

(1) 운항선박통계 원시자료 입력 (지방청, 본부)

통합사업자 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로그인 공지사항 ID저장

청코드 | 010

아이디(ID) | JEON19

비밀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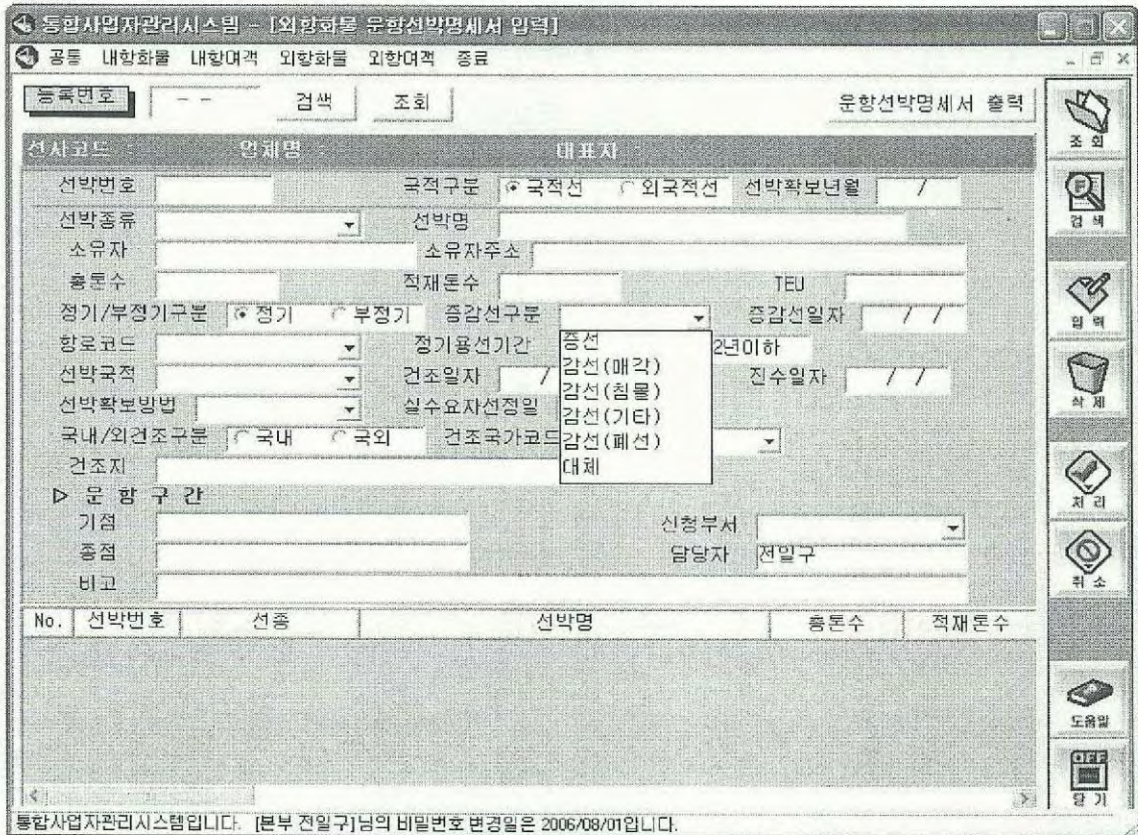
확인 취소

- 청코드, 아이디,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과정이 진행됨
- ID저장 항목을 체크하면 현재 이후에도 로그인에 사용한 청코드 및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음
- 공지사항을 체크하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공지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음

(2) 외항화물선/신규등록,기존선박 정보변경

- 신규 등록 : “입력” 버튼을 눌러 화면을 초기화 한 다음
 면허, 등록 조건, 영업소 등 정보 입력 후 “처리” 누름
- 기존 면허 정보 수정 : “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 선사를
 조회한 다음 정보를 수정하고 “버튼”을 누름
- 면허정보삭제 : 선사의 면허관련 정보를 먼저 삭제한
 다음 “삭제” 버튼 누름

(2-1) 외항화물/운항선박명세입력/선박증감사유 선택/처리



- 증감선 구분 : 증선, 감선(매각·침몰·기타·폐선), 대체
- 명세서 내역수정 : 수정할 운항선박을 하단의 리스트에서 선택한 다음 명세서를 수정한 후 “처리”버튼
- 명세서 삭제 : 삭제할 운항선박을 하단의 리스트에서 선택한 다음 “삭제” 버튼 클릭
- 항로코드 :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중동, 미주, 구주, 기타
- 선박의 종류 : 여객선, 벌크선, 비료, LPG, LNG 등
- 정기선, 부정기선 선택

(4) 자료입력 내용 확인 (증선, 감선, 대체)

통합사업자 검색

검색조건

사업종류 외항화물

검색항목 등록번호

Enter

※ 사업자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버튼을 누르시거나 더블클릭 하십시오.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일자	업체상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확인 닫기

(4-1) 선사 변동선박 확인(외항화물/등록사항조회/출력/운항명세서출력)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 - [외항화물 운항명세서 출력]

공통 내항화물 내항여객 외항화물 외항여객 종료

미리보기 Zoom 70% 80% 100% 150% 200%

조인 검색 출력 저장 위소 도움말 닫기

등록번호 OS-L-0008 출력일자 2006/06/22

운항선박명세서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동영해운(주)의 정기화물운송사업용 운항선박은 다음과 같음.

2006년 6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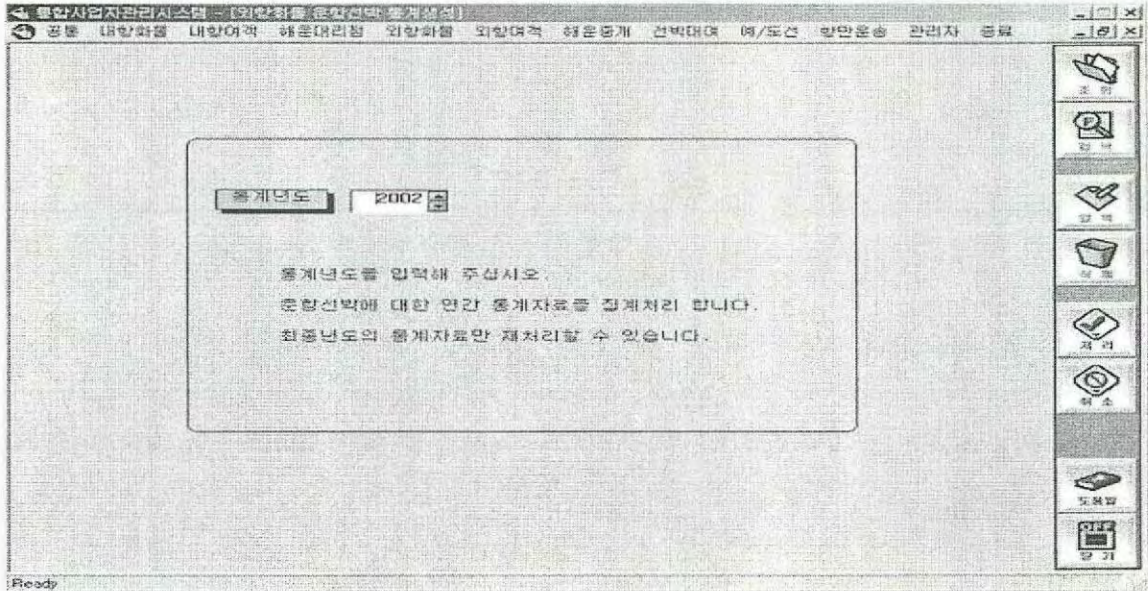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항로명	선명	선종	총톤수 DWT TEU	운항구간		국적 건조년월	확보방법 확보년월	비고
				기점	종점			
한일항로	베가서스 퍼레이드	풀컨선	5,833.00	부산	왕자안남	한국	중고도입자기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입니다. (본부 전일규)님의 비밀번호 변경일은 2006/06/01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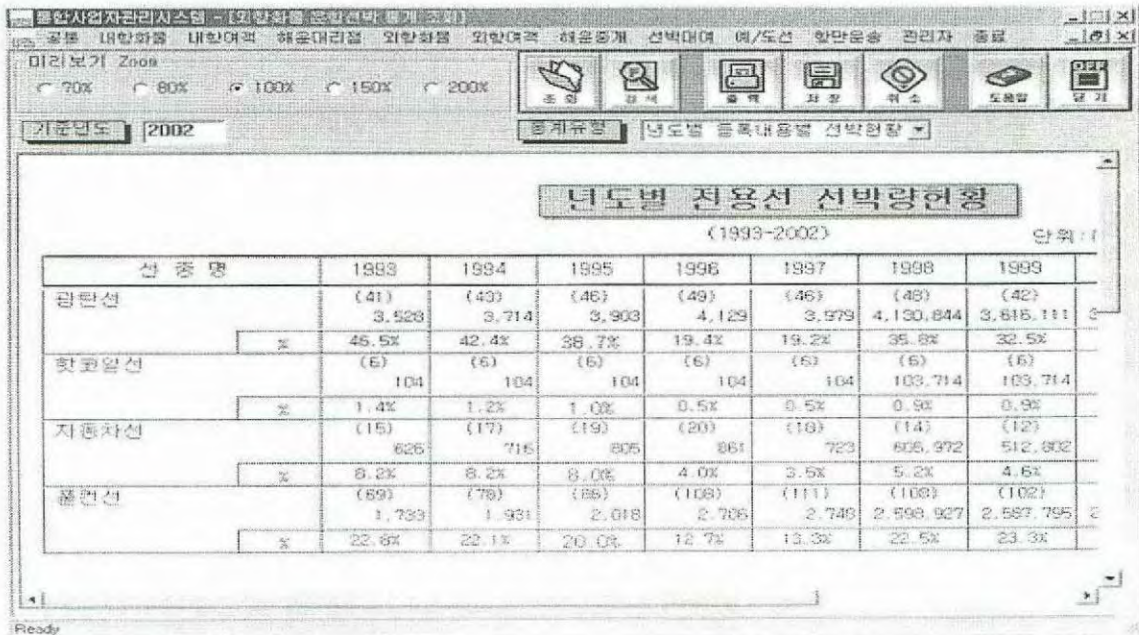
3. 운항선박 통계자료 생성 : 업무담당자(본부)

(1) 운항선박통계 생성



- 생성하고자 하는 통계분류 및 해당년도 입력 후 처리를 클릭하면 통계 생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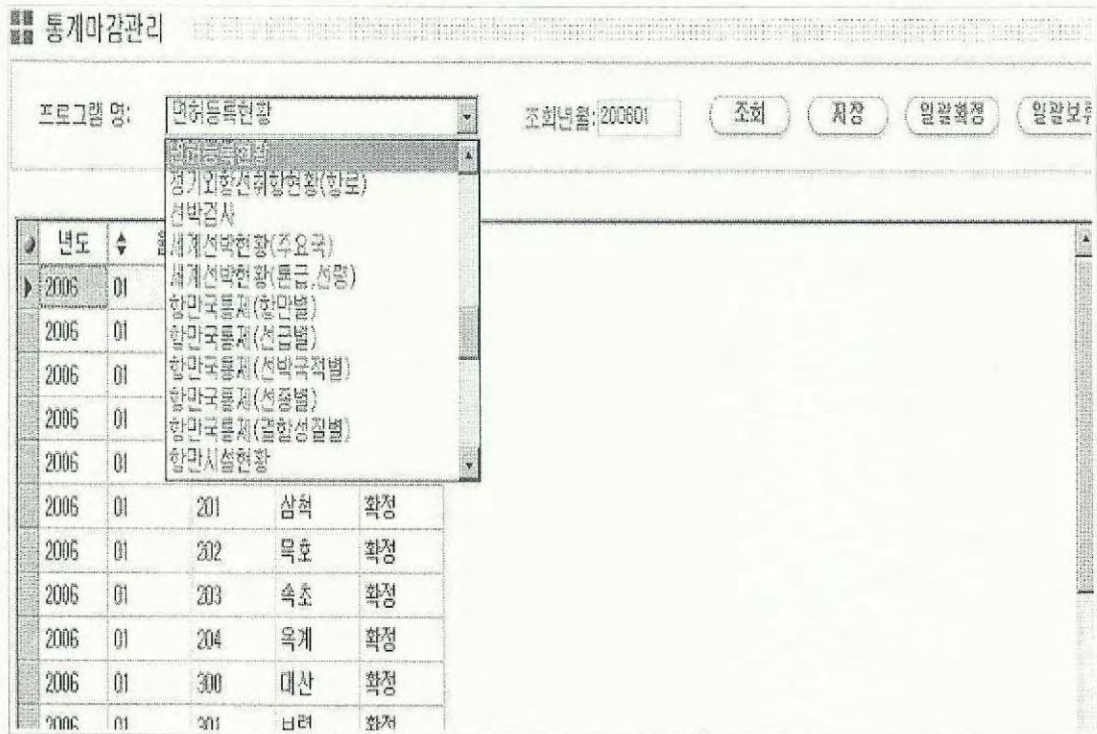
(2) 통계결과 조회, 출력



- 통계결과를 조회, 출력하여 확인함

4. 운항선박 통계 작성·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1) 작성대상연도 운항선박 통계 작성



- ① 각 항만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운항선박 통계 확정 통보
 - 업무담당자가 통계 확정 후 본부에 통보 (문서, 메일)
- ② 통계자료 확인
 - 본부 통계담당자는 SP-IDC 통계시스템(통계마감관리)에서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조회
- ③ 통계 확정
 -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일괄확정' 버튼으로 통계 확정
 - ※ 전년 대비 추세(수치) 등 비교 검증

④ 운항선박 통계 작성·공표

- SP-IDC 통계시스템에서 통계 출력양식에 맞도록 PDF 파일 형태로 자료 편집
- 해양수산통계연보에 통계자료 수록하여 발간 (매년 7월경)

대업별 생산액 대업별/대중별 생산량 대업별/업종별 생산량 / 대중별 생산량 원양 어업 대업별/해역별 생산량	원해양식어업 시도별/연도별 대업권현황
수산가공품 품종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수산가공품 월별/품종별 가공량 / 시도별 수산가공품 생산고(금액)	수산물 수출입 실적 주요 대중별 연도별 수출입실적 주요 국가별 수출입실적 연도별 품종별 수출입실적
선원통계 선원수첩교부 해기사면허교부 국외취업현황(선원) / 국외취업현황(해기사)	선박통계 국적선보유현황 등록선박 등록선박(통급) 등록선박(선령) 선박검사 세계선박현황(주요국) 세계선박현황(통급,선령) 함민국통계실적
어선통계 시도별, 선종별 어선세력 통급별, 선질별 어선세력 업종별 어선세력	함안 시설 통계 함안시실현황 함안지역능력현황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매립현황

V. 관련 용어 설명

□ 외항선(Ocean going vessel, Foreign trade vessel)

외국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연안선(Home Trade Vessel) :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

□ 국제총톤수

- 선박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공제하고 여기에 특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표시하는 톤수로서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국제톤수증서

-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에 대해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함

□ 선박국적

-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국제관습법상 선박은 반드시 어느 주권국가에 등록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국적증서를 교부받아 그것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박의 선미에 그 국적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건조국가코드

- 선박은 건조한 국가를 영문코드 2자리로 입력한다. 대한민국은 KR, 일본은 JP로 입력함

【 별첨 1 -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2004. 8. 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23>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2조 삭제 <99.10.8>

제3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4.8.7>

1. 삭제 <95.1.9>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삭제 <99.10.8>
 5.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중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5.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삭제 <99.10.8>
-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선박의 확보여부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④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등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89.5.15>

제4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등) ①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10.8>

②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7, 98.10.1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은 당해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 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86.2.3, 96.8.7, 97.8.7, 98.10.17>

제5조의2(외국인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③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8]

제6조 삭제 <99.10.8>

제7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8.7, 99.10.8>

1. 원가계산서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9, 97.2.6>

1. 운임 및 요금의 신고요령
2.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
3.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전문개정 93.6.23]

제8조(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기타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7.2.6, 99.10.8>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삭제 <99.10.8>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전문개정 93.6.23]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삭제 <99.10.8>

제11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 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8.7>

1. 수입·지출명세서
2. 수입·지출증빙서류

제11조의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신청) ①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 영 제4조의2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손실보상금정액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10.8>

1. 당해연도의 예상수입·지출명세서
2. 최근 2년간 지급받은 손실보상금내역서
3. 분기별 손실보상금 정액지급신청액의 산정내역서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여부와 연간손실보상금액 및 분기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7>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기별 지급액을 매 분기초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7>

[본조신설 96.8.7]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삭제 <99.10.8>

제15조(휴업 또는 폐업신고<개정 2003.4.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3.4.8, 2004.8.7>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16조 삭제 <99.10.8>

제17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3.4.8, 2004.8.7>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을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99.10.8>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개정 2003.4.8>
4.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정기 및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8.7>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99.10.8>

제18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7.2.6, 97.8.7, 99.10.8>

[전문개정 96.8.7]

제18조의2(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①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및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등록외사업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활한 화물의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1.7>

[본조 신설 2003. 4. 4]

제18조의3(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제5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본다.<개정 2003.4.8>

②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화물집하,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 공표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3.4.8>

[전문개정 99.10.8]

제19조(선박의 보유량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경영형태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10.8>

② 삭제 <99.10.8>

제20조(운임의 공표 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공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발효예정일 5일전까지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컴퓨터통신망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8>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98.12.31>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협약당사자가 연명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2.6, 98.12.31>

④외국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 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8>

[전문개정 91.9.6]

제21조 삭제 <99.10.8>

제22조 삭제 <97.8.7>

제23조(협약방법)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8.7]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89.5.15>

제27조 삭제 <99.10.8>

제28조(준용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0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10.8]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제29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6.23, 95.1.9, 96.8.7, 97.2.6, 97.8.7, 99.10.8, 2001.12.4, 2004.8.7>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의 사본(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그 번역문(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6.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의 사본 및 그 번역문(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3. 보유시설현황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을 제외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법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3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의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6.8.7, 97.2.6, 97.8.7, 99.10.8, 2001.12.4>

1. 사업의 종류
2. 상호 및 주소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주된 사무소외의 국내외지사 또는 영업소의 수·명칭 및 소재지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⑤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6, 96.8.7, 97.2.6, 97.8.7>

제30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3.6.23, 96.8.7, 99.10.8>

제30조의2 삭제 <93.6.23>

제31조 삭제 <98.12.31>

제32조(영업보증금의 예치등) ①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 명령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3, 95.1.9, 96.8.7, 97.2.6, 99.10.8>

1. 삭제 <96.8.7>
 2. 삭제 <93.6.23>
 3.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2이상의 동종사업자가 각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그 사업자(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2.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영업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부득이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다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7.2.6>

제33조(영업보증금등의 금액) 법 제3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96.8.7, 99.10.8>

제34조(영업보증금 예치증서의 보관등)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96.8.7, 97.2.6, 99.10.8>

제35조 삭제 <99.10.8>

제36조 삭제 <97.8.7>

제37조 삭제 <99.10.8>

제5장 (제38조 내지 제53조) 삭제 <99.10.8>

제6장 보칙

제54조 삭제 <99.10.8>

제54조의2 삭제 <98.10.17>

제55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4.8>

제56조(검사공무원증)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57조(수수료)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29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3중 해무사에 관한 부분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해운업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18조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여객선의 선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할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해운산업육성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포함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할 선박의 보유량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의 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일콘테이너운임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자
2. 계열선사

부 칙 <8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 일반운항사업 또는 원양컨테이너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원양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남아구역운항사업 또는 한·일구역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개정규정에 의한 근해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사업의 범위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항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한·일구역운항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일구역운항사업만을 영위하는 행위
2. 교통부령 제794호(1984.10.10) 부칙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선사

부 칙 <91.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박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 또는 국제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3.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중 특수화물에 관한 부분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제16조제2호, 제17조제1항 제5호, 제19조제2항, 별표 2의2,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4항제7호, 제30조 단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구역 범위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외항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특수화물)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원양 또는 근해)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선 및 컨테이너선외의 선박으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외항화물운송사업의 해무사기준에 관한 특례) ①교통부령 제794호 해운업법 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선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인이상의 해무사를 둘 수 있다.

②교통부령 제942호 해운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일구역운항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인이상의 해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해기관리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해기관리사를 두어야 할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해기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신하여 제38조의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96.8.7, 98.10.17>

②삭제 <97.2.6>

제6조(해기관리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공포일 현재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에 6월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기관리사를 두어야 할 해운업체에서 5년이상의 선박관리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기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96.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6.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부 칙 <9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 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와 별표 2중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운산업육성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부 칙 <2003.1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등록외사업구역에서의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사업구역에서 신고를 하고 화물을 운송한 선박별 연간운송기간이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90일간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본다.

화물수송실적통계

여 백

목 차

I . 개 요	331
1. 작성 목적	331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331
3. 작성 연혁	331
4. 작성 대상 및 내역	331
5. 작성 방법 및 체계	332
6. 결과 공표	332
7. 관련 법령	332
II . 업무흐름도	333
III . 통계표	334
IV . 업무절차 상세 설명	347
1.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작성	347
2.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확인	351
3. 화물수송실적 통계 생성	352
4. 화물수송실적 통계 작성·공표	357
V . 관련 용어 설명	359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화물수송실적 추이를 분석하여 해운항만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09호

3. 작성 연혁

- 1975. 7.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우리나라 28개 무역항만에 반출·입되는 화물
- 내 용
 - 화물수송 (총괄) : 연안화물, 수출입화물, 환적화물
 - 국적·품목별 화물수송 : 수출입화물, 연안화물
 - 지역·품목별 화물수송 : 수출입화물
 - 컨테이너 수송 : 수출입, 내항 및 환적 컨테이너
- 작성 주기 : 매년
- 대상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취합 및 통계 생성
- 체 계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신고자 → 지방청, PA(PORT-MIS)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7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7. 관련 법령

- 항만법 제70조, 해운법 제25조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II. 업무흐름도

업무 절차	행위 주체	비 고
무역항만에 화물반출입 시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작성·제출 (지방청, PA)	신고자 (선사/대리점, 하역업체, 화주 등)	PORT-MIS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확인 및 항만시설사용료 확정	업무담당자 (지방청, PA)	PORT-MIS 이용 신고자료 확인
화물수송통계 가통계 생성 (매월 15일)	업무담당자 (지방청, PA)	PORT-MIS 이용
가통계 생성자료 전송 (매월 20일)	업무담당자 (지방청, PA)	SP-IDC 통계 DB에 저장
분기별 통계자료 검토, 보정 (매분기 2개월 후 초반)	업무담당자(지방청, PA)	SP-IDC와 PORT-MIS 자료 비교 후 오차 수정
분기별 통계자료 확정	본부 통계담당자	업무담당자 확인 통보 후 SP-IDC에서 분기별 통계 확정 ※ 확정 후 통계자료 수정 불가
작성대상연도 통계 재생성 (작성대상연도 익년 2월)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본부 통계담당자	SP-IDC와 PORT-MIS 자료 비교 후 오차 보정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확정 (작성대상연도 익년 2월)	본부 통계담당자	업무담당자의 확인완료가 통보되면 SP-IDC에서 작성대상연도 통계 확정
화물수송실적통계 작성·공표 (작성대상연도 익년 7월)	본부 통계담당자	해양수산통계연보 발간·배포

Ⅲ. 통계표

1. 화물 수송

Cargo Transportation

구분 Classification 연월 Year & Month	총 계 Grand Total	연안화물 Coastal	외항화물		
			합 계		
			계 Sub-Total	입항 Arrival	출항 Departure
1996	582,067,798	140,947,542	441,120,256	342,227,091	98,893,165
1997	632,076,091	147,045,854	485,030,237	370,195,747	114,834,490
1998	589,930,794	115,178,828	474,751,966	333,431,882	141,320,084
1999	655,876,090	123,692,958	532,183,132	384,878,697	147,304,435
2000	704,066,789	134,467,396	569,599,403	418,821,483	150,777,920
2001	751,454,398	140,544,327	610,910,071	433,344,669	177,565,402
2002	776,504,347	140,959,075	635,545,272	459,746,744	175,798,528
2003	812,934,842	145,326,809	667,608,033	472,982,504	194,625,529
2004	849,012,920	115,635,806	733,377,114	501,705,811	231,671,303
2005	874,346,287	119,409,878	754,936,409	512,445,424	242,490,985
1	75,449,428	11,045,634	64,403,794	44,608,900	19,794,894
2	63,746,261	9,114,048	54,632,213	37,544,865	17,087,348
3	78,967,408	11,406,049	67,561,359	46,939,415	20,621,944
4	74,064,490	11,320,192	62,744,298	43,299,104	19,445,194
5	75,269,953	11,026,605	64,243,348	43,455,612	20,787,736
6	68,079,847	9,318,245	58,761,602	39,043,562	19,718,040
7	73,209,996	8,911,443	64,298,553	43,464,316	20,834,237
8	68,802,464	9,069,894	59,732,570	40,356,551	19,376,019
9	68,416,106	8,419,143	59,996,963	40,767,037	19,229,926
10	76,041,473	9,659,663	66,381,810	44,612,434	21,769,376
11	75,428,200	10,428,699	64,999,501	43,576,299	21,423,202
12	76,870,661	9,690,263	67,180,398	44,777,329	22,403,069

주: 1. 연안여객선 화물은 연안화물에 국제여객선화물은 수출입화물에 포함
 2. 연안화물은 입항기준으로 산출
 3. 2002-2004년도 화물량은 2006년도에 실시한 「화물수송통계 자체 품질분석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정하였음.

자료: 해운물류국

(총괄)
(Total)

Unit: R/T

Ocean-Going					
국적선 Korean Flag			외국선 Foreign Flag		
계 Sub-Total	수입 Import	수출 Export	계 Sub-Total	수입 Import	수출 Export
98,171,401	78,782,731	19,388,670	342,948,855	263,444,360	79,504,495
88,837,810	68,266,528	20,571,282	396,192,427	301,929,219	94,263,208
103,755,370	75,631,921	28,123,449	370,996,596	257,799,961	113,196,635
97,207,869	73,887,948	23,319,921	434,975,263	310,990,749	123,984,514
101,333,541	76,259,375	25,074,166	468,265,862	342,562,108	125,703,754
112,544,436	82,656,049	29,888,387	498,365,635	350,688,620	147,677,015
122,721,598	93,050,465	29,671,111	512,823,676	366,696,259	146,127,417
118,876,166	87,845,817	31,030,349	548,731,867	385,136,687	163,595,180
127,499,787	88,831,458	38,668,329	605,877,327	412,874,353	193,002,974
138,889,954	98,726,075	40,163,879	616,046,455	413,719,349	202,327,106
12,357,310	8,966,100	3,391,210	52,046,484	35,642,800	16,403,684
10,102,088	7,390,755	2,711,333	44,530,125	30,154,110	14,376,015
12,355,965	8,874,156	3,481,809	55,205,394	38,065,259	17,140,135
11,585,906	8,361,616	3,224,290	51,158,392	34,937,488	16,220,904
11,478,414	8,084,468	3,393,946	52,764,934	35,371,144	17,393,790
10,976,501	7,629,801	3,346,700	47,785,101	31,413,761	16,371,340
11,876,406	8,620,228	3,256,178	52,422,147	34,844,088	17,578,059
11,837,481	8,556,795	3,280,686	47,895,089	31,799,756	16,095,333
11,702,474	8,586,418	3,136,056	48,294,489	32,200,619	16,093,870
12,607,099	8,870,927	3,736,172	53,774,711	35,741,507	18,033,204
10,770,106	7,168,925	3,601,181	54,229,395	36,407,374	17,822,021
11,240,204	7,635,886	3,604,318	55,940,194	37,141,443	18,798,751

Note: 1. Coastal passenger vessel cargo is included in coastal and international ferry cargo is included in import and export cargo
2. Coastal cargo is counted by entry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2. 내외항별 (항, 품목) 화물수송 (입항 4-1)

연월 Year & Month	품목별 Items 내외항별 Ocean-Going & Coastal	합 계	육 류	어패류, 갑각류	양 곡	제분공업 생산품	동식물성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류	당 류
		Total	Meat	Fish, Crustaceans and Mollusks	Cereals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Other Animal and Vegetable Products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Sugars
2005	국적선	98,726,075	4,019	439,154	978,824	225,588	340,713	63,256	287,889
	외국선	413,719,349	124,756	1,402,991	8,267,023	3,338,738	5,222,853	612,610	1,680,768
	수입계	512,445,424	128,775	1,842,145	9,245,847	3,564,326	5,563,566	675,866	1,968,657
	연안	115,489,200	0	47,085	278,765	0	478,286	603,317	0
	총계	627,934,624	128,775	1,889,230	9,524,612	3,564,326	6,041,852	1,279,183	1,968,657
1	국적선	8,966,100	43	26,929	132,610	11,029	14,706	9,302	0
	외국선	35,642,800	1,987	96,021	650,205	278,254	357,283	45,436	158,661
	수입계	44,608,900	2,030	122,950	782,815	289,283	371,989	54,738	158,661
	연안	10,817,780	0	6,558	0	0	80,171	98,678	0
	총계	55,426,680	2,030	129,508	782,815	289,283	452,160	153,416	158,661
2	국적선	7,390,755	0	12,248	68,590	15,114	38,248	3,401	67,023
	외국선	30,154,110	3,164	82,711	699,918	216,057	311,115	27,311	157,154
	수입계	37,544,865	3,164	94,959	768,508	231,171	349,363	30,712	224,177
	연안	8,866,868	0	4,395	0	0	45,830	78,694	0
	총계	46,411,733	3,164	99,354	768,508	231,171	395,193	109,406	224,177
3	국적선	8,874,156	0	30,443	104,188	16,795	30,785	5,575	80
	외국선	38,065,259	5,552	120,503	911,344	224,808	266,975	58,249	112,284
	수입계	46,939,415	5,552	150,946	1,015,532	241,603	297,760	63,824	112,364
	연안	11,142,169	0	6,597	0	0	37,130	107,322	0
	총계	58,081,584	5,552	157,543	1,015,532	241,603	334,890	171,146	112,364
4	국적선	8,361,616	15	15,859	46,924	28,707	10,379	1,284	0
	외국선	34,837,488	2,343	138,422	752,272	271,043	458,822	53,174	174,660
	수입계	43,299,104	2,358	154,281	798,196	299,750	469,201	54,458	174,660
	연안	11,014,720	0	4,410	0	0	21,781	38,657	0
	총계	54,313,824	2,358	158,691	798,196	299,750	490,982	143,115	174,660
5	국적선	8,084,468	153	32,212	75,188	14,269	8,826	10,546	60
	외국선	35,371,144	6,069	88,453	816,323	256,538	452,334	62,061	226,315
	수입계	43,455,612	6,222	120,665	891,511	270,807	461,160	72,607	226,375
	연안	10,717,894	0	3,726	0	0	21,229	63,360	0
	총계	54,173,506	6,222	124,391	891,511	270,807	482,389	135,967	226,375
6	국적선	7,629,801	0	18,912	22,491	13,311	65,979	1,469	61,360
	외국선	31,413,761	2,842	100,831	640,613	287,909	547,534	52,584	208,802
	수입계	39,043,562	2,842	119,843	663,104	301,220	613,513	54,053	270,162
	연안	8,929,221	0	2,052	0	0	21,040	35,143	0
	총계	47,972,783	2,842	121,895	663,104	301,220	634,553	89,196	270,162

자료: 해운물류국

Cargo Transportation (Port/Goods) (Arrival 4-1)

Unit:R/T

조제식품,음료 Prepared Foodstuffs	시멘트 Cement	모래 Natural Sands	무연탄 Anthracite	유연탄 Bituminous Coal	철광석 Iron Ores	기타광석 및 생산물 Other Ores	원유, 석유 Crude Petroleum Oils
1,088,752	1,144,108	176,629	1,159,472	22,245,258	25,487,389	1,209,622	12,526,038
7,832,514	2,183,802	849,054	3,832,372	43,882,369	26,241,654	14,196,603	105,392,725
8,921,266	3,327,910	1,025,683	4,991,844	66,127,627	51,729,043	15,406,225	117,918,763
199,650	14,135,432	24,521,708	6,184	559,818	319,145	10,112,734	5,033,583
9,120,916	17,463,342	25,547,391	4,998,028	66,687,445	52,048,188	25,518,959	122,952,346
124,238	60,997	5,800	203,463	1,826,343	2,225,752	140,112	1,735,807
746,453	159,190	73,460	505,179	3,350,567	2,216,431	1,469,399	9,126,472
870,691	220,187	79,260	708,642	5,176,910	4,442,183	1,609,511	10,862,279
18,550	991,258	2,595,853	3,167	50,292	22,581	937,293	422,412
889,241	1,211,445	2,675,113	711,809	5,227,202	4,464,764	2,546,804	11,284,691
84,657	25,434	6,000	231,855	1,320,042	2,142,875	60,031	1,213,141
686,864	103,863	23,697	348,243	3,147,133	1,876,178	875,499	6,684,721
771,521	129,297	29,697	580,098	4,467,175	4,019,053	935,530	7,897,862
11,094	648,963	2,046,049	0	36,961	26,554	817,910	463,908
782,615	778,260	2,075,746	580,098	4,504,136	4,045,607	1,753,440	8,361,770
114,705	48,429	24,700	46,735	2,473,933	2,552,468	57,852	711,147
901,165	208,937	101,847	251,246	3,795,121	2,745,617	1,206,585	9,714,194
1,015,870	257,366	126,547	297,981	6,269,054	5,298,085	1,264,437	10,425,341
16,955	1,211,997	3,125,251	0	48,651	33,921	774,402	499,226
1,032,825	1,469,363	3,251,798	297,981	6,317,705	5,332,006	2,038,839	10,924,567
91,568	67,999	18,620	128,782	1,846,602	2,167,028	83,994	1,224,740
790,393	223,595	64,306	225,267	3,545,814	1,992,924	1,345,873	8,275,267
881,961	291,594	82,926	354,049	5,302,416	4,159,952	1,429,867	9,500,007
19,882	1,364,946	3,095,833	0	80,766	23,715	904,764	460,733
901,843	1,656,540	3,178,759	354,049	5,473,182	4,183,667	2,334,631	9,960,740
95,316	113,300	11,875	6,193	1,768,039	1,965,810	120,193	1,126,941
843,123	235,367	39,314	411,237	3,941,645	1,431,008	1,110,950	9,743,006
938,439	348,667	51,189	417,430	5,709,684	3,396,818	1,231,143	10,869,947
14,475	1,408,245	2,918,246	0	5,641	27,067	831,359	499,125
952,914	1,756,912	2,969,435	417,430	5,715,325	3,423,885	2,062,502	11,369,072
81,363	75,944	18,400	9,263	1,823,463	1,545,578	109,552	1,236,553
609,627	249,474	60,720	360,563	3,703,814	1,674,598	1,155,446	7,694,496
690,990	325,418	79,120	369,826	5,527,277	3,220,176	1,264,995	8,931,049
16,619	1,297,865	936,874	0	85,780	27,463	888,923	496,621
707,609	1,623,283	1,015,794	369,826	5,613,057	3,247,639	2,153,921	9,427,670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2. 내외항별 (항, 품목) 화물수송 (출항 4-1)

연월 Year & Month	항 Items	합계	육류	어패류, 갑각류	양곡	제분공업 생산물	동식물성 생산물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
		Total	Meat	Fish, Crustaceans and Mollusks	Cereals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Other Animal and Vegetable Products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Sugars
2005	국적선	40,163,879	13,367	115,120	13,937	14,165	264,042	354,523	7,457
	외국선	202,327,106	255,829	286,438	20,852	39,134	1,784,896	379,881	55,792
	수출계	242,490,985	269,196	401,558	34,789	53,299	2,048,938	734,404	63,249
	연안	114,108,671	0	47,085	278,765	0	489,141	603,317	0
	총계	356,599,656	269,196	448,643	313,554	53,299	2,538,079	1,337,721	63,249
1	국적선	3,391,210	404	2,441	4,018	50	7,363	27,249	479
	외국선	16,403,684	8,201	11,459	160	28,488	158,623	45,253	3,588
	수출계	19,794,894	8,605	13,900	4,178	28,538	165,986	72,502	4,067
	연안	10,628,227	0	6,558	0	0	80,171	98,678	0
	총계	30,423,121	8,605	20,458	4,178	28,538	246,157	171,180	4,067
2	국적선	2,711,333	253	2,733	643	249	7,043	32,522	1,756
	외국선	14,376,015	24,864	7,571	75	197	115,129	33,465	1,284
	수출계	17,087,348	25,117	10,304	718	446	122,172	65,987	3,040
	연안	8,711,567	0	4,395	0	0	50,054	78,694	0
	총계	25,798,915	25,117	14,699	718	446	172,226	144,681	3,040
3	국적선	3,481,809	202	2,962	0	511	11,146	37,034	962
	외국선	17,140,135	26,123	13,071	482	297	164,134	42,687	8,434
	수출계	20,621,944	26,325	16,033	482	808	175,280	79,721	9,396
	연안	10,907,931	0	6,597	0	0	42,621	107,322	0
	총계	31,529,875	26,325	22,630	482	808	217,901	187,043	9,396
4	국적선	3,224,290	419	3,370	38	340	9,199	31,273	137
	외국선	16,220,904	14,790	20,689	694	741	80,583	48,225	2,560
	수출계	19,445,194	15,209	24,059	732	1,081	89,782	79,498	2,697
	연안	10,708,556	0	4,410	0	0	21,361	88,657	0
	총계	30,153,750	15,209	28,469	732	1,081	111,143	168,155	2,697
5	국적선	3,393,946	135	2,500	21	275	51,655	43,890	543
	외국선	17,393,790	22,928	14,605	329	287	154,163	37,712	3,590
	수출계	20,787,736	23,063	17,105	350	562	205,818	81,602	4,133
	연안	10,501,722	0	3,726	0	0	21,229	63,360	0
	총계	31,289,458	23,063	20,831	350	562	227,047	144,962	4,133
6	국적선	3,346,700	898	4,154	58	279	11,092	38,833	296
	외국선	16,371,340	29,917	19,035	138	52	111,062	38,846	4,524
	수출계	19,718,040	30,815	23,189	196	331	122,154	77,679	4,820
	연안	8,908,484	0	2,052	0	0	21,040	35,143	0
	총계	28,626,524	30,815	25,241	196	331	143,194	112,822	4,820

자료: 해운물류국

Cargo Transportation (Port/Goods) (Departure 4-1)

Unit:R/T

조제식품,음료 Prepared Foodstuffs	시멘트 Cement	모래 Natural Sands	무연탄 Anthracite	유연탄 Bituminous Coal	철광석 Iron Ores	기타광석 및 생산물 Other Ores	원유, 석유 Crude Petroleum Oils
451,098	521,871	126	57,434	0	70,629	373,635	955
1,948,128	5,473,421	805	103,526	80	43,691	1,045,553	1,902,085
2,399,226	5,995,292	931	160,960	80	114,320	1,419,188	1,903,040
199,650	14,135,432	23,123,580	6,184	559,818	319,145	10,111,935	5,033,583
2,598,876	20,130,724	23,124,511	167,144	559,898	433,465	11,531,123	6,936,623
71,655	64,335	0	0	0	0	44,159	0
97,536	277,475	0	1,524	0	20	90,447	84,566
169,191	341,610	0	1,524	0	20	134,606	84,566
18,550	991,258	2,401,607	3,187	50,292	22,581	937,293	422,412
187,741	1,333,068	2,401,607	4,691	50,292	22,601	1,071,899	506,978
25,268	31,930	0	0	0	6,170	18,946	0
94,557	530,470	0	46	0	121	92,671	0
119,825	562,400	0	46	0	6,291	111,617	0
11,094	648,963	1,885,888	0	36,961	26,554	817,910	463,908
130,919	1,211,363	1,885,888	46	36,961	32,845	929,527	463,908
34,221	24,280	0	24,178	0	6,140	28,842	0
132,510	529,459	0	5,768	0	0	67,443	228,919
166,731	553,739	0	29,946	0	6,140	96,285	228,919
16,955	1,211,997	2,906,284	0	48,651	33,921	774,402	499,226
183,686	1,765,736	2,906,284	29,946	48,651	40,061	870,687	728,145
41,428	66,410	0	0	0	6,150	64,968	0
150,954	544,896	0	128	0	364	99,591	84,340
192,382	611,306	0	128	0	6,514	164,559	84,340
19,882	1,364,946	2,794,555	0	80,766	23,715	904,764	460,733
212,264	1,976,252	2,794,555	128	80,766	30,229	1,069,323	545,073
44,394	19,810	0	0	0	6,060	31,887	74
182,230	440,278	0	22	0	1,405	148,380	0
226,624	460,088	0	22	0	7,465	180,267	74
14,475	1,408,245	2,703,395	0	5,641	27,067	828,540	499,125
241,099	1,868,333	2,703,395	22	5,641	34,532	1,008,807	499,199
38,951	25,910	0	25,756	0	11,794	28,835	0
162,715	534,359	0	50,143	0	0	29,344	57,313
201,666	560,269	0	75,899	0	11,794	58,179	57,313
16,619	1,297,865	913,499	0	85,780	27,463	888,923	496,621
218,285	1,858,134	913,499	75,899	85,780	39,257	947,102	553,934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Export and Import Cargo Transportation (Area 2-1)

Unit:R/T

import								
조제식품, 음료 Prepared Foodstuffs	시멘트 Cement	모래 Natural Sands	무연탄 Anthracite	유연탄 Bituminous Coal	철광석 Iron Ores	기타광석 및 생산물 Other Ores	원유, 석유 Crude Petroleum Oils	석유 정제품 Product of Petroleum Oils
6,317,955	3,327,869	1,025,262	4,991,844	66,037,876	51,708,586	15,248,697	117,833,801	27,578,807
792,507	1,144,108	176,629	1,159,472	22,155,507	25,485,418	1,208,431	12,525,797	1,460,639
5,525,448	2,183,761	848,633	3,832,372	43,882,369	26,223,168	14,040,266	105,308,004	26,118,168
109,710	1,362,523	0	0	0	114,666	3,172,691	207,813	1,888,312
63,412	524,268	0	0	0	6,258	338,988	33	659,405
46,298	838,255	0	0	0	108,408	2,833,703	207,780	1,228,907
2,580,313	1,963,887	863,302	2,048,724	20,113,556	2,368,637	3,918,584	1,232,916	3,327,066
477,843	618,831	157,529	484,004	5,059,669	128,149	435,287	21	287,121
2,102,470	1,345,056	705,773	1,564,720	15,053,887	2,240,488	3,483,297	1,232,895	3,039,945
690,709	1,459	68,753	1,518,756	14,515,823	487,875	1,189,560	9,402,069	3,232,543
174,672	1,009	19,100	191,673	2,380,198	0	147,975	447,266	69,151
516,037	450	49,653	1,327,083	12,135,625	487,875	1,041,585	8,954,803	3,163,392
332,224	0	0	0	0	1,423,206	143,894	21,004	1,981,934
18,202	0	0	0	0	396,130	5,343	0	2,777
314,022	0	0	0	0	1,027,076	138,551	21,004	1,979,157
43,876	0	0	36,032	0	0	2,053	97,911,142	13,559,464
1,363	0	0	36,032	0	0	21	11,951,654	411,142
42,513	0	0	0	0	0	2,032	85,959,488	13,148,322
136,514	0	870	15,212	57,892	8,670	120,618	1,852,223	382,873
35,245	0	0	0	0	1,375	211	0	83
101,269	0	870	15,212	57,892	7,295	120,407	1,852,223	382,790
37,615	0	0	0	143,462	1,160,252	567,272	3,626,458	552,399
0	0	0	0	0	750,236	0	0	0
37,615	0	0	0	143,462	410,016	567,272	3,626,458	552,399
1,588,785	0	0	487,660	3,578,214	1,333,457	484,003	0	1,144,086
20,658	0	0	50,579	1,972,856	609,396	38,065	0	30,960
1,568,127	0	0	437,081	1,605,358	724,061	445,938	0	1,113,126
6,886	0	0	0	87,557	370	657,941	0	296,948
412	0	0	0	0	0	40,000	0	0
6,474	0	0	0	87,557	370	617,941	0	296,948
737,891	0	0	0	0	14,616,415	1,672,183	753,306	85,328
0	0	0	0	0	3,026,061	5,001	0	0
737,891	0	0	0	0	11,590,354	1,667,182	753,306	85,328
53,432	0	92,337	885,460	27,512,918	30,195,038	3,278,153	2,826,870	1,127,500
700	0	0	397,184	12,742,784	20,567,813	197,540	126,823	0
52,732	0	92,337	488,276	14,770,134	9,627,225	3,080,613	2,700,047	1,127,500
0	0	0	0	28,454	0	41,745	0	354
0	0	0	0	0	0	0	0	0
0	0	0	0	28,454	0	41,745	0	354

Note: Transportation by Korean flags include transportation by BBC/HP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3. 수출입 화물 수송 (지역 2-1)

2005년도

품목 Items		수 출							
지역별	구분별	합 계 Total	육 류 Meat	어패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Fish, Crustaceans and Mollusks	양 곡 Cereals	제분공업 생산물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동물성 생산물 Other Animal and Vegetable Products	동물성 지방류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당 류 Sugars
한 국	계	185,650,172	22,556	189,161	13,269	16,331	1,556,557	694,744	51,701
	국 적 선	30,395,995	4,037	57,500	8,199	3,366	126,902	334,145	7,122
	외 국 선	155,254,177	18,519	131,661	5,070	12,965	1,429,655	360,599	44,579
미 국	계	22,437,120	4,788	86,428	10,436	4,106	175,388	92,647	7,848
	국 적 선	8,247,327	3,933	31,664	8,120	2,910	100,203	68,779	269
	외 국 선	14,189,793	853	54,764	2,316	1,196	75,185	23,868	7,579
일 본	계	59,274,827	12,909	52,331	1,204	3,083	186,569	329,586	20,312
	국 적 선	14,772,250	1	13,006	25	337	18,634	137,654	6,568
	외 국 선	44,502,577	12,908	39,325	1,179	2,746	167,935	191,932	13,744
동남아	계	24,212,320	503	11,533	442	884	29,013	268,481	16,444
	국 적 선	3,301,835	38	3,521	0	0	750	127,472	51
	외 국 선	20,910,485	465	8,012	442	884	28,263	141,009	16,393
서남아	계	3,370,788	0	42	9	1,550	5,584	0	618
	국 적 선	415,430	0	24	9	0	72	0	0
	외 국 선	2,955,358	0	18	0	1,550	5,512	0	618
중 동	계	10,836,612	103	682	0	2,900	113,494	454	44
	국 적 선	459,599	40	425	0	0	2,957	0	0
	외 국 선	10,377,013	63	257	0	2,900	110,537	454	44
유 럽	계	19,082,793	1,010	12,714	198	2,655	196,192	176	5,207
	국 적 선	1,551,254	25	7,019	0	40	1,217	18	0
	외 국 선	17,531,539	985	5,695	198	2,615	194,975	158	5,207
아프리카	계	4,523,947	17	193	0	328	11,851	1,415	25
	국 적 선	66,665	0	0	0	0	0	0	0
	외 국 선	4,457,282	17	193	0	328	11,851	1,415	25
북미주	계	29,167,539	2,315	15,100	609	577	789,459	1,464	849
	국 적 선	1,413,565	0	1,435	45	79	3,068	222	234
	외 국 선	27,753,974	2,315	13,665	564	498	786,391	1,242	615
중 미	계	4,205,553	460	247	371	3	4,057	226	17
	국 적 선	27,714	0	0	0	0	0	0	0
	외 국 선	4,177,839	460	247	371	3	4,057	226	17
남 미	계	4,100,208	16	2,024	0	0	2,897	0	7
	국 적 선	42,343	0	0	0	0	0	0	0
	외 국 선	4,057,865	16	2,024	0	0	2,897	0	7
대양	계	4,346,903	80	583	0	245	42,005	295	330
	국 적 선	95,435	0	287	0	0	1	0	0
	외 국 선	4,251,468	80	296	0	245	42,004	295	330
기 타	계	91,562	357	7,284	0	0	48	0	0
	국 적 선	2,578	0	119	0	0	0	0	0
	외 국 선	88,984	357	7,165	0	0	48	0	0

주: 국적선수송실적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수송실적이 포함되었음/환적제의화물 수취입

자료: 해운통계국

Export and Import Cargo Transportation (Area 2-1)

Unit: R/T

export									
조제식품, 음료 Prepared Foodstuffs	시멘트 Cement	모래 Natural Sands	무연탄 Anthracite	유연탄 Bituminous Coal	철광석 Iron Ores	기타광석 및 생산품 Other Ores	원유, 석유 Crude Petroleum Oils	석유 정제품 Product of Petroleum Oils	
1,344,792	5,993,580	142	4,586	61	90,414	796,971	1,585,000	37,900,848	
194,030	521,850	0	1,150	0	66,473	268,924	955	2,920,477	
1,150,762	5,471,730	142	3,436	61	23,941	528,047	1,584,045	34,980,371	
118,167	866,007	0	3,750	0	70,304	215,977	221,878	8,978,799	
72,932	387,460	0	1,150	0	66,436	74,781	881	726,612	
45,235	478,547	0	2,600	0	3,868	141,196	220,997	3,252,187	
464,925	309	42	0	0	12,810	320,024	1,305,962	13,665,446	
41,735	0	0	0	0	0	188,867	74	1,846,233	
423,190	309	42	0	0	12,810	131,157	1,305,888	11,819,213	
202,581	236,738	51	0	0	0	27,964	23	7,927,238	
29,625	0	0	0	0	0	3,103	0	316,977	
172,956	236,738	51	0	0	0	24,861	23	7,610,261	
6,220	35,000	0	483	0	193	24,083	0	491,936	
1,704	0	0	0	0	0	877	0	150	
4,516	35,000	0	483	0	193	23,206	0	491,786	
55,047	283,502	0	0	0	0	44,241	57,137	161,003	
1,868	50,355	0	0	0	0	67	0	3,626	
53,179	233,147	0	0	0	0	44,174	57,137	157,377	
99,820	390,994	0	44	61	157	1,330	0	1,203,038	
33,625	43,535	0	0	0	0	193	0	177	
66,195	347,459	0	44	61	157	1,137	0	1,202,861	
15,442	1,359,465	0	0	0	0	4,921	0	70,412	
0	40,500	0	0	0	0	0	0	0	
15,442	1,318,965	0	0	0	0	4,921	0	70,412	
250,401	2,430,005	49	0	0	3,045	91,064	0	3,536,225	
12,350	0	0	0	0	37	32	0	8,486	
238,051	2,430,005	49	0	0	3,008	91,032	0	3,527,739	
17,471	291,804	0	0	0	0	20,855	0	349,149	
140	0	0	0	0	0	0	0	0	
17,331	291,804	0	0	0	0	20,855	0	349,149	
73,840	99,672	0	25	0	0	48	0	563,362	
0	0	0	0	0	0	0	0	0	
73,840	99,672	0	25	0	0	48	0	563,362	
40,877	84	0	284	0	3,905	46,354	0	950,037	
51	0	0	0	0	0	1,004	0	13,216	
40,826	84	0	284	0	3,905	45,350	0	931,821	
1	0	0	0	0	0	110	0	4,203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10	0	4,203	

Note: Transportation by Korean flags include transportation by BBC/HP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4. 화물 수송 (연안화물) Cargo Transportation by Coastal

Unit: R/T

구분 (Classification)	총 계 (Grand Total)	연안화물선 (Coastal Ship)				연안여객선 (Coastal Passenger Ship)
		소 계 (Sub-Total)	화 물 (Cargo)	유 류 (Oil & Gas)	환 적 (T/S)	
합계 Total	119,409,878	115,489,200	73,903,924	40,139,453	1,445,823	3,920,678
부산 Busan	11,503,603	10,847,391	4,437,739	6,407,339	2,313	656,212
인천 Incheon	37,385,741	37,332,774	19,983,844	15,950,201	1,398,729	52,967
평택 pyeongtaek	7,726,557	7,726,557	6,089,045	1,633,820	3,692	0
동해 Donghae	864,734	808,797	345,965	462,332	0	55,937
삼척 Samcheok	358,471	358,471	340,049	18,422	0	0
북호 Mukho	235,203	235,203	7,002	228,201	0	0
속초 Sokcho	30,815	30,815	8,182	22,633	0	0
옥계 Okgea	732,235	732,235	522,008	210,227	0	0
대산 Daesan	3,735,224	1,571,653	275,000	1,296,653	0	2,163,571
보령 Boryeong	167,865	167,865	114,434	53,431	0	0
태안 Taeahn	207,965	207,965	161,371	46,594	0	0
군산 Gunsan	3,596,052	3,397,591	1,533,767	1,863,824	0	198,461
장항 Janghang	1,136,429	1,136,429	1,134,882	100	1,447	0
목포 Mokpo	3,917,321	3,354,596	2,441,226	913,370	0	562,725
완도 Wando	293,294	293,294	270,463	21,126	1,705	0
여수 Yeosu	942,742	780,608	333,582	447,026	0	162,134
광양 Gwangyang	9,895,712	9,895,712	8,312,256	1,583,238	216	0
포항 Pohang	7,241,962	7,241,962	6,434,721	807,241	0	0
마산 Masan	5,244,186	5,234,696	3,421,276	1,813,420	0	9,490
삼천포 Samcheonpo	441,765	441,765	317,375	123,200	1,190	0
옥포 Okpo	1,249,179	1,249,179	1,196,983	48,861	3,335	0
장승포 Geoje	372	372	0	372	0	0
진해 Jinhae	52,365	52,365	35,731	16,634	0	0
통영 Tongyeong	80,105	80,105	1,890	78,206	0	0
고현 Gohyeon	1,184,773	1,184,773	1,096,283	88,434	56	0
울산 Ulsan	5,558,577	5,558,577	4,062,444	1,462,993	33,140	0
제주 Jeju	1,823,376	1,764,195	929,538	834,657	0	59,181
서귀포 Seoguiipo	156,445	156,445	101,441	55,004	0	0
기타 Others	13,646,810	13,646,810	9,995,416	3,651,394	0	0

자료: 해운물류국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주: 연안화물은 입항기준으로 산출

1. 컨테이너 Container Transportation

구분 Classification 연월 Year & Month	합 계								
	10'			20'			40'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1996	13,293	6,651	19,944	1,525,611	363,990	1,889,601	1,232,813	252,914	1,485,727
1997	14,016	6,554	20,570	1,705,959	428,200	2,134,159	1,344,127	306,619	1,650,746
1998	12,626	5,851	18,477	1,735,731	716,124	2,451,855	1,322,904	482,245	1,805,149
1999	12,888	6,143	19,031	1,995,219	658,887	2,654,106	1,656,113	485,142	2,141,255
2000	15,166	6,517	21,683	2,220,343	710,882	2,931,225	1,913,335	675,823	2,489,158
2001	13,661	7,108	20,769	2,849,602	760,052	3,609,654	2,547,794	604,238	3,152,032
2002	221,279	49,739	271,018	3,302,749	794,692	4,097,441	3,145,600	639,325	3,784,925
2003	238,254	52,923	291,177	3,506,061	903,689	4,409,750	3,463,414	792,191	4,255,605
2004	191,466	83,204	274,670	3,807,853	975,899	4,783,752	3,849,139	885,298	4,734,437
2005	157,691	61,693	219,384	3,918,662	1,035,769	4,954,431	4,055,159	956,768	5,011,927
1	24,496	5,741	30,237	324,439	81,872	406,311	324,776	79,466	404,242
2	15,494	4,658	20,152	270,738	76,131	346,869	279,689	67,867	347,556
3	13,514	6,519	20,033	342,031	87,519	429,550	349,756	80,237	429,993
4	10,380	6,018	16,398	338,846	87,306	426,152	346,879	83,912	430,791
5	8,153	5,064	13,217	341,911	84,760	426,671	350,103	78,407	428,510
6	7,230	4,945	12,175	331,613	83,992	415,605	330,040	79,380	409,420
7	5,127	4,573	9,700	337,747	82,540	420,287	353,679	83,387	437,066
8	5,139	4,854	9,993	321,820	79,185	401,005	344,197	72,070	416,267
9	4,611	4,946	9,557	308,542	87,413	395,955	339,177	77,318	416,495
10	10,780	4,786	15,566	339,113	93,988	433,101	361,196	83,504	444,700
11	22,006	4,158	26,164	327,176	101,093	428,269	337,440	87,324	424,764
12	30,761	5,431	36,192	334,686	89,970	424,656	338,227	83,896	422,123

주: 1. 10' 규격, 내항은 1994년부터 통계 작성
 2. 2006년도 「화물수송통계 자체 품질분석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02-2004년도 화물량을 보정하였음.
 자료: 해운물류국

수송 (총괄)
(Total)

Total									
기타 (other)			소계(Sub-Total)				T E U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화물(R/T) Cargo (R/T)	적 Full	공 Empty	계 Total
7,918	7,369	15,287	2,779,635	630,924	3,410,559	72,542,579	4,012,465	885,832	4,898,297
7,832	7,911	15,743	3,071,934	749,284	3,821,218	81,687,272	4,416,929	1,058,111	5,475,040
12,449	5,453	17,902	3,083,710	1,209,673	4,293,383	81,454,136	4,407,491	1,694,577	6,102,068
12,069	7,886	19,955	3,676,289	1,158,058	4,834,347	98,975,434	5,331,630	1,641,329	6,972,959
13,177	5,834	19,011	4,162,021	1,299,056	5,461,077	107,842,117	6,081,878	1,876,923	7,958,801
21,885	9,735	31,620	5,432,942	1,381,133	6,814,075	147,526,724	7,998,110	1,992,001	9,990,111
30,238	11,010	41,248	6,699,866	1,494,766	8,194,632	174,609,641	9,767,607	2,122,191	11,889,798
34,936	18,074	53,010	7,242,665	1,766,877	9,009,542	200,777,679	10,630,652	2,555,219	13,185,871
42,562	16,735	59,297	7,891,020	1,961,136	9,852,156	232,586,824	11,697,552	2,825,586	14,523,138
40,624	17,620	58,244	8,172,136	2,071,850	10,243,986	240,219,413	12,196,926	3,019,534	15,216,460
3,490	1,129	4,619	677,201	168,208	845,409	19,882,428	993,743	246,170	1,239,913
3,207	1,549	4,756	569,128	150,205	719,333	16,509,580	844,869	217,674	1,062,543
3,167	1,823	4,990	708,468	176,098	884,566	20,682,308	1,055,419	255,352	1,310,771
2,792	1,710	4,502	698,897	178,946	877,843	20,273,717	1,043,880	261,982	1,305,862
3,073	1,203	4,276	703,240	169,434	872,674	20,959,902	1,052,516	246,589	1,299,105
2,914	1,955	4,869	671,797	170,272	842,069	19,933,564	1,001,653	249,821	1,251,474
3,635	1,527	5,162	700,188	172,027	872,215	20,570,123	1,055,405	255,005	1,310,410
3,930	2,302	6,232	675,086	158,411	833,497	18,865,773	1,021,318	230,923	1,252,241
3,886	1,353	5,239	656,216	171,030	827,246	19,461,340	998,020	247,475	1,245,495
4,712	1,218	5,930	715,801	183,496	899,297	21,506,291	1,077,478	266,113	1,343,591
3,018	772	3,790	689,640	193,347	882,987	20,843,304	1,019,329	279,543	1,299,372
2,800	1,079	3,879	706,474	180,376	886,850	20,731,083	1,032,796	262,887	1,295,683

Note: 1. Statistics of 10' standard containers and cabotage containers updated since 1994.
2. Cargo volume for 2002-2004 was revised through reflecting 'output of Self-Evaluation on Quality Analysis' conducted in 2006

Source: Shipping & Logistics Bureau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작성 : 신고자(선사/대리점, 화주 등)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신고

○ 초기화면 : 신고자가 PORT-MIS이용하기 위한 첫 화면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청코드 030 인천항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취소 종료

IPA
INCHON PORT AUTHORITY

- 청코드 :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제출할 지방청 코드
- 아이디, 비밀번호는 PORT-MIS 이용자 등록 시 부여
- ※ 지방청, PA(항만운영공사) 및 EDI 화면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음

(2) 외항화물 반출입신고서 작성

통합화물신고

*경고코드 030 인천항 수출입구분 수입
 호출부호 3EAB4 KMTC ULSAN 년도/횟수 2006 001
 *입체코드 KM-S-8832 지방해양수산청 *B/L번호 KMTCLW002879

통합화물신고 컨테이너신고

적하목록관리번호	06KMTCIU210	MSN	18
부두코드	MBI 01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1부두	선사	KMTC 고려해운(주)
국내화주			
최종목적항	KRINC 인천항	입출항일자	2006/01/04 08:10
잠치장	02012209		
선박국적	PA PANAMA	B/L TYPE	Simple
적하항	IDBLW BELAWAN, SUMATRA	양하항	KRINC 인천항
품목	NATURAL RUBBER SIR 20		
품목코드	864300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됨)		
특수화물	N	위험물 UNNO	
포장종류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수 있는 물품	하역방법	일반하역
용적톤 단위	M	하역업체	IC-G-1048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용적/용적톤	.00 * cbm bill .0	벌크/KG	.00 * cbm bill .00
중량(KG)/중량톤	442,260.00 442.26	컨테이너갯수	27.00
송하인	PT, ADEI CRUMB RUBBER INDUSTRY	송하인 전화번호	2006/01/06 11:37
송하인 주소			TP ID
수하인	TO THE ORDER OF WOORI BANK	수하인 전화번호	KLKMTCM010
수하인 주소			
통지처	HANKOOK TIRE CO.,LTD.	통지처 전화번호	완료여부
통지처 주소	J.H.PARK 647-15,YEOKSAM-DONG, GANGNAM-GU,SEOUL		완료

1개의 자료가 조회되었습니다

○ 화물통계단위

- 운임톤 (R/T : Revenue tons, F/T : Freight tons)

-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톤수를 말한다. 보통 중량이나 용적중 높은 운임의 산출이 가능한 쪽의 톤수를 말한다.

※ 메트릭톤 (Metric tons : MT)

- 무역거래 및 해상운송에서 거래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 통상 1,000kg을 1톤으로 산정
- 대부분의 중량화물에 적용, 주요 항만의 하역실적을 발표 할 때 사용

※ 용적톤 (Measurement tons : M , CBM)

- 부피로 화물을 측정하는 단위로, 통상 1m³(입방미터)를 1용적톤으로 산정
- 하역방법이 송유관하역일 경우 반드시 용적단위는 "B(바렐)"로 입력

○ B/L 건별로 운임톤 계산 방법 (소수점 이하 절상)

- 중량톤만 있는 경우 : 중량톤이 운임톤
- 용적톤만 있는 경우
 - 용적단위가 "B(바렐)"인 경우 : 용적(B)×0.140324 = 운임톤
 - 용적단위가 "M" 인 경우 : 용적(M)× 0.883 = 운임톤
- 중량, 용적 모두 있는 경우 (둘 중 운임톤이 더 큰 값으로 부과)
 - 용적단위가 "B(바렐)"인 경우 : 용적(B)×0.140324 = 운임톤
 - 용적단위가 "M" 인 경우 : 용적(M)× 0.883 = 운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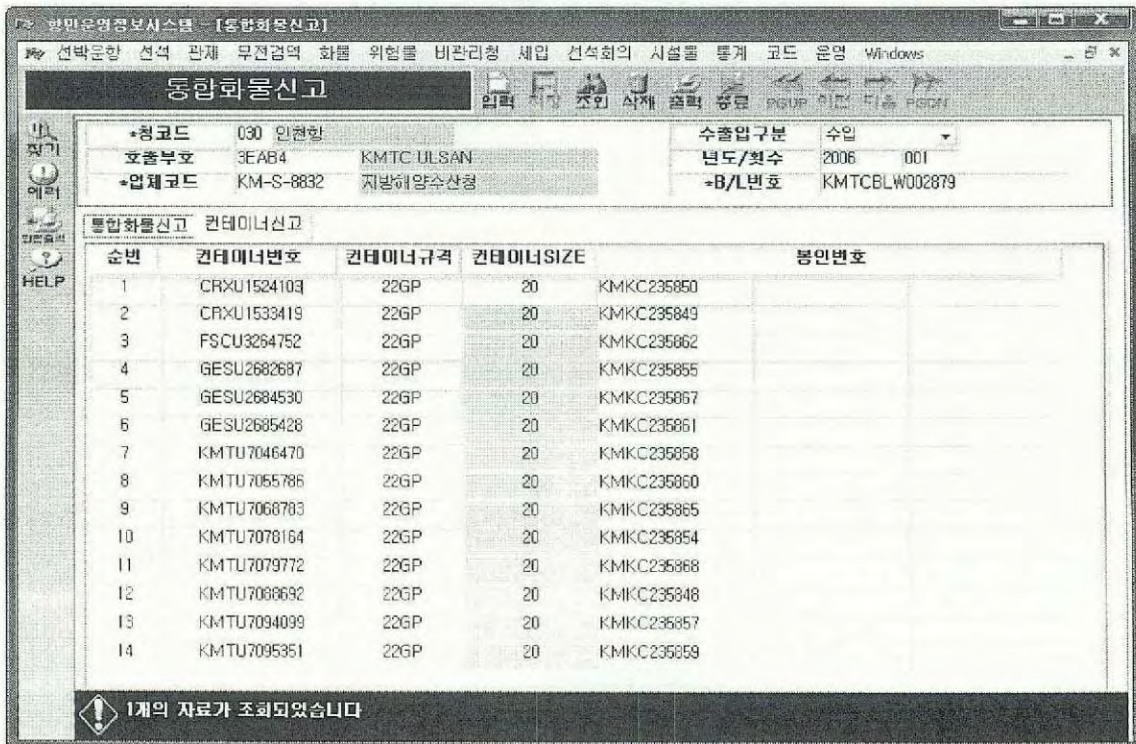
예시)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농구공을 수입하여 화물반출입신고서에 중량5톤, 용적50MT을 기재하였을 경우 운임톤 과 화물입항요금은?

화물처리방법은 기계하역으로 처리

※ 용적톤 50톤 => 50× 0.883 =44.15 RT 로 중량톤 5톤 보다 크므로 45 RT 적용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105호』 인 『貿易港의 港灣施設使用料에 關한規程』 에 근거하여 화물입출항료를 계산 : 192원/RT × 45RT = 8,640원

(2-1) 외항컨테이너 반출입신고서 작성



○ 선박별로 컨테이너 규격에 따른 반출입 내용을 기재

※ 컨테이너 단위 : TEU(twenty footer equivalent unit) = 20FT

- 10FT = 0.5TEU, 20FT = 1.0TEU, 40FT = 2.0TEU

(3)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작성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화물료)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선박은항 선석 관제 무건검역 화물 위험물 비관리항 세입 선석회의 시설물 통계 코드 운영 Windows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항구코드: 030 인천항 | 화물부호: DSDE9 | 본디스타호 | 연도/입항횟수: 2005 | 013
 이항목적: 1, 외항입항 | 업체코드: KS-Z-0038 | 지점: 마우오트엔터 | 할인유무: []

번호	하역구분	운임톤/갯수	기본요금	할인율	사용료 (원)
001	40 Feet Con.	1	4,200	없음	8,400
002	20 Feet Con.	2	4,200	없음	8,400

신고일자: 2005/07/08 | 납부기한: 2005/07/15 | 총사용료: 16,800
 허가일자: 0000/00/00 | 입출항일자: 2005/07/01

하역구분	BL 수	운임톤	CONT.	개수	TEU	관측 (적) 권		운임톤					
						갯수	TEU	양적하한	일반	CONT.	적	공	
일반	0	0	20미만	0	0	기타	0	0	CNTXG	0	41	4	0
가게	0	0	20 Feet	2	2	45FT	0	0					
송유관	0	0	35 Feet	0	0	40FT	0	0					
무연탄	0	0	40 Feet	1	2	35FT	0	0					
컨테이너	2	41	45 Feet	0	0	20FT	0	0					
합계	2	41	합계	3	4	10FT	0	0					
T	국외OD적	4	국외OD공	0	0	합계	0	0					
E	국내OD적	4	국내OD공	0	0								
U	공간20이하	0	공간20초과	0	0								

IPA 조회되었습니다.

○ 화물반출입신고, 컨테이너반출입신고(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작성함

- 하역구분, 운임톤, 규격별 컨테이너 수량 등 기재 내용 확인

2.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확인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1) 항만시설사용신고 내용 확인(화물료 계산)

항만시설이용신고수리

항목코드	030 인천항	호출부호	DSDE9	보나스타호	상계대상	할인유무	
입항횟수	2005 013	항자			총톤수	선박	화물
이용목적	1.외항입항	업체코드	NSZ0088	지열대우오토앤테크			

번호	하역구분	요업톤/갯수	기본요금	할인율	사용료 (원)
001	8 40 Feet Con.		4,200	0	8,400
002	6 20 Feet Con.	2	4,200	0	8,400

입항정보		출항정보	
상태	수리	상태	수리
입항	2005/07/01	출항	2005/07/03
구분	외항	구분	외항

화물/CONT. 입력내용	
BL 갯수	2
운임톤	41
CONT. 갯수	3.0
TEU	4
국내OD	적 4 공 0
국외OD	적 4 공 0

신고일자	2005/07/08	총사용료	16,800
반입시출항일자	2005/07/03	신고번호	
입출항일자	2005/07/01	금시번호	
납부기한	2005/07/15	허가업자(자동입력)	0000/00/00
상계처리유무		입항목적	양적하
장수관	해양부	과세구분	면제

상계처리(취소) 화물반출입조회 컨테이너반출입조회 본선관제내역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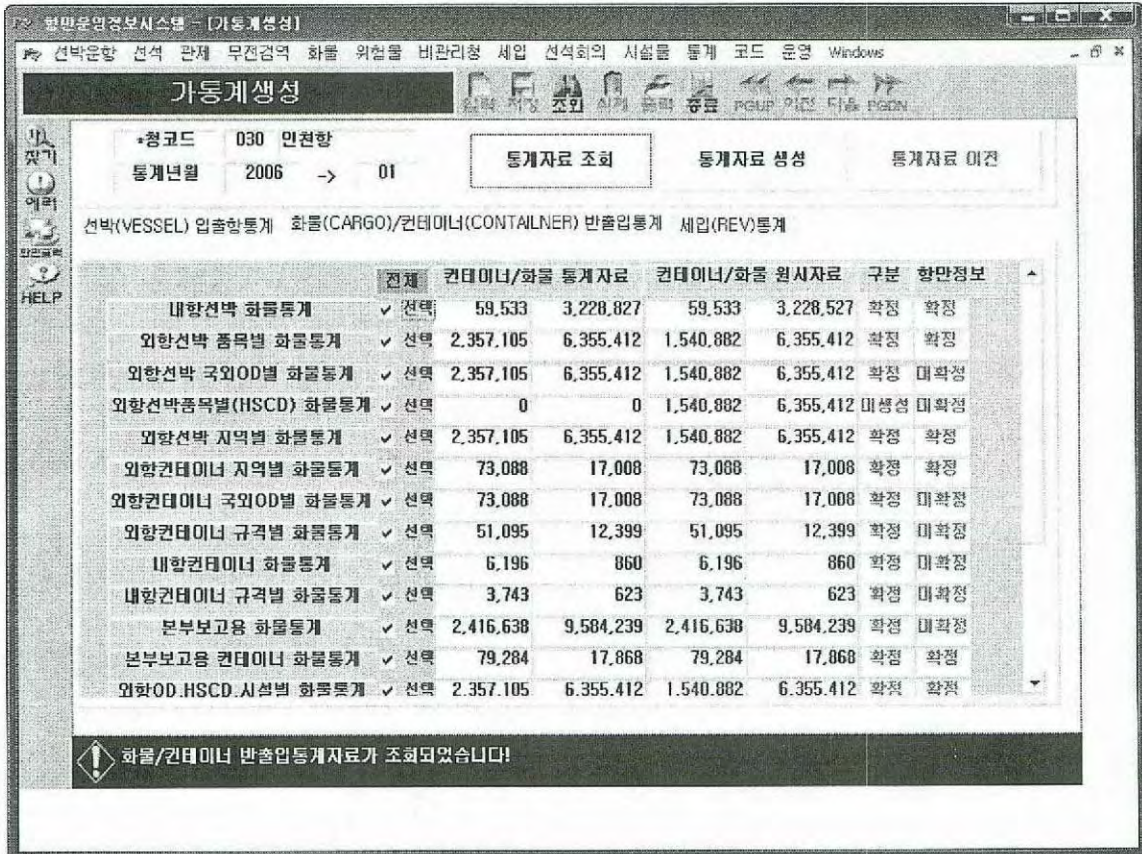
IPA 시설이용(화물료) 신고완료! (수정,삭제 불가)

- 신고자가 입력한 화물반출입신고, 컨테이너반출입신고 등의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화물료 계산

3. 화물수송실적 통계 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1) 본부 보고용 가통계 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매월 15일

【지방청 담당자】



① 통계생성

○ 통계를 생성할 대상 항목(청코드, 통계년월, 통계내역)을 입력하고 "통계자료생성" 을 선택

※ 생성된 통계자료는 PORT-MIS의 가통계 DB에 저장

② 통계자료 보기

○ 생성구분별로 통계 생성이 완료되면 "통계자료 조회"에서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③ 통계자료 비교

○ 생성된 가통계 자료와 원시자료(항만시설사용신고)를 비교

- ② 통계자료 보기
 - 생성구분별로 통계 생성이 완료되면 자료보기(Y) 버튼으로 생성된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③ 통계자료 비교
 - 생성된 통계 자료와 원시자료(항만시설사용신고)를 비교
- ④ 통계 자료 확정
 - 통계확정(P) 버튼 누르면 PA 소속지방청으로 자료이전

(2) 분기별 통계자료 검토, 보정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매분기 2개월 후

※ 본부 통계담당자가 분기별 통계자료 재생성을 문서로 지시

- ① 통계생성
 - (1)의 ① 통계생성 과정과 같음
 - ※ 본부 통계담당자가 분기별 통계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SP-IDC 통계 DB 자료를 '확정'에서 '보류'로 전환
- ② 통계자료 보기
 - (1)의 ② 통계자료보기 과정과 같음
- ③ 통계자료 비교 (검증)
 - 생성된 분기별 통계자료와 원시자료(항만시설사용신고) 비교
 - ※ 전년 동기 대비 하여 비정상적인 추세(수치)로 판단되면 정밀 검증
 - ※ 비교(검증) 결과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보정 후 ①~③과정을 반복 수행
- ④ 분기별 통계자료 본부 전송
 - “통계자료이전(지방청)” 하면 화물수송실적 분기별 통계자료 본부(SP-IDC 통계 DB)로 전송됨
 - ※ 본부 통계담당자가 분기별 통계자료 확정하면 자료 수정(재생성) 불가능

(3) 작성대상연도 통계 재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매년 2월

※ 본부 통계담당자가 작성연도 통계자료 재생성을 문서로 지시

① 통계생성

○ (1)의 ① 통계생성 과정과 같음

※ 본부 통계담당자가 작성대상연도 통계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SP-IDC 통계 DB 자료를 '확정'에서 '보류'로 전환

② 통계자료 보기

○ (1)의 ② 통계자료보기 과정과 같음

③ 통계자료 비교 (검증)

○ 생성된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검증

※ 전년 대비 비정상적인 추세(수치)로 판단되면 정밀 검증

※ 비교(검증) 결과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보정 후 ①~③과정을 반복 수행

화물수송실적

통계년월 | 2006/01 -> 2006/01

화물수송실적

* 원적화물 = 외항입항원적화물 + 외항출항원적화물
 * 연안화물 = 연안입항원적화물 + 연안출항원적화물

[단위 : R/T]

구분	재생성통계	기존통계	증감		차이원인
			회수량	%	
수입	37,974,967	37,889,323	85,644	0.23	
수출	10,271,116	10,168,563	102,533	1.01	
환적	189,968	189,795	173	0.09	
연안	18,109,576	18,087,241	22,335	0.12	
인천항	66,545,627	66,334,942	210,685	0.32	
수입	13,915,038	13,915,038	0	0	
수출	6,038,735	6,038,735	0	0	
환적	41,195	41,195	0	0	
연안	3,679,707	3,679,707	0	0	
평택항	23,674,675	23,674,675	0	0	
수입	2,355,881	2,355,881	0	0	

성공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한민운항정보시스템 - [컨테이너수송실적]

선택운항 선택 관제 무전검역 화물 위험물 비관리형 세입 선석회의 시설물 통계 코드 운영 Windows

컨테이너수송실적

통계년월 | 2006/01 -> 2006/01

컨테이너수송실적 [단위 : TEU]

구분	재생성통계	기존통계	증감		차이율인
			화물량	%	
입항	323,608	322,121	1,687	0.52	
출항	288,329	287,503	826	0.29	
내항	26,558	26,436	120	0.45	
환적	5,088	5,079	9	0.18	
인천항	643,783	641,141	2,642	0.41	
입항	54,747	54,747	0	0	
출항	58,119	58,119	0	0	
내항	0	0	0	0	
환적	97	97	0	0	
평택항	112,953	112,953	0	0	

성공적으로 조회되었습니다!

④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확정 (본부 전송)

- “통계자료이전(지방청)” 하면 화물수송실적 분기별 통계자료 본부(SP-IDC 통계 DB)로 전송됨

※ 통계자료가 확정된 이후 통계자료 수정(재생성)이 불가함

4. 화물수송실적 통계 작성·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1) 작성대상연도 화물수송실적 통계 작성

통계마감관리

프로그램명: **항만인화물수송실적통계** 조회년월: 200601

년도	항목	실적	확정
2006	01	201	실적
2006	01	202	목호
2006	01	203	속초
2006	01	204	옥계
2006	01	300	대산
2006	01	301	보령
2006	01	302	태안
2006	01	500	군산
2006	01	501	장항
2006	01	610	목포
2006	01	611	완도

- ① 각 항만의 업무담당자는 화물수송실적통계 확정 통보함
 - 업무담당자는 통계 확정 후 본부로 통보 (문서, 메일)
- ② 화물수송실적 통계 확인
 - 본부 통계담당자는 SP-IDC 통계시스템(통계마감관리)에서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조회
- ③ 화물수송 통계 확정
 -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일괄확정' 버튼으로 통계 확정
 - ※ 전월, 전년 동기 대비 하여 추세(수치) 등 비교, 검증

④ 화물수송실적 통계 작성·공표

- SP-IDC 통계시스템에서 통계 출력양식에 맞도록 PDF 파일 형태로 자료 편집
- 해양수산통계연보에 통계자료 수록하여 발간 (매년 7월경)

통계연보 수록	
<p>선박업종항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입출항 (항) 선박 입출항 (항 지역, 선종) 선박 입항(분급) 	<p>이격수송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격선수송(여객, 화물) 이격선수송(연인km, 연톤km) 이격선항로연결(장기) 낙도보조항로(총괄) 낙도보조항로(항로)
<p>화물수송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수송(총괄) 화물수송(항, 품목) 수출입화물수송(지역) 수출입화물수송(연인/어객선) 	<p>컨테이너수송통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테이너 수송(출발 및 항)
<p>2001 표본 어가 개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어가개황 어업시설현황 면의용종보유현황 가구원상황 	<p>어가경제 연도별 통계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업수지 결업수입 결업지출 사업외수지 어건수입및조세공과금 가계태 어가자산 차입차별부채 용도별부채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가의 어업종사자

V. 관련 용어 설명

- 연안화물 = 연안선화물 + 연안여객선화물
수출입화물 = 외항선화물(국적선+외국선)+국제여객선화물
(전국 28개 무역항 입출항기준)
- 국적선 수송실적 = 국적선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 “외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함
- 외항화물이라 함은 외항선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함
- “내항선(연안선)”이라 함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함
- 내항화물(연안화물)이라 함은 내항선(연안화물)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함
- 화물 반입반출입 신고서식의 B/L(선하증권) 건별로 적용하는 운임톤(R/T)을 화물톤으로 간주함
-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선하증권은 그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종의 물권적(物權的 證券)의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임. 필수 기재 사항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적항명(續港名) 및 양항명(揚港名) 등임

□ 적하목록(積荷目錄 Cargo Manifest M/F)

화물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는 적재화물 명세서. 송하인(送荷人) 및 수하인(受荷人) · 선하증권번호 · 컨테이너번호 등이 기재되며,본선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항비(港費) 산출근거 및 입 · 출항시 통관자료로 사용됨.

□ 화물운송주선업(forwarder)

하주(의뢰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주는 업자를 가르킨다. 이들은 소량화물을 집하하여 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 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 화물수송통계 단위는 운임톤 R/T(Revenue ton)으로 환산함

□ 환적(換積, Transhipment)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일정한 선박에 실려진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으로 컨테이너 선박의 환적은 부두 배후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항만당국의 입장에서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세계 항만들 간 환적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함

□ 무역항 (28개항)

- 경기 (1) : 평택당진항
- 충남 (4) : 대산, 태안, 보령, 장항항
- 전북 (1) : 군산항
- 전남 (4) : 목포, 완도, 여수, 광양항
- 경남 (7) : 삼천포, 통영, 장승포, 옥포, 고현, 마산, 진해항
- 경북 (1) : 포항항
- 강원 (5) :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항

- 제주 (2) : 제주, 서귀포항
- 인천 (1) : 인천항
- 부산 (1) : 부산항
- 울산 (1) : 울산항

□ 연안화물의 기타항

- 입항 : 도착지는 무역항이나 최초출항지가 무역항 (28개항)아닌 경우(KRZZZ 표기)
- 출항 : 출발지는 무역항이나 최종목적지가 무역항 (28개항)아닌 경우(KRZZZ 표기)

□ 적하(積荷)

해상운송의 개개인 유체물(고체,액체,기체 등 형체를 가진물질)을 의미하며 운송의 객체는 도착지에 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만이며 단지 선박 안에 존재하는 물건 예를들면 선박의 바닥 짐, 연료, 양식, 선박서류 선원의 휴대품 등 도착지까지의 운송이 목적이 아닌 물건은 적하가 아님

□ 양하(揚荷)

선박에 실린 화물을 선박에서 내려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함.
엄격한 의미에서 단순히 화물을 선박에서 육상으로 내려놓는 양륙과는 다른 개념임.

【 별첨 1 - 통계 관련 코드 】

(1) 지방관서 소속코드 및 항 코드

소 속	항구명	소 속 코 드		
		숫자 코드	3-영문 코드	2-영문 코드
해양수산부	본 부	010	KMP	KM
부산청	부 산	020	PUS	BS
	감 천	021	KCN	KC
인천청	인 천	030	INC	IC
	평 택	031	PTK	PT
	연안 부두	032	MBY	
동해청	동 해	200	TGH	DH
	삼 척	201	SUK	SA
	목 호	202	MUK	MH
	속 초	203	SHO	SC
	옥 계	204	OKK	OG
대산청	대 산	300	TSN	DS
	보 령	301	BOR	BO
	당 진	303	TJI	TJ
	태 안	302	TAN	TA
군산청	군 산	500	KUV	KS
	장 향	501	CHG	JH
목포청	목 포	610	MOK	MP
	완 도	611	WND	WD
	대불 분실	616	DBL	DL
	북항 분실	617		
여수청	여 수	620	YOS	YS
	여 천	621	YOC	YC
	광 양	622	KAN	KY
포항청	포 항	700	KPO	PH
	신 항	701	SHG	SH
마산청	마 산	810	MAS	MS
	삼천포	811	SCP	SP

소 속	항 구 명	소 속 코 드		
		숫자 코드	3-영문 코드	2-영문 코드
마산청	옥 포	812	OKP	OK
	거 제	813	KJE	JP
	진 해	814	CHF	CH
	통 영	815	TYG	CM
	고 현	816	KHN	KH
울산청	울 산	820	USN	US
	온 산	821	ONS	OS
제주청	제 주	900	CHA	JJ
	서귀포	901	SPO	SG
기타	기타항	951	ZZZ	ZZ
북한	건산(GENSAN)	101	GEN	
	진남포	102	HC*	
	흥 남	103	HGM	
	청 진	104	CHO	
	해 주	105	HAE	
	나 진	106	NJ*	
	신의주	107	JS*	
	남 포	108	NAM	
	신 포	109	NS*	
	원 산	110	WON	
	성진(Songjin)	111	SON	
	장 전	112	JJ*	

※ 영문코드는 UN PORT-CODE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코드가 없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일정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마지막 자리에 "*"로 구분한다.

(2) 포장 종류 코드

포장 종류 코드	포장 종류
BLK	산 적 화 물
CNT	컨 테 이 너
BOX	상 자
CAN	깡 통
BAG	백 (BAG)
CAR	운수업 차량
CAS	상 자
COL	코 일
DRM	드 럼
LOG	통 나 무
PAL	통,용기(액체)
PKG	꾸 러 미
ROL	ROLL
TNK	탱 크
XXX	기 타

(3) 화물품목 분류 코드

통계 코드	품목명	HS코드분류	비 고
01	육류	2류, 5류, 8류	육과 식용설육,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식용의 과일 및 견과류와 껍질
02	어패류, 갑각류등	3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3	양곡	10류	낱알 곡물
04	제분공업 생산품	11류	밀가루, 전분
05	기타 동·식물 및 생산품	1류, 4류, 6류, 7류 9류 12류-14류	말, 소, 돼지, 가금류, 버터, 밀크, 치즈, 란, 천연꿀 근경, 절화,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커피, 차, 향신료, 대두, 낙화생, 유채, 사탕수수 식물성 액즙 과 엑스, 펙틴질, 식물성 편조물 재료
06	동·식물성 유지류	15류	돈지와 가금지 대두유, 기타동물성 유지
07	당류	17류	사탕수수당, 기타의 당류, 인조꿀, 캐러멜당, 당밀
08	조제식품, 음료, 주류등	16류 18류-24류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어란, 코코아 와 그 제제품, 곡물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식초,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일, 견과류 등,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음료, 알콜, 식초, 사료, 연초관련
09	시멘트	25류의 2523**	시멘트(유사 수경성시멘트)
10	모래	25류의 2505**	천연모래
11	무연탄	27류의 270111	무연탄
12	유연탄	27류의 270112	유연탄
13	철광석	26류의 2601**	철광석과 그 정광
14	기타광석 및 생산품	- 2505**, 2523**, 제외한 25류의 전부, - 2601**, 제외한 26류의 전부 - 270111, 270112, 270500, 270900, 271000, 2711**, 2712**, 2713**, 제외한 27류의 전부	
15	원유(역청류), 석유	27류의 270900	석유와 역청류(원유에 한함)
16	석유 정제품	27류의 271000 2712** 2713**	
17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류	27류의 270500 2711**	LNP, LPG, 부탄, 에틸렌
18	비료	31류	
19	화학공업생산품	28류-30류, 32류-38류	
20	플라스틱, 고무 및 그 제품	39류, 40류	
21	피혁류 및 그제품	41류-43류	
22	원목	44류의 4403**	
23	목재, 목탄, 코르크	4403**제외한 44류 45류-47류	
24	방직용성유 및 그제품	50류-63류	견, 양모, 수모, 면, 기타식물성성유, 인조스테이블, 필라멘트,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구, 도포한직물, 편물의류, 기타 섬유제품
25	고철	72류의 7204** 89류의 890800	
26	철강 및 그제품	7204**제외한 72류, 73류	
27	비철 금속 및 그제품	74류-83류	동, 니켈, 알루미늄, 연, 아연, 주석, 기타비금속 및 그제품 공구, 도구
28	기계류 및 그부품	84류, 90류	원자로, 보일러, 엔진, 크레인, 불도우저, 에어컨, 냉장고, 인쇄기, 방적 기, 적조기, 세탁기, 선반, 컴퓨터, 베어링등, 기계류의 부품, 광학기 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검사기기, 의료용기기
29	전기 기기 및 그부품	85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축전지, 조명기기, 전기식용점기기, 전기다리미, 전화기, 녹음기, 레이더기기, 무선기기, TV수상기, 축전기, 반도체, 케이블
30	차량 및 그부품	86류, 87류	철도, 궤도용차량, 일반차량 및 부품, 교통신호기
31	항공기, 선박 및 그 부품	88류, 890800제외 89류	항공기, 우주선 및 그부품, 선박과 수상구조물
32	기타	48류-49류, 64류-71류 91류-97류, 99류(현재)	지와 판지, 서적, 신문, 신발, 모자, 우산, 지팡이, 돌, 시멘트, 석면재 품, 도자기, 유리, 보석, 귀금속, 시계, 악기, 무기, 가구, 완구, 잡품, 예술 품, 골동품등 TS화물(999999), 폐기물(999900)

【 별첨 2 -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전문개정 2001. 12. 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 98호
개정 2002. 6.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55호
개정 2002. 9. 1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 71호
개정 2002. 12.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12호
개정 2003. 6.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36호
개정 2003. 10.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61호
개정 2003. 12. 8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 86호
개정 2004. 7. 20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43호
개정 2004. 9. 1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56호
개정 2004. 12. 31 해양수산부고시 제2004- 81호
개정 2005. 6. 2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33호
개정 2005. 10. 17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 83호
개정 2005. 12. 2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10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항만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0조의2·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무역항의 항만구역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과 외국항만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일을 기준으로 외항선으로 본다.
2.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관세법에 의한 통관일을 기준으로 내항선으로 본다.
3. “외항화물”이라 함은 제1호의 선박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4. “내항화물”이라 함은 제2호의 선박이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이 당해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별표1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계약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기타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청장이 정한다.(2003.12.8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계약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납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지방청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료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 제1호 가목의 (1) 또는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신고서 또는 국제여객선의 승선권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제1호 나목의 (1)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2003.12.8개정)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이내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은 별표1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중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를 징수한다.(2003.12.8개정)

②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항만시설과 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영 제2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항만내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지방청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를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급법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이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003.12.8개정)
7.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③영 제2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취항명령을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하여야 할 공해방지시설 등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후 그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폐유를 수거·처리하는 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폐유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해상폐유처리시설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그 감면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5. 지방청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기항지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고지) 지방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국고금관리법 제10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03.12.8개정)

제11조(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03.12.8개정)

제12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지방청장은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항만시설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를 그 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②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는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승선권판매대행업자가 대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④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지방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수산업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항만시설사용만료일부 15일 이내(당해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후 15일 이내)(2003.12.8개정)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일부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 당해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2003.12.8개정)

4.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②지방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마다 부과되, 매년 사용개시 첫째 달의 15일 이내. 다만,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5일 이내

2.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사용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제14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비관리청이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총사업비 확정통보서 사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매년도 정산통지서 사본을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지방청장은 매분기 사용료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청장에게 당해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지방청장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한 결과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당해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8조(가산금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보험에의 가입) ①지방청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미리 당해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지방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당해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직원의 조사)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지방청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호 및 법 제6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정지·제한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1.12. 6)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준)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료는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중 입항 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기준으로 한다.

③(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전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0-90호, 2000.12.28) 별표2 제1호 나목의 “최근 1년이상 우리나라 무역항에 4회이상(컨테이너전용선 5회이상) 입항한 외항선에 대한 선박입항료”, 같은표 같은호 다목의 “마산·울산에 취항하는 외항컨테이너전용선에 대한 선박입항료 감면율”, 같은표 제2호 나목의 “선박입항료의 10%면제를 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같은표 같은호 라목의 “선박입항료의 80% 면제적용을 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같은표제3호 라목의 “선박입항료의 10%면제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한 접안료 및 정박료”, 같은표 같은호 바목의 “선박입항료의 80%면제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한 접안료 및 정박료”, 같은표 제4호 나목의 “선박입항료의 80% 면제적용을 받는 선박에 양·적하하기 위하여 장치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화물장치료”에 관한 사용료 감면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항컨테이너선박및컨테이너화물에대한항만시설사용료감면지침(물류91570-147, '01.3.30)은 폐지한다.

부 칙(2002. 6. 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2 제1호 “가”목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 가목 “(8)” 이외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율에 가목 “(8)”의 감면율을 부가하여 감면하되, 총 감면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2002. 9. 11)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2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 7. 1부터 시행하며, 2003.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 10.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 10. 1부터 시행하며, 2003. 10.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3. 12.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 1. 1. 0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료는 입항시점을, 화물입출항료중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기준으로 한다.

제3조(항만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전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03-61호, 2003.10.4) 별표2 제1호 나목 (5)호의 적용을 받는 “연안 RO-RO철강 제품전용선”은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 접안료 및 정박료의 20%를 감면한다.

부 칙(2004. 7. 2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4년 6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4. 9. 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이 고시는 2005 1. 1부터 시행하며, 2005. 1.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5. 6. 2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2005.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5.10.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1. 00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점) 입항화물은 입항시점, 출항화물은 출항시점을 각각 그 적용시점으로 한다. 다만, 2005.11.1.00시 이전 입항 또는 출항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입항 또는 출항일로부터 10일이내에 화물반출입현황과 컨테이너반출입현황 등 기존 서식을 이용하여 정정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5. 12. 23)

이 고시는 2006. 1. 1. 00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28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1톤당 24원)가 포함됨('99.12.30)
(2)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40원, 내항선 114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8.4원, 내항선 9.5원 (나) 기타 선박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 및 유조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500원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430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710원 ④ 기타선(총톤수50톤이하, 1척1회입항시마다) : 500원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3) 기타선이 입항한 후 1월을 초과할 때마다 기본료의 100%를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중 정박자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78원, 내항선 58원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4.9원, 내항선 4.9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4)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7원 ② 내항선 : 9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중 화물장치장 (2004.7.20개정)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 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부산항</th> <th>인천항</th> <th>기타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 외항 화물</td> <td>입항</td> <td>323</td> <td>306</td> <td>184</td> </tr> <tr> <td>출항</td> <td>192</td> <td>192</td> <td>114</td> </tr> <tr> <td colspan="2">내항</td> <td>85</td> <td>85</td> <td>51</td> </tr> <tr> <td rowspan="2">기계하역 처리화물</td> <td>외항</td> <td>192</td> <td>192</td> <td>114</td> </tr> <tr> <td>내항</td> <td>48</td> <td>48</td> <td>48</td> </tr> <tr> <td rowspan="2">컨테이너 화물</td> <td>외항</td> <td>4,200</td> <td>4,200</td> <td>2,600</td> </tr> <tr> <td>내항</td> <td>1,100</td> <td>1,100</td> <td>1,100</td> </tr> <tr> <td>송유관 이용화물</td> <td>외항</td> <td>105</td> <td>105</td> <td>105</td> </tr> <tr> <td colspan="2">내항</td> <td>71</td> <td>71</td> <td>71</td> </tr> <tr> <td colspan="2">무연탄</td> <td>26</td> <td>26</td> <td>26</td> </tr> </tbody> </table>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 외항 화물	입항	323	306	184	출항	192	192	114	내항		85	85	51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192	192	114	내항	48	48	48	컨테이너 화물	외항	4,200	4,200	2,600	내항	1,100	1,100	1,100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05	105	105	내항		71	71	71	무연탄		26	26	26	O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 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 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 배를 각각 적용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 외항 화물	입항	323	306	184																																																			
	출항	192	192	114																																																			
내항		85	85	51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192	192	114																																																			
	내항	48	48	48																																																			
컨테이너 화물	외항	4,200	4,200	2,600																																																			
	내항	1,100	1,100	1,100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05	105	105																																																			
내항		71	71	71																																																			
무연탄		26	26	26																																																			
(2) 화물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 10톤1일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야적장</th> <th colspan="2">창고</th> </tr> <tr> <th>외항화물</th> <th>내항 화물</th> <th>외항화물</th> <th>내항 화물</th> </tr> </thead> <tbody> <tr> <td>요금면제 기간</td> <td>입항:5 일 출항:7 일</td> <td>4일</td> <td>입항:5일 출항:7일</td> <td>4일</td> </tr> </tbody> </table>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table border="1"> <tbody> <tr> <td>1-10일</td> <td>81</td> <td>62</td> <td>178</td> <td>125</td> </tr> <tr> <td>11-20일</td> <td>178</td> <td>125</td> <td>260</td> <td>186</td> </tr> <tr> <td>21-30일</td> <td>232</td> <td>174</td> <td>277</td> <td>199</td> </tr> <tr> <td>31일이 상</td> <td>277</td> <td>199</td> <td>321</td> <td>224</td> </tr> </tbody> </table>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 화물	외항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 일 출항:7 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1	62	178	125	11-20일	178	125	260	186	21-30일	232	174	277	199	31일이 상	277	199	321	224	O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 용 외항화물 사용 료 면제기간은 입 항4일 출항6일로 한다('96.12.30)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화물	내항 화물	외항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 일 출항:7 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1	62	178	125																																																			
11-20일	178	125	260	186																																																			
21-30일	232	174	277	199																																																			
31일이 상	277	199	321	224																																																			
다. 국제여객터 미널이용료	여객이용시설중 대합 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1,100원	O 6세미만의 소아 는 제외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라.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원/1㎡, 1월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요 금</th> </tr> <tr> <th>부산항 및 인천항</th> <th>기타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창 고 (상옥)</td> <td>외항화물</td> <td>1,288</td> <td>1,029</td> </tr> <tr> <td>내항화물</td> <td>929</td> <td>743</td> </tr> <tr> <td rowspan="4">야 적 장</td> <td rowspan="2">포 장</td> <td>외항화물</td> <td>571</td> </tr> <tr> <td>내항화물</td> <td>409</td> </tr> <tr> <td rowspan="2">미 포 장</td> <td>외항화물</td> <td>306</td> </tr> <tr> <td>내항화물</td> <td>224</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 적 장	포 장	외항화물	571	내항화물	409	미 포 장	외항화물	306	내항화물	224	○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구 분		요 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 적 장	포 장	외항화물	571																								
		내항화물	409																								
	미 포 장	외항화물	306																								
		내항화물	224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2003.12.8개정)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단, 개발 부두전용사용료 산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싸이로시설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①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가. 선박료</p> <p>(1) 선박입출항료</p>	<p>(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p> <p>(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국제총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p> <p>(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제총톤수(국제톤수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징수톤수로 본다.</p> <p>(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m³,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p> <p>(마) 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p> <p>(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2003.12.8신설)</p>
<p>(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p>	<p>(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p> <p>(나) 연안여객선, 총톤수 15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접안료는 당해 선박이 등록된 지방청장의 관할 항만에서만 부과·징수한다. 다만, 당해등록 관서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의 지방청장이 정할 수 있다.(2003.12.8개정)</p> <p>(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 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p> <p>(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96.12.30)</p> <p>(바) 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미만은 50톤으로 본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 내지 (라)의 기준을 적용한다.</p> <p>(아) 12시간미만은 12시간으로,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자)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선신고를 하고 지방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15일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p>나. 화물료</p> <p>(1) 화물입출항료</p>	<p>(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싣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500원으로 한다.</p> <p>(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마) 1톤미만은 1톤으로, 1m³미만은 1m³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미만은 10ft로 본다.</p> <p>(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p> <p>(사) 무연탄 요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일반화물 요율을 적용한다.(2003.12.8신설)</p> <p>(아)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이 징수한다. 단, 돌핀, 브이 등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5.6.23 개정)</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자)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2003.12.8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88 416 1362 938"> <thead> <tr> <th data-bbox="393 416 636 490">구 분</th> <th data-bbox="636 416 1357 490">환 산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3 490 636 658">중 량</td> <td data-bbox="636 490 1357 658"> 1,000kg= 2,204.6파운드= 1톤 1Short Ton= 907kg= 2,000파운드= 0.907톤 1Long Ton= 1,016kg= 2,240파운드= 1.016톤 </td> </tr> <tr> <td data-bbox="393 658 636 770">용 적</td> <td data-bbox="636 658 1357 770"> 1m³ = 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td> </tr> <tr> <td data-bbox="393 770 636 938">유 류</td> <td data-bbox="636 770 1357 938"> 1ℓ= 0.2642Gallon 1Gallon= 3.7854ℓ 1Barrel(42Gallon)= 158.9873ℓ </td> </tr> </tbody> </table>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2,204.6파운드= 1톤 1Short Ton= 907kg= 2,000파운드= 0.907톤 1Long Ton= 1,016kg= 2,240파운드=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유 류	1ℓ= 0.2642Gallon 1Gallon= 3.7854ℓ 1Barrel(42Gallon)= 158.9873ℓ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2,204.6파운드= 1톤 1Short Ton= 907kg= 2,000파운드= 0.907톤 1Long Ton= 1,016kg= 2,240파운드=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유 류	1ℓ= 0.2642Gallon 1Gallon= 3.7854ℓ 1Barrel(42Gallon)= 158.9873ℓ								
(2) 화물체화료	<p>(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체화료 징수대상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다. 전용사용료	<p>(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프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500원으로 한다.</p> <p>(다) 목호항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라. 기타	<p>(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라 함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p> <p>(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라 함은 항만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장소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p> <p>(다) 측정단위중 “톤”이라 함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바렐”이라 함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라 함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p> <p>(라) “통과선박”이라 함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3.12.8개정)</p> <p>(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라 함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p> <p>(바) “원양어획물”이라 함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p>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1. 선박료 가. 선박입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2)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개정 2004.12.31, 2005.12.23) (3) 2006년 12월 31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2005.12.23. 개정) (4) 200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개정 2004.12.31, 2005.12.31)
	50%	(5) 200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울산·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출항시마다 20TEU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개정 2003.12.8, 2005.12.23)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천, 평택, 속초, 군산 및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어객선(개정 2005.6.23, 2005.12.23) (7) 삭제 <2005.12.23> (8)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당해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중 지방청장이 지정한 선박(2003.12.8개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100%	(4)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정박료에 한함)(개정 2004.12.31, 2005.12.23) (5) 200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함)(2005.12.23. 개정) (6) 200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개정 2004.12.31, 2005.12.23)
	50%	(7) 200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개정 2003.12.8, 2005.12.23) (8) 200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2003.12.8신설) (9)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RO-RO철강제품전용선(다만, 국내항에 최초 취항후 3년간 적용) (2003.12.8신설)
	20%	(10) 50% 감면적용이 종료되는 연안RO-RO철강제품전용선(다만, 20% 감면 적용시점부터 3년간 적용) (2003.12.8신설)
2. 화물료 가. 화물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당해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의한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방지 및 타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경우에는 화물입출항료를 면제한다. (4)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2003.12.8개정)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100%	(5) 200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개정 2004.12.31, 2005.12.23) (6) 2006년 12월 31일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개정 2003.10.4, 2005.12.23) (7) 200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2005.12.23.개정)
	50%	(8) 200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개정 2005.6.23, 2005.12.23) (9) 삭제 <2005.12.23>
	20%	(10) 200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 (개정 2003.12.8,2005.12.23)
3.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지역에서 연안화물하역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하역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3.12.8, 2005.12.23)
	50%	(3) 2006. 12. 31까지 마산항에서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 (2002. 6.28 신설) (개정 2003.12.8, 2005.12.23)

[별지 제1호서식]

321		<input type="checkbox"/> 일반 항만시설 <input type="checkbox"/>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업 체 코 드	□□-□-□□□ □□□□ 업체명					
	성 명				전 화 번 호		
선박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호 출 번 호				입 항 일 시	□□□□-□□-□□-□□-□□	
항만시설	선 명				총 톤 수		
	총 길 이	m	너 비	m	예 상 흘 수	□□-□m	
항만시설	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 업 구 분	□ 1.입항 2.이선	
	시 설 코 드	□□□-□□ 시설명			허 가 번 호		
	면 적	㎡	위 치				
	사 용 목 적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수리 05.해난 06.급유 07.접안대기 08.화물대기 09.상가대기 10.출항대기 11.해상하역 12.계선 13.수입화물장치 14.수출화물장치 99.기타					
	사 용 내 역						
	양하화물종류.톤	1	□□ □□□.□□□mt	2	□□ □□□.□□□ mt	3	□□ □□□.□□□mt
	적하화물종류.톤	1	□□ □□□.□□□mt	2	□□ □□□.□□□ mt	3	□□ □□□.□□□mt
	장 치 화 물	1 □□ □□□.□□□mt □□□□□개 2 □□ □□□.□□□mt □□□□□개					
사 용 기 간	□□년□□월□□일□□시□□분부터□□년□□월□□일□□시□□분까지						
사 용 조 건							
사 용 료	면제 사유	□□01.군함 02.관유선 03.조선소수리선박 04.해난 05.검역선박 06.낙도보조항로 07.수협소유선박 08.국고귀속,압수,폐기화물 09.감문사정 10.조수대기 99.기타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간)			
	산 출 내 역						
	일 부 면 제	□ 1.유 2.무	면제사유				
	사 용 료		징수의뢰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 고							
<input type="checkbox"/>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input type="checkbox"/>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 음						없 음	

53337-09511민
92.12.17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호서식]

375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처리기간
		※ 신고번호 ()					즉시
신청인	업체코드	□□-□-□□□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선박	※ 호출번호	□□□□□□□□□□					
	선명						
	국적		총톤수				
	입출항일	입항일	출항일				
시설 사용료 (화물)	반출입현황	별첨양식 (화물반출입현황)					
	구분	□ 1.외항입항 2.외항출항 3.내항입항 4.내항출항		납기일	□□년□□월□□일		
	시설종류		사용장소				
	하역구분	운임톤/갯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할인코드	비고
	1	□				□	(하역구분)
	2	□				□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	□				□	3.송유관하역 4.무연탄
	4	□				□	5.컨테이너20FT미만
5	□				□	6.컨테이너20FT	
6	□				□	7.컨테이너35FT	
7	□				□	8.컨테이너40FT	
						9.컨테이너40FT초과	
	계					(할인코드) 1.20% 2.50% 9.100%	
<p>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월□□일</p> <p>□□□()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p>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음						없음	

53337-09511민
92.12.17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호의1서식] <신설 2005.10.17>

화물 [<input type="checkbox"/> 반입 <input type="checkbox"/> 반출] 현황																					
376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 귀하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							
2. 호출부호 및 선명				3. 년도-입항횟수		4. 항차		5. 화물구분		6. 선박국적		7. 선박대리점명									
8. 적하항				9. 양하항				10. 최종목적항				11. 선박회사명				12. 제출일시					
13. MSN	14. B/L Type	15. 선하증권번호(B/L)		16. S)송하인 C)수하인 N)통지처		17.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규격 봉인번호		18. 품명		19. 품목 코드	20. 포장 단위	21. 1)총중량 2)총용적		22. 용적 단위	23. 반출입 장소	24. 특수 화물 코드	25. 하역 방법 코드	26. 하역회사	27. 국내화주/ 복합운송 주선인 코드(사업자 /주민등록 번호)	28. 장치예 정장소 (장치 장부호)	29. 화물 속성
소 계		컨테이너개수								중량톤											
										용적톤											

388

일반용지 297mm×210mm 60g/m² (재활용품)

입항섭박톤급별통계

여 백

목 차

I . 개 요	393
1. 작성 목적	393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393
3. 작성 연혁	393
4. 작성 대상 및 내역	393
5. 작성 방법 및 체계	393
6. 결과 공표	394
7. 관련 법령	394
II . 업무흐름도	395
III . 통계표	396
IV . 업무절차 상세 설명	397
1. 선박입출항신고서 작성	397
2. 선박입항신고서 확인	400
3.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생성	402
4.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작성·공표	404
V . 관련 용어 설명	406

여 백

I. 개 요

1. 작성 목적

- 선박의 입항추이를 분석하여 항만시설 증설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보고통계
- 승인번호 : 제12310호

3. 작성 연혁

- 1975. 7. : 통계작성 승인
- 1993. 11. :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
- 1994. 11. : 통계작성 주기 변경 (월 ⇒ 연)

4. 작성 대상 및 내역

- 대 상 : 우리나라 28개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
- 내 용 : 입항선박 사업구역(외항선, 연안선)별 척수와 총톤수
- 작성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작성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5. 작성 방법 및 체계

- 방 법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취합 및 통계 생성
- 체 계 :
 - 선박입항신고서 신고자 → 지방청, PA(PORT-MIS) → 해양수산부

6. 결과 공표

- 주 기 : 매년
- 공표 방법 및 시기
 - 『해양수산통계연보』 수록, 작성대상연도의 익년 7월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 공표 범위 : 전국

7. 관련 법령

- 개항질서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입출항의 신고)
-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신고의 면제대상선박)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내항선 입출항신고)
제3조 2항 (외항선 입출항신고)

II. 업무흐름도

업무 절차	행위 주체	비 고
무역항에 선박입출항 시 내·외항선 입출항신고서 작성·제출 (지방청, PA)	신고자 (선사/대리점, 선장)	PORT-MIS를 이용하여 전산입력
내·외항선 입출항신고서 확인 및 수리	업무담당자 (지방청,PA)	PORT-MIS 이용 신고자료 확인
입항선박 톤급별 가통계 생성 (매월 15일)	업무담당자 (지방청)	PORT-MIS 이용
가통계 생성자료 전송 (매월 20일)	업무담당자 (지방청)	SP-IDC 통계 DB에 저장
분기,년도 통계 재생성 (매분기 2개월후, 익년2월)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본부 통계담당자	SP-IDC와 PORT-MIS 자료 비교 후 오차 보정
작성대상연도 통계자료 확정 (작성대상연도 익년 2월)	본부 통계담당자	업무담당자 확인 통보 후 SP-IDC에서 작성대상연도 통계 확정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작성·공표 (작성대상연도 익년 7월)	본부 통계담당자	해양수산통계연보 발간·배포

III 통계표

3. 선박입항 (톤급) Vessel Arrival (Tonnage) 총괄 Total

톤급별	합계		외항선						연안선	
			계		국적선		외국선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척	총톤수	척	총톤수
합계 Total	187,458	1,073,798,813	74,779	922,141,663	19,846	135,230,161	54,933	786,911,492	112,679	151,657,160
100톤 미만 100 less than	17,458	2,943,589	663	54,201	441	35,807	222	18,394	16,825	2,889,368
100 - 500톤 미만 100 - 5000 less than	45,727	21,952,233	6,178	2,800,141	2,845	1,149,413	5,333	1,740,728	37,549	19,062,092
500 - 1,000톤 미만 500 - 1,000 less than	29,743	24,073,196	4,338	3,414,041	1,324	1,072,601	3,014	2,341,440	25,405	20,659,155
1,000 - 3,000톤 미만 1,000 - 3,000 less than	38,992	69,281,862	18,122	33,845,757	6,944	13,518,781	11,178	20,328,976	20,870	35,436,095
3,000 - 5,000톤 미만 3,000 - 5,000 less than	18,665	76,287,846	11,368	45,837,454	3,817	16,324,698	7,551	30,512,758	7,297	30,450,392
5,000 - 7,000톤 미만 5,000 - 7,000 less than	6,592	39,176,037	4,240	25,265,672	547	3,109,701	3,693	22,165,971	2,352	13,910,365
7,000 - 10,000톤 미만 7,000-10,000 less than	7,149	58,597,760	5,542	46,705,219	1,368	11,004,253	4,174	35,700,966	1,807	11,892,531
10,000 - 15,000톤 미만 10,000-15,000 less than	3,904	48,430,560	3,730	46,471,391	377	4,603,940	3,353	41,867,451	174	1,959,159
15,000 - 20,000톤 미만 15,000-20,000 less than	4,649	79,613,932	4,395	75,315,140	779	13,276,796	3,618	62,038,344	254	4,298,792
20,000 - 25,000톤 미만 20,000-25,000 less than	2,282	51,246,093	2,282	51,246,093	378	8,165,099	1,906	43,080,994	0	0
25,000 - 30,000톤 미만 25,000-30,000 less than	3,086	84,439,173	2,815	77,299,143	147	3,817,814	2,668	73,481,329	271	7,140,030
30,000 - 50,000톤 미만 30,000-50,000 less than	4,614	179,260,829	4,813	179,242,404	129	4,670,093	4,484	174,572,401	1	37,835
50,000 - 60,000톤 미만 50,000-60,000 less than	2,157	117,057,340	2,083	113,135,994	316	16,846,041	1,767	96,289,953	74	3,921,346
50,000 - 75,000톤 미만 50,000-75,000 less than	817	55,628,851	817	55,628,851	138	9,163,826	679	46,465,025	0	0
75,000 - 100,000톤 미만 75,000-100,000 less than	950	79,671,128	950	79,671,128	173	14,546,022	777	65,125,106	0	0
100,000톤 이상 100,000 more than	643	86,118,934	643	86,118,934	125	14,925,276	518	71,193,655	0	0

주: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에서는 선박입항실적에서
기타항을 제외
자료: 해운물류국

Note: The statistics of vessels arrived in other ports are not computed
in this table
Source: Shipping and Logistics Bureau

IV. 업무절차 상세 설명

1. 선박입출항신고서 작성 : 신고자(선사/대리점, 선장 등)

(1)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신고

○ 초기화면 : 신고자가 PORT-MIS이용하기 위한 첫 화면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청코드 030 인천항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취소 종료

IPA
INCHEON PORT AUTHORITY

- 청코드 :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제출할 지방청 코드
- 아이디, 비밀번호는 PORT-MIS 이용자 등록 시 부여
- ※ 지방청, PA(항만운영공사) 및 EDI 화면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음

(2) 내항 선박 입항신고서 작성

○ 전송구분

- 최초, 변경, 최종으로 구분되며 입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 입출항 확정시는 “최종”, 변경, 취소 시에는 “변경” 또는 “취소”를 선택 기재
- 내항입항신고는 “최초” 신고 없이 바로 “최종” 신고 가능

○ 입항목적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선박수리 05.해난
- 06. 승무원교대 07.여객상륙 08.급유 09.선용품적재 10.기타

○ 입항선박의 톤수적용 기준

- 국 적 선 : 국적증서상의 총톤수
- 외국적선 : 국제톤수증서상의 총톤수

(3) 외항선박 입항신고서 작성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for reporting the arrival of a foreign ship. The form is titled '외항선박 입항신고서' and is part of a system called '한민유연정보시스템'. It includes a navigation bar with various management options like '화물관리', '세입징수관리', etc. The main form area contains several input fields and a table. The table has columns for '전송구분' (Transfer Category), '입항일시' (Arrival Time), '출항예정일시' (Departure Estimated Time), and '경유지출항일시' (Port of Call Departure Time). The status at the bottom of the form is '강진주 외항입항 신고를 합니다'.

○ 전송구분

- 최초, 변경, 최종으로 구분되며 입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 입출항 확정시는 "최종", 변경, 취소 시에는 "변경" 또는 "취소"를 선택 기재

○ 입항목적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선박수리 05.해난
06. 승무원교대 07.여객상륙 08.급유 09.선용품적재 10.기타

○ 입항선박의 톤수적용 기준

- 국적선 4,000톤 미만 : 국적증서상의 총톤수
- 국적선 4,000톤 이상 : 국제톤수증서상의 총톤수
- 외국적선 : 국제톤수증서상의 총톤수

2. 선박입항신고서 확인 : 업무담당자(지방청,PA)

(1) 내항선 입항신고 수리

The screenshot shows a web application window titled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내항선입항신고수리]'.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a search bar with '신고코드' (701) and '호출번호' (포항선항). Below the search bar are navigation tabs for 'PAGE 1' and 'PAGE 2'. The main data entry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Search/Filter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신고코드', '호출번호', and '입항연도/횟수'.
- Report Details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선박명', '선박국적', '국적출원수', '선사/대리점', '선박종류', '선수결정돈', '최종검사', and '차기검사'.
- Processing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전송구분', '입항목적', '출항예정일시', '잔해구분', '입항일시', '선박계선장소', '최초출항시', '전출항시', '잔해일시', '잔출항지출원일시', '적재화물', '적재톤수', '위험물톤수', '부선출원수1', '부선출원수2', '모래제취장소', '메션시용유무', '국위부나용선유무', and '도선시용유무'.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강신주' field.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vertical toolbar with icons for search, print, and other functions.

- 수리하고자 하는 내항선 입항자료를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 후 수리
- 전송구분이 최종으로 표시된 자료에 한하여 수리
 - ※ 전송구분 "최초" 는 선석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외항선 입항신고 수리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외항선입항신고수리]

화일 선박운항관리 화물관리 세입징수관리 통계관리 유관기관지원 기타관리 운영자관리 도움말

외항선입항신고수리 입력 삭제 취소 조회 인쇄 새로고침 도움말

경코드: 701 포함신청 호출번호 입항년도/횟수

PAGE 1 | PAGE 2 | PAGE 3 | P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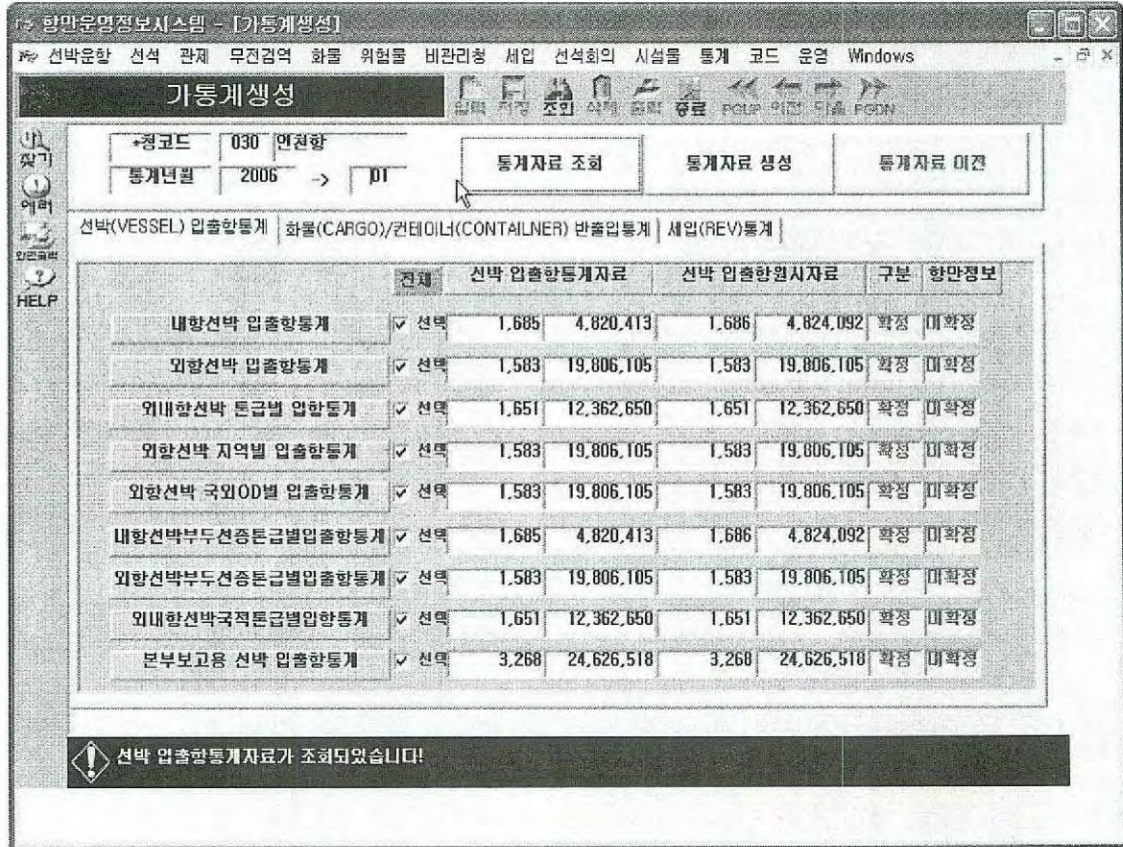
경코드		호출번호		입항번호	
선박명		선사/미리점		입항검사	0000/00/00 00:00
선박국적		선박종류		자기검사	0000/00/00 00:00
국채출발수	본	출발수	본	장수결정문	본
전송구분		입항목적		발해구분	
입항발시	0000/00/00 00:00	출항예정발시	0000/00/00 00:00		
선박계장장소		지양지			
최초출항지		신출항지출항발시	0000/00/00 00:00:00		
진출항지					
경유지					
경유시출발번호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당해번호	본	워킹발번호	본	완전번호	본

경신주 외항선입항 신고자료를 수리 합니다

- 조회조건에 맞는 외항선 입항자료 중 수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해당 자료의 신고내용을 확인 후 수리
- 전송구분이 최종으로 표시된 자료에 한하여 수리
 - ※ 전송구분 “최초” 는 선택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1) 본부 보고용 가통계 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매월 15일



① 통계생성

- 통계를 생성할 대상 항목(청코드, 통계년월, 통계내역)을 입력하고 “통계자료생성” 을 선택

※ 생성된 통계자료는 PORT-MIS의 가통계 DB에 저장

② 통계자료 보기

- 생성구분별로 통계 생성이 완료되면 “통계자료 조회”에서 통계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③ 통계자료 비교

- 생성된 가통계 자료와 원시자료(선박입출항)를 비교

④ 가통계 확정 (SP-IDC로 자료이전)

- 통계자료 생성, 통계자료 보기 및 비교(검토)가 끝난 후 “통계자료이전” 을 실행하면 가통계 자료를 PORT-MIS 실통계 DB 와 본부(SP-IDC 통계 DB)에 전송

(2) 분기,연도 통계 재생성 : 업무담당자(지방청, PA), 분기 2개월후 매년 2월

※ 본부 통계담당자가 분기,연도 통계자료 재생성을 문서로 지시

① 통계생성

- (1)의 ① 통계생성 과정과 같음
 - ※ 본부 통계담당자는 작성대상년도 통계를 재생성할 수 있도록 SP-IDC 통계 DB 자료를 ‘확장’에서 ‘보류’로 전환

② 통계자료 보기

- (1)의 ② 통계자료보기 과정과 같음

③ 통계자료 비교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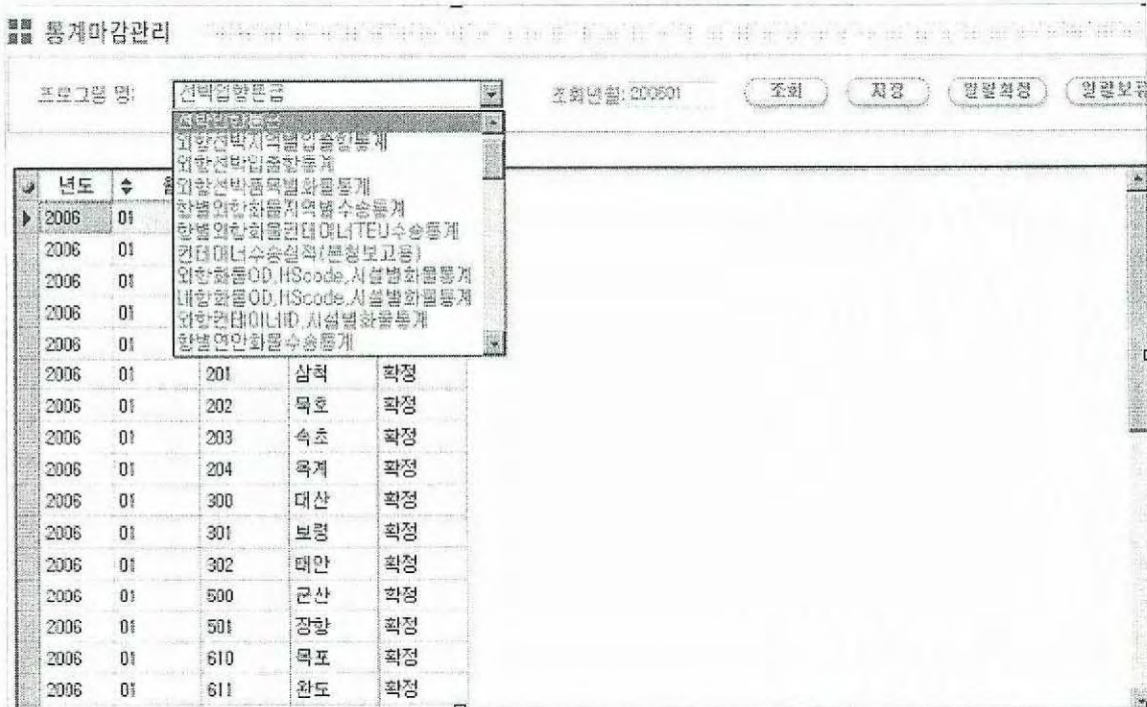
- 생성된 분기, 연도 통계자료 검증
 - ※ 분기, 연도자료 전년 동기비 비정상적인 추세(수치)로 판단되면 정밀 검증
 - ※ 비교(검증) 결과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보정 후 ①~③과정을 반복 수행

④ 분기,연도 통계자료 확정 (본부 전송)

- “통계자료이전(지방청)” 하면 선박입항톤급 분기별 통계자료가 본부(SP-IDC 통계 DB)로 전송됨
 - ※ 통계자료가 확정된 이후 통계자료 수정(재생성)이 불가함

4. 입학선박 톤급별 통계 작성·공표 : 본부 통계담당자

(1) 작성대상연도 입학선박 톤급별 통계 작성



① 각 항만의 업무담당자는 입학선박 톤급별 통계 확정 통보함

○ 업무담당자는 통계 확정 후 본부에 통보 (문서, 메일)

② 통계자료 확인

○ 본부 통계담당자는 SP-IDC 통계시스템(통계마감관리)에서 분기,연도 통계자료 조회

③ 통계 확정

○ 분기,연도 통계자료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일괄확정' 버튼으로 통계 확정

※ 분기, 연도 동기 대비 하여 추세(수치) 등 비교, 검증

④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 작성·공표

- SP-IDC 통계시스템에서 통계 출력양식에 맞도록 PDF 파일 형태로 자료 편집
- 해양수산통계연보에 통계자료 수록하여 발간 (매년 7월경)

통계연보 출력	
<p>선박입출항통계</p> <p>선박 입출항 (항) 선박 입출항 (항, 지역, 선종) <u>선박입출항통계(지역)</u></p> <p>화물수송통계</p> <p>화물수송(총괄) 화물수송(항, 품목) 수출입화물수송(지역) 수출입화물수송(연안여객선)</p> <p>2001 표본 어가 개황</p> <p>표본어가개황 어업시설현황 편의용품보유현황 가구원상황</p>	<p>여객수송통계</p> <p>여객선수송(여객, 화물) 여객선수송(연인km, 연톤km) 여객선항로현황(정기) 낙도보조항로(총괄) 낙도보조항로(항로)</p> <p>컨테이너수송통계</p> <p>컨테이너 수송(총괄 및 항)</p> <p>어가경제 연도별 통계표</p> <p>총괄 어업조수입 어업경영비 어업수지 겸업수입 겸업지출 사업외수지 미전수입및 조세공과금 가계비</p>

V. 관련 용어 설명

- 입항선박 톤급별 통계는 28개 무역항에 입항한 외항선(국적선, 외국선)과 연안선을 척수와 총톤수를 톤급별로 구분
- 외항선(Ocean going vessel, Foreign trade vessel)
외국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연안선(Home Trade Vessel) :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
- 28개 무역항
 - 경기(1) : 평택당진항 충남(4) : 대산 태안 보령, 장항 전북(1) : 군산
 - 경남(7) : 삼천포, 통영, 장승포, 옥포, 고현, 마산, 진해
 - 전남(4) : 목포, 완도, 여수, 광양 경북(1) : 포항
 - 강원(5) : 삼척, 동해, 묵호, 옥계, 속초 제주(2) : 제주, 서귀포
 - 인천(1), 부산(1), 울산(1)
- 국제총톤수
 - 선박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공제하고 여기에 특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표시하는 톤수로서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국제톤수증서
 -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에 대해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함

【 별첨 1 - 통계 관련 코드 】

(1) 지방관서 소속코드 및 항 코드

소 속	항구명	소 속 코 드		
		숫자 코드	3-영문 코드	2-영문 코드
해양수산부	본 부	010	KMP	KM
부산청	부 산	020	PUS	BS
	감 천	021	KCN	KC
인천청	인 천	030	INC	IC
	평 택	031	PTK	PT
	연안 부두	032	MBY	
동해청	동 해	200	TGH	DH
	삼 척	201	SUK	SA
	목 호	202	MUK	MH
	속 초	203	SHO	SC
	옥 계	204	OKK	OG
대산청	대 산	300	TSN	DS
	보 령	301	BOR	BO
	당 진	303	TJI	TJ
	태 안	302	TAN	TA
군산청	군 산	500	KUV	KS
	장 향	501	CHG	JH
목포청	목 포	610	MOK	MP
	완 도	611	WND	WD
	대불 분실	616	DBL	DL
	북향 분실	617		
여수청	여 수	620	YOS	YS
	여 천	621	YOC	YC
	광 양	622	KAN	KY
포항청	포 항	700	KPO	PH
	신 항	701	SHG	SH
마산청	마 산	810	MAS	MS
	삼천포	811	SCP	SP

소 속	항 구 명	소 속 코 드		
		숫자 코드	3-영문 코드	2-영문 코드
마산청	옥 포	812	OKP	OK
	거 제	813	KJE	JP
	진 해	814	CHF	CH
	통 영	815	TYG	CM
	고 현	816	KHN	KH
울산청	울 산	820	USN	US
	온 산	821	ONS	OS
제주청	제 주	900	CHA	JJ
	서귀포	901	SPO	SG
기타	기타항	951	ZZZ	ZZ
북한	건산(GENSAN)	101	GEN	
	진남포	102	HC*	
	흥 남	103	HGM	
	청 진	104	CHO	
	해 주	105	HAE	
	나 진	106	NJ*	
	신의주	107	JS*	
	남 포	108	NAM	
	신 포	109	NS*	
	원 산	110	WON	
	성진(Songjin)	111	SON	
	장 전	112	JJ*	

※ 영문코드는 UN PORT-CODE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코드가 없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일정원칙에 의해 작성하고 마지막 자리에 "*"로 구분한다.

(2) 국가 코드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가나	GH	도미니카 연방	DM
가봉	GA	독일	DE
가이아나	GY	동티모	TP
감비아	GM	라오스	LA
과델로페도	GP	라이베리아	LR
과테말라	GT	라트비아	LV
괌	GU	러시아연방	RU
그레나다	GD	레바논	LB
그루지야	GE	레소토	LS
그리스	GR	루마니아	RO
그린란드	GL	룩셈부르크	LU
기니	GN	르완다	RW
기니비사우	GW	리비아	LY
나미비아	NA	리유니온	RE
나우루	NR	리트아니아	LT
나이지리아	NG	리헨텐슈타인	LI
남극지역	AQ	마다가스카르	MG
남아프리카	ZA	마셜군도	MH
남조지아 군도	GS	마이크로네시아	FM
네덜란드	NL	마카오	MO
네팔	NP	마케도니아	MK
노르웨이	NO	마티니크도	MQ
노퍽도	NF	말라위	MW
뉴질랜드	NZ	말레시아	MY
뉴칼레도니아	NC	말리	ML
니우에	NU	메이요트	YT
니제르	NE	멕시코	MX
니카라과	NI	모나코	MC
대양주	OC	덴마크	DK
대한민국	KR	도미니카 공화국	DO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모로코	MA	브루나이	BN
모리셔스	MU	사우디아라비아	SA
모리타니	MR	사이프러스	CY
모잠비크	MZ	산 마리노	SM
몬트세라트	MS	상토메프린시페	ST
몰도라	MD	서사모아	WS
몰디브	MV	서사하라	EH
몰타	MT	세네갈	SN
몽고	MN	세이셸	SC
미국	US	세인트 루이스	LC
미국령 버진제도	VI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C
미국령 사모아	AS	세인트 킷츠네비스	KN
미얀마	MM	세인트 헬레나	SH
바누아트	VU	세인트리에르도, 미괘론도	PM
바레인	BH	소말리아	SO
바베이도스	BB	소비에트연방	SU
바티칸	VA	솔로몬 아일랜드	SB
바하마	BS	수단	SD
방글라데시	BD	수리남	SR
버뮤다제도	BM	스리랑카	LK
베냉	BJ	스발바드, 잠마엔도	SJ
베네수엘라	VE	스와질랜드	SZ
베라우스	BY	스웨덴	SE
베리즈	BZ	부룬디	BI
베트남	VN	부르키나파소	BF
벨기에	BE	부탄	BT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BA	북부 마리아나 군도	MP
보츠와나	BW	북한	KP
볼리비아	BO	불가리아	BG
브라질	BR	아루바	AW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한 국 어 명	국가 코드
아르메니아	AM	오만	OM
아르헨티나	AR	오스트리아	AT
아우트라잉 군도	UM	온두라스	HN
아이랜드	IE	왈리, 푸트나제도	WF
아이슬란드	IS	요르단	JO
아이티	HT	우간다	UG
아제르바이잔	AZ	우르과이	UY
아프카니스탄	AF	우즈베키스탄	UZ
안골라	AI	우크라이나	UA
안티가 부다	AG	유고슬라비아	YU
안틸레스	AN	이라크	IQ
알바니아	AL	이란	IR
알제리	DZ	이스라엘	IL
앙골라	AO	이집트	EG
에리트리아	ER	이탈리아	IT
에스토니아	EE	이티오피아	ET
에콰도르	EC	인도	IN
엘살바도르	SV	인도네시아	ID
영국	GB	일본	JP
영국령 버진제도	VG	자메이카	JM
스위스	CH	자이르	ZR
스페인	ES	잠비아	ZM
슬로바키아	SK	적도 기니	GQ
슬로베니아	SI	중국	CN
시리아	SY	중앙 아프리카	CF
시에라 리온	SL	중화민국	TW
싱가폴	SG	지부티	DJ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AE	지브랄타	GI
영국령 인도양 지역	IO	짐바브웨	ZW
예멘	YE	차드	TD

한 국 어 명	국 가 코 드	한 국 어 명	국 가 코 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케이만 제도	CZ CL CM CV KZ QA KH CA KE KY	토켈로 통가 튀니지아 트르크메니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발루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TK TO TN TM TT TV PA PY PK PG
코르디바르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코스 제도 콜롬비아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쿠크 제도	CI KM CR CC CO CG CD CU KW CK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포클랜드(말비나스)제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피지	PW PE PT FK PL PR FR GF PF FJ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도 키르바시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크스 터키 토고	HR CX KI KG TJ TZ TH TC TR TG	필란드 공화국 필리핀 핏카인도 헝가리 호주 홍콩	FI PH PN HU AU HK

(3) 선박 용도 코드

선박용도 코드	선박 용도 코드명	통계분류 코드	통계분류 코드명
11	여 객 선	01	여 객 선
12	화 객 선	01	여 객 선
21	산 물 선(벌크선)	02	산 물 선
22	양 곡 운 반 선	02	산 물 선
23	원 목 운 반 선	03	산 물 선
24	광 석 운 반 선	02	산 물 선
25	석 탄 운 반 선	02	산 물 선
26	시 멘 트 운 반 선	04	시 멘 트 선
27	자 동 차 운 반 선	05	자 동 차 선
28	하 트 코 일 운 반 선	06	하 트 코 일 선
29	철 강 재 운 반 선	02	산 물 선
30	코 일 전 용 선	02	산 물 선
31	모 래 운 반 선	02	산 물 선
32	냉 동 냉 장 선	07	냉 동. 냉 장 선
33	폐 기 물 운 반 선	02	산 물 선
39	일 반 화 물 선	08	일 반 화 물 선
41	폴 컨 테 이 너 선	09	폴 컨테이너선
42	세미(혼재)컨테이너선	10	세미 컨테이너선
51	원 유 운 반 선	11	원 유 운 반 선
52	석유 제품 운반 선	12	석유 정제품 운반선
53	케 미 칼 운 반 선	13	케 미 칼 운 반 선
54	케미칼 가스 운반선	13	케 미 칼 운 반 선
55	LPG 운 반 선	14	LPG, LNG 운반선
56	LNG 운 반 선	14	LPG, LNG 운반선
59	기 타 유 조 선	12	석유 정제품 운반선
61	견 인 용 예 선	16	기 타 선
62	접 안 용 예 선	16	기 타 선
63	입 항 예 선	16	기 타 선
69	기 타 예 선	16	기 타 선

선박용도 코드	선박용도 코드명	통계분류 코드	통계분류 코드명
70	예 부 선	16	기 타 선
71	모 래 운 반 용 부선	16	기 타 선
72	철강재 운반용 부선	16	기 타 선
73	원 유 운반용 부선	16	기 타 선
74	석유제품 운반용 부선	16	기 타 선
75	화공약품 운반용 부선	16	기 타 선
76	일반화물 운반용 부선	16	기 타 선
77	공사 작업용 부선	16	기 타 선
78	신 조 선	16	기 타 선
79	기 타 부 선	16	기 타 선
81	관 공 선	16	기 타 선
82	경 찰 정	16	기 타 선
83	군 함	16	기 타 선
91	연 근 해 어 선	16	기 타 선
92	원 양 어 선	15	어 어 선
93	급 유 선	16	기 타 선
94	급 수 선	16	기 타 선
95	용 달 선 (통선)	16	기 타 선
96	준 설 선	16	기 타 선
97	유 램 선	16	기 타 선
98	도 선	16	기 타 선
99	기 타 선	16	기 타 선

(4) 입항 목적 코드

입항 목적 코드	입항 목적
01	양 적 하
02	양 하
03	적 하
04	선 박 수 리
05	해 난
06	승 무 원 교 대
07	여 객 상 료
08	급 유 재
09	선 용 품 적
10	단 순 경 유
99	기 타

(5) 대중 품목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산동물	육류	날알 곡물	제분공업		동식물성 유지류	원당 (당류)	기타 동식물성 가공품	임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모래	시멘트	철광석	인광석 (비료 원료)	기타광석 및 생산품	무연탄	유연탄	원유	석유 제품류	케미칼 가스 및 제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LNG	LPG	비료	기타화학 연관공업	플라스틱 류 및 제품	피혁류 및 제품	원목	목재류 합판 코르크	목재펠트 용지 인쇄	방직용 섬유류 및 제품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철강 및 제품	비철 비금속 및 제품	기계류 및 제품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	수송기기 관련품	잡화	고철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수출입 냉동어	비수출입 냉동어	수출입 수산물	어획 수산물 (비수출입)	동식물성 원료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컨테이너 화물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환적화물

【 별첨 2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8.7 해양수산부령 제0027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항질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산적하여 운송되는 인화성액체류는 인화점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8.4.6]

제3조 (선박입·출항의 신고서등)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항선입·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항선입·출항신고서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정박지지정신청서)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박지지정신청서는 항만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1998.4.6, 2003.6.10>

②삭제<1993.1.30>

③삭제 <2003.6.10>

제5조 (선박수리 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수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계내선박수리허가신청서에 작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내 위험구역"이라 함은 유힐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및 폐워된 차량구역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수리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항계내선박수리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개선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수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계내선박수리허가서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수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항계내선박수리신고확인서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계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계선신고확인서를 각각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0]

제6조 (예인선의 예항방법등) ①삭제<1999.8.25>

②삭제<1999.8.25>

③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이 항계안에서 다른 선박을 예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항하여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한꺼번에 3척이상을 예항하지 아니할 것.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항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제7조(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항계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입 24시간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반입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반입의 경우와 전출항지로부터 당해 반입항까지의 운항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반입의 경우에는 항계안으로 반입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반입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25]

제7조의2(위험물 반입의 제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대하여는 그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화학류
2.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독물류
3.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본조신설 1999.8.25]

제7조의3(위험물 하역의 제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8.25]

제8조(위험물취급시의 안전조치)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8.25>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3. 위험표지 및 차단시설의 설치
4.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수단의 확보
5.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1998.4.6]

제8조의2(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삭제<1998.12.31>

[본조신설 1998.4.6]

제9조 (위험예방조치요청)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선의 선장이 표지의 설치 기타 다른 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험예방조치요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1.30, 1998.4.6>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선 선장의 구두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예방조치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선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4.6>

제10조 (표지설치비용의 산정 및 납부)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예방조치비용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위험예방조치비용} &= \text{표지사용료} + \text{설치 및 철거비} + \text{관리비} \\ \text{표지사용료} &= \text{부표 및 부속장치의 장부가격} \times \text{사용요율} \\ \text{설치 및 철거비} &= (\text{육상운반작업비} + \text{해상운반작업비}) \times 2\text{회} \\ \text{관리비} &= \text{표지선사용료} \times \text{표지사용일수} \times 24/365 \end{aligned}$$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에 쓰여진 비용을 표지 설치등의 위험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6>

제11조 (항만관제절차)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안을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항계안에서 이동하는 선박(내항어선을 제외한다)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의 선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항만관제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8.4.6, 1999.8.25>

1. 입항보고

가. 입항예정시간·입항시간 및 입항장소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통과시간

2. 출항보고

가. 출항예정시간·출항시간 및 출항장소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위치

3. 이동보고(지정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다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이동예정장소 및 이동예정시간

나. 이동완료시간 및 이동완료장소

②항계안에서 이동하는 선박, 정박중인 선박, 계류선박 및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은 당해선박의 무선설비에 의하여 비상주파수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이 다른 통신수단에 의하여 육상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선사가 항별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4.6, 1999.8.25>

1. 도선구간의 승·하선 시간

2.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지점의 항행위치

④여객선 및 중단파무선전화기를 설치한 여객선의외의 선박이 항계안을 출항 또는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선박의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에 한하여 이를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4.6>

1. 출항시간 및 입항시간

2.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3.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톤수

4.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지점에서의 항행위치 및 속력

⑤항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1998.4.6>

제12조 (무선설비의 종류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설비의 종류는 초단파무선전화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관제용 주파수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공사 등의 허가범위) 영 제16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을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8.25]

제14조 (공사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30, 1998.4.6>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공사 또는 작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30, 1998.4.6>

제15조 (행사의 허가신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정경기등의 행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계내행사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30, 1998.4.6>

제16조 삭제<1999.8.25>

제17조 (죽재등의 부유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재·목재 또는 원목을 운반하거나 수상에 띄워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유허가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30, 1998.4.6>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죽재·목재 또는 원목의 운반·부유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30, 1998.4.6>

제18조 (출항중지 통지서의 교부)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출항중지통지서를 당해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3.1.30, 1998.4.6>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선박출항중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중지통지서를 당해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6>

제19조 (증표)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의 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개정 1993.1.30>

제2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 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96.4.2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8.7>

부칙 <제961호,1991.1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개항질서법에 의한 수수료납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96호,1993.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항만시설사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항만법시행규칙) <제64호,1996.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내지 ⑤ 생략

부칙 <제52호,199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1999.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48호,2003.6.10>

이 규칙은 200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의 (Notes) :

1. 입출항 24시간전에는 “최초”를, 입출항 확정시는 “최종”을, 변경, 취소시에는“변경”, “취소”를 각각 선택 기재
2. 3번 입항목적 Code.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선박수리 05.해난 06.승무원교대 07.여객상륙 08.급유 09.선용품적재 99.기타
3. 4번 항해구분 Code. (해당하는 선박만 기재)
01.외국적내항선 02.일시외항 03.내외항자적변경 04.나포선박 05.개인항해 06.신조선 07.수출선박 08.선명변경 09.폐선예정 10.남북한 출입 11.실습선 또는 관공선 12.원양조업선
4. 5번 검역구분 Code.
1.승선검역 2.무전검역 3.특별검역 4.검역면제 5.검역완료
5. 8번 수속장소는 입출항 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고자 하는 예정장소 및 일시를 기재
1.내항 2.외항 3.기타항
6. 9번 경유지 및 출항일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기재
7. 10번 입항목적에 위한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장소를 기재
8. 11번 항만시설 할인을 및 사유 Code.
- 할인 :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유 : 1. 군함 2. 관공선 3. 수리 4. 해난 5. 투자비보전 9. 기타
9. 13번 화물명 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 (HS code) 중 대표화물 2자리 code 기재
10. 15번 ※는 국내항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항예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자수를 기재
11. 16번 당항 승·하선승무원/승객수는 입항시는 승·하선예정 사항을 출항시는 승·하선 사항을 각각 기재
12. 19번 첨부서류중 선원휴대품 목록 및 선용품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출무하여 징구.
13. 서면 제출시 입출항시마다 다음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한다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 출 서 류	지방해양수산청 Maritime & port Administration	세 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 역 소 Quarantine Office
입출항보고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명부 Crew List		1	1	1
승객명부 Passenger List		1	1	1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1		

해양수산통계 표준매뉴얼

인 쇄 일 2007년 6월
발 행 일 2007년 6월
발 행 인 정책홍보관리실장
편 집 인 정 보 화 팀 장
발 행 처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 화 (02)3674-6444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인 쇄 처 아택디자인(02-2279-2214)

비매품